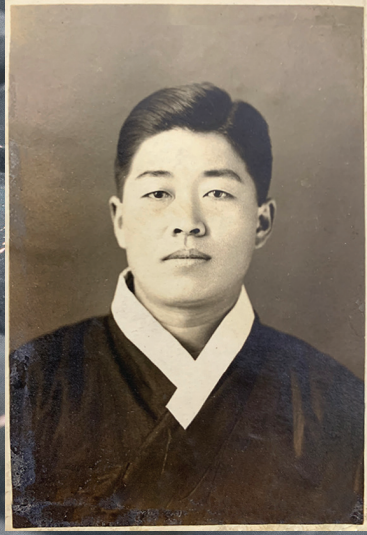


석아  
최원순 전집

본서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한국학 저술·국역 출판지원을 받아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고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간행한 것임.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5

石啞 崔元淳

---

# 석아 최원순 전집

---

이동순 엮음

## 최원순 전집을 내면서

필자는 광주·전남 작가들의 사료를 발굴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그들의 숨결을 되살리고 있는 현대문학 전공자로 1차 사료를 뒤지는 것이 일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전남의 인물들, 공간들, 사건들에 대한 사료를 보면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다. 여전히 발굴하고 정리해야 할 역사적인 인물과 사료는 깊은 숨을 고르며 호명해 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조급함에 늘 마음만 바쁘게 허덕이던 중 눈에 밟혔던 이름이 최원순이다. 그래서 그에 관한 자료를 따로 모으기 시작했다. 자료가 쌓였다.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 기록이 확인되었고, 전 조선 방방곡곡을 온몸으로 다니며 민족이 처한 현실에 비분강개하였던 그의 행적들이 드러났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원순의 독립운동 자료집」을 만들고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는 최원순에게 2020년 3월 1일 독립유공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서한 독립유공 건국포장 앞에서 느낀 부끄러움은 말로 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헛고생이 아니었다는 위안을 얻었다.

석아(石啞) 최원순은 1896년 12월 17일 광주광역시 수기옥정 299번지에서 최의준(崔宜俊)과 박보성(朴寶城)의 3남으로 태어나 광주공립소학교(서석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가 경성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에 입학하였으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졸업은 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와세다 대학교 정경학부에 입학한 후 '2·8독립선언'을 주도한 그는 '조선청년독립단' 대표자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직접 「선언서」를 등사하는 등 2·8독립선언의 막전막후에서 암약했다. 그로 인하여 고초를 겪었지만 굴하지 않았고, 가난한 고학생이었지만 조선의 독립을 위한 여정에 온 정신을 집중하였다.

그는 1920년부터 1922년까지 여름방학 때면 일본 유학생 전국 순회강연단으로, 전국을 누비며 시대를 깨우는 열변으로 조선 민중의 심장에 불을 놓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유학생학우회 임원으로, 『학지광』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펜을 무기로 삼았다. 그 날카로운 펜으로 이광수가 1922년 『개벽』 5월호에 발표한 「민족개조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 「이춘원에게 문하노라」를 썼다. 논리 없는 이광수의 빈약한 시대정신을 저격한 것이다.

청년 최원순은 1923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한 후 정치부장을 거쳐 편집국장 대리를 역임했다. 그리고 1925년 전조선기자대회를 발의하여 전국의 신문잡지 기자가 서울에서 모이는 대한민국 언론사의 초석을 놓았다. 그는 언행일치, 정론직필로 총독정치를 비판하여 투옥되기도 하였으며, 1927년 신간회 창립 발기인이자 임원으로 활약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썼다. 그렇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온갖 고초를 겪은 탓에 폐병을 얻었다. 짧은 언론인 생활을 마감하고 1928년 광주로 내려왔다.

그는 석아정을 짓고 요양하면서도 광주 천변의 가옥을 예고도 없

이 철거해 버린 광주부를 항의 방문하고 가르시게 총독을 만나서 담판하는 과감함으로 오갈 데 없는 궁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가 광주에 있었기에 든든했다. 계유구락부를 조직하여 지역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앞장섰으니 광주의 큰바위 얼굴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원순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가 펜을 무기로 삼아 대항하였던 빛나는 정신은 사장되어 있었다. 그래서 망국의 시대 조건 속에서도 살아 있는 정신으로 돌파하였던 그의 모든 글을 수습하기로 하였다.

광주 사람, 독립지사, 언론인, 석이정 주인 최원순은 엄혹하고 서슬 퍼런 시대적 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은 하고 마음먹은 일은 행동으로 옮겼다. 일제에 감시 당하고 투옥되기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듬어 살피기도 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이제 시대를 돌파하였던 그의 시대정신을 잇기 위하여 『석아 최원순 전집』을 낸다.

『석아 최원순 전집』은 2부로 구성하였다. 1부는 최원순이 1920년 3월 『현대』에 쓴 최초의 글 「생존의 의의와 요구에 대하여」부터 1934년 12월 『신가정』에 발표한 마지막 글 「조선가정과 조선고악-고악의 보편을 원한다」까지 27편을 실었다. 2부는 부록으로 작품의 연보와 생애 연보, 그리고 최원순의 삶과 정신을 밝힌 해설 「석아 최원순의 삶과 역사적 의미」를 실었다.

『석아 최원순전집』은 최원순 연구를 위한 1차 사료로 한자나 표기법도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살렸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자는 괄호 안에 한글을 병기하였고, 띄어쓰기는 현재의 정서법에 따랐다. 앞에 실린 사진은 최원순의 후손이 소중하게 보관해 온 100년이 된 사진첩 원본 이미지 그대로

수록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더하고자 했다. 일본 유학생 시절부터 전국순회강연단 사진을 비롯하여 동아일보 기자 시절, 휴양했던 석아정 까지를 망라하여 시간을 뛰어넘어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분적이지만 최원순이 발표한 글의 원문 이미지, 활동에 관한 정보도 이미지를 제공하여 실증적인 사료로 가치를 더하고자 했다. 『석아 최원순 전집』이 최원순 정보의 집합소가 되도록 애썼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셈할 수 없는 시간과 엉덩이와의 싸움, 보이지 않는 활자를 판독하기 위해 들인 노력은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것만은 말하고 싶다. 바람이 있다면 『석아 최원순 전집』이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 독립운동사, 한국 언론사, 광주지역사, 광주인물사, 그리고 우리의 정신문화사 연구를 위한 토대로 활용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둔다. 연구물을 집적해 봐도 출판을 지원하는 기관이 많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인데,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출판지원사업이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출판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은 책의 가치를 알아준 심사위원들의 혜안 덕분이다. 심사에 참여하신 심사위원님, 한국학호남진흥원 천득염 원장님, 사업을 담당하느라 애써 주신 권수용 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밤낮을 가리지 않은 연구 생활을 타하지 않고 묵묵하게 응원해 준 나의 가족들과 마음의 벗들에게도 더욱 정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연구실에서  
이동순 쓰다

# 차례

최원순 전집을 내면서 / 4

사진 및 자료 / 11

## 1부\_생존의 의의

生存(생존)의 意義(의의)와 要求(요구)에 對(대)하여	58
改造(개조)의 根據(근거)	66
向上(향상)의 意慾(의욕)과 生活(생활)의 變遷(변천)	75
兩性(양성)의 地位(지위)와 貞操(정조)의 道德的(도덕적) 價值(가치)	80
天賦人權論(천부인권론)	89
人格(인격)本位(분위)의 生活(생활)	101
人生(인생)의 意義(의의)에 對(대)한 考察(고찰)	110
李春園(이춘원)에게 問(문)하노라,	122
今番(금번) 中國動亂(중국동란)에 對(대)하여	132



## 2부\_극동정국의 미래

彼此(피차)가 無用(무용)의 感情(감정)을 바리라	148
中國(중국)의 關稅會議(관세회의)와 動亂(동란)	151
乙丑年中(을축년중) 世界大勢(세계대세)	165
橫說豎說(횡설수설)	186
情死(정사)란 一種(일종)의 自殺(자살)	188
年頭感(연두감)	190
極東政局(극동정국)의 將來(장래)	191
總督(총독) 政治(정치)로도 하면 될 일	229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國家(국가)로 變(변)하겠다	230
東光(동광)에 對(대)하여 諸名士(제명사)의 意見(의견), 東光(동광)의 1周年(주년)-民衆(민중)의 親友(친우)요 指導者(지도자)가 되시오-	232
第一(제일) 미운 일 第一(제일) 보기 실흔 일 -廻避述(회피술)에 能(능)한 人間(인간)들-	233

## 3부\_일본 정국의 추세

結婚(결혼) 前(전)에 注意(주의)할 일, 戀愛讀本(연애독본)·結婚教科書(결혼교과서)	236
日本(일본) 政局(정국)의 趨勢(추세) -普選(보선) 後(후)의 展開(전개) 如何(어하)?-	242
全朝鮮(전조선) 主要都市(주요도시) 十六處(16처) 人士(인사)의 地方問題關(지방문제관)	278

太平洋會議(태평양회의)는 어떠한 利用(이용)할까	
在滿同胞(재만동포)는 어떠한 해야 살까	280
窮民救濟(궁민구제) 對策(대책) 紙上(지상) 座談會(좌담회)	281
信賴(신뢰)하는 先輩(선배)께	
-尊敬(존경)과 企待(기대)-	284
警句(경구)	
-어머니-	286
古樂(고악)의 普遍(보편)을 願(원)한다	287

## 부록

최원순 작품 연보 /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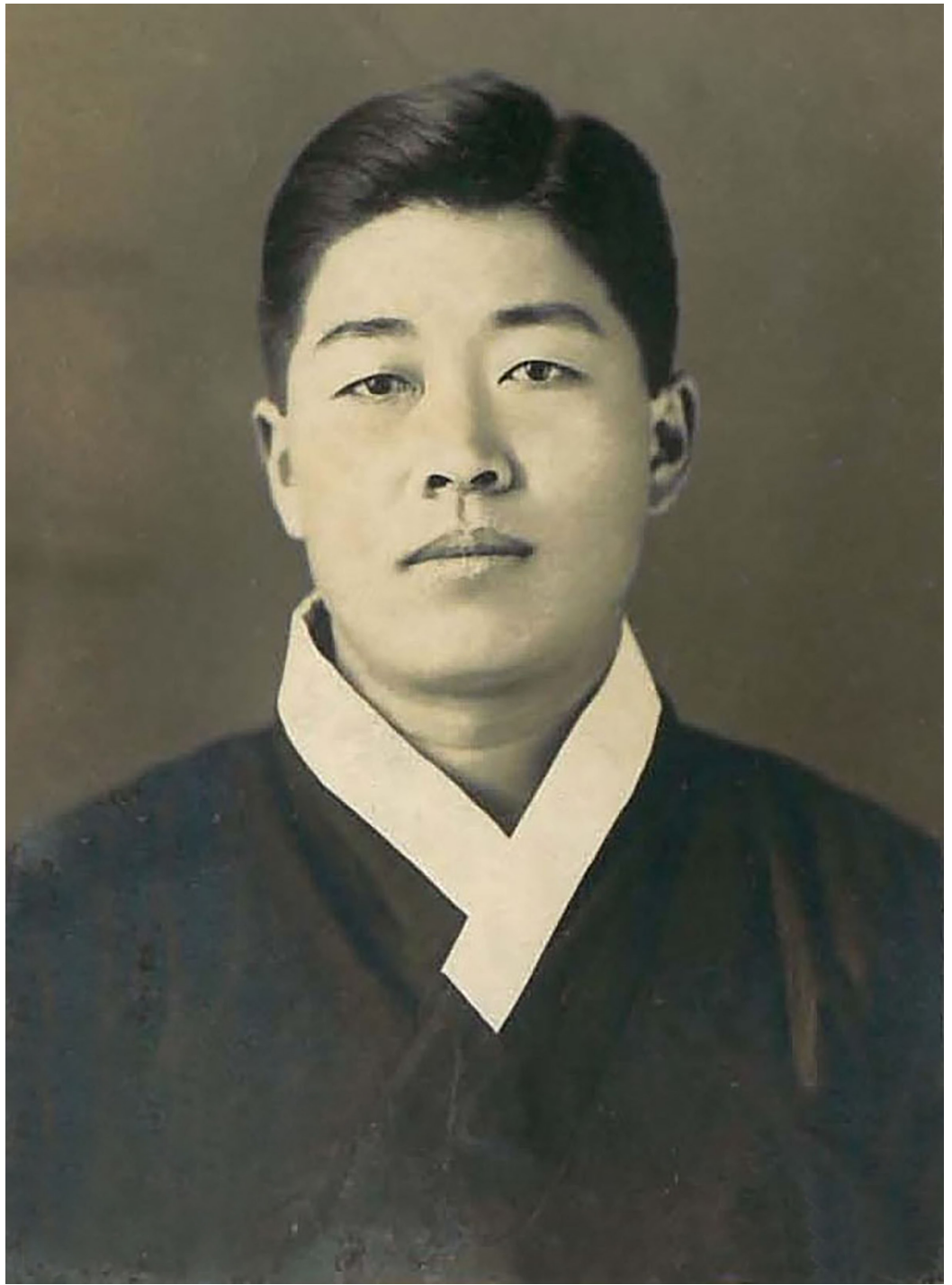
최원순 연보 / 292

해설: 石啞(석아) 최원순의 삶과 역사적 의미 / 320

---

# 사진 및 자료





최원순 근영



『동아일보』 필화사건으로 출감한 직후(1926.11)



경성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와세다대학 1학년 학우들(1918년)



일본 유학생 학우회 기념사진(1918.07.15)





조선청년독립단 결성 기념사진(1919.01)



청년단체 유학생 일동 | 광주 무등산에서(1919.01.02)



제1차 학우회 순회 강연단 | 서울 태화정(1920.07.12)



와세다대학 재학시절(1921.01)



제2차 학우회 순회강연단 | 서울 명월관(1921.07)



광주 유학생 학우회와 광주 청년들 | 광주 흥학관



일본 유학생 학우회 임원들(1921년)



일본 유학생 학우회 단체 사진(1921년)





학우회 순회 강연단(1922년)



일본 유학생 학우회 임원 기념사진(1922년)



일본유학생 학우회 체육대회 기념사진(1922년)



일본 유학 중에 벗들과 함께(1922년)



일본 유학 중 장영구와 함께(1922년)



와세다 대학 학우들과(1922년)



와세다대학교 졸업 기념사진(1923.03)



와세다대학교 졸업사진(1923.03)





결혼 기념 사진(1923.06.16)



결혼 기념 사진(1923.06.16)



석아정에서 부인 현덕신과 함께(1933.0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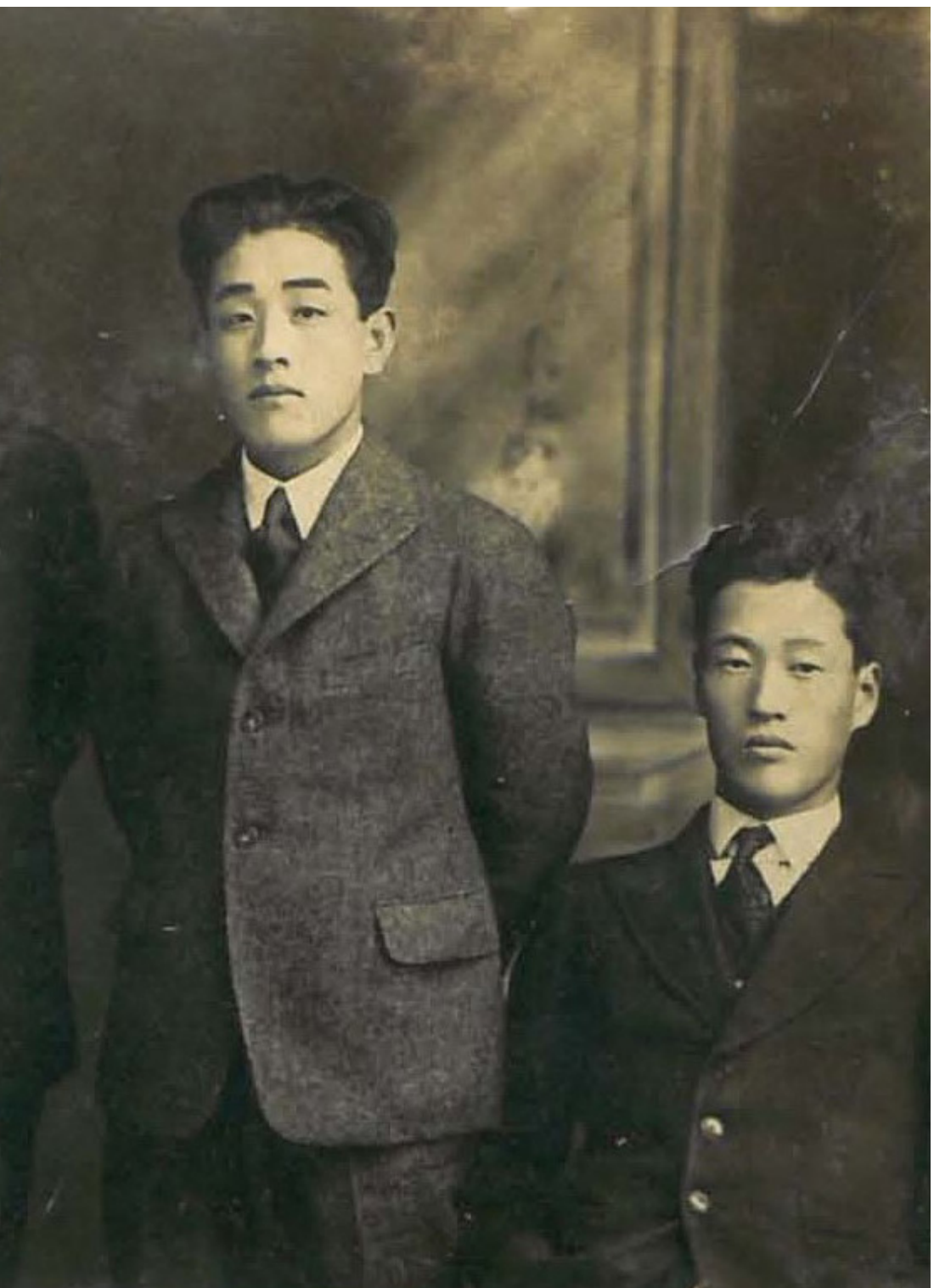


동아일보사 정치부장 시절 | 왼쪽 한복 입은 이가 최원순(1927년)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리 시절(1927년)





신간회광주지회 최흥종 석별회(1929.10.05)





광주보건구락부 주최 체조강습회(1932.07.09)

門類  
 1  
 2  
 3  
 4

次官

特內松毛為其部二月十

朝鮮獨立運動會

大正二年三月廿七日 記錄係接受

次官

改務局長

147

大正二年三月八日午後一時より神田區西小川二五  
 朝鮮獨立運動會青年會館於其會友會。後  
 員進退手合ニ藉口ニ重疊シ大合ヲ定催シ録  
 録主日本獨立運動會ニテ他國ニテ運動ノ實  
 行方法並其ノ經過ヲ其來者ニ形勢不穩ニシ  
 テ此處ニ至ルニテト記ナルヲ以テ全三時五十分  
 分以長公ニ其法ヲ一宗ニテテ解散ス年ニシテ

大正二年三月廿七日  
 朝鮮獨立運動會  
 會長 朴憲永  
 副會長 金九  
 書記 金九  
 庶務 金九  
 財政 金九  
 文書 金九  
 庶務 金九  
 庶務 金九

1919년 2·8독립선언 요지 및 검속자 명단 1

中の之に應て下るあり尚ほ擧げれば健法なる慮下  
 りたり為重立者三才名ヲ所轄西沖田好々木小吏。  
 引致し取調仕果妻貞十之六ハ本版法ヲ三才の  
 條ニ依る之に上り上り全月十日東京地方裁判  
 所檢事向て送致せり其守邊狀況左ノ如シ  
 一 独立運動ノ經過  
 朝鮮露西亞生ノ排日異志ハ聯合以來漸定ニ  
 コトナリ諸種ノ會合ニ於テハ排日回響ヲ叫ビ上ル  
 事決シテ少ナカラザリシモ多クハ空端ニ歸キ彼等ノ  
 思案上ニ於テ排日ヲ企圖シ之カ実行方法ヲ研究ス  
 たり如キノ事案ナカリシモ大正三年日韓問題以來

1919년 2·8 독립선언 요지 및 검속자 명단 2

崔 李 朴 盧 張 羅 金 送 無 驗  
 璠 元 夙 正 內 仁 宏 恆 致  
 桂 序 律 桂 宏 煥 均 琪  
  
 李 崔 金 申 卞 李 洪 李  
 讓 在 鐘 文 熙 象 在 森  
 治 宇 遠 休 瑒 何 讓 延  
  
 金 尚 德 李 景 元

1919년 2·8독립선언 요지 및 검속자 명단 3

大正九年六月末日現在

要視察朝鮮人種別表

內務省警保部

保字課

乙号	乙号	乙号	乙号	乙号	乙号	乙号	乙号	乙号	乙号	乙号
金範壽	金成麗	金泳柱	崔鍾學	崔相亨	蔡相郁	崔德用	鄭成澤	鄭光好	鄭德裕	鄭周鳳
										鄭長忠

甲六	甲五	甲六	甲六	甲三	甲一	甲六	甲六	甲一	甲一	甲一	甲一	甲一
洪承魯	高永煥	孔鎮泰	黃信德	洪基瓊	高志英	黃錫禹	文敬憲	玄德信	元達錫	樸麟常	玄俊錯	

일본 경시청이 기록한 조선인유학생 요시찰 명부(1920.07.08)

# 學友會主催 東亞日報後援

## 夏期巡迴講演大會

講演地三十二處 辯士十八名

日本에 留學한 青年 十餘名으로 組織된 學友會에서는 今番 夏期 休暇를 利用하여 朝鮮 內地에 大規模의 巡迴 講演을 行하기로 決定한바 其 講演 地方은 殆皆 全道의 主要 都市를 網羅하고 其 辯士는 留學生界의 聰俊 十八人이라 其 外面의 規模 固로 察할 所가 半 鳴 那 有의 大 講演 會임은 無論이 어니와 各方面의 新知識을 包含한 青年 先覺者가 血誠으로 勿同胞의 게부르치지는 不熱烈한 그 雄辯은 吾人의 裨益을 寄與함이 果然 多大라 是다 今 回 我 東亞 日報社의 後援下에 計畫한 實行하기로 着手한바 講演을 開設할 各地 人士는 此 意味기 是 運動의 先陣에 對하여 幸히 深大한 贊襄을 垂하시라

### 巡迴講演順序

#### 講演場所 講演日程

釜山	金海	馬山	晉州	大邱	慶州	公州	清州	禮山	京城	開城	沙里院	安岳	載寧	海州	黃州	平壤	鎮南浦	安州	定州	宣川	義州	春川	鐵原	元山	咸興	江景	全州	群山	光州	羅州	木浦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金鍾錫

釜山	京城	禮山	清州	公州	慶州	大邱	晉州	馬山	金海	釜山	京城	禮山	清州	公州	慶州	大邱	晉州	馬山	金海	釜山	京城	禮山	清州	公州	慶州	大邱	晉州	馬山	金海	釜山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七月十日

海州	黃州	鎮南浦	平壤	安州	定州	宣川	義州	春川	鐵原	元山	咸興	江景	全州	群山	光州	羅州	木浦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同

제1회 유학생 학우회 순회강연대회 『동아일보』(1920.06.26)



千餘의聽衆火舌의熱辯  
是!朝鮮人自覺運動正體

학우회대의회(학우회)의 열정적인 열의

突然中止—中止—

유학생학우회(유학생학우회)의 열정적인 열의

학우회대의회(학우회)의 열정적인 열의... (The text continues with a detailed report on the student union's activities and the reasons for the cancellation of an event.)

◇ 황성대의회연감회우학 ◇  
— 최영남 프로그래머 박희심 —

최원순이 학우회순회강연 증지를 당한 기사 『동아일보』(1921.07.18)

= 回 二 第 =

## 團 演 講 回 巡 會 友 學

### 援 後 社 報 日 亞 東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木浦</td> <td style="width: 10%;">羅州</td> <td style="width: 10%;">光州</td> <td style="width: 10%;">井邑</td> <td style="width: 10%;">群山</td> <td style="width: 10%;">全州</td> <td style="width: 10%;">禮里</td> <td style="width: 10%;">江景</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right;">◇第一隊◇</td> </tr> <tr> <td>廿七</td> <td>廿六</td> <td>廿五</td> <td>廿三</td> <td>廿二</td> <td>廿一</td> <td>廿一</td> <td>十九</td> <td></td> </tr> <tr>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義州</td> <td style="width: 10%;">宣川</td> <td style="width: 10%;">定州</td> <td style="width: 10%;">安州</td> <td style="width: 10%;">平壤</td> <td style="width: 10%;">海州</td> <td style="width: 10%;">獻寧</td> <td style="width: 10%;">沙里院</td> <td style="width: 10%;">開城</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right;">◇第二隊◇</td> </tr> <tr> <td>廿八</td> <td>廿七</td> <td>廿六</td> <td>廿五</td> <td>廿四</td> <td>廿二</td> <td>廿一</td> <td>廿一</td> <td>十九</td> <td></td> </tr> <tr>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清津</td> <td style="width: 10%;">城津</td> <td style="width: 10%;">北青</td> <td style="width: 10%;">咸興</td> <td style="width: 10%;">永興</td> <td style="width: 10%;">元山</td> <td style="width: 10%;">鐵原</td> <td style="width: 10%;">春川</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right;">◇第三隊◇</td> </tr> <tr> <td>三十</td> <td>廿八</td> <td>廿六</td> <td>廿四</td> <td>廿三</td> <td>廿二</td> <td>廿一</td> <td>十九</td> <td></td> </tr> <tr>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日</td> <td></td> </tr> </table>	木浦	羅州	光州	井邑	群山	全州	禮里	江景	◇第一隊◇	廿七	廿六	廿五	廿三	廿二	廿一	廿一	十九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義州	宣川	定州	安州	平壤	海州	獻寧	沙里院	開城	◇第二隊◇	廿八	廿七	廿六	廿五	廿四	廿二	廿一	廿一	十九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清津	城津	北青	咸興	永興	元山	鐵原	春川	◇第三隊◇	三十	廿八	廿六	廿四	廿三	廿二	廿一	十九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p style="text-align: center;">◇ 日 程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士 演</td> <td style="width: 50%;"></td> </tr> <tr> <td>金鍾弼</td> <td>崔元淳</td> </tr> <tr> <td>朴銜乘</td> <td>李益相</td> </tr> <tr> <td>蔡奎恒</td> <td>姜濟東</td> </tr> <tr> <td></td> <td>李廷允</td> </tr> <tr> <td></td> <td>李東濟</td> </tr> <tr> <td></td> <td>高永燦</td> </tr> <tr> <td></td> <td>申永燦</td> </tr> <tr> <td></td> <td>閔泰燦</td> </tr> <tr> <td></td> <td>姜昌基</td> </tr> <tr> <td></td> <td>崔昌益</td> </tr> <tr> <td></td> <td>林澤龍</td> </tr> </table>	士 演		金鍾弼	崔元淳	朴銜乘	李益相	蔡奎恒	姜濟東		李廷允		李東濟		高永燦		申永燦		閔泰燦		姜昌基		崔昌益		林澤龍
木浦	羅州	光州	井邑	群山	全州	禮里	江景	◇第一隊◇																																																																																																					
廿七	廿六	廿五	廿三	廿二	廿一	廿一	十九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義州	宣川	定州	安州	平壤	海州	獻寧	沙里院	開城	◇第二隊◇																																																																																																				
廿八	廿七	廿六	廿五	廿四	廿二	廿一	廿一	十九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清津	城津	北青	咸興	永興	元山	鐵原	春川	◇第三隊◇																																																																																																					
三十	廿八	廿六	廿四	廿三	廿二	廿一	十九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士 演																																																																																																													
金鍾弼	崔元淳																																																																																																												
朴銜乘	李益相																																																																																																												
蔡奎恒	姜濟東																																																																																																												
	李廷允																																																																																																												
	李東濟																																																																																																												
	高永燦																																																																																																												
	申永燦																																																																																																												
	閔泰燦																																																																																																												
	姜昌基																																																																																																												
	崔昌益																																																																																																												
	林澤龍																																																																																																												

제2회 유학생 학우회 순회강연단과 일정 『동아일보』(1921.07.19)



인권옹호를 역설하고 있는 최원순 |『동아일보』(1922.09.07)



# 學友會三次巡講

그런데는 호남정원다방에  
 3월 22일 10시부터 12시까지  
 聯合會(元成)의 3차  
 巡講(學友會)의 3차  
 巡講(學友會)의 3차

재작년의 때로 동종의 의의가  
 7월 6일 木浦, 同 7日 羅州  
 同 8日 光州, 同 9日 井邑  
 同 10日 禮里, 同 11日 全州  
 同 12日 江景, 同 13日 烏致  
 院  
 同 14日 公州, 同 15日 濟州  
 同 17日 京城, 同 19日 鐵原  
 同 21日 元山, 同 22日 水鏡  
 同 23日 洪原, 同 25日 端川  
 同 26日 咸津

제3회 학우회순회강연단 『동아일보』(1922.06.18)

# 全南青年聯合會(元成)

二日總會及決議事項

三月二日午前十時半부터 光州興  
 南館內에 豫定대로 準備中이던 全  
 南青年會聯合會創立總會開會  
 式(元成)으로 出席한 各地團體數  
 十九團體 人 員數가 三十六人이  
 었으며 傍聽者에 正式으로 出席하  
 지아나 各地青年會關係者 六七  
 十名이 었는데 臨時議長 崔元澤氏  
 司會下에 議決한 規則의 事業은 如  
 하하다더라

決議

吾人의 新環境은 은즉 團結에 依하  
 야 實現할 能得하지나 茲에 全南各  
 青年團體는 互相 聯絡하고 每年一  
 次會合하야 各其手 商綱領의 範圍  
 內에서 每年 行事務를 議決하야 其實  
 效를 收得하기 爲하야 別記規約를  
 決議함

第一 知議發發及民衆解放에 盡力  
 할事

第二 無理한 外界의 干涉과 蹂躪이  
 有할時에 一致하야 對抗할事

第三 年間 實行 事業의 時日及  
 場所는 其前年會에서 此를 議決  
 할事

第四 年會에서 當選한 地方의 青年  
 會에서는 其一年間 全南青年會  
 聯合會事務를 處理할事

第五 本聯合會 經費는 加入團體가  
 此를 平均 分擔할事

第六 加入 團體는 三十名以上의  
 全南에 在한 朝鮮人 青年團體로  
 할事

第七 加入한 團體中 社會에 對하야  
 特殊한 貢獻이 나 成한 功績이 有  
 할時에 年會의 決議로 表彰或  
 은 問費及 獎金을 決定할事

今年度에 實行 行務事項은

一、巡回 講演

一、모두하미나 中等者 總減

一、小作 運動의 援助

一、農村 無產者의 講習

一、學校 會議會에 關한 事

等인하야 同日午後十二時頃에 會議  
 完了하고 閉會하야 스며 其翌日  
 午前에 紀念寫眞을 撮影하고 各々  
 解散하야 타더라(光州)

전남청년연합회 임시의장 및 사회자 『동아일보』(1924.03.06)

京報警高毅第五八九號、四

大正十三年五月十八日

京城鍾路警察署長

京城地方法院理事公函

東亞日報社員交代ノ件

五月十七日附本報、千像

看題情況ニ就テハ屢次及報告置候通  
リ、昨十七日社長李昇薰以下幹部  
ニ於テ任命ニ付、左記ノ通ニテ、承所人  
名履變更ハ株主總會ノ決定ヲ要スルヲ

以テ依笑薛表桂ノ任トシ、追テ變更ノ  
案ナリ

尚新社員ノ内ニハ重任其人ニ非サル者アリ  
近ク改革アルハ見込ナリ

右及報告候也

社長 李昇薰 (元米鏡肉)

庶務局長 李秉宣 (元米鏡肉)

課長 李原 (元庶務局長)

廣告部長

檢 査  
地 13

黃致英 (政前通リ)

販賣部長

局長 康務 (政前通リ)

庶務部長

金鏡中 (政前通リ)

工場長

崔益進 (休業中止、勤續セル者)

經理部長

金箕範 (新任)

編輯局長

李相悵 (新任)

警 察 官 署

命 憲 (新任)

論說部長

元金良珠 (新任)

政務部長

黃 晉 (新任)

崔元淳 部員 金德 (新任)

元韓基岳 (新任)

經濟部長

部員 李鳳珠 (曾任) 李丙錫 (新任)

整 理 部

張日泰 趙東祐 洪性憲  
張慶範 (以上新任)

地 方 部

吳炳根 具笑欽 (新任)

		社會部	
	金東鍾	(前任)	薛羲
	林元根	(新任)	李吉
	李濬錫	鮮	于全
二	退社(元仁長)		
	宋鍾齒	金性珠	慎九範
	李桐煥	洪增柱	李先珠
	金東必	金長珠	柳岩璉
	崔采穆	徐秉孝	田泰後
	盧子疎	李煥未	金炯元
	金東赫	警察官署	
	次		
	上		
一報告先警務局長 換事正 警察部長			

◀ ▲ 『동아일보』 인사에 관한 종로경찰서 기록 | 국사편찬위원회(1924.05.18)

# 乙丑年中世界大勢

社會資本兩勢力之暗闘

崔元淳

一九二五年의 世界大勢을 考察할 때 社會資本兩勢力의 暗闘을 中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社會資本兩勢力이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暗闘을 가리키는 말이다. 一九二五年의 世界大勢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暗闘을 中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一九二五年의 世界大勢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暗闘을 中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一九二五年의 世界大勢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暗闘을 中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資本主義國 家의 安定期

一九二五年은 資本主義國의 安定期에 達하였다. 一九二五年은 資本主義國의 安定期에 達하였다. 一九二五年은 資本主義國의 安定期에 達하였다. 一九二五年은 資本主義國의 安定期에 達하였다. 一九二五年은 資本主義國의 安定期에 達하였다. 一九二五年은 資本主義國의 安定期에 達하였다. 一九二五年은 資本主義國의 安定期에 達하였다. 一九二五年은 資本主義國의 安定期에 達하였다. 一九二五年은 資本主義國의 安定期에 達하였다. 一九二五年은 資本主義國의 安定期에 達하였다.

## 그 前途에

一九二五年의 前途는 如何한가. 一九二五年의 前途는 如何한가. 一九二五年의 前途는 如何한가. 一九二五年의 前途는 如何한가. 一九二五年의 前途는 如何한가. 一九二五年의 前途는 如何한가. 一九二五年의 前途는 如何한가. 一九二五年의 前途는 如何한가. 一九二五年의 前途는 如何한가. 一九二五年의 前途는 如何한가.

## 伊太리에

伊太리에의 現狀은 如何한가. 伊太리에의 現狀은 如何한가. 伊太리에의 現狀은 如何한가. 伊太리에의 現狀은 如何한가. 伊太리에의 現狀은 如何한가. 伊太리에의 現狀은 如何한가. 伊太리에의 現狀은 如何한가. 伊太리에의 現狀은 如何한가. 伊太리에의 現狀은 如何한가. 伊太리에의 現狀은 如何한가.



트로스키氏

## 社會主義國 家의 對峙

社會主義國의 對峙는 如何한가. 社會主義國의 對峙는 如何한가. 社會主義國의 對峙는 如何한가. 社會主義國의 對峙는 如何한가. 社會主義國의 對峙는 如何한가. 社會主義國의 對峙는 如何한가. 社會主義國의 對峙는 如何한가. 社會主義國의 對峙는 如何한가. 社會主義國의 對峙는 如何한가. 社會主義國의 對峙는 如何한가.

을축년중 세계대세 | 『동아일보』(1926.01.01)

# 紙本春新한 溢橫運氣新

## 一日부터掲載된重要目次

一九二七年의 世界大勢을 考察할 때 社會資本兩勢力의 暗闘을 中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社會資本兩勢力이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暗闘을 가리키는 말이다. 一九二七年의 世界大勢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暗闘을 中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一九二七年의 世界大勢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暗闘을 中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一九二七年의 世界大勢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暗闘을 中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世界政局總觀

歐洲의 一般形勢  
勞農黨國內外交策  
中國國民運動의 概觀  
日本政局의 趨勢  
米國의 政界는 如何히 變遷할가?  
朝鮮社會運動概觀

## 新春의 文藝陣

金八峰 金浪雲 崔曙海 廉想涉 崔獨鵬  
朴懷月 李箕永 崔承一 金永八 趙旭石  
金雲汀 方春海

## 文藝評論

一九二七年의 創作界  
丁卯詩壇의 總觀  
古詩歌의 小考  
文學의 民衆의 浸潤  
其他 懸賞入選 文藝

## 家庭婦人

朝鮮女性運動의 史的 考察  
朝鮮女子의 抱負와 理想  
其他 懸賞入選 文藝

# 社報日亞東

신년 특집 광고 | 『동아일보』(1927.12.30)

# 本報筆禍事件

## 宋、金兩氏出獄

철일인오후일근급시데일차출옥

虛無黨事件 尹又烈氏도

은사령의공포된 재작철일시대  
문형무소문맞게는 그안에자  
의가죽친족혹은 친구들을둔사  
람들이그러케도 만히모여 『행  
여나』하는 비참하고도 긴장된  
태도를가지고 일각이삼추가치  
음문열니기를 고대하고서첫스  
나해가지고날이어늘도록 소  
이감감하더니 오후일근급시 경  
에야곳이다치엇든 식컴한신문  
이 『팔경』 열니며 작년삼월사십  
팔개국동민조합이 참가한로서  
아의국제동민조합으로부터 『조  
선동민에게 던하느라월』이라  
는괴사를본보에 게재하고그책  
임자로보아법(保安法) 위반으  
로징역륙개월의 확정판결을바

다작년삼월월 팔일에 입감하  
였은본사주필(主筆)송진오(宋  
鑣禹)씨를비롯하여 권괴사건  
의편중점 발행인의책임자로금  
고(禁錮)사개월 된본사 기자  
최원순(崔元淳)씨 필화사건의  
역시편중점발행인의 책임자로  
드금고사개월, 모다금고팔개  
월의판결을바다 가지고지난월  
월십팔일에 입감하였던 김달  
중(金鐵中)씨와 작년 정초신  
년벽두에 허무당선언서(虛無  
黨宣言書)를배포하고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이년의판결을받  
고복역하던 윤우열(尹又烈)씨  
의 감형만으로녀자잡범두명(女  
잡범)과 남자한명이 출옥되었더라

보안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옥한 기사 『동아일보』(1927.02.09)

### 消 息

▲崔元淳氏(本社編輯局長代理)  
身病으로靜養키爲하야今番辭  
職하고昨夜十時廿分車로故鄉  
인光州로出發

동아일보 퇴직 기사 『동아일보』(1928.05.07)

昭和二年一月一日 京師警察署長 道

新幹會組織計劃ニ關スル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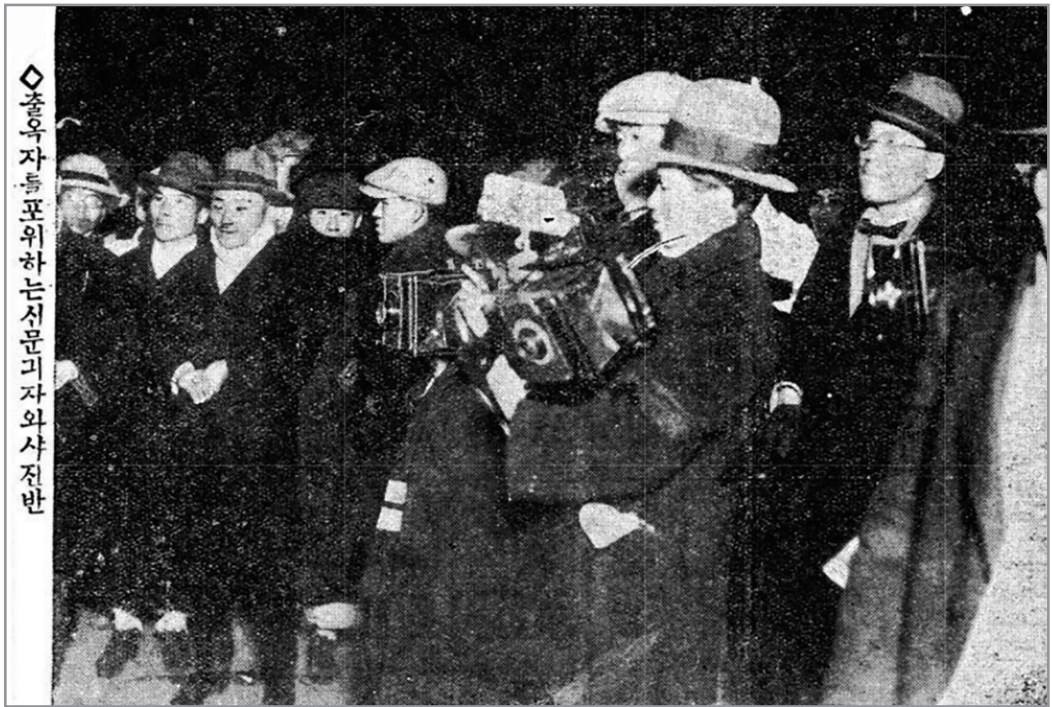
在京城民族主義者中朝鮮日報系ヲ中心トスル申錫兩安  
在鴻金俊淵等一派ハ本年ニ入り突如新幹會組織ヲ企圖  
シ一月十二日頃其ノ綱領トシテ  
一朝鮮民族ノ政治的及經濟的究竟解決ヲ圖ル  
ニ民族的回結ヲ鞏固ニス  
三妥協主義ヲ否認ス  
ノ三項ヲ作製シ且ツ發起人トシテ左記三十餘名ノ氏名  
ヲ列記シ府内各謫文新聞社ニ投稿シテ計劃ヲ公表セム  
トシタルモ各社ニ在リテハ本綱領カ當局ノ忌諱ニ觸レ  
差押廢分ニ附セラル、カ如キコトナキマテ顧慮シ之レ  
カ掲載ヲ躊躇セル模様アルヨリ發起主唱者ニ於テモ當  
局ノ忌諱ニ觸レムコトヲ慮リ更ニ綱領ヲ  
一吾等ハ政治的經濟的究竟解決ヲ圖ル  
ニ吾等ハ回結ヲ鞏固ニス  
三吾等ハ機會主義ヲ否認ス  
ト變更シ準備ヲ進メツ、アリレカ其ノ後更ニ  
一吾等ハ政治的經濟的黨派ヲ促進ス  
ニ吾等ハ回結ヲ鞏固ニス  
三吾等ハ機會主義ヲ一切否認ス  
ト訂正シ一月二十日附朝鮮日報紙上ニ別紙譯文ノ如ク  
發表シ二月十五日創立大會ヲ開催スヘク同下準備中ニ  
在リ経過注意中

左記

- 發起人氏名 (口印ヲ附シタルハ朝鮮日報ニ記載シタルモノ)
- 申錫兩(朝鮮) ○ 安在鴻(朝鮮) ○ 李廷愛(朝鮮)
- 崔益益( ) ○ 李煥鐸(朝鮮) ○ 金俊淵(朝鮮)
- 李養鏡(朝鮮) ○ 文一平(平北) ○ 韓龍雲(朝鮮)
- 張吉相(朝鮮) ○ 洪命憲(朝鮮) ○ 洪佐憲(朝鮮)
- 李昇敏(朝鮮) ○ 曹晚植(平壤) ○ 申采浩(北京)
- 韓偉健(東更) ○ 白寬洙(朝鮮) ○ 張志暎(朝鮮)
- 權東鎔(天眞教) ○ 全澤(黃法) ○ 鄭在龍(朝鮮)
- 李錫童(理教) ○ 河載華(發教) ○ 李甲成(朝鮮)
- 朴東完(曹教) ○ 金明斗(發教) ○ 俞億兼(朝鮮)
- 李昇董(發教) ○ 李高在(理教) ○ 李淨(曹教)
- 鄭恭爽(高州) ○ 朴東弘(朴發教) ○ 崔元淳(東更)
- 韓基岳(曹教) ○ 李鍾麟(天道教) ○ 李鍾穆

以上三十六名

本書發送先  
警務局長 各道知事 管下一級  
京城地方方法院檢察正  
警視總監 大坂山口各府縣知事 東京市役員



◇ 출옥자들을 포위하는 신문기자와 사진반

출옥한 날 기자들 풍경 | 『동아일보』(1927.02.09)



전조선 주요도시 인사 16인 | 『동아일보』(1930.04.04)

# 五年以上小作人の 税金全部を免除

## 舊債支拂停止を施行

光州 崔元淳氏

조선의 국민은 일본의 국민과  
그 실행에 있어서도 정도가 관  
이합니다. 동일한 양민이라고는  
하지마는 그 생활의 내용과 그 사  
회적 환경이 다름으로 조선의 중  
민은 더욱히 시급구제를 요합니다  
다 이러한 시급구제에 관하여 조선은  
다사리는 당국자에게 원만한 청  
의가 있다하면 다대한 생명이 구  
제될 것입니다. 이하 몇 가지만 실  
시한다면 위선 무진구의 구제는  
될터이니. 5년 이상 10년 이내의  
한도로 융통책을 실시하여 다  
그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여 실  
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인과 소작점소작농에 한하  
야 구제지불정지를 시행할사

사건은 최원준씨

二, 각도시 부근에 교통이외의  
식산적 토목공사를 일으킬사  
(5년내지 10년간의 계속사업  
으로하고 현재도로의 시공로  
을 진행도리는 것은 조선의 현  
실 또는 광비에 갖가우나. 될수  
없고) 또는 그의외의 식산방  
면을 할 것, 동시의 지방사업자  
의 중간리득을 피할지( )

安城 朴弼秉氏

四, 이상 1과 3의 실행에 필요  
한 재원은 (1) 조선총독부  
로부터 면사무소에 이르기까  
지 전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인  
건비와 사무비에 한하여 二할  
중민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  
중민구제한다는 토목공사를  
도시중민으로 하는 을치안습다  
다 농민들이 도시로 불려갔다  
가 그공사가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더욱 곤란하게 됩니다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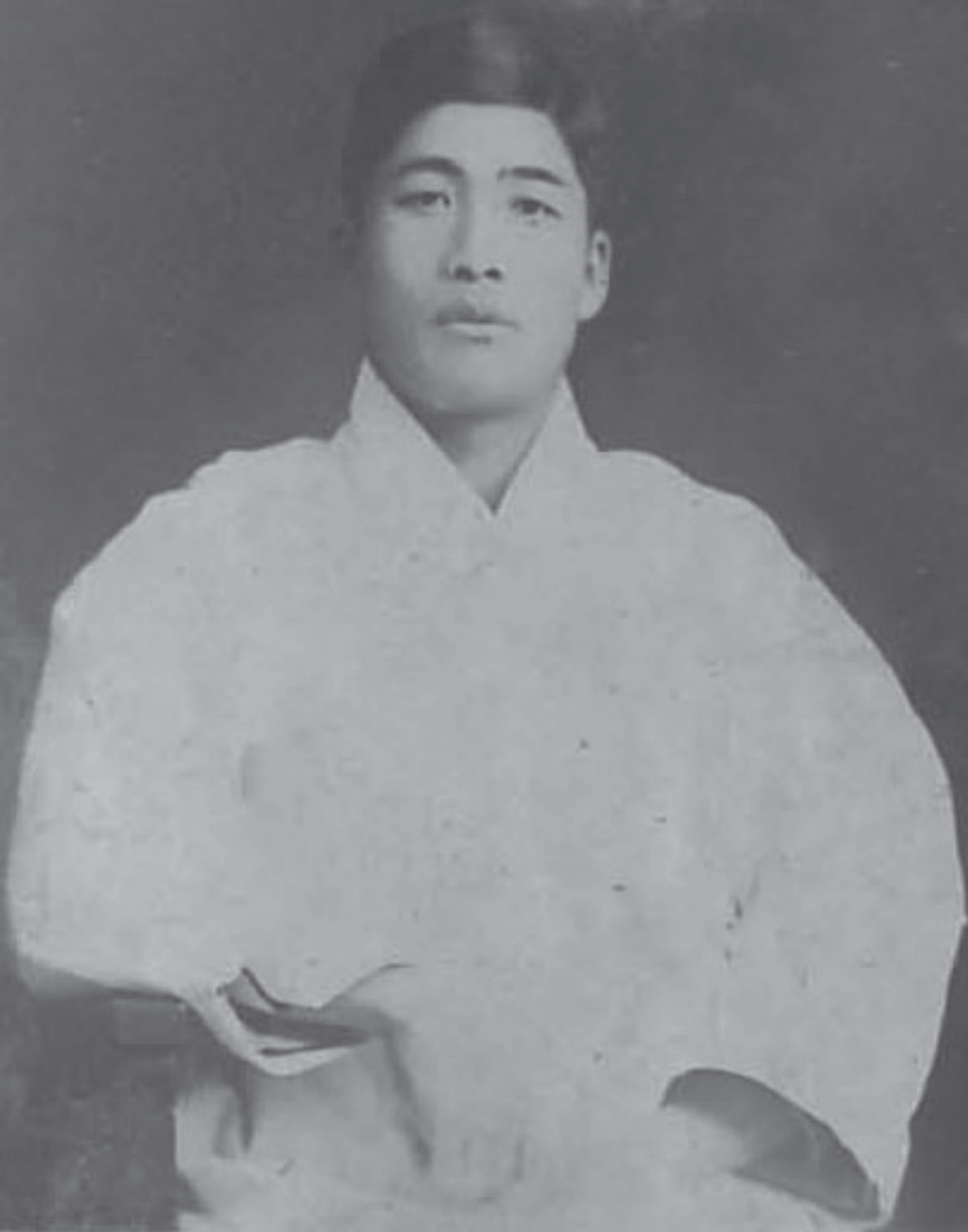
국민구제대책 지상좌담회 『동아일보』(1932.07.03)



---

1부

생존의 의의



# 生存<sub>생존</sub>의 意義<sub>의의</sub>와 要求<sub>요구</sub>에 對<sub>대</sub>하여

- 『현대』 2호 | 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1920.03.02) -

나는 먼저 自白(자백)할 必要(필요)가 있다. 나는 붓을 드려 이러한 글을 쓴 적도 없거니와 쓰라고도 아즉은 하지 아니한다. 果然(과연) 내가 中心(중심)에 이러나는 感情(감정)과 事理(사리)를 秩序(질서)있게 쓸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自己(자기) 스스로도 判斷(판단)치 못하면서 刺戟(자극)이 너무나 크고 銳敏(에민)하며 痛切(통절)하였슴으로 ○君(군)의게 數言(수언)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投稿(투고)를 命(명)한다. 이에 붓을 들어서 쓰기를 다한 것이다.

存在(존재)가 有(유)하면 理由(이유)가 有(유)하고 理由(이유)가 有(유)하면 存在(존재) 亦是(역시) 不可不無(불가불무)라, 이것이 古今(고금)에 通(통)하여 變(변)치 아니하는 眞理(진리)라 한다. 그럼으로 一寸(일촌)의 夏蟲(하충)의게도 生命(생명)이 있고 理由(이유)가 있는 것이다. 萬物(만물)의 靈(영)이오 宇宙(우주)의 主人(주인)되는 사람의게는 보담 더 큰 理由(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도 空氣(공기)를 呼吸(호흡)하며 飲食(음식)을 먹고 衣服(의복)을 着(착)하

며 起動(기동)을 하는 活動的(활동적) 몸을 가졌다. 外界(외계)의 事物(사물)에 接(접)할 時(시)에는 精神(정신)은 作用(작용)을 起(기)하고 肉體(육체)는 動作(동작)을 得(득)한다. 相當(상당)한 歷史(역사)의 背景(배경)이 있고 進步(진보)한 文化(문화)를 享有(정유)한 二十世紀(20세기) 人類生活(인류생활)을 一部分(일부분)에서 한다. (物質的(물질적) 最高(최고) 文明(문명)을 아득 가지지는 못하였을 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現實上(현실상) 存在(존재)하는 表現(표현)이요 實在(실재)다. 우리의 存在(존재)가 的確(적확)하다 하면 따라서 그 存在(존재)의 理由(이유)도 的確(적확)할 것이다. 萬若(만약) 우리의 存在(존재)가 存在(존재) 그것만 爲(위)하는 것이라 하면 우리는 그 理由(이유)없는 存在(존재)임을 覺得(각득)하는 同時(동시)에 그 存在(존재)의 運命(운명)이 不遠(불원)함을 聯想(연상)할 것이다. 卽(즉) 그것 存在(존재)가 이 滅亡(멸망) 又(우)는 적어도 退化過程(퇴화과정)에 있음을 看破(간파)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設使(설사) 呼吸(호흡)과 衣食住(의식주)로 存在(존재)만 繼續(계속)하고 있는 우리라 하면 우리의 存在(존재)는 理由(이유)없는 存在(존재)라. 그럼으로 滅亡(멸망), 적어도 滅亡(멸망) 中(중)에 있는 우리가 되고 말 것이다. 然(연)이나 우리는 正確(정확)한 理由(이유)가 있으므로 이 몸이 現時(현시)에 있는 것이다. 天(천)이 우리의게 存在(존재)를 許諾(허락)하면서 엇지 理由(이유)를 授與(수여)치 아니하였스리오. 반다시 天(천)이 준 使命(사명)이 있을 것이다. 使命(사명)을 마든 이 存在(존재) - 卽(즉) 天命(천명)을 마든 우리 몸은 그 天命(천명)을 實現(실현)하기 爲(위)하여야 使役(사역)하며 天命(천명)을 達(달)하기 爲(위)하여야 活動(활동)할 것이다. 그 天命(천명)은 어느 사람의게던지 있을 것이다. - 勿論(물론) 出現(출현)되는 形式(형식)과 方向(방향)은 同一(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天命(천명) 實現(실현)에 對(대)하여야 最善(최선)의 勞力(노력)을 하는 사람이 그야말노 사람 中(중) 사람일 것이다. 사람의 價値(가치)와 上下(상하)를 말한다 하면 그 勞力(노력)의 正比例(정비례)로 말할

것이다. 이 意味(의미)에서 사람은 다 平等(평등)이요 自由(자유)스러워야 할 것이라고 나는 斷言(단언)한다. 東西(동서)와 古今(고금)에 通(통)하여 聖賢(성현)과 智者勇者(지자용자)를 보라,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엇더하얏으며 네산헬은 무엇이라고 하얏는야(네氏(씨))는 米國(미국) 愛者(애자)다. 그는 國事(국사) 探偵(탐정)으로 死刑(사형)을 받고 臨終(임종)에 「나는 國家(국가)에 맞칠 生命(생명)이오 오작 하나님을 恨歎(한탄)한다」고 하얏다. 宗教(종교)와 藝術(예술)에 科學(과학)과 哲學(철학)에 又(우)는 國家(국가)와 社會(사회)에 對(대)하여 貢獻(공헌)한 그네들의 例(예)와 百折不撓(백절불요)하는 精神(정신)과 하기를 마지아니하던 熱(열)이며 情(정)은 이미 歷史(역사)에 明白(명백)함으로 나는 一一(일일)히 實例(실례)를 들어 말할 必要(필요)가 업다. 그네들의 피와 手足(수족)으로 因(인)하여 社會(사회)는 向上(향상)하얏고 人類生活(인류생활)은 發展(발전)되얏다. 그네들의게 보이는 것은 오작 天命(천명)이요 理想(이상)뿐이다. 이를 實現(실현)하기 爲(위)하여 進行(진행)함에는 그네의 全部(전부) 所有(소유)를 아니, 生命(생명)까지라도 바리기를 躊躇(주저)치 아니하얏다. 仁者(인자)는 不以盛衰(불이성쇠)로 改節(개절)하고 義者(의자)는 不以存亡(불이존망)으로 易心(역심)이라는 말은 이를 가르침이다.

우리 生存(생존) 意義(의의)라 하면 그 사람의 天命(천명)에 對(대)한 그 最善(최선) 勞力(노력)이 곳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故(고)로 사람은 長壽(장수)하여 七八十(칠팔십) 살기를 바라기 前(전)에 如何(여하)히 하여야 有理(유리)한 生存(생존) - 價値(가치)있는 生活(생활) - 卽(즉) 天命(천명)에 對(대)한 最善(최선)의 勞力(노력)을 할가함을 바랄 것이오 生覺(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一年(1년)을 살다가 죽드래도 價値(가치)있는 有爲(유위)한 生活(생활)을 하얏다 하면 無意味(무의미)하게 七八十(칠팔십)이나 百餘歲(백여세)를 사는 것보다는 그야말노 사람다운 사람이요 生活(생활)다운 生活(생활)을 하얏다고 하겠다. 故(고)로 사람의 長壽(장수)는 一年(1년) 以內(이내)에도

七八十(칠팔십) 以上(이상)의 壽(수)를 할 수 있겠다고 하노라. 이 意味(의미)에서 朝聞道(조문도)면 夕死(석사)라도 可(가)라는 말을 萬古(만고)의 名言(명언)이라고 하고 십다.

사람의 「生(생)」이라 함은 呼吸(호흡)이나 血液循環(혈액순환)이 繼續(계속)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理性(이성)과 感情(감정) 及(급) 手足(수족)의 活動(활동)이 곧 그 「生(생)」이라 하노라. 사람의 長壽(장수)는 年歲(연세)를 만히 먹는 그것이 長壽(장수)가 아니라, 理性(이성)과 感情(감정) 又(우)는 四肢(사지)의 活動(활동)을 만히 한 사람이 長壽(장수)를 한 사람이라 하노라. 諸君(제군)아 나는 이러한 見地(견지) 下(하)에서 우리 社會(사회)에는 다른 社會(사회)에 比(비)하여 長壽(장수)하는 사람이 었다고 한다. 잇서도 少數(소수)일 것이다. 나는 이러한 말을 붓으로 記錄(기록)하게 됨을 슬퍼하면서도 쓴다. 觀念界(관념계)에 띠우고 십지도 안타. 諸君(제군)도 나와 同感(동감)이리라, 만은 觀念界(관념계)는 姑捨(고사)하고 言語(언어)에 文字(문자)에 大聲(대성) 特書(특서)로 부르지지며 쓸 수 밧게 업는 - 쓰지 아니할 수 업는 우리 社會(사회)를 도라보고 一擲(일국)의 男的(남적) 熱淚(열루)를 禁(금)치 못한다. 우리의 目下(목하)에는 - 우리의 바든 밧상에는 무슨 事業(사업)과 問題(문제)가 잇느냐 - 무엇이 잇느냐 다시 보면 世界(세계)는 엇더냐 나는 生覺(생각)이 이에 이르매 더 쓸 勇氣(용기)와 힘이 업다.

다못 우리의게 피가 잇고 生命(생명)이 잇거던 - 理性(이성)이 잇고 熱情(열정)이 잇거던 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의 일을 - 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할 일을.

나는 無意識的(무의식적)으로 붓을 썬오는 中(중)에 遇然(우연)한 쓸대업는 幻想(환상)에 끌여서 - 끌여도 힘있게 매우 뜨겁고 굿세게 끌여서 重言復言(중언부언) 쓴 것 잣다, 고만두고 다시 本文(본문)을 繼續(계속)하것다.

우리의게는 活動力(활동력)이 잇슴으로 不滿(불만) 或(혹)은 不足(부족)에

接應(접응)하면 곧 要求(요구)를 聯想(연상)한다. 그 活動力(활동력)과 要求(요구)로 因(인)하여 不滿(불만) 不足(부족)을 免(면)할 수 있음으로 써라.

사람의 要求(요구)는 生理的(생리적) 要求(요구)와 社會的(사회적) 要求(요구) 두 가지로 나노아 볼 수 있겠다. 前者(전자) (生理的(생리적) 要求(요구)는 生活(생활)에 온갖 直接(직접) 關係(관계)되는 衣食住(의식주) 等(등)의 要求(요구)라 - 卽(즉) 우리 生活(생활)에 對(대)한 第一次的(제일차적) 要求(요구)가 그것이다. 그럼으로 이는 傳統的(전통적)이오 有限的(유한적)의 性質(성질)이 있다. 後者(후자)는 個人(개인)이나 社會(사회)에 對(대)한 地位(지위) 及(급) 待遇(대우) 等(등)의 要求(요구)가 그것이라. 이는 生理的(생리적) 要求(요구)에 比(비)하면 便宜的(편의적)이오 無限的(무한적)이다. 多多益善(다다익선)의 性質(성질)이 있다. 人類社會(인류사회)는 이 要求(요구)가 있고 그에 對(대)한 活動(활동)이 있음으로 變化(변화)가 있다. 要求(요구)가 있음으로 勞力(노력)이 있고 勞力(노력)이 있음으로 發展(발전)이 있다. 이리하여 二十世紀(20세기) 現代文化(현대문화)가 있고 이로 因(인)하여 未來(미래)에는 보다 더 큰 發展(발전)과 보담 큰 文化(문화)를 바랄 수도 있을 것이다. 要求(요구)가 업스면 노력이 업슬 것이오 勞力(노력)이 업는 곳에 發展(발전)이 업슬 것도 다시 復言(부언)할 必要(필요)가 업다. 要求(요구)로 因(인)하여 人類(인류)의 生活(생활)은 向上(향상)하고 그 文化(문화)는 進步(진보)된다. 그럼으로 生活(생활)의 向上(향상) 文化(문화)의 進步(진보)는 要求(요구)의 變態(변태)라 하노라. 事業(사업)이라 하면 要求(요구) 進行(진행)의 別名(별명)이오 偉人(위인)이라 하면 偉大(위대)한 要求(요구)를 가진 又(우)는 그를 實現(실현)한 사람의 代名詞(대명사)일 것이다.

엇던 사람으게 었던 時代(시대)에 要求(요구)업는 사람 要求(요구)업는 때가 있스리요만은 오늘날 처럼 適切(적절)하고 重大(중대)한 時代(시대)가 업섯다. 現代(현대) 사람처럼 要求(요구)를 深刻(심각)하게 痛切(통절)하게 또는 普遍的(보편적)으로 意識(의식)한 적이 업섯다. 이는 要求(요구)하지 아니할

수 업는 그네들의 아니, 우리의 處地(처지)와 境遇(경우)가 그만큼 切迫(절박)하였음을 認識(인식)함이고 그 要求(요구)에 對(대)하여 그만큼 緊고 크게 覺醒(각성)한 所以(소이)다.

또한 이번 大戰爭(대전쟁) - 卽(즉) 弱者(약자) - 他民族(타민족) - 他國家(타국가)에 對(대)하여 抑壓(억압)하며 干涉(간섭)하고 서로 謀利(모리) 競爭(경쟁)하던 所謂(소위) 强者(강자)의 天罰(천벌)에 因(인)하여 過失(과실)과 罪惡(죄악)을 覺得(각득)하고 그들 世上(세상)에 發見(발견)하여 露出(노출)시킨 眞理(진리)요 思想(사상)인 까닭이다.

五個年間(5개년간)의 世界(세계) 戰亂(전란)은 그네가 誇張(과장)하던 文明(문명)과 制度(제도)가 不完全(불완전) - 不自然(부자연) - 不合理(불합리)한 것임을 明白(명백)히 證明(증명)함에 不過(불과)한 것이었었다. 그러므로 世界(세계)는 改造(개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 改造(개조) 中(중)에 있다. 燎原(요원)의 火(화)와 決河(결하)의 勢(세)로 全世界(전세계)를 風靡(풍미)하는 것이 改造(개조)의 意慾(의욕)이요 改造(개조)의 運動(운동)이다. 改造(개조)의 事業(사업)이 어려운 것은 事實(사실)이다. 아모리 어렵드래도 畢竟(필경)은 成功(성공)되 고야 말 것도 事實(사실)이다. 改造(개조)가 어렵다고 하드래도 그 改造(개조)가 要求(요구)하는 바 破壞(파괴) 그것은 比較的(비교적) 容易(용이)한 것이다. 生理的(생리적)으로나 社會的(사회적)으로 온갖 것이 缺乏(결핍)한 우리가 었지 要求(요구)가 업스랴. 우리의 要求(요구)가 正當(정당)한 以上(이상)에 는 現狀(현상)을 打破(타파)하고 새따에 가라고 하는 것도 正當(정당)한 일 일 것이다. 不自然(부자연) - 不合理(불합리)한 制度(제도)와 抑壓(억압)下(하)에 呻吟(신음)하던 弱者(약자)가 弱者(약자)라고 하여왔슴으로 自己(자기)의 實力(실력)을 認識(인식)하며 地位(지위)와 境遇(경우)를 看破(간파)하고 社會(사회)에 對(대)하여 아니 世界(세계)에 對(대)하여 覺醒(각성)한 勇氣(용기)를 뿌리면서 猛烈(맹렬)히 要求(요구)하며 前進(전진)하는 것이 今日(금일) 世界(세계)의 方方谷谷

(방방곡곡)에서 出現(출현)되는 活動(활동)이며 問題(문제)요 勢力(세력)이다. 임  
 이 覺醒(각성)한 그네들이 아니, 우리가 的實(적실)한 分明(분명)한 그 本能  
 的(본능적) 要求(요구)를 잊지 그대로 暗黑(암흑) 中(중)에 무더 두리요 - 아  
 니, 晴天白日(청천백일) 中(중)에 듣지못코 目下(목하)에서 썩어감을 看過(간과)  
 함에는 그네들은 너무나 覺醒(각성)하였고 너무나 自信(자신)이 強大(강대)  
 하다. 天(천)이 우리의게 生存(생존)과 그 理由(이유)를 주신 以上(이상)에는  
 그 生存(생존)을 維持(유지)함에 不可缺(불가결)의 要素(요소)에 對(대)한 要求  
 權(요구권)도 주셨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 要求(요구)는 天命(천명)에  
 依(의)한 行爲(행위)다. 그럼으로 이는 天(천)의 要求(요구)라 하노라. 그네 -  
 우리의 要求(요구)는 生存(생존)의 唯一(유일)한 條件(조건)이다. 이것은 大有  
 意識的(대유의식적) 갖지만은 大無意識的(대무의식적)이다. 우리의 要求(요구)는  
 아모리 하야도 忍耐(인내)키 어려운 內部的(내부적) 衝動(충동)의 表現(표현)이  
 다. 發表(발표)되지 아니하고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春風(춘풍)이 부러  
 오고 日光(일광)이 빛초이면 樹木(수목)과 花草(화초)는 新芽(신아)를 아니 내  
 고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그를 막으랴고 - 或(혹)은 妨害(방해)하랴고  
 한다면 그야말노 徒勞無功(도로무공)일 것이다. 그의게 生命(생명)이 있  
 는 날까지는 不可能(불가능)의 일이다.

正當(정당)한 要求(요구)를 正當(정당)한 手段(수단) 方法(방법)으로 하기를 마  
 지 아니한다함은 第一(제1)은 天(천)의게 對(대)하야 第二(제2)는 自己(자기)의  
 게 對(대)하야 又(우)는 眞理(진리)에 對(대)하야 忠(충)이라 한다. 世上(세상)은  
 어느 때까지던지 非正義(비정의)와 非人道(비인도)로만 사라갈 것이 아니라  
 는 以上(이상)에는 우리의 要求(요구)가 實現(실현)될 것도 分明(분명)한 일이  
 다. 天(천)과 自己(자기)의게 對(대)한 忠(충)이 忠(충)으로만 - 卽(즉) 潛勢力(잠  
 세력)으로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生活上(생활상) 또는 文化上(문화상)에 破  
 壞主(파괴주)요 創造主(창조주)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曉鍾(효종)은 이미 울었고 光明(광명)은 東天(동천)에 빛초였다. 우리의 要求(요구)는 中天(중천)에 걸닌 明月(명월)을 따서 손에 가지고 놀지를 못하여 안저우는 幼兒(유아)의 要求(요구)가 아니다. 過去(과거)의 人類(인류) 歷史(역사)가 그 可能性(가능성)을 證明(증명)하고 現今(현금) 世界(세계)는 그 正當(정당)함과 的實(적실)함을 復演(부연)할 따름이다. 오작 그 要求(요구)에 對(대)한 우리의 勞力(노력)이 그 收獲(수확)에 正比例(정비례)할 뿐입니다.

- 一九二〇年(1920년) 一月(1월) 三十日(30일) -

# 改造<sub>개조</sub>의 根據<sub>근거</sub>

- 『현대』 5호 |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1920.05.10) -

時間(시간)은 온갖 物件(물건)의 破壞主(파괴주)요 建設主(건설주)다. 時間(시간)의 經過(경과)함을 隨(수)하여 모든 것은 變(변)하지 아니할 수 없다. 人生(인생)의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도 時間(시간)의 趨移(추이)에 因(인)하여 變(변)하여야왔고 又(우)는 變(변)하여야 갈 것이다. 質的(질적) 量的(양적)을 勿論(물론)하고 內容(내용)과 形式(형식)에 變化(변화)가 生(생)길 것이다. 故(고)로 人類(인류)의 生活狀態(생활상태)는 어느 時代(시대)를 勿論(물론)하고, 그 時代(시대)와 時代(시대)의 特色(특색)이 있을 것이다. 卽(즉) 破壞(파괴)와 建設(건설)은 꺾치지 아니할 것이다. 然(연)이나 사람의 變化(변화)는 時間(시간)의 支配(지배)만 맞는 것이 아니다. 또는 因果關係(인과관계)에만 因(인)하여함도 아니다. 卽(즉) 同一(동일)한 時間(시간) 內(내)에 더 만히 變(변)할수도 있고 보다 더 적게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因果關係(인과관계)를 超越(초월)할 수도 있다. 春夏秋冬(춘하추동)이 秩序(질서)있게 循環(순환)하고 自然(자연)은 그를 따라 表現(표현)의 變化(변화)가 生(생)긴 것이다. 人工(인공)

을 加(가)할 必要(필요)도 업거니와 人力(인력)으로 그를 變更(변경)할 수도 업다. 다못 固定的(고정적)인 順次(순차)에 因(인)하야 循環(순환)할 뿐이다. 故(고)로 이는 機械的(기계적) 變化(변화)다. 人類(인류)의 生活(생활)에도 機械的(기계적) 變化(변화)가 全無(전무)함은 아니다. 然(연)이나 多(다) 大部分(대부분)은 任意的(임의적) 變化(변화)일 것이다. 一(일) 社會(사회)나 一(일) 個人(개인)이나 그 認識(인식)과 努力(노력) 如何(어하)에 因(인)하야 生活(생활)의 一部(일부) 或(혹)은 全部(전부)를 變更(변경)할 수도 있고 破壞(파괴)할 수도 잇는 것이다. 自己(자기)의 努力(노력)과 奮鬪(분투)에 因(인)하야 現今(현금) 享有(향유)한 富貴(부귀)를 永遠(영원)히 存續(존속)식힐 수도 잇거니와 一時(일시)에 蕩盡(탕진)할 수도 있다. 春節(춘절)에 茂盛(무성)하던 草木(초목)은 冬節(동절)을 當(당)하면 반다시 그와 反對(반대)되는 現像(현상)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업는 自然界(자연계)의 變化(변화) - 卽(즉) 因果關係(인과관계)에 超越(초월)함을 보겠다. 自然界(자연계)의 變化(변화)는 一定(일정)한 法則(법칙)에 버서남이 업다. 故(고)로 善惡(선악)이 업다. 善(선)이라 보면 언제던지 善(선)이오 惡(악)이라 보면 惡(악)일 따름이다. 이는 自然(자연)의 變化(변화)는 任意的(임의적)이 아니오 - 自由的(자유적)이 아닌 까닭이다. 다시말하면 自然界(자연계)의 變化(변화)에는 自由(자유)가 업슴으로 善惡(선악)이 업다 하노라. 이와 反對(반대)로 人生(인생)의게는 任意的(임의적)인 自由(자유)가 있다. 人道(인도)에 合當(합당)한 行動(행동)을 할 수도 있고 不合當(불합당)한 非人道的(비인도적) 行爲(행위)를 할 수도 있다. 사람의게는 이 自由(자유)가 잇슴으로 責任(책임) 觀念(관념)이 있다. 다시말하면 善(선)하게 할 수도 있고 惡(악)하게 할 수도 잇슴으로 因(인)하야 善(선)에 對(대)하야는 賞(상)주고 惡(악)을 行(행)한 者(자)의게는 罰(벌)을 줄 수 잇슬 것이다. 萬一(만일) 自由(자유)가 업다하면 - 卽(즉) 一定(일정)한 法則(법칙)에 因(인)하야 - 神(신)이나 或(혹)은 天(천)의 意(의)에 依(의)하야 行動(행동)을 한다하면 그 사람의 惡行(악행)은

그 사람의게 責任(책임)이 잇슴이 아니라 天(천)이나 神(신)의게 잇슬 것이 다. 故(고)로 그 사람을(惡(악)을 行(행)한 사람 罰(벌)할 것이 아니라 天(천)이나 神(신)을 罰(벌)할 것이다. 이 意味(의미)에서 나는 人生(인생)에 最重(최중)한 것은 自由(자유)라 한다. 그 自由(자유)가 잇슴으로 사람은 自己(자기)의 行動(행동)에 對(대)하여 自己(자기) 스스로가 責任(책임)을 負(부)할 것이다. 自己(자기) 行動(행동)에 對(대)하여 責任(책임)을 負(부)함으로 善(선)을 期(기)하며 眞(진)을 求(구)한다. 또는 善(선)과 眞(진)에 對(대)하여 努力(노력)을 하는 것이다. 보다 더 善(선)과 眞(진)을 行(행)하라는 意欲(의욕)과 勇氣(용기)가 날 것이다.

사람의 生活(생활)은 刺戟(자극)과 衝動(충동)에 因(인)하여 影響(영향)을 受(수)함이 多大(대대)하다. 이 刺戟(자극)과 衝動(충동)이 업스면 活力(활력)과 生氣(생기)는 消磨(소마)되고 말 것이다. 今番(금번) 大戰(대전)은 人類(인류) 生活(생활)에 가장 큰 刺戟(자극)과 衝動(충동)이엇섰다. 比(비)가 업는 生命(생명)과 財產(재산)을 犧牲(희생)하고 買收(매수)한 相對物(상대물)은 強大(강대)한 刺戟(자극)과 衝動(충동)에 不過(불과)하였다. 살을 깎는 듯시 - 몸을 찌르는 듯시 痛切(통절)하고 猛烈(맹렬)한 經驗(경험)을 - 아니, 教訓(교훈)을 바든 現代(현대) 人類(인류)는 活力(활력)과 生氣(생기)에 對(대)하여 새 힘을 그만큼 더 어덧다 하노라. 部分(부분)만 알고 全體(전체)를 이지 못하던 自我(자아) 發展(발전)의 競爭(경쟁) 下(하)에는 正義(정의)도 업었고 人道(인도)도 업섰다. 오작 權謀(권모)와 權力(권력)이엇섰다. 多數(다수)한 人類(인류)는 그 權謀(권모)와 權力(권력)을 마음대로 하는 少數(소수) 野心者(야심자)나 虛榮心者(허영심자)의 私腹(사복)을 爲(위)하여 生命(생명) 財產(재산)의 犧牲(희생)을 免(면)치 못한 일이 만하였다. 時間(시간)은 온갖 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 하였다. 十九世紀(19세기) 中葉(중엽) 以下(이하)의 人類(인류)는 그 以上(이상)의 人類(인류)가 아니었다. 그네의 智識(지식)과 人格(인격)은 向上(향상)하였고 發展(발

진)하였다. 그 結果(결과)로 이러한 無意味(무의미)한 犧牲(희생)과 生活(생활)은 다시 復演(부연)할 수 업슬만큼 覺醒(각성)하였다. 이리하여 彼此(피차)를 勿論(물론)하고 過去(과거)의 文明(문명) 制度(제도)에 對(대)하여 不滿不足(불만부족)이 百出(백출)하였다. 다시 말하면 國家(국가)나 民族(민족)이나 個人(개인)의게 對(대)하여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을 公平(공평)하게 認定(인정)치 아니하던 過去(과거) 文明(문명)은 人類(인류)의 向上(향상)과 發展(발전)을 妨害(방해)할 뿐 아니라 人生(인생)의 悲慘(비참)과 罪惡(죄악)의 源泉(원천)임을 覺得(각득)하였다. 그를 辨證的(변증적)이며 實際的(실제적)이고 雄辯的(웅변적)으로 表示(표시)한 것이 今番(금번) 大戰(대전)이라 한다. 가장 큰 慘酷(참혹)과 悲極(비극)을 총과 칼로 人類界(인류계)에 活演(활연)한 大戰(대전) 後(후)의 所得(소득)이 무엇이나? 다못 그네들이 誇張(과장)하던 過去(과거) 文明(문명)(발서 지나가는 過程(과정)에 잇슴으로)이 不完全(불완전)하고 不合理(불합리)함을 깨다른 以外(이외)에는 아모 것도 업다. 이것이 前無(전무)한 又(우)는 後無(후무)할 大戰(대전)의 終局(종국) - 卽(즉) 大戰(대전)의 總決算(총결산) 答案(답안)이다. 다시 말하자면 過去(과거)의 制度(제도)와 文明(문명)의 缺乏(결핍)은 政治的(정치적)이나 經濟的(경제적)으로 不平均等(불평균등)함에 잇섯다. 어느 國民(국민)과 民族(민족)은 政治的(정치적) 經濟的(경제적) 壓迫(압박)을 不勝(불승)하여야 流離四方(유리사방)하였다. 無限大(무한대)의 死恨(사한)을 가삼에 품고 悲慘(비참)한 餓死(아사)와 凍死(동사)를 未免(미면)함도 잇섯다. 그 貴重(귀중)한 生命(생명)과 努力(노력)은 이 不合理(불합리)한 人爲的(인위적) 制度(제도) 下(하)에 無意味(무의미)한 犧牲(희생)이 되고 마랏다. 科學(과학)의 發展(발전)과 機械(기계)의 進步(진보)로 因(인)하여 生產力(생산력)은 機(기) 十倍(십배) 或(혹)은 機(기) 百倍(백배)가 增加(증가)하였다. 그 發展(발전)은 人口(인구) 增加(증가)의 念慮(염려)를 超越(초월)하고 餘裕(여유)가 잇슴은 學者(학자)의 共認(공인)하는 바라한다. 그리함을 不拘(불구)하고 自己(자기)의 손과 발노 生産物(생산물)

을 造出(조출)하는 勞動者(노동자) 中(중)에 生活難(생활난)이 增加(증가)하였다. 生存(생존)을 維持(유지)할 生活費(생활비)를 얻지 못하여 營養不足(영양부족)으로 그 天壽(천수)를 다 享有(행유)하지 못하니 存在(존재) 以下(이하)의 人生(인생) 價值(가치)를 보지 못할 것도 勿論(물론)이다. 이와 反對(반대)로 遊衣遊食(유의유식)하고 高樓巨閣(고루거각)에 美人(미인)을 戲弄(희롱)하며 徒費歲月(도비세월) 하는 무리가 있다. 이를 常事(상사)로 알고 當然(당연)으로 보던 文明(문명)과 制度(제도)가 엇지 그대로 存續(존속)을 바라리요.

이 非理(비리)와 虛僞(허위)를 明明白白(명명백백)히 露出(노출)시킨 것은 歐洲大戰(구주대전)이라 한다. 이에 人類(인류)는 覺醒(각성)에 覺醒(각성)을 加(가)하였고 破壞力(파괴력)에 破壞力(파괴력)을 더하며 創作力(창작력)에 創作力(창작력)을 더 아니하고는 그대로 잇슬 수 업슴에 이르렀다. 이것이 全世界(전세계)를 싸고 뒤넘는 改造(개조)의 意慾(의욕)이오 改造(개조)의 運動(운동)이다. 이리하여 人類(인류) 生活狀態(생활상태)는 보다 더 큰 變化(변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아니, 하는 中(중)에 있다. 또는 實現(실현)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近代(근대) 文明(문명)의 特色(특색)은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에 있다한다. 勿論(물론) 中世紀(중세기)에 比(비)하면 그 亦是(역시) 事實(사실)이 아님은 아니다. 매우 힘있게 文字(문자) 上(상)으로 言論(언론) 上(상)으로 부르지지 왔다. 然(연)이나 그 實質(실질)을 보면 前述(전술)한 바와 갖치 符合(부합)치 아니함이 만하였다. 그러하는 中(중)에 不知不識(부지불식)간에 長成(장성)할 수 있는대로 長成(장성)하여야온 思想(사상)은 所謂(소위) 民主主義(민주주의, Democracy)의 思意(사의)이다.

政治的(정치적)으로 社會的(사회적)으로 又(우)는 產業的(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方向(방향)으로 發展(발전)하여야왔다.

사람은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을 避(피)치 못할 것이다. 사람이 먼저 있스 然後(연후)에 社會(사회)가 生(생)기였다 하던지 進化(진화) 上(상)으로

보아서 社會(사회)가 먼저 있다하던지 - 卽(즉) 動物(동물)이 人生(인생)으로  
 變化(변화)하기 前(전)에 社會生活(사회생활)을 하였다고 하는 學者(학자)도  
 있다. 잊지되었던지 - 卽(즉) 社會(사회)가 먼저 잊었던지 又(우) 今日(금일)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社會(사회)보다 먼저 잊었던지는 未詳(미상)하거니  
 와 사람인 以上(이상)에는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을 떠나서 孤獨(고독)한  
 生活(생활)은 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사람의 生活(생활)을 하자면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을 아니할 수 없다. 이는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  
 이 人類(인류)의 生活(생활)에는 가장 有利(유리)하고 가장 便利(편리)함을 事  
 實(사실)로 證明(증명)함이다. 萬一(만일)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이 一部分(일  
 부분) 或(혹)은 一階級(일계급)에만 有利(유리)하며 便利(편리)하고 다른 階級(계  
 급)이나 部分(부분)에는 有害(유해)하며 不便利(불편리)하다 하면 人類(인류)의  
 生活(생활)은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이 가장 有利(유리)하며 便利(편리)하다  
 고 하지 못할 것이다. 卽(즉) 다시 말하면 人生(인생)의 生活(생활)을 하는  
 사람으로도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을 떠나서 孤獨的(고독적) 生活(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然(연)이나 그러한 생활은 오늘날까지는 人類界(인  
 류계)에서는 보지 못한다. 人類(인류)가 오늘날까지 떠날 수 없는 社會的  
 (사회적) 生活(생활)을 繼續(계속)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게 다 가장 有利(유리)  
 하고 便利(편리)한 까닭이다. 모든 사람 各自(각자)의게 便利(편리)함을 주  
 며 有益(유익)함을 깃침으로 모든 사람은 다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을  
 維持(유지)해야 온 것이다. 다시말하면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은 社會全  
 般(사회전반)의 各人(각인)의게 다 平均(평균)히 有益(유익)함을 各人(각인)이 認  
 識(인식)(적어도 有害(유해)함을 發見(발견)치 못하였으므로)해야 各人(각인)  
 이 그를 協力(협력)하고 維持(유지)해야 온 것이다. 그럼함으로 오늘날 우  
 리 人類(인류)가 實現(실현)하고 있는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이 있다고 하  
 노라. 또 다시 말하면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이 現今(현금) 存在(존재)하는

理由(이유)는 - 그 事歷(사력)은 社會(사회)의 一部分(일부분)에만 有益(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全般(전반) 各人(각인)의게 다 有益(유익)을 끼치는 것  
 임을 各人(각인)이 認識(인식)해야 또 各人(각인)이 그를 協力(협력) 維持(유지)  
 해야 왓슴에 있다. 그러하면 社會(사회)의 일은 一部分(일부분)이나 一階  
 級(일계급)의 利益(이익)과 幸福(행복)을 爲(위)하여 一部分(일부분)이나 一階  
 級(일계급)이 處理(처리)할 것이 아니라 全般(전반)의 有益(유익)과 幸福(행복)을  
 爲(위)하여 全般(전반)의 意思(의사)로 判斷(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  
 을 不拘(불구)하고 無理(무리)한 權力(권력)과 術謨(술모)로 因(인)하여 經濟的  
 (경제적)으로나 政治的(정치적)으로 또(우)는 社會的(사회적)으로나 不合理(불합  
 리)한 制度(제도)와 組織(조직)이 生(생)기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成長(성장)  
 하여왔다. 그리하여 多數(다수)한 사람을 悲慘(비참)한 生活(생활) 中(중)에  
 陷落(함락)시키었다. 이 不合理(불합리)한 制度(제도) 組織(조직)과 人生(인생)의  
 悲慘(비참)을 匡正(광정)하고 救濟(구제)하라고 함이 現代(현대)를 支配(지배)  
 하는 思想(사상)이다. 現代(현대) 人類生活(인류생활)의 方式(방식)과 手段(수단)  
 을 더욱 合理的(합리적)이오 實利的(실리적)인 곳으로 向上(향상)시키며 進  
 步(진보)시키라고 하는 것이 大戰(대전) 後(후) 世界(세계)에 흐르는 思潮(사  
 조)요 支配(지배)하는 運動(운동)이며 勢力(세력)이다. 이것이 概括的(개괄적)으  
 로 말하는 제모크라시-의 思想(사상)이다. 現代的(현대적) 生活(생활)을 하  
 는 우리는 現代(현대)를 支配(지배)하는 思想(사상)에 對(대)하여 熟考(열고)할  
 必要(필요)가 있다. 思想(사상)의 有無(유무)는 사람의 生活(생활)과 禽獸(금수)  
 의 生活(생활)을 헤아리는 度衡機(도형기)다. 우리가 사람의 生活(생활)을  
 繼續(계속)하는 以上(이상)에는 우리의 思想(사상) 存在(존재)도 그와 갖치  
 繼續(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하여야 할 것이라 함보다 하는 것이다. 우  
 리 가삼에 있는 思想(사상)을 누구나 妨害(방해)하며 抑壓(억압)할 수 있스  
 라? 없을 것이다. 幾部分(기부분)의 可能性(가능성)이 잇는 것이 잇다하면



그는 各各(각각) 自我(자아) 스스로에 不過(불과)할 것이다. 卽(즉) 各自(각자)의 主觀的(주관적) 支配力(지배력) 以外(이외)에는 다시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으로 多大(다대)한 憎惡(증오)와 壓迫(압박)을 受(수)하던 思想(사상)도 表現(표현)되지 아니는 - 보이지 아니하는 裏面(이면)에서 發展(발전)을 하는 일이 있다. 그리하여 어느 時期(시기)에 이르면 一國家(일국가)와 社會(사회)를 支配(지배)함에 이른다. 過去(과거) 歷史(역사)에도 實例(실례)가 不少(불소)하거니와 우리가 보고듯한 現今(현금)이 世界(세계) 事實(사실)에도 明瞭(명료)한 實物(실물)잇슴을 볼 것이다.

要(요)컨대 戰爭(전쟁) 前(전) 人類(인류) 社會(사회)의 缺欠(결핍)은 社會(사회)가 有機的(유기적) 一體(일체)임을 實現(실현)치 아니함에 잇섯다. 各(각) 民族(민족)이나 各(각) 個人(개인)의 利害關係(이해관계)가 複雜(복잡)함으로 그 一部分(일부분)이 物質的(물질적)으로 或(혹)은 道德的(도덕적)으로 悲慘(비참)한 狀態(상태)에 잇을 때에는 完全(완전)한 - 眞正(진정)한 發展(발전)과 向上(향상)을 할 수 업슴을 不願(불원)에 付(부)함에 잇섯다. 우리 몸의 一部分(일부분)인 手足(수족)이나 其他(기타)에 病(병)이 나면 우리는 決(결)코 完全(완전)한 眞善(진선)의 生活(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不公平(불공평)한 - 病(병)이 만한 現代(현대)의 組織(조직)과 制度(제도)로는 一(일) 社會(일사회)의 健全(건전)한 進取(진취)와 向上(향상)은 不可能(불가능)한 일이다. 그와갓치 各(각) 民族(민족)의 現今(현금)의 關係(관계)로는 世界(세계) 人類(인류)는 眞正(진정)한 向上(향상)과 發展(발전)을 하지 못할 것이다. 一(일) 社會(사회)의 眞正(진정)한 幸福(행복)을 爲(위)하야 又(우)는 各(각) 民族(민족)도 互相的(호상적) 協調(협조)에 因(인)하야 全(전) 人類(인류)의 眞正(진정)한 幸福(행복)을 期(기)할 수 잇다는 意味(의미)에서 現代世界(현대세계)는 改造(개조)되어야 할 것이라 하노라. 즉 合理的(합리적)인 自由(자유)와 平等(평등) 下(하)에서 世界(세계)는 - 아니, 社會(사회)는 改造(개조)되어야 할 必要(필요)가 잇고 理由(이유)가 잇다고

하노라. 思想(사상)이 업고 作定(작정)이 업스면 다시 더 말할 必要(필요)가 업거니와 - 卽(즉) 思想(사상)이 업는 禽獸(금수)나 奴隸(노예)의 生活(생활)과 境遇(경우)에 滿足(만족)을 한다하면 그만이다 - 그에 긋칠 것이다. 然(연)이나 그러지 아니한 以上(이상)에는 有理(유리)한 生存(생존)의 維持(유지)에 對(대)야아 - 아니, 文化發展(문화발전)과 人道(인도) 正義(정의)의 開拓(개척)에 對(대)하야 奮鬪(분투)가 잇고 努力(노력)이 잇슴도 必要(필요)의 理(이)다. 이 리하야 人文(인문)과 幸福(행복)은 向上(향상)하고 進就(진취)할 것이다. 사람 의 生(생)의 意義(의의)는 큰 意味(의미)에서 活動(활동)에 잇다한다 - 卽(즉) 理性(이성)이나 感情(감정) 또는 肉體(육체)의 活動(활동)에 잇다하노라. 生(생)에서 活動(활동)을 除去(제거)하면 그는 오직 死(사)다. 死(사)는 破滅(파멸)을 意味(의미)한다. 故(고)로 나는 活動(활동)(큰 意味(의미)의)업는 사람이 잇다 하면 그는 死(사) - 卽(즉) 破滅(파멸) 적어도 破滅(파멸) 中(중)에 잇는 사람 이라 하노라. 그럼으로 人生(인생)은 靜的(정적)이 아니오 動的(동적)인 活潑(활발)스러운 곳에 生(생)의 意味(의미)가 잇는 것이다. 眞實(진실)한 生存(생존)은 積極的(적극적)인 進取(진취)와 向上(향상)에 잇을 것이다. 政治(정치)나 教育(교육)이나, 宗教(종교)나 道德(도덕)이나 어느 것을 勿論(물론)하고 進取的(진취적)이오 積極的(적극적)이라야 할 것이다. 나는 이 意味(의미)에서 우리 社會(사회)를 向(향)하야 더욱히 強大(강대)하고 深切(심절)한 改造(개조)의 必要(필요)와 理由(이유)를 부르지지고자 하노라. 붓을 근침에 이르러 다시 改造(개조)의 根據(근거)가 眞實(진실)하고 強大(강대)함을 感覺(감각)하기를 마지 아니 하노라.

讀者諸君(독자제군) 이에 이 論文(논문)은 當局(당국)의 注意(주의)에 因(인)하야 다시 改造(개조)를 하엿는디 改造(개조)라도 잘 되지 못한 改造(개조)임으로 처음에 마암 먹엇던 本旨(본지)가 어대로 가고 히미하여진듯 하오. 매우 不滿足(불만족)하고 滋味(자미)가 적지만은 하는 수가 업소!

# 向上<sub>향상</sub>의 意慾<sub>의욕</sub>과 生活<sub>생활</sub>의 變遷<sub>변천</sub>

- 『현대』 8호 | 동경 조선기독교청년회(1920.10.30) -

生(생)은 靜的(정적)이 아니오 動的(동적)임을 意味(의미)함이다. 動的(동적)이라함은 變化(변화)를 말함이라 다시 말하면 變化(변화)가 있음으로 生(생)이 있다. 故(고)로 生命(생명)은 變化(변화)가 繼續(계속)하는 現象(현상)의 別名(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적어도 그 一面(일면)을 이름이라고 하리라. 그럼으로 生命(생명)을 가진 實物(실물)에는 變化(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람은 다른 生物(생물)에 比(비)해야 보다 더 理智(이치)가 發達(발달)한 動物(동물)이다. 다른 動物(동물)과 갖치 生命(생명)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變化(변화)도 免(면)치 못하는 動物(동물)이나 然(연)이나 그 變化(변화)를 變化(변화) 自身(자신)의 循環(순환)대로만 막기지 아니한다. 卽(즉) 사람은 自然的(자연적) 變化(변화)에 그대로 順從(순종)하거나 固守(고수)하며 屈服(굴복)하지 아니한다. 이는 사람의 理智(이치)가 發達(발달)하였으므로 그 理智(이치)로써 그를 利用(이용)해야 自然的(자연적) 變化(변화)에 人爲的(인위적) 變化(변화)를 加(가)하라고 한다. 過去(과거)에 이리하여왔고 現今(현금)에도

이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發達(발달)한 그 理智(이치)에 因(인)하여 理想(이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 理想(이상)을 實現(실현)하기 爲(위)하여 勞力(노력)하고 奮鬪(분투)하는 過程(과정)과 結果(결과)는 卽(즉) 人爲的(인위적) 變化(변화)일 것이다. 勿論(물론) 이에 自然的(자연적) 變化(변화)가 全然(전연)히 無關係(무관계)하지는 아니 하지만은 何如間(하여간) 自今(자금) 以後(이후)의 사람은 已往(기왕)에 解得(해득)한 理智(이치)에 因(인)하여 - 이 가지고 있는 理智(이치)로써 理想(이상)을 發見(발견)할 것이오 그 理想(이상)을 實現(실현)하기 爲(위)하여 自然的(자연적) 變化(변화)에 보다 더 人工的(인공적) 變化(변화)를 加(가)하여 가라고 할 것은 分明(분명)한 일이다. 설사 以後(이후)에 人類(인류)의 理智(이치)가 退步(퇴보)한다 하더라도 아조 滅亡(멸망)하지 아니하는 以上(이상)에는 理想(이상)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는 업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生命(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게는 程度(정도)의 差別(차별)은 잇슬지라도 理想(이상)을 가지고 그 理想(이상)을 實現(실현)하라고 하는 意慾(의욕)은 다 잇슬 것이다. 또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게는 어느 사람을 勿論(물론)하고 向上(향상)의 意慾(의욕)이 잇슬 것이다. - 卽(즉) 보다 더 나은 眞(진)이오 善(선)이며 美(미)인 生活(생활)을 하기 爲(위)하여 思考(사고)하며 勞力(노력)해야 갈 것이다. 人類(인류)의 過去(과거) 歷史(역사)는 모두 사람이 向上(향상)하라고 하는 意慾(의욕)의 實現(실현)과 發動(발동)이며 過程(과정)이오 結果(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向上(향상)하라고 하는 意慾(의욕)의 發動(발동)과 實現(실현)이 有意識(의의식) 中(중) 惑(혹)은 無意識(무의식) 中(중)에서 사람으로 하여곰 가장 有益(유익)하고 便利(편리)한 生活(생활)의 手段(수단)과 方便(방편)을 가지게 하였다. 社會的(사회적)으로 民族的(민족적)으로 또는 國家的(국가적)으로 우리의 生活(생활)을 引導(인도)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團體的(단체적)으로 - 卽(즉) 組織(조직)이 잇는 高尚(고상)한 生活(생활)을 하게 된 것은 向上(향상)하라고 하는 意慾(의욕)의

實現(실현)과 經驗(경험)의 結果(결과)라고 하겠다. 이것이 特殊(특수)한 風土(풍토)와 氣候(기후)에 자라나는 國民(국민)과 民族(민족)의게 있어서서는 그만큼 特殊(특수)한 性格(성격)을 이루게 된다. 한 國民(국민)과 한 民族(민족)이 同一(동일)하지 아니한 곳에서 各各(각각)히 各據(각거)하여 長久(장구)한 동안에 歷史(역사)를 繼續(계속)하는 中(중)에는 한 特殊(특수)한 精神的(정신적) 性格(성격)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發達(발달)한 程度(정도)에 이르면 卽(즉) 그 國民(국민)의 精神(정신)이오 民族(민족)의 精神(정신)이다. 이것을 或(혹)은 國民性(국민성)이라 하고 民族性(민족성)이라 한다. 勿論(물론) 時代(시대)의 變遷(변천)과 科學(과학)과 機械(기계)의 發達(발달)을 隨(수)하여 思想(사상) 上(상)으로 或(혹)은 經濟的(경제적)으로 또는 交通(교통) 上(상)으로 關係(관계)가 密接(밀접)하고 各各(각각) 그 影響(영향)을 相受(상수)함으로 因(인)하여 各其(각기) 國民(국민)의 精神(정신)과 民族(민족)의 變化(변화)에 變化(변화)가 生(생)길 것도 事實(사실)이다. 如何間(여하간) 國民(국민)의 精神(정신)과 民族(민족)의 精神(정신)은 오직 歷史(역사)의 結果(결과)오 - 歷史(역사)의 產物(산물)이라고 한다. 權力(권력)과 強壓(강압)으로 手段的(수단적)이며 方便的(방편적)으로 作成(작성)식히라고 하여서 되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歷史(역사)의 產物(산물)이고 歷史(역사)의 結果(결과)인 故(고)로 歷史(역사)에 因(인)하여 主張(주장)하며 變化(변화)할 뿐이다. 이는 世界史(세계사) 中(중)에서 그 歷歷(역력)한 實例(실례)가 너무나 만하다. 사람의 理智(이치)로 因(인)하여 生(생)긴 向上(향상)의 意慾(의욕)은 人智發達(인지발달)에 따라 그도 發達(발달)한다. 사람의 智識(지식)이 展開(전개)되면 展開(전개)될수록 向上(향상)하고저 하는 意慾(의욕)도 그 氣運(기운)이 旺盛(왕성)해야지고 內容(내용)이 豐富(풍부)하야 갈 것이다. 故(고)로 十九世紀(19세기) 時代(시대) 우리 向上(향상)의 意慾(의욕)보다 二十世紀(20세기) 오늘날에는 더 할 것이오, 十年(십년) 前(전)보다 刺戟物(자극물)이 만하고 가라침이 만한 今日(금일)이 더할 것이다. 熱(열)과 힘

이 더 만할 것이다. 今日(금일)은 世界的(세계적)으로 人類(인류) 過去(과거) 生活(생활)에 對(대)하여 動搖(동요)를 이르킨 것은 只(只) 今(지금) 다시 새삼스럽게 말을 낼 必要(필요)도 없다. 個人的(개인적)으로나 團體的(단체적)으로나 或(혹)은 國際的(국제적)으로나 不(不)合理(합리)와 不(不)公平(공평)에서 버서나라고 애를 쓰는 運動(운동)이 가장 큰 이때다. 因襲的(인습적)이고 拘束的(구속적)인 道德(도덕)과 制度(제도)에서 버서나서 進步的(진보적)이고 自由的(자유적)인 內部的(내부적) 生活(생활)을 하라고 奮鬪(분투)한다. 不(不)公平(공평)한 階級的的(계급적)이며 詐欺的(사기적)인 經濟生活(경제생활)에서 버서나서 人格(인격)을 尊重(존중)하고 平和(평화)를 愛慕(애모)하는 보다 사람다운 生活(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現代(현대) 人類社會(인류사회)를 支配(지배)하는 思潮(사조)로 運動(운동)이다.

우리는 幸(행)인지 不(불)幸(행)인지는 아지 못하거니와 過去(과거) 時代(시대)에 잇서본 적이 업슨 奔走(분주)한 때에 낫다. 複雜(복잡)한 境遇(경우)에 처하얏다. 銳敏(에민)하고 熾烈(치열)한 刺戟物(자극물)을 가진 雰圍氣(분위기)中(중)에 生活(생활)하는 우리는 보다 銳敏(에민)하고 熾烈(치열)한 向上(향상)의 意慾(의욕)을 아나기질 수 업다. 忍耐(인내)에 忍耐(인내)를 加(가)하고 壓力(압력)에 壓力(압력)을 바다서 잠겨잇던 우리 向上(향상)의 意慾(의욕)은 할 수 잇는 忍耐(인내)와 바들 수 잇는 누름은 다하얏고 바닷다. 最高(최고) 限度(한도)의 可能力(가능력)을 다하얏다. 이리하여 참고 참아 나오던 우리 向上(향상)의 意慾(의욕)은 潛勢力(잠세력)으로만 잇슬수 업게 되얏다.

다시 더 壓力(압력) 바들 自身(자신)의 內部的(내부적) 可能(가능)도 업거니와 우리 外部(외부)는 그 함과 作用(작용)을 外部(외부)에 對(대)하여 發動(발동)식힐 必要(필요)를 가라친지 이 오래되얏다. 卽(즉) 우리 向上(향상)의 意慾(의욕)은 內部的(내부적)으로는 폭발아니할 수 업게 되얏고 外部的(외부적)으로는 發動(발동)할 수 잇게 되얏다. 最大(최대)의 壓力(압력)으로 防

禦(방어)하던 火山(화산)은 이우에 더 막음을 바들 수 업슴에 이르렀다.  
 金(금)과 玉(옥)을 싸고 잇는 이 火山(화산)은 터지는 것이 世上(세상)에 有  
 益(유익)이요 人類(인류)에 幸福(행복)이다. 生命(생명)이 잇는 곳에는 變化(변  
 화)가 잇다하면 우리 生活(생활)에도 變遷(변천)이 잇서야 할 것이다. 썩고  
 잇는 우리 生活(생활)은 變(변)하여야 할 것이다. 生活(생활)의 모든 方面(방  
 면)에 - 宗教的(종교적)이나 經濟的(경제적)이나 政治的(적)이나 어느 무엇을  
 勿論(물론)하고 變化(변화)를 要求(요구)한다. 內部的(내부적)으로나 外部的(외  
 부적)으로나 變(변)할 수 바게 업고 또는 變(변)할 수 잇는 우리 生活(생활)  
 은 變(변)하여야 할 것이다. 生(생)을 가진 사람의게는 向上(향상)의 意慾  
 (의욕)이 잇다하면 우리의게도 向上(향상)의 意慾(의욕)이 잇슬 것이다. 萬  
 一(만일) 우리의게 生命(생명)이 업다하면 重言復言(중언부언)할 餘地(여지)가  
 업거니와, 잇는 以上(이상)에는 우리의 生活(생활)에도 變遷(변천)이 잇슬  
 것은 當然(당연)이요 必然(필연)의 일이라고 할 것이다. 因襲的(인습적)이고  
 다못 拘束的(구속적)인 政治的(적)이나 그 道德的(도덕적) 生活(생활)은 - 不  
 公平(불공평)하며 不合理(불합리)하고 不利益(불이익)한 階級的(계급적)이며 詐  
 欺的(사기적)인 經濟的(경제적) 生活(생활)은 變遷(변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는 오작 우리 自身(자신) 向上(향상)의 意慾(의욕)이 眞實(진실)한 意味(의미)에  
 서 強大(강대)하고 強大(강대)치 아니한 그 程度(정도)를 따라서 갈닐 것이  
 다. 變遷(변천)의 多少(다소)와 實效(실효)가 낮타날 것이다. 다못 우리 自  
 身(자신)이 스스로 하고 스스로 하지 아니하는 곳에 오작 問題(문제)가  
 잇는 줄 나는 밋는다.

- 九月(9월) 三十日(30일) -

# 兩性<sup>양성</sup>의 地位<sup>지위</sup>와 貞操<sup>정조</sup>의 道德的<sup>도덕적</sup> 價値<sup>가치</sup>

- 『여자계』 제6호(1921.01.11) -

사람 生活(생활)의 目的(목적)은 各其(각기) 人格的(인격적) 價値(가치)를 發揮(발휘)함에 있다. 모든 사람은 各各(각각) 自己(자기)의 個性(개성)을 잘 實現(실현)하기 爲(위)하여 사는 것이다. 個性(개성)을 잘 發揮(발휘)할 수 있는 生活(생활)은 價値(가치)가 있는 사람의 生活(생활)이요 個性(개성)을 發揮(발휘)할 수 없는 生活(생활)은 價値(가치)가 없는 사람의 生活(생활)이라고 할 것이다. 價値(가치)가 없는 生活(생활)은 한 動物(동물)의 生活(생활)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으로 그는 禽獸(금수)의 生活(생활)이요 사람의 生活(생활)은 아니라고 하노라. 生活(생활)을 維持(유지)하는 生活(생활) 組織(조직)도 亦然(역연) 그 旗幅(기폭) 下(하)에서 構成(구성)되고 運用(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卽(즉) 社會(사회)나 國家(국가)의 制度(제도)도 그 社會(사회)를 構成(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그 國家(국가)를 組織(조직)하고 있는 모든 國民(국민)의 人格的(인격적) 價値(가치)를 잘 實現(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한 社會(사회)나 國家(국가)는 그 社會(사회)의 構成員(구성원)과 그 國家(국가)



의 國民(국민) 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各各(각각) 그 個性(개성)을 잘 發揮(발휘)할 수 있는 것이면 價值(가치)가 있는 社會(사회)며 國家(국가)오 個性(개성) 發揮(발휘)를 阻止(조지)하는 社會(사회)나 國家(국가)는 價值觀念(가치관념)이 없는 社會(사회)며 國家(국가)다.

價值觀念(가치관념)이 없는 社會(사회)나 國家(국가)는 善惡(선악)이 없고 秩序(질서)가 없으며 進化(진화)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善惡(선악)이 없고 進步(진보)가 없는 社會(사회)가 人類界(인류계)에 있다하면 그는 滅亡(멸망)에 갓차온 人類(인류)거나 그라치 아니하면 禽獸的(금수적) 社會(사회)에서 버서나지 아니하리라. 한 社會(사회)의 一部分(일부분)이나 한 國家(국가)의 一部分(일부분)이 그 個性(개성)을 發揮(발휘)할 수 없는 地位(지위)에 있은 事實(사실)이다. 그는 征服者(정복자)와 被征服者(피정복자)의 關係(관계)에 因(인)함이다. 一部分(일부분)을 構成(구성)하고 있는 征服者(정복자)가 自己(자기)의 利益(이익)과 安樂(안락)을 爲(위)하여 被征服者(피정복자)를 機械的(기계적)이며 方便的(방편적) - 卽(즉) 奴隸的(노예적)으로 使役(사역)시키는 곳이다. 利害(이해)와 感情(감정)이 正反對(정반대)되는 兩種(양종)의 對峙(대치)다.

機會(기회)만 잇스면 自己便(자기편)의 利益(이익)과 安樂(안락)을 爲(위)하여 對相者(대상자)를 擊破(격파)하라고 注意(주의)를 不漫(불만)할 것이다. 그럼으로 그는 恒常(항상) 鬪爭(투쟁)이 繼續(계속)한다. 表面(표면)으로는 平和(평화)를 維持(유지)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中(중)에 暗鬪(암투)가 있을 것이다. 그 征服者(정복자)와 被征服者(피정복자)는 各各(각각) 그 爭鬪(쟁투)에 敗(패)하지 아니하기 爲(위)하여 모든 勢力(세력)과 努力(노력)을 그에 向(향)하여 다할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격 相擊(상격)과 相鬪(상투)로 一貫(일관)한다. 그러한 社會(사회)에서는 오죽 볼 수 있는 것은 戰爭(전쟁) 狀態(상태)뿐이다. 生活(생활)의 모든 것은 그 싸움에 附屬(부속)하는 現狀(현상)을 免(면)치

못한다. 싸움이 第一次的(제1차적)이오 그 以外(이외)의 모든 것은 第二次的(제2차적)이나 第三次的(제3차적)에 付(부)한다. 人生(인생)의 目的(목적)이 싸움(戰爭)에 있지 아니하는 以上(이상)에는 그러한 社會(사회)나 國家(국가)는 人生(인생)의 目的(목적)에 버서나는 社會(사회)며 國家(국가)라고 하겠다. 그러한 生活(생활)은 人生(인생)에 有用(유용)한 勢力(세력)과 功勞(공로)를 싸움에 다 虛費(허비)하는 까닭이다. 사람이 今日(금일)의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을 하게 되었슴도 그 生活(생활)을 向上(향상)시키고 그 生活(생활)의 價値(가치)보다 더 豊富(풍부)하게 하기 爲(위)하여 經驗(경험)과 智識(지식)의 힘으로 進歩(진보)하여야온 結果(결과)요 今日(금일)의 國家的(국가적) 生活(생활)도 그에 다른 理由(이유)가 업스리라. 모든 사람이 各各(각각) 그 個性(개성)을 잘 發揮(발휘)하여 그 人格的(인격적) 價値(가치)를 實現(실현)하기에 勞力(노력)하고 奮鬪(분투)한 結果(결과)로 이만한 文化的(문화적)으로 進化(진화)한 生活(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生活(생활)은 兩性(양성)(男女(남녀))의 相合(상합)이 그 前提(전제)라고 하리라. 女性(여성)만으로써 人生(인생)의 目的(목적)을 達(달)하지 못할 것과 갖치 男性(남성)만으로써도 못할 것이다. 곳과 때를 勿論(물론)하고 男性(남성)과 女性(여성)이 相聯相助(상련상조)하여 나아갈 것이다. 兩性(양성)이 相合(상합)하고 相扶(상부)함으로써 人生(인생)의 生活(생활)이 있고 그 生活(생활)이 잇슴으로 人生(인생) 生活(생활)의 目的(목적)이니 - 價値(가치)니 - 하는 問題(문제)가 잇을 것이다. 生活(생활)의 價値(가치)를 充分(충분)히 發揮(발휘)하고자 하면 그 生活(생활) 組織(조직)의 兩(양) 主體(주체) - 卽(즉) 男女(남녀)가 다갖치 그 價値(가치)를 發揮(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生活(생활)이 向上(향상)하라고 하면 兩便(양편)의 生活(생활)이 다 갖치 向上(향상)하여야 할지며 다 갖치 協同(협동)하며 다 갖치 奉使(봉사)하여야 할 것이다. 男性(남성)만 잇서 가지고 生活(생활)을 經營(경영)치 못할 것과 갖치 男性(남성)

만 發達(발달)하고 向上(향상)해야 가지고 生活(생활)의 發達(발달)과 向上(향상)을 成就(성취)하지 못할 것은 明白(명백)한 일이다. 그럼으로 生活(생활) 發展(발전)을 圖謀(도모)하고자 하면 男性(남성)의 發展(발전)과 女性(여성)의 發展(발전)을 均一(균일)하게 圖謀(도모)하여야 할 것이오, 社會(사회)의 進化(진화)라 하면 男性(남성)과 女性(여성)의 均一(균일)한 進化(진화)라야 할 것이다. 故(고)로 男子(남자)의게 그 人格的(인격적) 價値(가치)를 잘 發揮(발휘)할 수 있는 自由(자유)와 機會均等(기회균등)의 必要(필요)가 있는 것과 갖치 女子(여자)의게도 그 人格的(인격적) 價値(가치)를 잘 發揮(발휘)할 수 있는 自由(자유)와 機會均等(기회균등)의 必要(필요)가 있을 것이다. 男子(남자)의게 사람은 다 그 個性(개성)을 다 잘 實現(실현)시키는 自由(자유)를 主張(주장)하는 理由(이유)와 論據(논거)가 있다하면 女子(여자)의게도 그와 同一(동일)한 理由(이유)와 論據(논거)로 그 個性(개성)을 잘 實現(실현)시킬 수 있는 自由(자유)를 主張(주장)할 權利(권리)가 있을 것이다. 具體的(구체적) 方向(방향)과 形式(형식)과 種類(종류)는 갖지 아니할지라도 公平(공평)한 機會(기회)와 地位(지위)를 要求(요구)하는 權利(권리)는 잇스리라.

如何間(여하간) 時代(시대)의 變遷(변천)과 人智(인지)의 發達(발달)함을 隨(수)하여 人類(인류)는 漸漸(점점) 合理的(합리적) 方面(방면)을 向(향)하여 覺醒(각성)해야간다. 모든 잘못을 悔改(회개)하고 眞(진)과 善(선)과 美(미)를 바라보고 進行(진행)한다. 不問(불문)에 붓치고 沒却(몰각)에 못어두었던 것을 次次(차차) 覺得(각득)하게 된다. 是非(시비)와 利害(이해)를 理解(이해)하며 깨다른 사람은 그 不合理(불합리)하고 不正當(부정당)함을 憤慨(분개)하고 奮起(분기)함도 免(면)치 못할 일이다.

相扶相助(상부상조)하여 同一(동일)한 利害關係(이해관계)에서 또는 同一(동일)한 境遇(경우)에서 共同生活(공동생활)을 經營(경영)하는 男女(남녀)는 家庭(가정)에서나 社會(사회)에서나 公平(공평)한 機會(기회)와 地位(지위)를 獲得(획득)

하고 各其(각기) 個性(개성)을 自由(자유)로 發揮(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그 生活(생활)의 內容(내용)이 豐富(풍부)하고 形式(형식)이 具備(구비)하도록 서로 勞力(노력)할 것이다. 兩方(양방)의 人格的(인격적) 價値(가치)가 各各(각각) 均一(균일적)으로 實現(실현)되어야 비로소 社會(사회)가 發展(발전)하고 生活(생활)이 進步(진보)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全的(전적)인 社會(사회)나 家庭(가정)이 進步(진보)함으로 그 一部分(일부분)인 男子(남자)나 女子(여자)가 進步(진보)함을 어드리라. 故(고)로 男女(남녀)를 勿論(물론)하고 서로 그 人格(인격)을 尊重(존중)하고 그 個性(개성)을 認定(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서로 그 個性(개성)과 人格(인격)을 尊重(존중)함으로 男女(남녀)는 서로 自由(자유)며 平等(평등)이 다 各各(각각) 사람이라는 立脚地(입각지)에서 그 技能(기능)과 本性(본성)을 따라 人生(인생)의 目的(목적)에 奉使(봉사)하며 그 恩澤(은택)에 浴(욕)함이 一般(일반)일까 한다.

自由(자유)는 秩序(질서)를 前提(전제)로 하고 平等(평등)은 分業(분업)을 意味(의미)한다. 秩序(질서)가 업는 곳에서는 事物(사물)의 成就(성취)를 바라기 어려운 故(고)로 生活(생활)의 目的(목적)을 成就(성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秩序(질서)가 업는 곳에서는 價値(가치)있는 自由(자유)의 生活(생활)을 求(구)할 수 없다. 分業(분업)이 업스면 平等(평등)의 必要(필요)가 업을 것이오 그 必要(필요)가 업다하면 그러한 思想(사상)과 制度(제도)가 生(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사람은 複雜(복잡)한 分業的(분업적) 生活(생활)을 함으로 平等(평등)의 思想(사상)이 生(생)기였고 平等(평등)의 制度(제도)가 必要(필요)하다. 然(연)이나 完全(완전)한 自由(자유)가 實行(실행)되는 곳에는 반다시 平等(평등)도 實現(실현)될 것이오 完全(완전)한 平等(평등)이 實現(실현)되는 곳에는 반다시 自由(자유)도 實行(실행)될 것이다. 自由(자유)가 업는 生活(생활)에서는 內在的(내재적) 價値(가치)를 잘 實現(실현)할 수 없다.

人格的(인격적) 價値(가치)를 發揮(발휘)할 수 업는 生活(생활)은 사람답지

못한 生活(생활)이라하면 自由(자유)가 업는 生活(생활)은 사람답지 못한 생활이라고 하리라. 우리 사람은 自由(자유)라는 길을 바리고는 生(생)의 意義(의의)를 차질 수 업다. 오즉 自由(자유)라는 길을 발뼌으로 生(생)의 意義(의의)를 가질 수 잇슬 것이다. 萬一(만일) 사람이 意義(의의)가 업는 生活(생활)을 繼續(계속)한다하면 그야말노 無意味(무의미)한 일이다.

그럼으로 나는 自由(자유)가 업는 生活(생활)은 無意味(무의미)한 일이면 無意味(무의미)한 일인 故(고)로 生(생)불여사라는 말을 斷言(단언)하노라. 然(연)이나 自由(자유)가 그와갓치 貴重(귀중)함과 - 그와갓치 價値(가치)가 多大(다대)함은 自由(자유) 그것에 그 貴重(귀중)함과 價値(가치)가 全屬(전속)함이 아니라 그 自由(자유)로 因(인)하여 人生(인생)의 意義(의의)를 表現(표현)할 수 잇는 까답이다. 自由(자유)는 目的(목적)이 아니오 手段(수단)이며 自由(자유)는 終點(종점)이 아니오 經路(경로)다. 그 自由(자유)를 獲得(획득)하여 - 自由(자유)를 保有(보유)하여 - 그를 經由(경유)하여서 個性(개성)과 人格(인격)의 價値(가치)를 眞實(진실)하고 意義(의의)잇게 發揮(발휘)할 수 잇슴으로 貴重(귀중)히 하고 愛着(애착)한다. 萬若(만약) 自由(자유)를 享有(형유)함으로 因(인)하여 人生(인생)의 目的(목적)에 害(해)를 깃친다하면 (眞正(진정)한 意味(의미)에서 自由(자유)가 아니지만은) 人生(인생)의게 有益(유익)함으로 自由(자유)를 要求(요구)함과 갓치 그러한 人生(인생)의게 害(해)로운 것은 바리는 것이 人生(인생)의 當然(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밧게 업다.

모든 事物(사물)의 成就(성취)에는 秩序(질서)를 要(요)한다. 生活(생활)이 進歩(진보)한 人類界(인류계)에서는 事物(사물)을 成就(성취)하라면 感情的(감정적)惑(혹)은 本能的(본능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理性(이성)의 判斷(판단)과 支配(지배)를 要(요)한다. - 即(즉) 人類社會(인류사회) 生活(생활)이 進歩(진보)한 秩序(질서)는 理性(이성)의 支配(지배)를 要(요)한다. 다시 말하면 感情(감정)과 本能(본능)의 作用(작용)을 그 本性(본성)의 作用(작용)대로 - 그 本性(본성)의

發動(발동)과 行使(행사)대로 맞기지 아니하고 理性(이성)이 그를 裁斷(재단)하야 支配(지배)한다. 그러함으로 秩序(질서)가 있다. 그 秩序(질서)가 있음으로 우리는 幸福(행복)스러운 - 價値(가치)가 있는 生活(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理性(이성)의 作用(작용)이 업는 感情(감정)과 本能(본능)의 表現(표현)에는 事物(사물)을 成就(성취)할만한 完全(완전)한 秩序(질서)가 업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이 幾十層(기십층)이나 退步(퇴보)하지 아니하면 理性(이성)업는 生活(생활)은 하지 못할 것이다. 理性(이성)의 支配(지배)가 있는 生活(생활) - 卽(즉) 秩序(질서)가 있는 生活(생활)이라야 우리의 生活(생활)은 意義(의의)가 있고 價値(가치)가 있는 生活(생활)이다. 家庭的(가정적) 生活(생활)이나 隸屬(隶属) 社會的(사회적) 生(생)이나 어느 生活(생활)을 勿論(물론)하고 生活(생활)다운 生活(생활)을 하라고 하면 理性(이성)의 支配(지배)가 있는 - 秩序(질서)가 있는 곳에 비로소 있을 것이다. 家庭(가정)은 社會(사회)의 源泉(원천)이라 모든 家庭(가정)이 답지 못한 生活(생활)을 하면 그 社會(사회)에서는 사람다운 生活(생활)을 意味(의미)가 있는 生活(생활)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家庭(가정)이 無秩序(무질서)한 - 正當(정당)치 못한 生活(생활)을 하고 있다하면 그 社會(사회)는 勿論(물론) 價値(가치)가 있는 存在(존재)라고 보지 못할 것이다.

家庭(가정)은 夫婦(부부)를 中心(중심)으로 한 組織體(조직체)다. 그 夫婦間(부부간)의 生活(생활)이 理性(이성)의 批判(비판)과 支配(지배)를 欠缺(흠결)하야 秩序(질서)가 업는 點(점)에 이른다하면 秩序(질서)가 업는 우리 生活(생활)로는 아모 것도 成就(성취)하지 못한다는 意味(의미)에서 그 家庭(가정)을 이룬 夫婦(부부)는 아모 것도 成就(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 家庭(가정)을 이룬 意義(의의)와 目的(목적)을 到達(도달)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夫婦間(부부간)의 生活(생활)에도 感情(감정)과 本能(본능)을 超越(초월)한 理性(이성)의 判斷(판단)과 支配(지배)를 要(요)한다. 그 感情(감정)과 本能(본능)이 動

(동)하는 대로 그대로 行動(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 夫婦(부부)가 相合(상합)한 理想(이상)과 目的(목적)에 違反(위반)되지 아니하게 理性(이성)의 支配(지배)를 要(요)한다.

貞操(정조)는 相合(상합)한 一男(1남) 一女(1녀) 間(간)에 成立(성립)된 理想(이상)에 依(의)하여 理性(이성)에 支配(지배)받는 感情(감정)과 本能(본능)의 實現(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 時代的(시대적) 精神下(정신하)에서 結合(결합)된 以上(이상)에는 그가 維持(유지)하는 날까지는 變(변)치 못할 것이다. 夫婦間(부부간)의 生活(생활)에도 秩序(질서)가 必要(필요)하다 하면 - 理性(이성)의 支配(지배) 下(하)에서 感情(감정)과 本能(본능)을 行使(행사)함이 必要(필요)하다 하면 - 그 夫婦間(부부간)의 愛情(애정)과 平和(평화)를 維持(유지)하는 貞操(정조)가 必要(필요)함도 다시 말할 必要(필요)가 없다. 그 貞操(정조)가 있음으로 秩序(질서)가 있을 것이다. 貞操(정조)가 없는 夫婦(부부)의게는 愛情(애정)과 平和(평화)가 維持(유지)치 못할 것이다. 또는 따라서 秩序(질서)도 保存(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故(고)로 貞操(정조)는 家庭的(가정적) 生活(생활)에 中心(중심) 道德(도덕)이라고 하노라.

貞操(정조)가 없는 家庭(가정)은 道德(도덕)이 없는 家庭(가정)이다. 又(우)는 平和(평화)와 愛情(애정)이 없는 家庭(가정)이다. 貞操(정조)가 없는 家庭(가정)으로 된 社會(사회) - 卽(즉) 貞操(정조)가 없는 社會(사회)는 道德(도덕)이 없는 社會(사회)며 價値(가치)있는 愛(애)가 없는 社會(사회)다. 그럼으로 貞操(정조)를 無視(무시)하는 男女(남녀)는 秩序(질서)를 無視(무시)하며 道德(도덕)을 無視(무시)하는 사람이다. 秩序(질서)와 道德(도덕)이 없는 人類社會(인류 사회)에서는 人生(인생)의 價値(가치)를 實現(실현)할 수 없다. 그럼으로 貞操(정조)를 無視(무시)하는 社會(사회)에서는 人生(인생)의 價値(가치)를 無視(무시)하는 곳이라고 하리라. 自由(자유)의 目的(목적)은 人生(인생)의 價値(가치)를 實現(실현)함에 있고 그 自由(자유)를 要求(요구)하는 사람은 自由(자유)로 인

(인)하야 各自(각자)의 人格的(인격적) 價値(가치)를 發揮(발휘)하며 實現(실현)함에 그 終局(종국)의 目的(목적)이 있다. 그러함으로 貞操(정조)를 無視(무시)하는 사람은 各自(각자)의 人生(인생) 目的(목적)을 無視(무시)하는 사람이다. 『사랑도 自由(자유)스러워야 한다』하야 貞操(정조)를 無視(무시)하는 自由(자유)의 사랑이 있다하면 그 自由(자유)는 自由(자유) 自身(자신)의 目的(목적)을 無視(무시)하며 生命(생명)을 無視(무시)하는 自由(자유)다. 自由(자유)의 生命(생명)과 目的(목적)을 無視(무시)함으로 그 自由(자유) 自體(자체)의 生命(생명)과 目的(목적)을 죽(殺)이는 行動(행동)이라고 하노라.

- 十一月(11월) 二日(2일) -



# 天賦人權論 천부인권론

- 『학지광』 제21호 | 동경유학생학우회(1921.01) -

近來(근래) 우리 社會(사회)에서 自由(자유) 平等(평등)을 부르지지는 同時(동시)에 天賦人權說(천부인권설)의 그 色彩(색채)가 있는 言論(언론)을 많이 듣는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以前(이전)에 있던 天賦人權說(천부인권설)을 그대로 밋는 學者(학자)는 적은듯하다. 然(연)이나 天賦人權說(천부인권설)에 主要(주요)되는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의 思想(사상)에 이르러서는 現代(현대) 思想(사상)의 原泉(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으로 너머나 묵은 것 갖고 너머나 非時代的(비시대적) 風味(풍미)가 많하지만은 그 大綱(대강)을 紹介(소개)함도 無益(무익)함은 아닌줄 밋는다.

플라톤(Platon)과 아이스토테레스(Aristoteles) 兩氏(양씨)의 思想(사상)은 極端(극단)의 國家(국가) 本位(본위)와 奴隸制度(노예제도)의 承認(승인)에 있었다. 國家(국가)는 人類(인류)가 道德的(도덕적) 生活(생활)을 함에는 絕對的(절대적) 必要(필요)를 말하얏고 國家(국가)가 없스면 사람이 없다는 結論(결론)까지 말하얏다. 더욱히 플라톤氏(씨)는 個人(개인)을 全然(전연)히 國家(국가) 內

(내)에 吸收(흡수)식하였다. 個人(개인) 單獨(단독)으로는 그 獨立(독립)한 存在(존재)를 否認(부인)하였다.

이러한 國家(국가) 本位(본위)의 思想(사상)이 그 極度(극도)에 達(달)하면 壓迫(압박)이 極度(극도)에 達(달)하면 反抗力(반항력)이 生(생)기는 것과 갖치 그 反動(반동)으로 個人(개인) 本位(본위)의 思想(사상)이 이러날 것은 免(면)치 못할 일이다. 이에 自然設(자연설)을 主張(주장)하여 個人(개인) 本位(본위)의 思想(사상)이 이러날 것은 免(면)치 못할 일이다. 이에 自然說(자연설)을 主張(주장)하여 個人(개인) 本位(본위)의 思想(사상)을 이르기였다. 스토이크(Stoic) 哲學(철학)은 卽(즉) 그것이다. 사람은 國家(국가)에 對(대)한 人爲的(인위적) 關係(관계)에서 버서나서 獨立(독립)한 生活(생활)할 것을 가르쳤다. 스토이크를 이르킨 제논(Zenon)은 天賦人權說(천부인권설)의 始祖(시조)라고 한다. 宇宙(우주)를 神(신)의 體(체)라고 하였고 自然(자연) 全體(전체)는 한 家族(가족)이라고 信(신)하였으므로 人類(인류) 全體(전체)를 同胞的(동포적) 關係(관계)로 보았다. 모든 사람은 다 갖치 自然(자연)이라고 하는 一人(일인)의 母親(모친)에서 出產(출산)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同胞(동포)의게 對(대)하여 害(해)를 加(가)함은 神(신)에 對(대)한 不敬(불경)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博愛(박애) 思想(사상)의 始作(시작)이라고 한다. 이와 갖치 宇宙(우주) 全體(전체)를 一國家(일국가)로 보았고 地上(지상)에 있는 모든 國家(국가)는 그를 構成(구성)한 各員(각원)에 不過(불과)하다고 하였다. 스토이크派(파)는 이와 갖치 宇宙的(우주적) 國家(국가) 觀念(관념)에 力說(역설)하였다. 그리하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兩氏(양씨)가 말한바 國家(국가)가 個人(개인)을 全然(전연)히 吸收(흡수)하는 危險(위험)에서 救(구)하라고 하였다. 以下(이하) 譯載(역재)하고자 하는 바은 日本(일본) 明治(명치) 四十年(사십년) 六月號(유월호) 太陽(태양) 增刊(증간)에 記載(기재)된 馬場辰豬氏(마장진저씨) 天賦人權論(천부인권론) 中(중)에서 한다.

「希臘(회랍) 스토익크 哲學史(철학사)에 依(의)하면 스토익크는 日本(일본)의 玄關(현관)같은 것을 말한다. 希臘(회랍)에서 제노氏(씨)가 自然設(자연설)을 主張(주장)함에 當(당)하여 日本(일본)의 玄關(현관) 前(전) 갖흔 곳에서 講述(강술)하얏슴으로 爾來(이래)에 제노氏(씨) 設(설)을 밋는 派(파)를 가르쳐서 스토익크 哲學派(철학과)라고 한다. 紀元前(기원전) 二百六十三年頃(263년경)에 希臘(회랍) 제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大端(대단)히 自然主義(자연주의)를 主張(주장)하얏다. 사람이 自然(자연)에 從(종)하여 生活(생활)함은 卽(즉) 人生(인생)의 目的(목적)이다. 自然(자연)의 感覺(감각)은 至極(지극)히 至公至平(지공지평)한 것이다. 이를 詳言(상언)하면 사람의 自然(자연)한 慾望(욕망)은 만다시 그 自己(자기)의 利益(이익)을 圖謀(도모)하고 禍害(화해)를 避(피)하는 傾向(경향)이 있는 것이다. 例(예)를 들어 말하면 赤子(적자)가 母(모)를 보고 깽뻑하고 얼굴이 익지 못한 사람을 보면 두려워함과 갖흔 것은 母(모)는 自己(자기)를 撫育(무육)하는 사람이오 얼굴이 익지 못한 사람은 自己(자기)를 害(해)함에 있슬가? 하는 感覺(감각)을 이르킴으로 因(인)함 일 것이다. 要(요)컨대 이와갓흔 感覺(감각)을 이르키는 까닭은 그 몸을 保護(보호)하고 그 禍害(화해)를 避(피)함에 있다. 이는 上天(상천)에서 賦與(부여)한 自然(자연)의 良心(양심)에서 이러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草木(초목) 等(등)도 赤然(적연) 그러하니 草木(초목)이 暖氣(난기)한 方面(방면)을 向(향)하여 가지를 내고 水氣(수기) 있는 곳을 向(향)하여 뿌리를 生(생)하는 것과 갓치 人爲(인위)를 베풀지 아니하여도 이하갓치 되는 것은 自然(자연)히 自己(자기)의 生活(생활)을 保持(보지)하기 爲(위)하여 生(생)기는 것이다. 智識(지식) 上(상)으로도 小兒(소아)가 新奇(신기)한 일을 드르며 新奇(신기)한 物件(물건)을 보고자 한다. 卽(즉) 眞王(진왕)한 道理(도리)를 알며 智識(지식)을 擴張(확장)하고자 함은 天地(천지) 自然(자연)의 賦性(부성)에서 生(생)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얏다. 五十二年間(52년

간 아덴에서 門徒(문도)를 모으고 始從(시종)이 如一(여일)하게 이 主義(주의)를 教授(교수)하였다니 其後(기후) 紀元前(기원전) 百三十六年頃(136년경) 분어 이 學派(학파)에 屬(속)하는 사람들이 그 學說(학설)을 羅馬(라마)에 옮기었고 有名(유명)한 씨세로氏(씨)도 이 學說(학설)을 主張(주장)하였으므로 羅馬(라마) 法律家(법률가)도 또한 이를 배웠다. 그럼으로 紀元後(기원후) 二百二十八年頃(228년경)에는 이 主義(주의)가 大緻(대단)히 盛昌(성창)함에 이르렀다」고 하고 다시 말하기를.

「宇宙間(우주간)에는 自然(자연)의 定規(정규)가 있고 天下(천하) 事物(사물)은 다 이 定規(정규)에 從(종)치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 自然(자연)의 定規(정규)라 함은 무엇인가. 하면 萬物(만물)이 世界(세계)에 나옴에는 만다시 一定(일정)한 自然力(자연력)이 있어서 天下(천하) 萬物(만물)은 다 그 自然力(자연력)에 因(인)하여 生(생)기지 아니한 것이 없다. 例(예)를 들어 말하면 바람이 이러남은 空氣(공기)의 힘에 因(인)함이고 華葉(화엽)이 茂生(무생)함은 草木(초목) 活動(활동)의 힘에 因(인)함이며 사람이 活動(활동)함은 自然(자연)의 生活力(생활력)에 因(인)함과 같다. 此等(차등) 數種(수종)의 作用(작용)은 各各(각각) 그 形態(형태)는 다르다고 할 지라도 그 根源(근원)에 週及(소급)하여야 細密(세밀)하게 觀察(관찰)하면 다 一定(일정)한 힘이 있어서 그 힘에 歸納(귀납)치 아니할 것이 없다. 또다시 生覺(생각)하면 한 汽船(기선)이 運轉(운전)됨은 그 機械(기계)의 發動力(발동력)에 因(인)함이고 機械(기계)의 發動(발동)은 蒸氣(증기)의 膨脹力(팽창력)에서 發生(발생)되고 燕氣(연기)의 膨脹(팽창)은 石炭(석탄)의 焚燃力(분연력)에서 나고 石炭(석탄)은 또한 曾往(증왕)에 太陽熱光(태양열광)을 植物(식물)에 注射(주사)하여야 그 植物(식물)이 地中(지중)에 埋沒(이몰)된 지 數千年(수 천년)에 長久(장구)한 동안을 經過(경과)하여야 變生(변생)한 것이다. 故(고)로 그 汽船(기선)의 運轉(운전) 機械(기계)의 發動(발동) 蒸氣(증기)의 沸騰(비등) 石炭(석탄)의 生出(생출) 등(등) 모든 것이 그 最初(최초)

에 邇及(소급)해야보면 自然(자연)히 生(생)긴 太陽(태양)의 一力(일력)에 歸着(귀착)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사람이 世上(세상)에 生活(생활)하는 것도 이 理致(이치)에 버서나지 아니한다. 사람이 家屋(가옥)을 構造(구조)함도 사람의 腦力(뇌력)의 發動(발동)에 由(유)함이오 그 腦力(뇌력)은 生活力(생활력)에 基因(기인)하고 그 生活力(생활력)은 滋養力(자양력)에서 나오 고 그 滋養力(자양력)은 植物(식물)의 힘에서 이러나온 것이오 또 그 植物(식물)은 太陽(태양)의 熱力(열력)에서 나온 것이다. 故(고)로 사람이 家屋(가옥)을 構造(구조)하는 腦力(뇌력)의 發動(발동), 滋養物(자양물)의 發生(발생) 植物(식물)의 生育(생육) 등(등) 모든 그 根源(근원)을 차차보면 다 太陽(태양)의 一力(일력)에서 起因(기인)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므로 天下(천하) 事物(사물)의 根源(근원)되는 自然力(자연력)의 作用(작용)은 實(실)로 千變萬化(천변만화)라고 하겠고 果然(과연) 端倪(단에)하기 어렵지만은 그 根本(근본)되는 힘에 이르러서는 秋毫(추호)도 消滅(소멸)하거나 死廢(사폐)하지 아니한다. 理學者(이학자)가 말하는 所謂(소위) 元素無盡設(원소무진설)은 卽(즉) 이 理致(이치)를 이름이다.

그 根本(근본)되는 自然力(자연력)은 다못 世界(세계)에 存在(존재)해야 그 分子(분자)가 無盡(무진)할 뿐 아니라 花卉(화훼)가 되야서는 美麗(미려)하라고 하고 果實(과실)이 되야서는 成熟(성열)하라고 하고 물[水]이 되야서는 流動(유동)하라고 하며 熱(열)이 되야서는 膨脹(팽창)하라고 한다. 그리하여 各各(각각) 그 保持(보지)하는 바 性質(성질)이 發生(발생)해야 그 目的(목적)을 達(달)하라고 하는 傾向(경향)이 잇는 것이다」고 하얏다. 또 다시 말하기를

「余(여)는 다시 天下(천하) 萬物(만물)은 다 自然(자연) 定規(정규)의 活動力(활동력)에 因(인)해야 作用(작용)을 하며 또한 그 活動力(활동력)은 終始(종시) 無盡(무진)으로 消滅(소멸)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各各(각각) 그 變形(변형)

變態(변태)할 때에도 반드시 一定(일정) 不變(불변)의 定規(정규)가 있음을 말하리라. 同一(동일)한 製造(제조)로 된 甲乙(갑을) 兩種(양종)의 銃砲(총포)가 있고 同量(동량)의 火藥(화약)과 同量(동량)의 彈丸(탄환)으로 空氣(공기)의 抵抗力(저항력)과 其他(기타) 모든 事情(사정)이 同一(동일)할 때에 이를 發砲(발포)하면 甲乙(갑을) 兩種(양종)은 다갓치 同一(동일)한 距離(거리)에 達(달)할 것이다. 또한 그와갓치 同一(동일)한 製造(제조)로 된 甲乙(갑을)이다. 同一(동일)한 水量(수량)에 同一(동일)한 熱度(열도)를 加(가)하면 甲乙(갑을)이 갓히 同樣(동양)으로 同一(동일)하게 沸騰(비등)할 것이다. 이것은 果然(과연) 무슨 理由(이유)에 因(인)함인가? 하면 이는 卽(즉) 自然法(자연법)의 定規(정규)가 서로 一致(일치)함을 보임이다. 이와갓치 自然法(자연법)에서 나오난 活動力(활동력)의 進行(진행)에 赤然(적연) 반드시 一定(일정)한 方向(방향)이 있는 것이다. 그 方向(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進行(진행)함에는 그 가장 妨害(방해)가 적은 곳으로 向(향)하여 進行(진행)함을 이룸이다. 例(예)를 들어서 말하면 樹木(수목)이 그 뿌리(根(근))를 生長(성장)함에 或間(혹간) 瓦礫(와력)을 만나면 그 瓦礫(와력)이 적은 곳으로 가고 或(혹)은 乾燥(건조)한 곳을 當(당)하면 다시 水分(수분)이 있는 곳으로 向(향)하고 또는 여러 가지 妨害物(방해물)을 當(당)하면 그 間隙(간극)이 있는 곳을 求(구)하여 生長(성장)하는 것은 그 狀態(상태)가 動物社會(동물사회)와 一般(일반)이다. 사람도 赤然(적연) 이와같다. 枝上(지상)에 있는 果實(과실)을 사람이 取(취)하라고 하는 때에는 이를 取(취)함에 가장 便利(편리)한 手段(수단)을 用(용)할 것이다. 此等(차등) 數種(수종)의 例(예)가 서로 다르지만은 可成的(가성적)으로 障礙(장애)를 避(피)하고 可成的(가성적)으로 平易(평이)한 곳으로 감에 이르러서는 다 하나(一(일))이다. 卽(즉) 이것은 避難就易(피난취이)의 定規(정규)라고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할가? 이와 갓치 됴므로 人類(인류) 社會(사회)의 運行(운행)도 또한 恒常(항상) 이와같은 것이다. 野蠻人(야만인)이 水草(수초)를 따

라 轉住(전주)할때에 東方(동방)에서는 大敵(대적)이 들을 덮고 西方(서방)에는 大河(대하)가 橫在(횡재)하고 北(북)에는 峻山(준산)이 峨峨(아아)하여 오르지 못하고 다못 南方(남방)이 障礙(장애)가 적을 때에는 반다시 南方(남방)으로, 向(향)하여 갈 것이다. 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다시 自然(자연)의 生存(생존)을 求(구)하라고 하는 性(성)이 있음에 因(인)함이니 然(연)이나 或間(혹간) 危險(위험)한 곳에 빠져서 非常(비상)한 災害(재해)를 當(당)하는 것이 있음은 다름이 아니라 智識(지식)과 經驗(경험)이 缺乏(결핍)함으로 或(혹)은 그 危險(위험)함을 아지 못하고 그 害(해)에 빠지며 或(혹)은 利害(이해)의 比較(비교)를 아지 못하고 잘못하여 失敗(실패)함에 不過(불과)한 것이다. 이는 사람이 自然(자연)으로 가지고 있는 바 性質(성질)이 아니오 다못 사람의 잘못에서 生(생)긴 奇禍(기화)라고 아니할 수 없다.

前述(전술)한 바에 因(인)하여 (1)宇宙(우주) 萬物(만물)은 不消不滅(불소불멸)의 自然力(자연력)으로 말미아마 生(생)긴 일과 人類(인류)도 他(타) 動植物(동식물)과 갖치 이 自然(자연)의 變化力(변화력)에서 生(생)긴 現狀(현상)에 지나지 아니함을 보겠고 (2)의미 變化(변화)하여 사람이 된 以上(이상)에는 반다시 그 目的(목적)을 達(달)하라고 함은 다른 動植物(동식물)과 다른 바가 없는 일 (3)그 目的(목적)을 達(달)할 수 잇는 道理(도리)는 어느 邦國(방국)의 人民(인민)을 勿論(물론)하고 반다시 서로 一致(일치)한 일 (4)그 目的(목적)을 達(달)함에 對(대)하여 運動(운동)하는 方法(방법)은 恒常(항상) 障礙(장애)가 가장 적은 곳으로 向(향)하여 進行(진행)하라고 하는 것을 求(구)하는 것임은 明明白白(명명백백)하다.

前段(전단)에 말한 理致(이치)는 다못 有形上(유형상)의 事物(사물)에 근치지 아니하고 人類(인류)의 無形(무형)한 精神上(정신상) 或(혹)은 道德上(도덕상)으로 赤然(적연) 이와갓흔 것이다. 이에 一個人(일개인)이 이 世上(세상)에 나왔다고 假定(가정)하면 그 사람은 반다시 自己(자기)의 生存(생존)을 保持

(보지)하고자 할 것이다. 그 生存(생존)을 保持(보지)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가 幸福(행복)을 求(구)할 것이다. 그가 幸福(행복)을 求(구)하고자 하면 반  
 다시 그 幸福(행복)을 求(구)함에 가장 障礙(장애)가 적은 手段(수단)에 依賴  
 (의뢰)할 것이다. 이와갓치 적어도 一國家(일국가) 社會(사회)를 組織(조직)하  
 는 人類(인류)는 반드시 自己(자기)가 組織(조직)한 社會(사회)의 生存(생존)을  
 保持(보지)하고자 할 것은 勿論(물론)이다. 그 社會(사회)의 生存(생존)을 保  
 持(보지)하고자 하면 그 幸福(행복)을 求(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幸福  
 (행복)을 求(구)하고자 하면 또한 그 社會(사회)로 하여금 生存(생존)함에 障  
 碍(장애)가 가장 적은 道(도)에 依(의)하여 求(구)할 것이다. 그 障礙(장애)가  
 가장 적은 길을 무엇인가? 하면 人民(인민)의 自由(자유) 平等(평등)이 卽(즉)  
 이것이다. 萬若(만약) 人類(인류)의게 自由(자유) 平等(평등)이라는 것이 없다  
 하면 社會(사회)의 生存(생존) 幸福(행복)을 얻을 때에 恒常(항상) 障礙(장애)가  
 生(생)기는 일이 많할 것이다. 또 다시 生覺(생각)하여 보아도 알 것이다.  
 卽(즉) 一個人(일개인)의 힘으로 多數(다수) 人民(인민)의 生存(생존) 幸福(행복)  
 을 圖謀(도모)함과 多數(다수) 人民(인민)의 힘에 맞기여서 그 生存(생존) 幸福(행  
 복)을 圖謀(도모)하게 함과는 그 困難(곤란)이 어느 것에 많하며 어느 것에  
 적을가? 그 生存(생존) 幸福(행복)을 圖謀(도모)함에는 그 人民(인민)으로 하  
 야곰 自由(자유)스럽게 活動(활동)식함과 이를 束縛(속박) 牽制(견제)함과 어  
 느 것이 果然(과연) 障礙(장애)가 많할 것인가?는 다시 識者(식자)의 判斷(판  
 단)을 要(요)하지 아니 할 것이다. 그런 故(고)로 太古(태고) 野蠻人(야만인)의  
 情狀(정상)을 보면 各人(각인)이 다 武器(무기)를 가지고 自己(자기)의 生存(생  
 존)을 圖謀(도모)하얏스며 婦女(부녀)까지도 各各(각각) 武器(무기)를 携帶(휴대)  
 식힌 것은 의미 各人(각인)이 各個(각개)의 自由(자유)를 가지고 充分(충분)히  
 活動(활동)하는 것이 便利(편리)함을 知得(지득)한 까닭이다.

「要(요)컨드 다 自由(자유) 平等(평등)의 主義(주의)에서 生(생)긴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하고 余(여)가 所謂(소위) 自然法(자연법)이라고 말한 것은 卽(즉) 이것을 이름이오 또 自然法(자연법)을 따라서 請求(청구) 할 만한 權利(권리)를 自然(자연)의 權利(권리)라고 한다. 故(고)로 人類(인류)가 自然(자연)의 權利(권리)를 求(구)하는 것은 卽(즉) 人類(인류)가 生存(생존)의 障礙(장애) 적은 길을 求(구)하는 때문이다. 그 人類(인류)가 生存(생존)의 障礙(장애)가 적은 길을 求(구)하는 것은 卽(즉) 人類(인류)가 生存(생존)을 求(구)하는 까닭이다. 그 人類(인류)의 生存(생존)을 求(구)하기를 爲(위)함이오 그 人類(인류)의 幸福(행복)을 求(구)求(구)하는 것은 卽(즉) 人類(인류)의 幸福(행복)(譯者註(역자주) 功利(공리) Utility를 가리킴)을 求(구)하기 爲(위)함이오 그 人類(인류)의 幸福(행복)을 求(구)함은 卽(즉) 人類(인류)의 目的(목적)을 達(달)하기 爲(위)함이다. 그 人類(인류)가 目的(목적)을 達(달)하고자 함은 즉 自然力(자연력)의 變化(변화)를 完全(완전)히 하고자 하는 때문이다. 그 自然(자연)의 變化(변화)를 完全(완전)히 하라고 하는 것은 즉 不消不滅(불소불멸)한 自然力(자연력)의 作用(작용)에 從(종)함이다. 그럼으로 自然法(자연법)에서 生(생)기는 人爲(인위)의 製作(제작)이 아니오 天賦人權(천부인권)이다.」

「天賦人權(천부인권)은 이미 陳述(진술)한 바와 갖치 天地(천지) 自然(자연)으로 生(생)기는 것이오, 權力(권력)의 大小(대소)와 時勢(시세)의 異同(이동)에 因(인)하여 生(생)기는 것이 안이다」 「그럼으로 古今(고금)의 法律家(법률가)는 法律上(법률상) 두 問題(문제)를 가지고 있다. (1)은 法律(법률)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문제)이니 大凡(대범)한 法律(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主治者(주치자)가 있어서 비로소 生(생)긴 것이다. 故(고)로 나라에 主治者(주치자)라는 것이 있어서 이를 施行(시행)할 때에는 아모리 如何(여하)한 壓制(압제)와 束縛(속박)의 命令(명령)이라도 모도 다 이를 法律(법률)이라고 한다. 例(예)를 들어 말하면 昔日(석일)에 一枝(일지)를 折(절)하는 者(자)는 一指(일지)를 斬(참)한다 하는 것도 一(일) 國民(국민)의게 반다시 이를 직히라고

命(명령)만 하면 이것이 卽(즉) 그 나라의 法律(법률)이다. 또 (2)는 法律(법률)은 如何(어하)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문제)다. 法律(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元來(원래) 人民(인민)의 幸福(행복)을 크게 함으로써 그 目的(목적)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可成的(가성적) 人民(인민)의 生活(생활)에 障礙(장애)가 없도록 可成的(가성적) 人民(인민)의 生活(생활)을 完全(완전)히 하도록 制定(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要(요)컨대 (1)은 古來(고래)로 存在(존재)해야 온 法律(법률)의 模樣(모양)이오 (2)는 自然法(자연법)에 基因(기인)하여 生(생)기여 나올 것을 말함이다.」 「卽(즉) 에-링그氏(씨) 等(등)은 古來(고래)로 人類(인류)가 서로 競爭(경쟁)하여서 그 權利(권리)를 請求(청구)해야 함으로 法律上(법률상) 權利(권리)가 伸張(신장)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然(연)이나 그 法律上(법률상) 權利(권리)가 基因(기인)할 만한 基礎(기초)는 人民(인민)의 幸福(행복)을 求(구)하는 自然法(자연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다시 에-링그氏(씨)의 設(설)이 이러한 原因(원인)을 말하여 틀림없음을 復言(부언)하였다.

「千六七百年代(1600-1700년대)에 歐洲(구주) 各國(각국)에서는 壓制(압제) 束縛(속박)의 政治(정치)가 盛行(성행)하였다. 나폴레옹 一世(1세)갓흔 사람은 佛國(불국)의 古來(고래) 習慣(습관) 人情(인정)을 不願(불원)하고 僅纔(근재)의 時日(시일)을 期(기)하여 所謂(소위) 六法全書(육법전서)를 編徹(편철)하였다. 이와 같음은 다못 나폴레옹 政府(정부)에만 근치지 아니하고 卍-맨의 立法官(입법관) 中(중)에도 大段(대단)하여 主義(주의)가 流行(유행)되야서 거히 立法(입법)으로써 人民(인민) 自然(자연)의 性質(성질)을 變更(변경)할 수 있는 줄노 生覺(생각)하였었다. 故(고)로 千八百年頃(1800년경)에 이르러 사비나-라는 사람이 이어나 그 反對(반대)의 設(설)을 主張(주장)하였다. 그 大意(대의)를 말하면 元來(원래) 法律(법률)이라는 것은 天地(천지) 自然(자연)이 내는 習慣(습관)에서 生(생)긴 것이오 立法官(입법관)이 人爲(인위)로써 이를 破壞(파괴)하라

고 하더라도 到底(도저)히 實行(실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何故(하고)뇨? 하면 元來(원래) 法律(법률)은 各個(각개) 人民(인민)의 사이에 實行(실행)되는 自然(자연)의 習慣(습관)이 그 形體(형체)를 變(변)해야 表顯(표현)된 것이다. 아모리 立法官(입법관)이 人力(인력)으로써 強制(강제)로 이를 變更(변경)하라고 하더라도 徒勞無功(도로무공)에 歸(귀)할 뿐 아니라 오히려 國家(국가)에 弊害(폐해)를 끼칠 것이다. 故(고)로 모든 法律(법률)은 自然(자연)의 發生(발생)에 맞기움이 可(가)하다고 하였다. 그 門人(문인) 휴-타氏(씨)는 다시 이 主義(주의)를 主張(주장)하였다. 그럼으로 一種(일종)의 弊害(폐해)가 生(생)기여서 後世(후세)의 人民(인민)은 無爲自然(무위자연)으로써 그 權利(권리)를 伸暢(신창)하며 또는 法律(법률)도 改良(개량)되는 것 인줄노 生覺(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에 이르렀다. 이에 에-링그氏(씨)는 다시 이 弊害(폐해)를 矯正(교정)하기 爲(위)하여 生存(생존) 競爭(경쟁)이 아니면 權利(권리)를 伸暢(신창)할 수 없음을 唱道(창도)하였다.

「이는 日耳曼(일이만) 官民(관민)의 氣風(기풍)이 當時(당시)에 거히 自然(자연)으로 그 權利(권리)가 長成(장성)하는 것이라고 生覺(생각)하고 다시 生存競爭(생존경쟁)으로 그 自己(자기) 權利(권리)를 伸暢(신창)하라고 하는 思想(사상)이 없음에 이름으로 이 設(설)을 吐(토)한 것이다. 그럼으로 卽(즉) 에-링그氏(씨) 主張設(주장설)은 各國(각국) 互相(호상)의 權利(권리)는 列國(열국)이 서로 競爭(경쟁)해야 이를 伸暢(신창)하고 政府(정부)와 人民間(인민간)의 權利(권리)는 政府(정부)와 人民(인민)이 서로 競爭(경쟁)해야 이를 伸暢(신창)할 것이라고 論(논)하였다. - 이와갓치 보겠다. 이 理致(이치)로 因(인)하여 推論(추론)하면 어느 邦國(방국)의 人民(인민)이라도 나아가서 그 政府(정부)와 競爭(경쟁)함은 卽(즉) 天地(천지)의 公道(공도)인 自然法(자연법)에 따라서 自己(자기)의 權利(권리)를 伸暢(신창)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天地(천지)의 公道(공도)인 然(연)의 定規(정규)에 基因(기인)하여 生存競爭(생존경쟁)의 手段

(수단)으로 各人(각인)이 나아가서 自己(자기)의 幸福(행복)을 求(구)함은 天(천)과 人(인)이 其許(기허)하는 바다.

「人類(인류)는 다 生活(생활)하라고 하는 天性(천성)이 있는 故(고)로 적어도 그 生活(생활)을 妨害(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이를 排除(배제)하라고 하는 反對者(반대자)가 生(생)길 것이다. 이와갓치 一方(일방)에는 非常(비상)한 守舊黨(수구당)이 있어서 그 勢力(세력)을 專橫(전횡)해야 改進(개진)의 進路(진로)를 遮斷(차단)하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이에 反對(반대)하는 改進(개진)의 黨派(당파)는 더욱더욱 서로 抵抗(저항)해야 或(혹)은 意外(의외)의 變(변)을 일으키는 일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 論文(논문)을 紹介(소개)하는 同時(동시)에 意見(의견)을 加(가)하여 보라고 하였었다. 然(연)이나 너무나 기러졌으므로 後日(후일)에 機會(기회)를 어드면 하고자 한다. 다못 讀者(독자) 諸君(제군)의 參考(참고)와 批判(비판)의 材料(재료)에 供(공)함에 不過(불과)하다.

- 十一月(11월) 二十四日(24일)-

# 人格<sub>인격</sub>本位<sub>본위</sub>의 生活<sub>생활</sub>

- 『학지광』 제21호 | 동경유학생학우회(1921.01) -

無限<sub>(무한)</sub>에서 無限<sub>(무한)</sub>으로 흐르는 自然的<sub>(자연적)</sub> 變化<sub>(변화)</sub>는 人類<sub>(인류)</sub>로 하여곰 無意識的<sub>(무의식적)</sub> 經過<sub>(경과)</sub>를 許諾<sub>(허락)</sub>치 아니하였다. 古代<sub>(고대)</sub>에는 古代<sub>(고대)</sub>에 適當<sub>(적당)</sub>한 人類<sub>(인류)</sub>의 活動<sub>(활동)</sub>이 있었고 中古<sub>(중고)</sub>에는 中古<sub>(중고)</sub>에 相當<sub>(상당)</sub>한 人生<sub>(인생)</sub>의 生活<sub>(생활)</sub>이 있는 것과 같치 近世<sub>(근세)</sub>와 現代<sub>(현대)</sub>에도 또한 그 時代的<sub>(시대적)</sub> 特色<sub>(특색)</sub>이 있다. 天賦人權說<sub>(천부인권설)</sub>을 中心<sub>(중심)</sub>으로 한 十八世紀<sub>(18세기)</sub> 後半<sub>(후반)</sub> 歐洲<sub>(구주)</sub>의 思想<sub>(사상)</sub>은 貴族政治<sub>(귀족정치)</sub>를 打破<sub>(타파)</sub>한 佛國革命<sub>(불국혁명)</sub>을 이르고 人格的<sub>(인격적)</sub> 價值<sub>(가치)</sub>를 本位<sub>(본위)</sub>로 한 現代思想<sub>(현대사상)</sub>은 經濟的<sub>(경제적)</sub>으로 世界<sub>(세계)</sub> 改造<sub>(개조)</sub>를 提唱<sub>(제창)</sub>하였다. 政治的<sub>(정치적)</sub>으로 大變革<sub>(대변혁)</sub>을 指導<sub>(지도)</sub>하고 成功<sub>(성공)</sub>한 天賦人權說<sub>(천부인권설)</sub>은 自由<sub>(자유)</sub>와 平等<sub>(평등)</sub>의 精神<sub>(정신)</sub>을 法律的<sub>(법률적)</sub> 形式<sub>(형식)</sub>으로 表現<sub>(표현)</sub>하였다. 이것이 卽<sub>(즉)</sub> 人權宣言<sub>(인권선언)</sub>이다. 「사람은 自由<sub>(자유)</sub>며 또한 同權<sub>(동권)</sub>으로 生活<sub>(생활)</sub>할 것이요 모든 政治的<sub>(정치적)</sub> 結社<sub>(결사)</sub>의 目的<sub>(목적)</sub>은 사람의 天賦<sub>(천부)</sub>한 不可讓<sub>(불가양)</sub>의 權利<sub>(권리)</sub> 保全<sub>(보전)</sub>에 있다. 이

러한 權利(권리)는 自由(자유)와 財產(재산)과 安全(안전)과 壓制(압제)에 對(대)
 한 反抗(반항) 등(등)이라고 하였다. 其外(기외)에 天賦人權(천부인권)에 對(대)
 하여 規約(규약)을 設(설)하고 身體自由(신체자유) 信教自由(신교자유) 言論著作
 自由(언론저작자유) 등(등)의 原理(원리)를 聲明(성명)하였다고 한다. 天賦人權
 說(천부인권설)은 勿論(물론) 어느 眞理(진리)를 包含(포함)함도 事實(사실)이오 또
 는 그를 證明(증명)하던 自然法學說(자연법학설)도 그 힘이 적지 아니하였
 섰다. 그러함으로 그와 갖흔 偉大(위대)한 勢力(세력)으로 當時(당시)의 人
 心(인심)을 支配(지배)하였다. 然(연)이나 天賦人權說(천부인권설)이 當時(당시)에
 歐洲(구주) 全局(전국)을 支配(지배)한 主力(주력)되는 原因(원인)은 다못 自然
 法(자연법) 學者(학자)가 證明(증명)한 冷靜(냉정)한 論理(논리)와 條理(조리)가 밝
 은 理論(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禽獸(금수)갓흔 待遇(대우)와 奴隸(노예)같
 은 屈服(굴복) 中(중)에서 生活(생활)하던 民衆(민중)의 生活的(생활적) 要求(요구)
 에 잇섯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다. 多數(다수) 民衆(민중)이 共鳴(공명)하고
 協力(협력)하게 된 것은 冷靜(냉정)한 論理(논리)의 歸結(귀결)에 있는 것이 아
 니라 피가 끌코 情(정)이 타는 그네들의 生活(생활) 事實(사실)에서 우러나
 온 意慾(의욕)이오 要求(요구)라한다. 그들이 부르지지고 求(구)한 自由(자유)
 와 平等(평등)은 緻密(치밀)한 理論的(이론적) 構想(구상)에 잇지 아니하고 人
 衆(인중)의 生活的(생활적) 要求(요구)에 잇서다. 十八世紀(18세기) 下葉(하엽) 以
 後(이후)에 歐洲(구주)를 支配(지배)한 自由(자유) 平等(평등) 運動(운동)의 中心(중
 심)이 되는 原因(원인)은 學理(학리)에 잇지 아니하고 人衆(인중)의 生活的(생
 활적) 要求(요구)에 잇섯다. - 사람으로 사람답지 못한 境遇(경우)에서 버서
 나라고 憤起(분기)함에 잇섯다. - 모든 사람의 人格(인격)을 그대로 차지
 라고 함에 잇섯다. 이에 對(대)하여 當時(당시) 歐洲(구주)에는 그 反動的(반
 동적) 運動(운동)도 적지 아니하였섯다. 然(연)이나 洪水(홍수)갓치 흐르는
 民衆(민중)의 思想(사상)은 엇지하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方法(방법)과 組

織(조직)으로 抑壓(억압)하라고 하였으나 民衆(민중)의 生活的(생활적) 要求(요구)요 그 表徵(표징)인 人權宣言(인권선언)의 勢力(세력)은 阻止(조지)하지 못하였다.

然(연)이나 人類(인류)의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의 原理(원리)를 發表(발표)한 佛國(불국) 革命(혁명)은 너무나 法律的(법률적)으로만 人格(인격)의 平等(평등)을 세우라고 한 傾向(경향)이 있었다. 이 點(점)에서 큰 缺欠(결핍)이 있다고 한다. 그럼으로 貴族(귀족)과 僧侶(승려)에 對(대)하여 有產階級(유산계급)이 政治的(정치적) 解放(해방)을 바듬에 不過(불과)하고 마랏다한다. 이것이 佛國(불국) 革命(혁명)을 가르쳐서 多數人(다수인)의 成功(성공)이 아니라 小數(소수)의 有產階級(유산계급)의 革命(혁명)이라고 誹謗(비방)하는 바다. 그 革命(혁명)의 事業(사업)은 多數(다수) 民衆(민중)의 努力(노력)과 貢獻(공헌)으로 成功(성공)하였지만은 그 利益(이익)은 少數人(소수인)에게 도라가고 마랏다. 勿論(물론) 無產階級(무산계급)에도 全然(전연)히 關係(관계)가 없슨 것은 아니다. 貴族(귀족)과 僧侶(승려) 앞에는 禽獸(금수)와 奴隸(노예) 노릇을 하던 그들이 如何間(여하간) 法律上(법률상)으로는 다 自由(자유)요 平等(평등)스럽게 되었다. - 그 人格(인격)을 認定(인정)하게 되었다. 然(연)이나 法律(법률)은 어느 때던지 形式(형식)이오 거죽이다. 經濟的(경제적)으로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을 가지지 못한 民衆(민중)의 實生活(실생활)은 다시 慘酷(참혹)한 境遇(경우)를 免(면)치 못하였다. 그럼으로 民衆(민중)은 經濟的(경제적)으로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을 携得(휴득)하기 爲(위)하여 努力(노력)하여야왔다. - 보다 完全(완전)한 人格(인격)을 차지라고 함이다. 그것이 社會運動(사회운동)이오 그 問題(문제)가 社會問題(사회문제)다. 그럼으로 勞動問題(노동문제)가 그의 中心(중심)인 것도 너무나 明白(명백)하다. 勞動問題(노동문제)는 勞動者(노동자)의 勞動時間(노동시간)을 短縮(단축)하거나 賃金(임금)을 增加(증가)함에 근치지 아니하고 勞動者(노동자)는 보다 根據(근거)있고 確實(확실)한

무엇을 要求(요구)한다. 다시말하면 勞動者(노동자)의게 아모리 慈善(자선)을 베풀고 溫情(온정)을 行(행)할지라도 人格(인격)을 尊重(존중)하지 아니하는 慈善(자선)과 溫情(온정)에 對(대)하여야는 不平(불평)이 없으실 수 없다. 勞動者(노동자)도 모든 사람과 갖치 人格(인격)의 所有者(소유자)오 그 個性(개성)의 實現(실현)으로서 人類(인류) 社會(사회)에 奉仕(봉사)하는 以上(이상)에는 平等(평등)한 人格(인격)을 認定(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元來(원래) 經濟組織(경제조직)은 人生(인생)이 物質的(물질적) 生活(생활)을 維持(유지)하기 爲(위)하여 實行(실행)하는 社會的(사회적) 活動(활동)에 不過(불과)한 것이다. 勞動者(노동자)도 資本家(자본가)와 갖치 經濟組織(경제조직)의 要素(요소)며 生産(생산) 製造(제조)에 必要(필요) 部分(부분)이다. 各各(각각) 그 職分(직분)을 다함에 上下(상하)와 輕重(경중)과 貴賤(귀천)이 없을 것이다. 經濟上(경제상) 分配(분배)의 目的(목적)이 生產品(생산물)에 對(대)한 報酬(보수)에 있다하면 資本家(자본가)와 勞動者(노동자) 間(간)에 特別(특별)한 輕重(경중)의 別(별)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은 勞動者(노동자)의 人格(인격)을 無視(무시)하고 다못 機械(기계)로 使役(사역)하며 그 피를 잇는대로 빠라먹고 있는 것이다. 勞動者(노동자)도 사람이오 모든 사람과 갖치 社會(사회)를 組織(조직)하며 維持(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以上(이상)에는 그 人格(인격)을 尊重(존중)하고 그 社會的(사회적) 地位(지위)를 確認(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그 人格的(인격적) 價値(가치)를 發輝(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人格的(인격적) 價値(가치)를 發輝(발휘)함으로 共同生活(공동생활) - 卽(즉) 社會的(사회적) 生活(생활)의 目的(목적)을 達(달)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資本家(자본가)나 勞動者(노동자)를 勿論(물론)하고 刻刻(각각) 그 人格(인격)을 尊重(존중)함으로 社會的(사회적) 結合(결합)과 發達(발달)을 期望(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經濟上(경제상)으로 人格(인격)을 本位(분위)삼는 制度(제도)가 實現(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今日(금일)의 現象(현상)은 人生(인생) 生活(생활)을 도움기 爲(위)하



야 生(생)긴 經濟組織(경제조직)이 오히려 人生(인생)의 意義(의의)있는 生活(생활)을 脅迫(협박)하고 破壞(파괴)하는 것이 되고 마랐다. 다시말하면 人生(인생) 生活(생활)의 根本(근본)인 人格(인격)을 無視(무시)한 까닭이다. 人格(인격)을 本位(본위)로 하는 經濟的(경제적) 生活(생활)이 비로소 人生(인생)의 意義(의의)를 發輝(발휘)할 수 있고 그 理想(이상)을 實現(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勞動者(노동자)가 慈善的(자선적)이며 溫情的(은정적)인 制度(제도)와 組織(조직)에 對(대)하여 滿足(만족)할 理致(이치)가 없다. 人格(인격)이 確實(확실)하고 完全(완전)하게 認定(인정)되는 날까지는 根本的(근본적) 不平(불평)은 없서지지 아니할 것이다. 社會問題(사회문제)의 完全(완전)한 解決(해결)은 人格(인격)을 本位(본위)로 한 制度(제도)와 組織(조직)이 實施(실시)되는 때에 비로서 있을 것이다.

經濟的(경제적)으로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이 없으면 法律的(법률적) 自由(자유)와 平等(평등)은 無意味(무의미)한 것이다. 經濟的(경제적) 自由(자유) 平等(평등)은 人格(인격) 尊重(존중)을 중심으로한 人格(인격) 本位(본위)의 解決(해결) 方法(방법)이 아니면 完全(완전)하게 落着(낙착)식힐 수 없음도 明白(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過去(과거)에 人類(인류)들이 努力(노력)하여야은 自由(자유) 平等(평등)의 事業(사업) 目的(목적)은 人格(인격)을 本位(본위)로 한 社會制度(사회제도)와 國家組織(국가조직)을 實現(실현)하지 아니하면 達(달)할 수 없다. 家門(가문)이나 階級(계급) 本位(본위)의 政治(정치)를 버리고 人格(인격) 本位(본위)의 政治(정치)로! 國家(국가) 本位(본위)의 國家(국가) 生活(생활)에서 人格(인격) 本位(본위)의 國家(국가) 生活(생활)로! 因襲(인습)이나 慣習(관습) 本位(본위)의 道德(도덕)에서 버서나서 人格(인격) 本位(본위)의 道德(도덕)으로! 우리 사람을 이리하여야 할 것이다. - 아니 現今(현금) 世界(세계)는 이로 向(향)하여 動(동)하고 있다.

政治(정치)는 共同生活(공동생활) 團體(단체)의 利益(이익)을 目的(목적)하는

것이다. 萬一(만일) 政治(정치)가 그 共同生活(공동생활) 團體(단체)의 利益(이익)을 無視(무시)한다면 그는 政治(정치)가 아니라고 나는 斷言(단언)한다. 政治(정치)가 共同生活(공동생활) 團體(단체)의 利益(이익)을 目的(목적)하는 以上(이상)에는 그 目的(목적)을 達(달)할 수 있음에 合當(합당)한 意思(의사)의 作用(작용)으로 그 政治(정치)는 運用(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生活(생활) 團體(단체)의 共同(공동) 目的(목적)에 合當(합당)한 意思(의사)인가 아닌가를 判斷(판단)함에 그 共同生活(공동생활) 團體(단체)를 組織(조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意思(의사)에 對(대)하여 多數(다수)가 贊成(찬성)하는가? 多數(다수)가 贊成(찬성)하지 아니하는가? 에 因(인)하여 決定(결정)될 것이다. 그와 反對(반대)로 一(일) 家門(가문)이나 一(일) 階級(계급)의 意思(의사)로 政治(정치)를 專斷(전단)하는 때에는 過去(과거) 歷史(역사)가 證明(증명)하는 바와갓치 共同(공동) 團體(단체)의 利益(이익) - 卽(즉) 政治(정치)의 目的(목적)을 害(해)하는 專制政治(전제정치)의 本色(본색)이 發生(발생)되는 것이다. 이에 輿論(여론) 政治(정치)라야 그 目的(목적)을 達(달)할 수 있음도 分明(분명)하다. 輿論(여론)의 發生(발생)은 言論自由(언론자유)가 必要條件(필요조건)이오 政治的(정치적)으로 그 國民(국민)의게 人格(인격)을 尊重(존중)함이 도한 그 前提(전제)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 人格(인격)을 本位(본위)로 하는 輿論(여론) 政治(정치)가 비로소 國民(국민)의 自由(자유)를 줄 수 있고 그 自由(자유)가 있음으로 그 國民(국민)은 人生(인생)의 意味(의미)가 있는 政治的(정치적) 生活(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國家的(국가적) 生活(생활)을 하는 것은 國家(국가)라고 하는 사람 以外(이외)의 한 特殊(특수)한 無形體(무형체)에 그 目的(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國家(국가)를 組織(조직)한 모든 사람이 그 生活上(생활상) 必要(필요)로 보다 便利(편리)하고 보다 向上(향상)하고자 하는 意欲(의욕)으로 因(인)하여 生(생)긴 政治的(정치적) 結合(결합)에 不過(불과)한 것이다. 人生(인생)된

價値(가치)를 보다 더 잘 發輝(발휘)하고 意義(의의)를 豊富(풍부)하게 하기 爲(위)함이다. 그럼으로 國家(국가) 生活(생활)의 目的(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곰 各各(각각) 그 人格的(인격적) 價値(가치)를 잘 培養(배양)하고 잘 發輝(발휘)하게 함에 있을 것이다. 國家(국가) 生活(생활)의 目的(목적)이 그 國民(국민)의 人格的(인격적) 價値(가치)를 培養(배양)하고 發輝(발휘)함에 있다하면 國民(국민)의 人格(인격)을 尊重(존중)하여야 할 것도 疑心(의심)치 못할 일이다. 人格(인격) 尊重(존중)의 觀念(관념)과 矛盾(모순)이 많은 國家(국가) 至上主義(지상주의)가 國家(국가) 生活(생활)의 自體(자체) 目的(목적)과 不합(불합)함과 또는 그와 同時(동시)에 不合理的(불합리)한 것임도 알 수 있겠다. 그럼으로 國民(국민)의 自由(자유)를 無視(무시)하고 人格(인격)을 本位(본위)로 하지 아니하는 國家(국가) 生活(생활)은 그 國家(국가) 生活(생활)의 自體(자체)의 本意(본의)와 目的(목적)을 無視(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와갓치 道德(도덕)도 우리 人類(인류)가 生活(생활)의 安全(안전)과 發展(발전)을 圖謀(도모)하기 爲(위)하여 實行(실행)하는 共同生活上(공동생활상) 必要(필요) 行爲(행위)에 不過(불과)한 것이다. - 卽(즉) 다시말하면 社會的(사회적) 生活上(생활상) 必要(필요)로 因(인)하여 生(생)긴 行爲(행위)의 規範(규범)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으로 生活(생활)의 安全(안전)과 發展(발전)이 道德(도덕)을 支配(지배)할 것이오, 道德(도덕)이 生活(생활)을 支配(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人智(인지)의 程度(정도)와 生活(생활)의 實質(실질)이 한 道德(도덕) 範圍(범위) 內(내)에서 더 나아감이 없을 때에는 그 道德(도덕)에 滿足(만족)하지만은 한번 그 人智(인지)가 發達(발달)하고 生活(생활)이 發展(발전)함에 이르면 그 옛 道德(도덕)으로 滿足(만족)할 수 없슴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道德(도덕)의 變遷(변천)이 生(생)길 것이다. 人智(인지)가 未開(미개)한 時代(시대)에는 慣習(관습)과 先賢(선현)의 敎訓(교훈)에 因(인)하여 아모 批判(비판)도 없고 아모 考察(고찰)도 없시 一定(일정)한 規範(규범)을 그대로 직히고 있었다.

그 時代(시대)에 있어서서는 그리하더라도 別(별)다른 弊害(폐해)가 없었을 것이다. 然(연)이나 人智(인지)가 發達(발달)하고 生活(생활)이 變遷(변천)되는 今日(금일)에도 先賢(선현)의 言行(언행)이 慣習(관습)인 故(고)로 그대로 行(행)하는 것이 道德(도덕)이라고 固守(고수)하면 退步(퇴보)뿐니오 進步(진보)는 없을 것이다. 因襲(인습) 本位(본위)인 慣習(관습) 本位(본위)인 우리 社會(사회)의 現在(현재) 道德(도덕)은 敏活(민활)한 批判(비판)을 要(요)하며 嚴正(엄정)한 自由(자유) 選擇(선택)을 要(요)한다. 그 批判(비판)과 自由(자유) 選擇(선택)은 人格(인격)을 尊重(존중)하는 곳에 있을 뿐이다. 人格(인격)을 無視(무시)하는 社會(사회)에는 오작 強行(강행)과 盲從(맹종)이 있을 것이오. 따라서 그 結果(결과)는 退步(퇴보)와 滅亡(멸망)일 것이다. 人格(인격)을 尊重(존중)하고 그 人格(인격)의 光輝(광휘)와 偉力(위력)으로 各自(각자)의 行爲(행위)를 批判(비판)하며 支配(지배)하는 때에 비로소 進步(진보)가 있고 向上(향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人格(인격) 本位(본위)의 道德(도덕)이라야 人生(인생)의 幸福(행복)을 주는 行爲(행위)의 規範(규범)이 될 것이다. 時代(시대)가 變遷(변천)함을 不拘(불구)하고 因襲(인습)과 慣行(관행)으로 本位(본위)를 삼는 道德(도덕)이 있다하면 그는 우리의게 強行(강행)을 施(시)하고 盲從(맹종)을 要求(요구)하는 行爲(행위)의 暴君(폭군)이오 人生(인생) 行爲(행위)의 規範(규범)은 아니라고 나는 믿는다. 그는 人生(인생)의게 오작 苦痛(고통)과 退步(퇴보)를 줄 뿐이다.

나는 우리의 모든 生活(생활)에서 人格(인격)을 主張(주장)한다. 人格(인격) 本位(본위)를 가지는 生活(생활)에 生命(생명)이 있고 意義(의의)가 있을 것이다. 人格(인격)을 無視(무시)하는 社會(사회)나 國家(국가)는 사람이라는 本意(본의)인 人格(인격)을 無視(무시)한다는 意味(의미)에서 사람을 無視(무시)하는 社會(사회)나 國家(국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無視(무시)하는 (人格(인격)을 無視(무시)하는) 社會(사회)나 國家(국가)는 사람이 아닌 - 사

람 以外(이외)의 禽獸(금수) 社會(사회)거나 或(혹)은 神(신)의 社會(사회)라고 할 것이오, 人生(인생) 社會(사회)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故(고)로 나는 다시 말한다. 人生(인생) 社會(사회)에는 모든 사람의 人格(인격)을 本位(분위)로 하는 것이 眞理(진리)오, 道里(도리)임을!!!

-十二月(12월) 初(초) 二日(2일)-

編輯人(편집인)

# 人生<sup>(인생)</sup>의 意義<sup>(의의)</sup>에 對<sup>(대)</sup>한 考察<sup>(고찰)</sup>

- 『학생계』 13호(1922.05.01) -

人生<sup>(인생)</sup>으로 그 人生<sup>(인생)</sup>의 意義<sup>(의의)</sup>와 價値<sup>(가치)</sup>를 完全<sup>(완전)</sup>히 實  
現<sup>(실현)</sup>하기 爲<sup>(위)</sup>하여 모인 金錢<sup>(금전)</sup>의 所有者<sup>(소유자)</sup>가 終末<sup>(종말)</sup>에는 守  
錢奴<sup>(수전노)</sup>가 되어서 人生<sup>(인생)</sup>이 人生<sup>(인생)</sup>노릇하기 爲<sup>(위)</sup>하여 모은 金  
錢<sup>(금전)</sup>의 奴隸<sup>(노예)</sup>가 되고 마는 것을 보고 사람은 그 愚昧<sup>(우매)</sup>함에  
一<sup>(일)</sup>대 驚異<sup>(경이)</sup>와 지나가는 冷笑<sup>(냉소)</sup>를 禁<sup>(금)</sup>치 못한다.(사람이 안  
닌 奴隸<sup>(노예)</sup> 무리는 그를 아지 못하겠지만은) ○○○○○○ ○○○○  
○○○○○○○○○○○○○○○○○○ ○○○○○○○○○○ ○○○○○ ○○○  
○○○○○○○○ ○ ○○○○○○○○○○○○○○○○○○<sup>1</sup> 現代<sup>(현대)</sup> 各處<sup>(각</sup>  
處)에는 사람이 잘 살기 爲<sup>(위)</sup>하여 建設<sup>(건설)</sup>한 모든 構成物<sup>(구성물)</sup>에 虐  
待<sup>(학대)</sup>를 受<sup>(수)</sup>하며 그 發展<sup>(발전)</sup>을 制止<sup>(제지)</sup>바음을 보고 - 又<sup>(우)</sup>는 이  
를 當<sup>(당)</sup>하는 사람들이 다시 人格<sup>(인격)</sup> 問題<sup>(문제)</sup>를 提唱<sup>(제창)</sup>하는 것은

---

1. '○'으로 처리된 부분은 일제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人類歷史(인류역사)의 必然的(필연적) 歸結(귀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人格(인격)의 意義(의의)를 明白(명백)히 할 必要(필요)가 있고 그 前提(전제)로 사람의 精神的(정신적) 生活(생활)에 言及(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은 어대서 生(생)기어서 어대로 도라가는 것이며 무엇으로 生(생)기어서 무엇과 如何(여하)히 相關(상관)되는 것인가 하는 問題(문제)는 實(실)로 巨大(거대)한 問題(문제)이요 알기 어려운 事實(사실)이다. 卽(즉) 사람의 本性(본성)과 本質(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問題(문제)는 限(한)없는 過去(과거)와 永遠(영원)한 未來(미래)를 通(통)하여 不可思議(불가사의)中(중)에서 議論(의논)될 것이다. 然(연)이나 사람으로 이 世上(세상)에 나와서 사람으로 사는 것은 明白(명백)한 實証(실증)이며 自明(자명)한 事實(사실)이다.

이 사람은 다못 그 身體(신체)가 生理的(생리적) 事實(사실)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自意識(자의식)으로 意向(의향)과 慾望(욕망)을 가지는 活動體(활동체)다. 卽(즉) 사람이 사는 것은 自然(자연)의 活動(활동)과 本能(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內部的(내부적) 慾望(욕망)과 外部的(외부적) 刺戟(자극)을 가지고 自己(자기)의 生活(생활)을 여러 가지로 組織(조직)하여 가며 統一(통일)해야 가는 것이다. 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라가는 이 生命(생명)은 다못 生理的(생리적) 事實(사실)에만 限(한)해야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時(시)에는 自然(자연)의 衝動(충동)과 本能(본능)으로 發表(발표)하고 어느 機會(기회)에는 意向(의향)과 慾望(욕망)으로 活動(활동)하고 또 어느 때에는 外物(외물)과 接觸(접촉)하여 感覺(감각)과 知覺(지각)도 되며 內部的(내부적)으로 情緒(정서)와 想像(상상), 記憶(기억), 理性(이성)으로 出動(출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總括(총괄)되고 統一(통일)되어서 우리 사람의 行爲(행위)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物(물)에 接(접)하며 人(인)에 應(응)하여 營養的(영양적) 生活(생활)도 하며 繁殖的(번식적) 生活(생활)도 하고 또는 藝術的(예술적) 生活(생활)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過去(과거)를 回顧(회고)도 하며 未



來(미래)를 豫想(예상)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事實(사실)을 總括(총괄)하여 自己意識(자기의식)에 統一(통일)하는 故(고)로 우리 사람의계는 眞實(진실)한 生命(생명)이 있는 것이다. 生命(생명)을 가진 우리 사람의계는 自己(자기)의 內部的(내부적) 生活(생활)과 外部的(외부적) 생활을 總括(총괄)하며 統一(통일)하는 무슨 힘이 있지 아니할 수 없다. - 卽(즉) 自己(자기)의 모든 生活(생활)을 統一(통일)하는 무슨 原理(원리)가 업을 수 없다.

우리 사람의 意識(의식)은 一單純(일단순)한 活動(활동)이 아니라고 한다. 사람의 意識現象(의식현상)에는 하나도 獨立(독립)해야되는 것이 업고 반 다시 다른 것과 關係(관계)되어 가지고 成立(성립)되는 것이라고 한다. 一瞬間(일순간)의 意識(의식)이라도 單純(단순)한 것이 아니오 그 中(중)에는 여러 가지 複雜(복잡)한 要素(요소)를 包含(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와갓치 여러 가지 複雜(복잡)한 要素(요소)는 서로 獨立(독립)하며 孤立(고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彼此間(피차간)에 어느 關係(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卽(즉) 서로 好相間(호상간)에 업지 못할 意味(의미)가 各各(각각) 要素(요소)에 있다. 彼(피)는 此(차)에 對(대)하여 意味(의미)를 有(유)하고 此(차)는 彼(피)에 對(대)하여 意味(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서로 업지 못할 關係(관계)에 있다. 다못 一時的(일시적)에 生(생)기는 意識(의식)의 組織(조직)이 이리할뿐 아니라 一生(일생)의 意識(의식)도 亦然(역연)하여 서로 關係(관계)가 있고 意味(의미)가 있는 一體系(일체계)로 볼 수 있다. 一平生(일평생)의 意識(의식) 全體(전체)를 統一(통일)한 것이 自己(자기)라고 한다. 그럼으로 自己(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 意識(의식) 全體(전체)의 統一(통일)을 가라침이라고 볼 것이다.

이와갓치 우리의 意識(의식)은 여러 가지 要素(요소)가 綜合(종합)되어서 成立(성립)된다. 그 要素(요소)가 한 意識(의식)으로 성립되는 것은 어느 根本的(근본적) 힘에 因(인)함이다. 元來(원래) 우리 사람의 意識(의식)은 한 活

動(활동)이다. 그 意識(의식)의 根底(근저)에는 어느 唯一(유일)의 힘(或(혹)은 原理(원리)이 活動(활동)하는 것이다. 知覺(지각)이나 衝動(충동) 갖춘 瞬間的(순간적) 意識(의식)에도 이 힘이 나타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思惟(사유), 想像(상상), 意志(의지)와 갖춘 意識的(의식적) 活動(활동)에는 그 힘이 一層(일층) 더 深遠(심원)한 形態(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勿論(물론) 意識(의식)의 內容(내용)을 個個(개개)로 各各(각각) 分析(분석)해야 가지고 觀察(관찰)하면 그 統一(통일)한 「어느힘」을 發見(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譬(비)하야 말하면 滿發(만발)한 花草(화초)를 보고 우리 사람이 一種(일종) 特殊(특수)한 美感(미감)을 느낀다. 그 美感(미감)은 分析(분석)하야 理解(이해)하지 못할 感情(감정)이오 다못 直覺(직각) 自得(자득)할 뿐이다. 이와갓치 個個(개개)로 分析(분석)하야서 理解(이해)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그 意識(의식) 內容(내용)이 綜合(종합)된 곳에 嚴然(엄연)히 움지길 수 업는 한 事實(사실)도 存在(존재)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여러 가지 要素(요소)는 그 統一力(통일력)의 部分的(부분적) 力(력)이 아니다. 그 統一力(통일력)은 不可分(불가분)의 純一(순일)한 힘이다.

人格(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以上(이상)에 咆(포)한 바와 갓치 人生(인생)에 屬(속)한 內外(내외) 生活(생활)의 統一力(통일력)을 가라치는 것이다. 또한 人格(인격)의 向上(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豊富(풍부)한 要素(요소)에 因(인)하야 그 統一力(통일력)이 成長(성장)하고 發展(발전)함을 이룸이라고 하리라. 以下(이하)에 二三(이삼) 學者(학자)의 人格(인격)에 對(대)한 說明(설명)을 紹介(소개)하야 이것을 더 明白(명백)히 하고저 한다.

阿部次郎氏(아부차랑씨)는 말하기를 (中央公論(중앙공론) 大正(대정) 十年(10년) 一月(1월) 一日(1일) 發行號(발행호)에 「人生批評(인생비평)의(의) 原理(원리)そして(로서의) 人格主義的(인격주의적) 見地(견지)」라는 論文(논문) 「나는 人格(인격)의 概念(개념)을 明白(명백)히 하기 爲(위)하야 이에 四個(4개) 要件(요건)의

標識(표지)를 드러 말할 수 있는 줄노 생각한다.

第一(제1), 人格(인격)은 物(물)과 區別(구별)되는 곳에 그 意味(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第二(제2), 人格(인격)은 個個(개개)의 意識的(의식적) 經驗(경험)의 總合(총합)이 아니오 그 底流(지류)가 되어서 이것을 支持(지대)하고 統一(통일)하는 自我(자아)다.

第三(제3), 人格(인격)은 分離(분리)(分裂(분열))하지 못할 것이라는 意味(의미)에서 個體(개체)(Individuum)다.

第四(제4), 人格(인격)은 先天的(선천적) 要素(요소)를 內容(내용)으로 한다. 이 意味(의미)에서 後天的(후천적) 性格(성격)과 區別(구별)된다. 칸트의 말노 쓰면 그는 單純(단순)한 經驗的(경험적) 性格(성격)이 아니오 叡智的(에지적) 性格(성격)을 包含(포함)하는 點(점)에 그 性質(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는 다시 物質(물질)에 對(대)하여 「物質(물질)의 所有(소유) 又(우)는 使用(사용)은 어느 條件(조건) 下(하)에서 비로소 人格(인격)의 價値(가치)를 增進(증진)하는 것이오 그 條件(조건)에 違反(위반)될 時(시)에는 오히려 人格(인격)에 煩累(번루)가 된다」 하였고 「物質(물질)에 어느 程度(정도)의 價値(가치)를 認定(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人格(인격)의 가치를 增進(증진)하는 條件(조건)」으로 보는 그는 다시 이러한 말을 하였다. 「그것이 (物質(물질)) 人格(인격) 價値(가치)의 實現(실현)에 對(대)하여 必要(필요) 不可缺(불가결)인 것이 될 時(시)에는 그 條件(조건)의 問題(문제)도 亦然(역연) 生死(생사)를 瞻(도)하는 問題(문제)가 될 수 있음도 勿論(물론)이라」고 하여 「條件(조건) 問題(문제)(物質(물질))라고 다 輕視(경시)하라는 意味(의미)가 아닌 것」을 말하였다.

桑木嚴翼氏(상목엄익씨)는 그 人生哲學(인생철학)의 見地(견지)에서 이와 「文化主義(문화주의)의 社會問題(사회문제)」三百五十六項(356항)에서 갖치 말하였다.

「人生(인생)이 自然(자연)에 對(대)하여 이를 包括(포괄)하며 다시 이에 優越(우월)할 수 있는 根據(근거)는 卽(즉) 人生(인생)의 여러 가지 諸相(제상)에 對(대)하여 이를 統一(통일)하며 그 分裂(분열)을 막는(방) 것이 아니면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人生(인생)의 諸部分(제부분)과 諸作用(제작용)에 對(대)하여 그 基礎(기초)가 될 것이다. 勿論(물론) 其(기) 諸部分(제부분)과 諸作用(제작용)을 泯(離)리는 存在(존재)치 아니하지만은 이러한 것과는 獨立(독립)한 意味(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아니될 것이다. 卽(즉) 個個(개개)의 사람 中(중)에 있고 또한 個個(개개)의 사람을 超越(초월)한 것이다. 사람은 이러한 超越者(초월자)를 自己(자기)의 作用(작용) 中(중)에서 發見(발견)함으로 因(인)하여 그 個個(개개)의 動作(동작)에 根據(근거)를 發見(발견)하고 또한 各人(각인)도 相互間(상호간)에 聯結(연결)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卽(즉) 個我(개아)에 對(대)하는(對立(대립)하는) 全我(전아)다 - 經驗的(경험적) 自我(자아)에 大(대)하는 先天的(선천적) 自我(자아)다. 이것이 또한 個人(개인)에 對(대)하는 人格(인격)이라고 稱(칭)할 수 있다. 心理學的(심리학적)으로는 다 못 意識(의식)이 統一(통일)된 狀態(상태)를 人格(인격)이라고 稱(칭)할 수 있다. 또한 經驗的(경험적)인 法律(법률)과 道德上(도덕상)에서는 다 못 어느 法律的(법률적) 道德的(도덕적) 資格(자격)을 具有(구유)함으로써 人格(인격)의 要素(요소)로 할 수가 있스리라. 그러나 余(어)가 述陳(술진)하라고 하는 人生哲學(인생철학)의 意味(의미)에서는 人格(인격)은 經驗的(경험적) 人生(인생)의 基礎(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人格(인격)의 觀念(관념)은 卽(즉) 知識哲學上(지식철학상) 主觀主義(주관주의)가 樹立(수립)됨으로 因(인)하여 비로소 成立(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이 있스 後(후)에 人生(인생)의 統一(통일)을 說明(설명)하며 自然(자연)에 對(대)하여 優越(우월) 提唱(제창)할 수가 있다. 人生哲學(인생철학)의 最後(최후)의 問題(문제)는 卽(즉) 이 人格(인격)의 基礎(기초)를 樹立(수립)하는 일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이와갓치 人生(인생)의 基礎(기초)로 人格(인격)의 觀念(관념)을 引導(인도)하는 同時(동시)에 自然(자연)의 基礎(기초)인 主觀(주관) - 卽(즉) 自我(자아)와 致點(합치점)을 認定(인정)할 수가 있다. 이 見地(견지)에서 비로소 人生(인생)과 自然(자연)을 一貫(일관)해야 哲學的(철학적)으로 說明(설명)할 수가 있다.」

西田幾多郎氏(서진기다랑씨)는 「善(선)의 研究(연구)」에서 「人格(인격)의 實現(실현)이 우리의게는 絶對的(절대적) 善(선)이라고 말하였고 또 다시 「善(선) 行爲(행위)이라고 하는 것은 다 人格(인격)을 目的(목적)으로 한 行爲(행위)다」 「人格(인격)은 모든 價値(가치)의 根本(근본)이요 宇宙間(우주간)에서 오자 人格(인격)만 絶對的(절대적) 價値(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說破(설파)한 氏(씨)는 人格(인격)에 對(대)하여 左(좌)와 如(여)히 說明(설명)하였다.

「人格(인격)의 힘(力)이라고 하는 것은 다못 動植物(동식물)의 生活力(생활력)과 갓흔 自然的(자연적) 物力(물력)을 가라침이 아니다. 또한 本能(본능)이라고 하는 것과 갓치 無意識(무의식)의 能力(능력)을 가라치는 것도 아니다. 本能(본능) 作用(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有機作用(유기작용)에서 生(생)기는 一種(일종) 物力(물력)이다. 人格(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反對(반대)로 意識(의식)의 統一力(통일력)이다. 然(연)이나 이와갓치 말한다고 人格(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各人(각인)이 表面的(표면적) 意識(의식)의 中心(중심)으로 極(극)히 主觀的(주관적)인 여러 가지의 希望(희망) 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希望(희망)은 幾(기) 部分間(부분간) 그 사람의 人格(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겠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希望(희망)을 沒却(몰각)하고 自己(자기)를 忘却(망각)한 곳에 眞實(진실)한 人格(인격)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하다고 칸트가 말한바와 갓치 全然(전연)히 經驗的(경험적) 內容(내용)을 써나서 各人(각인)의게 一般(일반)인 純理(순리)의 作用(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人格(인격)은 그 사람 그 사람을 따라서 特殊(특수)한 意味(의미)를 가지고는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眞實(진실)한 意識(의식) 統一(통일)이라

고 하는 것은 우리를 不知中(부지중)에 自然(자연)히 나타나오는 純一無雜(순일무잡)한 作用(작용)이오 知情意(지정의)의 分別(분별)업고 主客(주객)의 隔離(격리)업시 獨立(독립) 自全(자전)한 意識(의식) 本來狀態(본래상태)다. 우리의 眞實(진실)한 人格(인격)은 이러한 時(시)에 그 全體(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故(고)로 人格(인격)은 다못 理性(이성)이 아니오 慾望(욕망)도 아니며 無意識(무의식) 衝動(충동)도 아니다. 마치 天才(천재)의 神來(신래)와 갖치 各人(각인)의 內部(내부)에서 直接(직접)으로 自發的(자발적)으로 活動(활동)하는 無限(무한)한 統一力(통일력)이라고 하였고 다시 「우리의 人格(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直接(직접)으로 宇宙(우주) 統一力(통일력)의 發動(발동)이다. 卽(즉) 物心(물심)의 別(별)을 打破(타파)한 唯一(유일)한 實在(실재)가 事情(사정)에 應(응)하여 어느 特殊(특수)한 形態(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偉大(위대)한 힘의 實現(실현)인 故(고)로 그 要求(요구)는 極(극)히 嚴肅(엄숙)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善(선)의(의) 研究(연구)』 二三四頁(234항) 부터 二三五頁(235항))

姉崎政治氏((자기정치씨)는 宗教學界(종교학계)의 權威(권위)일 뿐 아니라 「사람의 本能(본능)을 醇化(순화)하고 人類的(인류적) 結合(결합)의 生活(생활)에 나아가라」는 理想(이상)으로 「政治(정치)나 教育(교육)이나 經濟(경제)나 軍備(군비)나 다 人生(인생)을 爲(위)하는 事業(사업)인 것을 깨닫고 眞面目(진면목)으로 人道(인도)를 行(행)하라」고 高唱(고창)하는 人本主義者(인본주의자)로 自處(자처)한다. 氏(씨)는 人格(인격)에 對(대)하여 左(좌)와 如(여)히 說明(설명)하였다.

「사람의 生命(생명)이 生(생)긴 것은 一朝(일조)에 忽然(홀연)이 生(생)긴 것이 아니라 그 身體(신체)나 精神(정신)이나 다 長久(장구)한 동안의 進化(진화)를 지나서 이 點(점)까지 進歩(진보)하여온 것이다. 이와갓치 進歩(진보)하여서 今日(금일)의 位置(위치)에 達(달)하고 그 生活(생활)을 여러 가지 方

面(방면)으로 展開(전개)하면서 그 自覺(자각)을 標本(표본)으로 하고 萬有(만유)를 觀察(관찰)하면 無機物(무기물)에서 부터 植物(식물)이며 動物(동물)의 階段(계단)도 다 이 人格(인격) 生命(생명)의 豫備(예비)가 되며 又(우)는 人格(인격)을 싸고 잇는 現在(현재)의 世界(세계)도 人格(인격)을 養(양)하는 材料(재료)로 存在(존재)하고 잇는 것이다. 그러한 豫備階段(예비계단)의 意義(의의)는 사람의 意識(의식)으로 因(인)해야 비로소 說明(설명)될 것이다. 나진(卑(비)) 것으로 因(인)해야 높흔(高(고)) 것을 說明(설명)하며 簡單(간단)한 것에 基因(기인)해야 複雜(복잡)을 諒解(양해)하며 非人格(비인격)으로 人格(인격)을 解釋(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와 反對(반대)되는 說明法(설명법)을 取(취)하면 나진 것은 높흔 것의 豫備(예비)로, 簡單(간단)은 複雜(복잡)의 成分(성분)으로, 非人格(비인격)은 人格(인격)의 斷片(단편)으로 各各(각각) 그 意味(의미)를 明白(명백)히 하는 것이다.

이것을 人體(인체)에 對(대)하여 말하면 骨(골), 皮(피), 肝(간), 腺(선) 等(등)이 各各(각각) 特殊(특수)한 性質(성질)과 作用(작용)이 잇고 그것이 모여서 한 人體(인체)로 되어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모이기만 하면 人體(인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全體(전체)의 一部分(일부분)이 되어서 그들이 各各(각각) 그 作用(작용)을 供(공)정함에 잇다. 그러므로 그 全體(전체)를 有機體(유기체)로 하고 그 여러 가지는 그 全體(전체)의 一部分(일부분)으로 觀察(관찰)하는 故(고)로 그 여러 가지의 各各(각각) 意味(의미)가 비로소 처음으로 明白(명백)하게 되는 것이다. 進化(진화)는 아무러케나 하여서 되거나 偶然(우연)한 어느 機會(기회)에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開發(개발)의 基礎(기초)가 先天的(선천적)으로 具在(구재)하여서 그것이 適當(적당)한 境遇(경우)를 어더 가지고 各各(각각) 그 天命(천명)을 開發(개발)하며 그 中(중)에 그 先天的(선천적)의 萌芽(맹아)를 가장(現在(현재)에는) 完全(완전)히 發達(발달)하여온 것이다.

只今(지금) 이에 進化(진화)라고 하여서 陳述(진술)하는 것은 身體(신체)뿐  
 만 아니라 精神(정신) 方面(방면)도 兼(겸)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다 先天  
 (선천)이오 事前(사전)에 具在(구재)한 觀念(관념)의 開發(개발)에 불과하다. 이  
 開發(개발)의 有形(유형)한 雛形(추형)은 動植物(동식물)의 細胞分裂(세포분열)에  
 서 여러 가지 組織機關(조직기관)이 分化(분화)함에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사람의 마암에 對(대)하여 말하면 사람의 마암 中(중)에는 善惡  
 美醜(선악미추) 여러 分子(분자)와 傾向(경향)을 具有(구유)하여야서 所謂(소위) 一  
 念(일념)에 十界(십계) 十如(십여)의 姿態(자태)가 있다. 그것이 事情(사정)에 應  
 (응)하여 여러 가지로 開發(개발)하여서 善(선)도 되며 惡(악)도 되고 佛(불)  
 도 내며 鬼(귀)도 내는 것이다. 何如何何間(하여간) 萬有(만유)의 開發(개발)은  
 物質(물질)의 塊(괴)(이것에도 凝集力(응집력)의 統一(통일)은 있다), 結晶(결정)  
 (一定(일정)한 軸(축)을 中心(중심)으로 한 統一(통일)), 有機物(유기물)(一定(일정)  
 한 生命(생명)을 開展(개진)하는 統一(통일)이 되어서 終末(종말)에 사람의 生  
 命(생명)으로 되어서는 人格(인격)이라고 하는 確乎(확호)한 統一(통일)이 있  
 는 中心(중심)을 어둠에 이르렀다. 이에 이르러 보면 無機有機(무기유기) 여  
 러 가지 集塊(집괴)와 統一(통일)은 人格生活(인격생활)의 豫習(예습)이였으며  
 또한 그의 斷片(단편) 面影(면영)이였었다. (『新時代(신시대)의(의) 宗教(종교)』  
 二十七頁(27항) - 二十六頁(26항))

또 말하기를 「人格(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 周圍環境(주위환경)에  
 養成(양성)되며 被動(피동)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事情(사정) 事實(사실)  
 이 自己(자기)의 生命(생명)에 對(대)한 意義(의의)를 發見(발견)하며 價值(가치)를  
 設定(설정)하고 自發的(자발적)으로 이것을 支配(지배)하며 左右(좌우)하여야서  
 自己(자기) 스스로의 發達(발달)을 遂成(수성)함에 있다」(同(동) 九三頁(93항)  
 自(자) 五行(5항) 至(지) 八行(8항))고 하였다.

以上(이상)에 紹介(소개)한 여러 사람의 意見(의견)은 各各(각각) 自己(자기)



의 見地(견지)가 同一(동일)하지 아니함으로 說明(설명)의 方法(방법)도 서로 同一(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을 通讀(통독)한 後(후)에 우리는 人格(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을 意味(의미)하는 것인가에 對(대)하여 어느 程度(정도)까지는 明瞭(명료)한 印象(인상)을 어들 수 잇는 줄 맞는다. 또 나는 簡單(간단)히 自我(자아)와 人格(인격)의 區別(구별)을 一言(일언)하고저 한다.

社會學的(사회학적) 國家(국가) 學者(학자)의 意見(의견)에 依(의)하면 國家(국가)와 政治(정치)를 이리하게 區別(구별)한다. [權力(권력)을 中心(중심)으로 한 社會群(사회군)과 社會群(사회군)이 鬪爭(투쟁)의 靜的(정적) 狀態(상태)를 國家(국가)라고 하고 그 權力(권력)을 中心(중심)으로 한 社會羣(사회군)과 社會羣(사회군)이 鬪爭(투쟁)의 動的(동적) 狀態(상태)를 政治(정치)라고 한다. 이와갓치 自我(자아)와 人格(인격)의 區別(구별)도 그 方法(방법)을 引用(인용)하여서 說明(설명)할 수 잇는 줄 맞는다. 卽(즉) 自我(자아)라고 하는 것은 統一(통일)을 中心(중심)으로 한 內外(내외) 生活(생활)의 靜的(정적) 狀態(상태)를 이룸이요 人格(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統一(통일)을 中心(중심)으로 한 內外(내외) 生活(생활)의 動的(동적) 狀態(상태)를 가라침이라고 말할 수 잇을 것이다.

一九二二(1922), 一(2), 二二日(22일)

# 李春園<sub>이춘원</sub>에게 問<sub>문</sub>하노라

- 『동아일보』(1922.06.03-1922.06.04) -

民族改造論(민족개조론) 『開闢(개벽)』 五月號(5월호) 所載(소재)를 읽고

이 글은 東京留學生(동경유학생) 崔元淳氏(최원순씨)의 寄稿(기고)인데 元來(원래) 朝鮮民族(조선민족)을 如何(어하)히 하여야 그 生活(생활)의 充實(충실)과 그 文化(문화)의 向上(향상)을 期(기)할가 하는 것은 單(단)히 一(일)인 個人(개인)의 問題(문제)가 아니며 所謂(소위) 知識階級(지식계급) 또는 有志者(유지자)의 問題(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眞實(진실)노 朝鮮(조선)사람의 前途(전도)를 생각하고 그 生活改善(생활개선)에 對(대)하여 그 前途(전도) 開拓(개척)에 對(대)하여 利害(이해)의 關係(관계)가 切實(절실)한 者(자)는 누구든지 모다 반드시 解決(해결)하여야 할 問題(문제)며 覺悟(각오)하여야 할 것이라. 이럼으로 우리는 春園(춘원)의 民族改造論(민족개조론)을 매우 興味(흥미)있게 읽는 同時(동시)에 그 論旨(논지)와 그 提唱(제창)하는 改造方法(개조방법)에 對(대)하여는 各方面(각방면)으로 批判(비판)이 있고 討論(토론)이 잇기를 바랐노라. 이와 갓흔 見地(견지)에서 우리는 이제 이 글을 紹介(소개)하는 同時(동시)에 어테까지든지 그 論文(논문) 自體(자체)에

# 李春園에 개문

하노라 (一)

## 民族改造論(開論)

五月號所載을 읽고  
在東京 崔(元淳)寄

어글은 東京留學生崔元淳民族을如何  
의 著稿인 元來翁民族을如何  
何하야며 그 生活의 充實과  
그 文化의 向上을 期望하야 하는지  
은 單獨의 個人의 問題가 아니라  
그 所謂 知識階級 또는 有志者  
의 問題가 아니라 社會의 眞實한  
朝鮮사람의 前途를 생각하야고  
그 生活改革의 對항이 그 前途  
開拓에 對항하여 利害의 關係가 切  
實한 點은 누구든지 다  
다시 解決하야 할 問題로 變  
형하야 할 것이요 의 元淳으로  
우리는 春園의 民族改造論을 讀  
음 興味 있게 讀은 同時에 그 論의  
외 그 提唱한 改造方法의 對항  
하는 各方面으로 批判하고 그 對  
論의 力을 辨해 맛노라 의 力  
것은 實地에 서우리는 如何의 方  
을 紹介하든 同時에 의 力이  
되지 그 論文의 對항 即  
春園의 理論의 提唱한 方法의 對항  
에 對항한 批判만 紹介하야고 그 他  
조금이라도 人身攻擊의 嫌이 있는  
것은 紹介하기 躊躇할 것이요  
元來翁의 對항을 批判한 것은 性  
上 批判의 對항은 그 自體의 高貴한  
對항이 行할 것이요 決코 그 裡面  
面 或은 그 背後의 人格의 對항이  
行할 것이 아니냐라 의 力을

평문으로 의 力을 우리 力의 對항을  
本紙上에 紹介하든 同時의  
一般社會에 希望하는 것은  
理論에 對항한 批判은 理論으로 되  
호며 學說에 對항한 討論은 學說  
로 되야 되 決코 感情論으로써 하거나  
或은 暴力으로써 하거나 或은 暴力  
으로써 又(우)는 輿論을 憑藉하야  
個人의 力을 社會의 壓迫을 加치  
아니하는 것이니 萬一如此할 것  
갓호

민족性(民族性)은 어떤 민족의  
(一) 所謂劣惡한 劣點  
民族性(民族性)은 어떤 민족의  
劣點(劣點)을 意味하  
는 것이요  
學說에 對항한 討論은 學說  
로 되야 되 決코 感情論으로써 하거나  
或은 暴力으로써 하거나 或은 暴力  
으로써 又(우)는 輿論을 憑藉하야  
個人의 力을 社會의 壓迫을 加치  
아니하는 것이니 萬一如此할 것  
갓호

對(대)한 批判(비판)만 紹介(소개)하고 그 他(타)에 조금이라도 人身攻擊(인  
신공격)의 嫌(혐)이 있는 것은 紹介(소개)하기 躊躇(주저)하얏스니 元來(원래)  
討論(토론)과 批判(비판)은 그 性質(성질)상 批判(비판)의 對象(대상) 되는  
그 自體(자체)에 對(대)하야 行(행)할 것이요 決(결)코 그 裡面(리면) 惑(혹)은  
그 背後(배후)의 人格(인격)에 對(대)하야 行(행)할 것이 아닌 사담(사담)이다. 그  
럼으로 이제에 우리가 이 글을 本紙上(본지상)에 紹介(소개)하는 同時(동  
시)에 一般社會(일반사회)에 希望(희망)하는 것은 理論(이론)에 對(대)한 批判  
(비판)은 理論(이론)으로써 하며 學說(학설)에 對(대)한 討論(토론)은 學說(학  
설)으로써 하되 決(결)코 感情論(감정론)으로써 하거나 或(혹)은 暴力(폭력)으  
로써 又(우)는 輿論(여론)을 憑藉(빙자)하야 個人(개인)의 力을 社會的(사회적)  
壓迫(압박)을 加(가)치 아니하는 그것이니 萬(만)一如此(여차)할 것 갓호

면 自由(자유)의 研究(연구)는 可(가)히 期(기)할 수 업스며 卞(아)라 言論(언론)의 眞正(진정)한 自由(자유)와 卞(아)라 眞正(진정)한 理性化(이성화)한 輿論(여론)은 可(가)히 望(망)하지 못 할 것이다. 이 朝鮮(조선)의 將來(장래)를 爲(위)하야 歎息(탄식)할 바이 安(안)인가 朝鮮(조선)의 將來(장래) 前途(전도)가 困難(곤란)하면 困難(곤란)할사록 그 解決方法(해결방법)에 對(대)하야 各(각) 方面(방면)으로 研究(연구)하야 하며 討論(토론)하야 하며 觀察(관찰)하고 批判(비판)하야 할 것이다. 이 問題(문제)에 對(대)하야서도 우리는 各(각) 種(종) 意味(의미)의 『自由(자유)』의 徹底(철저)를 바라노라. (記者(기자))

나는 이 重大(중대)한 問題(문제)에 對(대)하야 李春園(이춘원)의 가라침을 맞을 것은 勿論(물론)이어나와 넓(넓)히 맞고자 함으로 敢(감)히 新聞紙(신문지)를 通(통)하야 못(못)고자 한다. 그 뿐 아니라 『쓰는 精誠(정성)으로』 『엇지하면 이 民族(민족)을 現在(현재)의 衰頹(쇠퇴)에서 건져 幸福(행복)과 繁英(번영)의 將來(장래)에 引導(인도)할가』하는 『先覺者(선각자)』의 글을 읽고 疑心(의심)이 나는 點(점)을 그대로 바리는 것은 生命(생명)을 이 高貴(고귀)한 事業(사업)의 基礎(기초)에 한 줌 흠으로 맞(맞)치시는 『先覺者(선각자)』에게 對(대)하야 『衰頹又(쇠퇴우)』하고 『劣惡懶惰(열악나타)』자가 되어서 失敬(실경)이 될가 하야 나는 적어도 鄭重(정중)한 態度(태도)로 이 問(문)을 發(발)한다.

一(1) 所謂(소위) 『劣惡(열악)』하다는 『朝鮮民族性(조선 민족성)』은 엇(엇)더한 것을 意味(의미)하는가?

民族性(민족성) 改造主義者(개조주의자) 李春園(이춘원)의 말에 依(의)하면 『朝鮮民族衰頹(조선민족쇠퇴)의 根本原因(근본원인)은 墮落(타락)된 民族性(민족성)에 있(있)다할 것이 외(외)다』 하고 다시 말하기를 『虛僞(허위), 非社會的(비사회적) 利己心(이기심) 懶惰(나타) 無信(무신) 怯懦(겁나) 社會性(사회성)의 缺乏(결핍)

이것이 朝鮮民族(조선 민족)으로 하여금 今日(금일)의 衰頹(쇠퇴)에 싸지게 한 原因(원인)이 아님닛까』하야 『虛僞(허위) 非社會的(비사회적) 利己心(이기심) 懶惰(나태) 無信(무신) 怯懦社會性(사회성)의 缺乏(결핍)』이 衰頹(쇠퇴)한 朝鮮民族性(조선민족성)인 것을 暗示(암시)하면서 『衰頹(쇠퇴)하던 백성이 그냥 興旺(흥왕)하는 백성이 되지 못하리니』 『그 썩어진 性格(성격)을 그냥 두면 아무런 努力(노력)을 하더라도 다 虛事(허사)가 되고 말 것이니 民族的(민족적) 性格(성격)의 改造(개조)!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唯一(유일)한 길이』라고 하야 더욱히 『朝鮮民族性(조선 민족성)이』 『劣惡(열악)』함을 痛論(통론)하였다. 果然(과연) 우리가 『살아날 唯一(유일)한 길』을 가라치는 『先覺者(선각자)』 李春園(이춘원)의 民族性(민족성)에 對(대)한 見解(견해)는 正當(정당)한가?

한 民族性(민족성)이라고 하는 以上(이상)에는 엇더한 것을 가라쳐서 말할 것인지 문조 李春園(이춘원)의 論文(논문)이 만히는 그 著書(저서)의 뜻을 引用(인용)하여다가 쓴 르 본 博士(박사)의 말을 이에 引用(인용)하여 보고 쉽다. 그는 民族性(민족성)에 對(대)하야 말하기를 『固定(고정)한 數種(수종)의 共通的(공통적) 心理(심리) 性格(성격)을 반다시 具有(구유)하는 것이 民族性(민족성)이다. 心理的(심리적) 性格(성격)도 또한 解剖的(해부적) 性格(성격)과 갖치 遺傳(유전)에 因(인)하야 正規的(정규적)으로 또한 恒久的(항구적)으로 更生(갱생)하는 것이다. 이 心理的(심리적) 要素(요소)의 集合(집합)은 一 種族(일종족) 中(중)의 모든 個人(개인)에 對(대)하야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眞實(진실)노 이것이 國民的(국민적) 性格(성격)이라고 稱(칭)하는 것을 組織(조직)하는 것이다』하고 또 말하기를 『個人(개인)을 支配(지배)하고 그 行爲(행위)를 指導(지도)하는 影響(영향)』은 『遺傳(유전)이 이것을 多年(다년) 同一(동일)한 方面(방면)에 蓄積(축적)케한 때에 限(한)할 것이다』 하얏스며 또 『組織(조직)된 種族(종족)의 性格(성격)』을 말하되 『이 性格(성격)은 數百年間(수백년간) 同一(동일)한 生活狀態(생활상태)로 維持(유지)되며 또는 遺傳(유

진)에 因(인)하여 蓄積(축적) 되어서 終末(종말)에 一大(일대) 固定性(고정성)을 獲得(획득)하고 그로써 各國民(각국민)의 主性(주성)을 確定(확정)함에 이르는 것이다』 하였다. 以上(이상)에 引用(인용)한 르 본 博士(박사)의 말에 依(의)하면 民族性(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條件(조건)을 要(요)한다고 볼 수 있다.

一(1), 다른 民族(민족)과 區別(구별)되는 特徵(특징)일 것

二(2), 遺傳的(유전적)일 것

三(3), 그 民族(민족)의 共通의(공통적)일 것

이와 갖치 李春園(이춘원)의 글과 르 본 博士(박사)의 글을 틀림없이 그대로 내가 보았다고 하면 果然(과연) 『先覺者(선각자)』 李春園(이춘원)이 指摘(지적)한 『虛僞(허위), 非社會的(비사회적) 利己心(이기심), 懶惰(나태), 無信(무신), 怯懦(겁나), 社會性(사회성)의 缺乏(결핍)』 이것이 朝鮮人(조선인)의 特徵(특징)이며 遺傳的(유전적)이고 共通의(공통적)으로 있는 性格(성격)일까? 이것이 千(천)의 佛人(불인)과 千(천)의 英人(영인)과 千(천)의 支那人(지나인)을 가지고 보면 그네들이 매우 相異(상이)하지만은 佛人(불인)은 佛人(불인)씨리 英人(영인)은 英人(영인)씨리 支那人(지나인)은 支那人(지나인)끼리(譯者註(역자주)) 그들은 (佛人(불인), 英人(영인), 支那人(지나인)(譯者註(역자주)<sup>2</sup>) 그 種族(종족)의 遺傳(유전)으로 因(인)하여 相通的(상통적) 性格(성격)을 享有(향유)함으로 우리는 이로 因(인)하여서 佛國人(불국인) 英國人(영국인) 支那人(지나인)이라고 하는 一種(일종)의 理想的(이상적) 『타이프』(典型(전형)(譯者註(역자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요. 이 理想的(이상적) 『타이프』는 博物學者(박물학자)가 犬(견)이나 或(혹)은 馬(마)를 一般(일반)으로 描寫(묘사)할 때에 想起(상기)하는바 理想的(이상적) 『타이프』와 『大略相同(대략상동)』함과 갖치 『一見(일견)에 直視(직시) 그

---

2\_최원순이 단 주석임.

英吉利人(영길리인) 伊太利人(이태리인) 西班牙人(서반아인)인 것을 보아 分別(분별)함에 이르는』朝鮮民族(조선 민족)의 特徵(특징)이며 遺傳的(유전적) 性格(성격)일까? 또다시 말하면 『虛僞(허위), 非社會的(비사회적) 利己心(이기심), 懶惰(나태), 無信(무신), 怯懦(겁나), 社會性缺乏(사회성결핍)』 이것이 다른 民族(민족) - 即(즉) 漢族(한족)이나 滿族(만족) 蒙古族(몽고족)이나 印度族(인도족) 或(혹)은 日本族(일본족)과 區別(구별)되는 一見(일견)에 直視(직시) 分別(분별)할 수 있는 朝鮮族(조선족)의 獨特(독특)한 遺傳的(유전적) 性格(성격)이며 理想的(이상적) 『타이프』일까? 現代(현대) 科學的(과학적) 智識(지식)과 現實的(현실적) 事實(사실)을 能(능)히 無視(무시)하고 그에서 超越(초월)한 『先覺者(선각자)』 李春園(이춘원)이 아니면 到底(도저)히 李春園(이춘원)이 指示(지시)한 劣惡(열악)한 朝鮮民族性(조선민족성)을 그대로 肯定(긍정)하기가 어렵지 아니할까. 萬一(만일) 그러하다고 하면 『先覺者(선각자)』 李春園(이춘원)이여! 남의 글이나 잘 理解(이해)하고 그 글의 뜻에서 超越(초월)하는 것이 었더할까 하는 生覺(생각)이 난다.

二(2) 民族性(민족성) 改造主義(개조주의)의 倫理的(윤리적) 根據(근거)가 무엇인가?

한 民族性(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民族的(민족적) 個性(개성)이다. 그럼으로 民族性(민족성)의 改造(개조)는 그 個性(개성)의 改造(개조)라고 볼 수 받게 업다. 『道德(도덕)』을 高唱(고창)하는 『先覺者(선각자)』 李春園(이춘원)이여! 個性(개성)을 尊重(존중)하자는 現代(현대) 世界的(세계적) 思潮(사조)를 無視(무시)하고 『道德的(도덕적)일 것』이라고 하면서 個性改造(개성개조)를 『살는 精誠(정성)으로』 主張(주장)하는 理論的(이론적) 根據(근거)와 倫理的(윤리적) 價值(가치)가 어대잇는가.

三(3) 한 民族性(민족성)이 優善(우선)하다 『劣惡(열악)하다』 判斷(판단)하는 그 標準(표준)이 어대잇는가?

民族性(민족성)이 民族的(민족적) 個性(개성)인 以上(이상)에는 그 個性(개성)의 『劣惡(열악)』이나 優善(우선)을 어느 民族(민족)의 『幸福(행복)과 繁榮(번영)』을 目標(목표)로 하고 하는 말인가? 적어도 個性(개성)에 對(대)한 理解(이해)가 잇는 사람이면 - 더욱 『先覺者(선각자)』 李春園(이춘원)은 그 民族(민족) 自身(자신)의 『繁榮(번영)』과 『幸福(행복)』을 爲(위)하는 見地(견지)에서는 그 民族(민족) 自身(자신)의 個性(개성)이 『劣惡(열악)』하다고 하는 矛盾(모순)은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한 個性(개성)이 劣惡(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劣惡(열악)한 『實(실)은 劣惡(열악)』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 自身(자신)의 利益(이익)이나 『行福(행복)과 繁榮(번영)』을 主(주)로 삼고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個人(개인)의게 잇서서도 그러할 터인데 하물며 한 民族的(민족적) 個性(개성)이 『劣惡(열악)』하다고 判斷(판단)을 나리는 것은 世界(세계)의 風土(풍토)가 均一(균일)하지 아니고 生活條件(생활조건)이 同一(동일)하지 아니한 以上(이상)에는 그 자신의 『繁榮(번영)과 幸福(행복)』을 爲(위)한다는 標準下(표준하)에서는 아모리 生覺(생각)하여도 『民族性(민족성)을 改造(개조)』하여야 『살아날 唯一(유일)한 길이』 잇다고 하는 『先覺者(선각자)』 李春園(이춘원)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업는 「眞理(진리)」다. 『劣惡(열악)』한 (實(실)은 劣惡(열악)』하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自身(자신)의 『行福(행복)과 繁榮(번영)』을 爲(위)하는 것보다도 어느 다른 民族(민족)의 『行福(행복)과 繁榮(번영)』을 爲(위)하는 標目下(표목하)에서 劣惡(열악)하다는 判斷(판단)이 生(생)길 수 맞게 업는 것이 아닐가.

四(4) 朝鮮人(조선인)의 過去(과거) 變遷(변천)을 『다 無知蒙昧(무지몽매)한 野蠻人種(야만인종)이 自覺(자각)업시 推移(추이)』해야 가는 變化(변화)와 갓흔 變化(변화)외다』 하는 理由(이유)는 어대잇는가? 이 文字(문자)에 이르러서



『先覺者(선각자)』李春園(이춘원)이 또한 偉大(위대)한 歷史哲學家(역사철학자)의 態度(태도)가 鮮明(선명)함에 敬歎(경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實例(실례)를 들어서 무리보고 심흔 것은 너머나 만하지만은 『再昨年(재작년) 三月(3월)』事實(사실)이 「우리의 精神(정신)의 變化(변화)는 무섭게 急激(급격)하게 되얏슴을 不拘(불구)하고 膽大(담대)하고 明快(명쾌)한 歷史哲學者(역사철학자) 李春園(이춘원)이 斷言(단언)하는 바와 갓치 『이것은 『自然(자연)의 變化(변화)』며 『또는 偶然(우연)의 變化(변화)』인가. 『物理學的(물리학적) 變化(변화)와 갓치 自然(자연)히』 『偶然(우연)히 行(행)하는 變化(변화)』이여서 『無知蒙昧(무지몽매)한 野蠻人種(야만인종)이 自覺(자각)업시 推移(추이)하여가는 變化(변화)』인가?

果然(과연) 「計劃(계획)과 努力(노력)」이 업는 일이엿슬가. 그 事實(사실)에 對(대)하여 『計劃(계획)』도 없고 『努力(노력)』도 업든 일이얏섯다고 明言(명언)하는 史家(사가)는 全世界(전세계)를 通(통)하여 『民族的(민족적) 性格(성격)을 改造(개조)』하여야 『우리가 살아날 唯一(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는 李春園(이춘원) 以外(이외)에는 다시 한 사람도 업슬 것이다. 이와 갓치 史的(사적) 眼光(안광)이 全世界(전세계)에 『唯一(유일)』한 李春園(이춘원)의게 나는 다시 무리보고 쉽다. 『文明人(문명인)의 最大(최대)한 特徵(특징)은』 『그 特色(특색)은 計劃(계획)과 努力(노력)에 있다』고 하얏스니 『再昨年(재작년)』事實(사실)에서는 (所謂(소위) 李春園(이춘원)이 말하는 『無知蒙昧(무지몽매)한 野蠻人種(야만인종)이 自覺(자각)업시 推移(추이)하여가는 變化(변화)』라고 한 이 事實(사실)에서는) 發見(발견)하지 못하는 『自己(자기)의 目的(목적)을 意識的(의식적)으로 確立(확립)하고 그 目的(목적)을 達(달)하기 爲(위)하여』 『計劃(계획)과 努力(노력)』이 낮타나는 文明人(문명인)의 歷史的(역사적) 事實(사실)을 가라쳐지이다! 엇더한 『計劃(계획)과 努力(노력)』이라야 『無知蒙昧(무지몽매)한 野蠻人種(야만인종)이 自覺(자각)업시 推移(추이)하여간』다는 말을 免(면)하고 『文明人

(문명인)』이라고 하는 말을 드를 수가 있는가. 惟一(유일)한 史家(사가)여! 우리와 갓흔 「無知蒙昧(무지몽매)한 野蠻人種(야만인종)이 自覺(자각)업시 推移(추이)하」는 사람의게 그 「文明人(문명인)」的(적) 解答(해답)을 내려지이다!!

五(5) 『民族改造(민족개조)는 道德的(도덕적)일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라치는가?

이 말이 大段(대단)히 알기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 內容說明(내용설명)에 依(의)하면 『要(요)컨대 朝鮮民族(조선 민족) 衰頹(쇠퇴)의 根本原因(근본원인)은 墮落(타락)된 民族性(민족성)에 있다할 것이외다』하고 다시 말하기를 『吾族(오족)의 衰頹(쇠퇴)도 그 民族性(민족성)이 原因(원인)이니 民族(민족)의 盛衰興亡(성쇠흥망)이 實(실)로 그 民族性(민족성)에 달린 것이외다. 그럼으로 一民族(일민족)을 改造(개조)함에는 그 民族性(민족성)의 根柢(근저)인 道德(도덕)에서부터 始(시)하여야한다』하야 道德(도덕)이 『民族性(민족성)의 根柢(근저)』라 함을 明言(명언)하였다. 特(특)히 根柢(근저)라는 文字(문자)를 쓴 것이나 以上(이상) 文句(문구)의 意義(의의)로 보아서 民族性(민족성)은 道德(도덕)에서 發生(발생)된 것이라는 뜻을 暗示(암시)하였다. 『民族改造(민족개조)는 道德的(도덕적)일 것』이라는 말은 民族(민족)을 改造(개조)하라면 道德(도덕)을 改造(개조)하면 된다 하는 뜻인 줄노 볼 수 밧게 업다. 改造(개조)를 『더욱 根本的(근본적)이오 더욱 組織的(조직적)이오 더욱 全般的(전반적) 滲透的(삼투적)』으로 하라고 하는 『先覺者(선각자)』 李春園(이춘원)은 道德(도덕)을 改造(개조)하면 民族性(민족성)을 改造(개조)하는 줄노 밧는 듯 하다.

그 『先覺者(선각자)』의 意見(의견)대로 論(논)하면 어느 理想的(이상적) 標準(표준)을 세우고 그 標準下(표준하)의 道德(도덕)으로 民族性(민족성)을 改造(개조)하는 것이 『더욱 根本的(근본적)이오 더욱 組織的(조직적)이오 더욱 全般的(전반적) 滲透的(삼투적)』이라고 밧는 것이라 볼 수 밧게 업다. 그러타고

하면 나는 먼저 무리보고 심혼 問題(문제)가 있다. 『더욱 根本的(근본적)』 이라 하여 根柢(근저)부터 改造(개조)를 하여야 한다고 主張(주장)하는 『先覺者(선각자)』 李春園(이춘원)이여! 民族(민족)이 根柢(근저)인가? 道德(도덕)이 根柢(근저)인가? 다시 말하면 民族(민족)에서 道德(도덕)이 생긴 것인가? 道德(도덕)에서 民族(민족)이 生(생)긴 것인가? 『先覺者(선각자)』 李春園(이춘원)의 理論(이론)으로 보면 『根柢(근저)인 道德(도덕)에서부터 始(시)하여야 한다』 하였스니 『根柢(근저)인 道德(도덕)에서』 民族(민족)이 生(생)긴 것인 줄 믿는 모양이다. 그러나 아모리 事實(사실)에서 超越(초월)하는 『先覺者(선각자)』의 말이 라고 하더라도 發生學的(발생학적) 理論(이론)으로 보아서 民族(민족)이 있어서 그 民族(민족)의게서 民族的(민족적) 道德(도덕)이 生(생)긴 것이오 決(결)코 어느 『先覺者(선각자)』가 생각하는 그 道德(도덕)이 있는 後(후)에 그 道德(도덕)에서 民族(민족)이 生(생)긴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업는 줄 믿는다. 다시 말하면 그 民族(민족)을 이룬 여러 사람들이 民族的(민족적)으로 生活(생활)을 繼續(계속)하는 過程(과정) 中(중)에서 직히어야 할 - 직힐 必要(필요)가 있는 行爲(행위)의 規範(규범)이 그 民族(민족)의 道德(도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럼으로 어느 民族(민족)의게 있는 道德(도덕)은 그 民族(민족)의 生活(생활)에서 發生(발생)된 것이 아닐가? 그 民族(민족)이 民族的(민족적)으로 生活(생활)하는 過程中(과정중)에 그 生活(생활)의 需要(필요)에 應(응)하여 發生(발생)된 것이 아닐가? 萬一(만일) 참으로 『실는 精誠(정성)으로』 民族性(민족성)을 改造(개조)하라고 하면 그 民族(민족)의 身體(신체)와 生活資料(생활자료)에서 부터 하지 아니하고 何必(하필) 道德(도덕)에 始作(시작)하는가? 엇더한 理由(이유)로 民族(민족)을 根柢(근저)에서부터 改造(개조)하려는 『先覺者(선각자)』가 民族改造(민족개조)를 生物學(생물학)이나 遺傳學的(유전학적) 見解(견해)와 經濟的(경제적) 方面(방면)을 바리고 『道德的(도덕적)일 것이』라고만 하는가? 나는 이에 李春園(이춘원)의 本意(본의)를 못고 쉽다. (以下省略(이하생략))

# 今番<sub>금번</sub> 中國動亂<sub>중국동란</sub>에 對<sub>대</sub>하야

- 『개벽』 제52호(1924.10.01) -

9月(월) 3日(일) 午前(오전) 十時(10시) 十五分頃(15분경)에 上海(상해) 西方(서방) 崑山方(곤산방)에서 江蘇(강소) 浙江(절강) 兩軍(양군)은 避(피)하지 못하고 開戰(개전)하였다. 그리하야 兩軍(양군)의 鬪爭(투쟁)은 中途(중도)에서 龍頭蛇尾(용두사미)로 그쳐 바리고 宣傳的(선전적) 戰爭(전쟁)이 아니오 昨今(작금)의 新聞(신문) 電報(전보)에 依(의)하면 매우 전쟁다운 戰爭(전쟁)이 着實(착실)히 發展(발전)되는 模樣(모양)이다. 今番(금번) 江浙戰爭(강절전쟁)이라는 것은 다못 江蘇省(강소성)과 浙江省(절강성)의 싸움이거나 或(혹)은 齊變元(제변원)이나 盧永祥(노영상)의 싸움이 아니다. 그 兩者(양자)의 背後(배후)에 잇는 直隸派(직예파)와 反直隸派(반직예파)라는 中國(중국) 全幅(전폭)의 兩大(양대) 勢力團間(세력단간)의 鬪爭(투쟁)인 것은 이미 世上(세상)의 正評(정평)이 잇을 뿐 아니라 昨今(작금) 報道(보도)에 依(의)할지라도 다시 敷衍(부연)할 必要(필요)가 업다.

齊變元氏(제변원씨)의 發表(발표)한 바에 依(의)하면 出兵(출병)한 理由(이유)

# 今番中國動亂에對하야

崔元淳

九月三日午前十時十五分頃에 上海西方崑山方에서 江蘇浙江兩軍은 避하지 못하고 開戰하였다. 그리하여 兩軍의 鬪爭은 中途에서 龍頭蛇尾로 그치마리고 宣傳의 戰爭이 아니요 昨今の 新聞電報에 依하면 實戰爭다운 戰爭이 着實히 發展되느 模樣이다. 今番 江浙戰爭이라 는 것은 다 吳江蘇省과 浙江省의 싸움이거나 或은 齊燮元이나 盧永祥의 싸움이 아니다. 그 兩者의 背後에 잇는 直隸派와 反直隸派라는 中國全幅의 兩大勢力 團閥의 鬪爭인 것은 이미 世上의 定評이 잇을 뿐 아니라 昨今 報道에 依할지라도 다시 敷演할 必要가 없다.

齊燮元氏의 發表한 바에 依하면 出兵한 理由가 두가지라고 한다. 하나는 盧永祥氏가 福建省에서 敗한 兵士即 藏致 平楊化昭等을 收容한 것과, 하나는 上海附近의 一部分을 正當히 自己의 管轄內로 回收할 것 등을 舉하였다. 그러나 表面에 第一 標榜으로 舉한 것은 前者이니 卽官軍에 反逆하던 軍隊를 卽時에 盧永祥의 軍隊에 編入하는 것은 兩省의 勢力均衡을 破하는 것이 오히려 平和를 害하는 것이라 하야 그 武裝解除와 解散을 要求하였다. 다시 말하면 國軍의 反抗者인 藏楊을 다시 隣省兵備에 加入시키는 것은 不當하다고 주장하였으나 盧永祥氏는 此를 拒絕하였다.

盧氏는 말하기를 齊氏와 其他 直隸側의 諸사람이 이 러한 要求를 하는 것은 이 機會에 戰爭을 내리켜려는 口實에 不過하니 藏楊軍은 江西省을 通過하야 浙江省에 드려 온 것이라. 齊燮元氏는 江蘇省의 督軍일뿐 아니라 江蘇、安徽、江西省의 巡閱使인데 藏楊兩軍이 江西省을 通過할 때에는 그 解散을 命하지 아니하고 只今에 와서는 浙江省에 드려 온 것을 期待하야 가지고 余가 不得已 編入시킨 것에 對하야 云云하는 것은 無理한 일이라고 하였다. 何如間이 리한 責任問題나 法理問題는 그나 지크게 論議도 아니하였거니와 兩軍이 戰爭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點에 그 理由가 顯우나 明白하게 잇는 故로 此에 對하야 此彼 閥論爭이 적은 것이니 實力과 實力으로 勝敗를 決하야 宿望을 成就할

가 두 가지라고 한다. 一(일)은 盧永祥氏(노영상씨)가 福建省(복건성)에서 敗(패)한 兵士(병사) 卽(즉) 藏致平(장치평)과 楊化昭(양화소) 等(등)을 收容(수용)한 것과 一(일)은 上海(상해) 附近(부근)의 一部分(일부분)을 正當(정당)히 自己(자기)의 營轄內(영할내)로 回收(회수)할 것 等(등)을 舉(거)하였다. 그러나 表面(표면)에 第一(제일) 標榜(표방)으로 舉(거)한 것은 前者(전자)이니 卽(즉) 官軍(관군)에 反逆(반역)하던 軍隊(군대)를 卽時(즉시)에 盧永祥(노영상)의 軍隊(군대)에 編入(편입)하는 것은 兩省(양성)의 勢力均衡(세력균형)을 破(파)하는 것이오 平和(평화)를 害(해)하는 것이라 하여 그 武裝解除(무장해제)와 解散(해산)을 要求(요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國軍(국군)의 反抗者(반항자)인 藏楊(장양)을 다시 隣省兵備(인성병비)에 加入(가입) 식히는 것은 不當(부당)하다고 主張(주장)하였으나 盧永祥氏(노영상씨)는 此(차)를 拒絕(거절)하였다.

盧氏(노씨)는 말하기를 齊氏(제씨)와 其他(기타) 直隸側(직예측) 여러 사람이 이러한 要求(요구)를 하는 것은 이 機會(기회)에 戰爭(전쟁)을 니르키려는 口實(구실)에 不過(불과)하니 藏楊軍(장양군)은 江西省(강서성)을 通過(통과)하여야 浙江省(절강성)에 드러운 것이라 齊變元氏(제변원씨)는 江蘇省(강소성)의 督軍(독군)일 뿐 아니라 江蘇(강소), 安徽(안휘), 江西省(강서성)의 巡閱使(순열사)인데 藏楊(장양) 兩軍(양군)이 江西省(강서성)을 通過(통과)할 時(시)에는 그 解散(해산)을 命(명)하지 아니하고 只(지금)에 와서는 浙江省(절강성)에 드러운 것을 期待(기대)하여야 가지고 余(여)가 不得已(부득이) 編入(편입)식힌 것에 對(대)하여 云云(운운)하는 것은 無理(무리)한 일이라고 하였다. 何如間(하여간) 이러한 責任問題(책임문제)나 法理問題(법리문제)는 그다지 크게 論議(논의)도 아니하였거니와 兩軍(양군)이 戰爭(전쟁)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點(점)에 그 理由(이유)가 넘우나 明白(명백)하게 잇는 故(고)로 此(차)에 對(대)하여 此(차) 彼間(차피간) 論爭(논쟁)이 적은 것이니 實力(실력)과 實力(실력)으로 勝敗(승패)를 決(결)하여야 宿望(숙망)을 成就(성취)함에 그 目的(목적)이 잇을 뿐이다. 元

來(원래) 中國(중국)은 最近(최근)에 이르러서 더욱 混沌(혼돈)한 狀態(상태)에 있스니 今日(금일)의 中國(중국)은 統一(통일)된 一國家(일국가)가 아니라고까지 極言(극언)을 하게 群雄(군웅)이 各據(각거)하여 그 勢力鬭爭(세력투쟁)을 反復(반복)하고 있다. 그것은 勿論(물론) 民智(민지)의 未普(미보) 及(급)이 그 根本(근본)의 原因(원인)이겠지만은 此(차)를 去益(거익) 混亂(혼란)케 하는 것은 政權(정권)과 兵權(병권)이 各地(각지)에 蟠居(반거)하여 法律(법률)을 遵守(존수)하지 아니하고 各各(각각) 그 實力(실력)으로 對立(대립)하며 그 利害關係(이해관계)가 互相不同(호상부동)함에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가티 利害(이해)가 相反(상반)되는 모든 勢力團(세력단)에게는 다시 列國(열국)의 干涉(간섭)과 援助(원조)가 相雜(상잡)하여 더욱히 統一(통일)하기 어려운 地境(지경)에 達(달)하게 된 것이니 今番(금번)의 蘇浙(소절) 兩省(양성)의 開戰(개전)으로 말할지라도 江蘇省(강소성)의 齊燮元(제변원)과 浙江省(절강성)의 盧永祥(노영상)의 單獨的(단독적) 行動(행동)이었을 것 가트면 처음부터 兵火(병화)를 相交(상교)하게 되었을 것도 疑心(의심)이거니와 相戰(상전)하게 된다 할지라도 勿論(물론) 이와 가티 그 範圍(범위)가 擴大(확대)될 理由(이유)가 엮는 것이다. 今番(금번) 動亂(동란)의 眞實(진실)한 動機(동기)와 發展(발전)하는 形便(형편)은 모두 다 勢力鬭爭(세력투쟁)이니 卽(즉) 直隸派(직예파)에 對(대)한 反直隸派(반직예파)의 巨大(거대)한 勝敗戰(승패전)인 故(고)로 各(각) 勢力團(세력단)에 對(대)하여 概略(개략)을 述(술)하는 것이 이 動亂(동란)을 考察(고찰)하는 데에 必要(필요)한 部分(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現下(현하) 中國(중국)의 勢力(세력)은 大概(대개) 4派(파)로 區分(구분)할 수 있나니 一(1) 直隸派(직예파), 二(2) 奉天派(봉천파), 三(3) 安徽派(안휘파), 四(4) 西南護法派(서남호법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詳細(상세)한 것을 論述(논술)할 必要(필요)가 엮스니 大概(대개) 그 重要(중요)한 點(점)을 指摘(지적)하면서 余(여)의 論旨(논지)를 進展(진진)시키고자 한다. 今番(금번) 戰爭(전쟁)

에만 直隸派(직예파)가 最大(최대)한 勢力者(세력자)가 아니라 最近(최근) 中國  
 政界(중국정계)의 最大(최대) 權力團體(권력단체)가 亦是(역시) 直隸派(직예파)이니  
 그 由來(유래)를 簡單(간단)히 말하면 今日(금일)의 直隸派(직예파)가 優勢(우세)  
 를 收得(수득)한 것은 再昨年(재작년) 春(춘) 奉直戰爭(봉직전쟁)의 結果(결과)로  
 奉天(봉천)을 一擊(일격)한 時(시)의 일리오 直隸派(직예파)가 獨立(독립)한 一軍  
 閥(일군벌)로 世上(세상)이 그 存在(존재)를 認定(인정)하게 된 것은 第1次(제1차)  
 大總統(대총통) 袁世凱氏(원세개씨)가 沒落(몰락)한 後(후)의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업스니 袁氏(원씨) 幕下(막하)이던 馮國璋(풍국장), 王士珍(왕사진) 段祺瑞(단  
 기서) 段芝貴(단지귀) 四氏(4씨)가 서로 協力(협력)하여 權勢(권세)를 維持(유지)  
 하던 北洋軍閥(북양군벌)에서 解體(해체)하여 가지고 分立(분립)하였나니 이 때  
 에 馮國璋(풍국장), 王士珍氏(왕사진씨)는 直隸派(직예파)를 代表(대표)하고 段祺  
 瑞氏(단기서씨) 安徽派(안휘파)를 代表(대표)하게 되었었다. 北洋軍閥(북양군벌)에  
 서 分離(분리)한 直隸派(직예파)는 代理大總統(대리대총통) 馮國璋氏(풍국장씨)가  
 首領(수령)이 되고 王士珍(왕사진), 曹錕(조곤), 曹銳(조예) 等(등) 直隸出身(직예  
 출신) 武人(무인)들이 그를 輔佐(보좌)하게 되었었다. 그리하여 그 當時(당시)  
 에는 所謂(소위) 長江(장강) 三督軍(삼독군) 卽(즉) 江蘇(강소) 李純(이순), 湖北(호  
 북) 王占元(왕점원), 江西(강서) 陳光遠氏(진광원씨) 等(등)과 大聯結(대연결)을 作  
 (작)하였던 것이 다시 馮國璋氏(풍국장씨)가 歿(몰)한 後(후)에는 當時(당시) 直  
 隸督軍(직예독군) 曹錕氏(조곤씨)가 그 直隸派(직예파)의 牛耳(우이)를 잡게 되었  
 다. 이 曹錕氏(조곤씨)가 首領(수령)의 地位(지위)를 占(점)하게 되면서는 吳佩  
 孚(오패부), 曹銳(조예), 王承斌(왕승빈), 馮玉祥(풍옥상), 張志潭(장지담), 閻雍南氏  
 (여옹남씨) 等(등)이 該派(해파)의 有力者(유력자)로 指示(지시)하게 되었다

曹錕氏(조곤씨)가 直隸派(직예파)의 首領(수령)이 된 지 얼마 아니되어서  
 安直戰爭(안직전쟁)이 勃起(발기)하였다. 安直戰爭(안직전쟁)은 當時(당시) 北方  
 (북방) 二大(2대) 軍閥(군벌)이던 安徽派(안휘파)와 直隸派(직예파) 間(간)에 爭霸



戰(쟁패전)이었는데 戰爭(전쟁)의 結果(결과) 直隸派(직예파)가 大勝(대승)하게 됨을 따라 直隸派(직예파)는 비로소 完全(완전)히 中央(중앙) 政權(정권)을 自派(자파)의 手中(수중)에 掌握(장악)하게 되었었다.

一方(일방)에 잇서서는 이와 가티 安徽派(안휘파)가 萎縮(위축)한 形勢(형세)를 免(면)하지 못할 地境(지경)에 臨(임)하매 다른 一方(일방)에서는 奉天派(봉천파)가 蓄積(축적)해야오던 勢力(세력)으로 俄然(아연)히 擡頭(대두)하게 되었나니 北方(북방)에서는 다시 安直(안직)의 對立(대립)이 變(변)하여서 奉直(봉직)의 對峙(대치)가 出現(출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不可兩立(불가양립)의 勢(세)를 이기지 못하고 畢竟(필경) 再昨年(제작년) 春(춘)에 兩派(양파)는 衝突(충돌)하여 戰爭(전쟁)을 하고 마랐다. 그 結果(결과)는 亦是(역시) 直隸派(직예파)의 勝戰(승전)에 歸(귀)하였으므로 奉天派(봉천파)를 山海國外(산해국외)에 放追(방추)하고 다시 北京(북경) 政權(정권)을 奪回(탈회)하였었다. 이와 가티 直隸派(직예파)가 中國(중국) 天地(천지)를 闊步(활보)하리만큼 가장 強(강)한 勢力團(세력단)이 된 것은 要(요)컨대 安直戰爭(안직전쟁)과 奉直戰爭(봉직전쟁) 兩戰(양전)에 大勝(대승)한 結果(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가티 長成(장성)해야 오는 直隸派(직예파) 內部(내부)에서는 다시 勢力(세력) 다툼이 니러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나니 元來(원래) 權力(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自體(자체)가 鬪爭的(투쟁적) 性質(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 故(고)로 權力(권력)으로 外部(외부)를 征服(정복)하고 外部(외부)에 對敵(대적)이 없게 되는 時(시)에는 必要的(필요적)으로 對內的(대내적) 權力(권력) 自體(자체)의 本質(본질)인 鬪爭(투쟁)이 니러나고야 마는 것이다. 兩(양) 戰爭(전쟁)을 짓치는 동안에 最大(최대) 有功者(유공자)인 吳佩孚氏(오패부씨)는 曹錕氏(조곤씨)의 任意自在(임의자재)한 그 勢力(세력)을 그대로 두고 보려고 하지 아니하는 端緒(단서)가 보이기 始作(시작)하였다.

急激(급격)히 聲名(성명)이 높히지고 人氣(인기)가 集中(집중)되는 吳佩孚氏

(오패부씨)는 自然中(자연중) 直隸派(직예파)의 實際上(실제상) 首領(수령)이 된 氣分(기분)이 있었다. 그럼으로 曹錕氏(조곤씨)와 吳佩孚氏(오패부씨)의 關係(관계)는 從來(종래)와 가티 主從(주종)의 關係(관계)가 아니라 서로 同格(동격)의 地位(지위)로 서로 製肘(제주)하는 關係(관계)에 있었다. 余(어)가 이와 가티 直隸派(직예파) 內部的(내부적) 關係(관계)를 指摘(지적)하는 理由(이유)는 只(적) 今(금) 尼(니)러난 中國(중국) 動亂(동란)이 直隸派(직예파) 自體(자체)의 存亡(존망)에 關係(관계)있는 일인 故(고)로 一致團結(일치단결)이 되어가는 것 갖지만은 中國(중국) 現下(현하) 政客(정객)의 일이니 或(혹)은 意外(의외)의 變化(변화)가 突發(돌발)할지도 不知(모)하리라는 것을 말하고저 하는 것이다. 卽(즉) 다시 말하면 曹錕氏(조곤씨)와 吳佩孚氏(오패부씨)가 서로 優勝(우승)한 地位(지위)에 對(대)한 慾望(욕망)을 腦裏(뇌리)에 가지고 있는 以上(이상)에는 政見(정견)上(상)으로도 서로 相違(상위)할 點(점)이 잇게 되어온 것이다.

奉天派(봉천파)에 對(대)한 兩人(양인)의 意見(의견)을 말하기 前(전)에 먼저 奉天派(봉천파) 帝王(제왕)인 張作霖氏(장작림씨)의 處地(처지)를 一(일)言(언)하지 아니할 수 업다. 張氏(장씨)는 奉直戰爭(봉직전쟁)에 失敗(실패)한 後(후) 中央政界(중앙정계)는 勿論(물론)이오 關內(관내)에 何等(하등)의 交涉(교섭)이 업시 다만 東三省(동삼성)에 伏居(복거)해야 專(전)히 兵制改革(병제개혁)과 兵器改善(병기개선) 等(등)을 軍備充實(군비충실)에 努力(노력)하는 同時(동시)에 一方(일방)으로는 段祺瑞(단기서)와 孫文(손문) 等(등) 諸氏(제씨)와 서로 密使(밀사)를 交換(교환)하며 三角同盟(삼각동맹)을 成立(성립)시키였다. 그리하여 昨年(작년) 四月(사월)에 上海軍(상해군)이 獨立(독립)을 宣言(선언)하게 된 것이나 盧永祥氏(노영상씨)가 浙江(절강)의 獨立(독립)을 宣言(선언)을 하게 된 것도 孫段張(손단장) 三角同盟(삼각동맹)과 氣脈(기맥)이 上通(상통)된 사담이라고 하는 것은 公然(공연)한 秘密(비밀)이였다고 한다.

그러나 段祺瑞(단기서) 孫文(손문) 兩氏(양씨)로 말하면 前者(전자)는 長久(장구)

(장구)한 동안의 中央政界(중앙정계) 支配者(지배자)인 關係上(관계상) 多少(다소) 그에게 服心(복심)하는 人物(인물)이 잇슬뿐이오 實力上(실력상)으로는 何等(하등)의 兵力(병력)과 金力(금력)이 업슬 뿐 아니라 孫氏(손씨)도 亦然(역연) 그 러하니 南方(남방)에서 在來(재래)로 扶植(부식)한 人物(인물)과 精神上(정신상) 勢力(세력)은 不少(불소)하지만은 現下(현하)의 實力(실력)으로 말하면 何等(하 등)의 可觀(가관)할 것이 업다. (勿論(물론) 그네들이 一次(1차) 天下(천하)에 聲明(성명)하고 蹶起(영향)하면 그 影響(영기)이야 多大(다대)하겠지만) 이러한 現狀(현상)인 故(고)로 反直隸派(반직예파)로는 東三省(동삼성) 張作霖氏(장작림씨)와 浙江省(절강성)의 盧永祥(노영상)뿐이라고 아니할 수 업다. 張作霖氏(장작림씨)는 滿洲(만주) 三省(3성)에 蟠據(반거)하야 그의 背後(배후)에 日本(일본)을 連結(연결)하고 蒙古(몽고)에 接(접)하였다. 이와 가티 地理上(지리상)으로 有利(유리)한 地位(지위)에 處(처)하야 잇는 故(고)로 巨大(거대)한 軍力(군력)을 貯蓄(저축)할 수 잇슬 뿐 아니라 政治上(정치상)으로나 軍事上(군사상)으로 有力(유력)한 援助(원조)를 借用(차용)할 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盧永祥氏(노영상씨)로 말하면 三面(3면)으로 直隸派(직예파)의 四省(4성)에 抱圍(포위)되어 잇고 다못 東便(동편) 一面(1면)에만 비여 잇스나 이것은 海面(해면)이라 그는 段氏(단씨) 勢力(세력)이 瓦解(와해)된 以後(이후)로 北京(북경) 政府(정부)와는 交涉(교섭)을 斷絶(단절)하고 잇서서 이러한 孤立(고립)한 處地(처지)에 잇는 故(고)로 그가 언제까지나 그 勢力(세력)을 維持(유지)하겠느냐 함에 對(대)하 야는 識者(식자)의 間(간)에 매우 問題(문제)이엇다고 한다. 最近(최근)에 와 서는 張作霖氏(장작림씨)와 씨러지지 못할 連結(연결)이 되엇지만은 曹錕氏(조근씨)가 大總統(대총통)이 되던 當時(당시)로 말할지라도 吳佩孚氏(오패부씨)의 所謂(소위) 同化政策(동화정책)이 猛烈(맹렬)하였섯다. 卽(즉) 昨年(작년) 十月(10월) 大總統(대총통)의 選舉(선거)가 맞친 後(후)에 副總統(부총통)이 問題(문 제)가 되어서 吳佩孚氏(오패부씨)는 屢次(누차) 使者(사자)를 盧永祥氏(노영상씨)

에게 派遣(파견)하고 그 地位(지위)에 對(대)하여 盧氏(노씨)의 承諾(승낙)을 求(구)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一方(일방)으로보면 反直隸派(반직예파)의 勢力(세력) 切崩(절붕)하는 方策(방책)이지만은 一方(일방)으로는 如何(여하)히 平和的(평화적)으로 浙江(절강)을 同化(동화)시키려고 함에 苦心(고심)하였는가 하는 事實(사실)을 表示(표시)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것을 退却(퇴각)시키고 儼然(엄연)히 南方(남방) 一角(일각)에 反直隸(반직예)의 氣勢(기세)를 固守(고수)해야 東三省(동삼성) 張作霖氏(장작림씨)와 가티 宛然(완연)히 直隸派(직예파)에 對(대)한 一大(일대) 敵國(적국)의 陳容(진용)을 維持(유지)하였었다.

張作霖氏(장작림씨)로 말하면 何如間(하여간) 以上(이상)의 準備(준비)에 萬一(만일)의 遺策(유책)이 업도록 하였스니 前年(전년)의 恥辱(치욕)을 洗(세)할 만한 雪恥戰(설치전)을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新聞電報(신문전보)에 依(의)하면 朝陽(조양)에 前進(전진)한 直隸軍(직예군) 十三師(13사)의 所屬(소속) 四個(4개) 大隊(대대)와 十五日(15일) 曉(효) 八圖(8도) 營子方面(영자방면)에서 奉天軍(봉천군)이 衝突(충돌)하여 奉直戰(봉직전)은 이로부터 實戰(실전)이 演出(연출)되는 模樣(모양)인데 이것은 直隸派(직예파)나 奉天派(봉천파)가 江浙戰(강절전)이 發端(발단)하던 當時(당시)부터 豫想(예상)하고 豫定(예정)하였던 行動(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直隸便(직예편)의 戰策(전책)으로 말하면 東三省(동삼성)에 對(대)하여 먼저 着手(착수)하는 것보다도 孤立(고립)하고 微力(미력)한 盧永祥(노영상)을 먼저 擊破(격파)한 後(후)에 全力(전력)을 東三省(동삼성)으로 傾注(경주)하는 것이 得策(득책)인 故(고)로 江浙戰爭(강절전쟁)을 하게 한 後(후) 曹錕氏(조곤씨)는 張作霖氏(장작림씨)의 戰意(전의)를 挽留(만류)하기에 多少(다소) 努力(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自己(자기) 스스로도 만드시 效果(효과)가 잇스리라고 한 일도 아닐 것이오 그러한 交涉(교섭)을 마든 張氏(장씨)도 盧永祥(노영

상)을 擊退(격퇴)한 後(후) 直隸軍(직예군)은 다시 自己(자기)를 向(향)하여 올 줄로 믿는 故(고)로 뜻는 테도 아니하고 豫定行動(예정행동) 그대로 取(취)하여야 온 것이다.

이러한 張作霖氏(장작림씨)에게 對(대)하여 曹氏(조씨)와 吳佩孚氏(오패부씨)의 意見(의견)은 過去(과거)에 엇더하였던가 하는 것도 興味(흥미)있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曹錕氏(조곤씨)는 大總統(대총통)이 되기 前(전)부터 奉天派(봉천파)와 直隸派(직예파)의 關係(관계)를 多少(다소) 緩和(완화)하려고 努力(노력)하였다. 그 理由(이유)는 奉直關係(봉직관계)가 이와 가티 險惡(협약)하면 曹錕氏(조곤씨)가 大總統(대총통)이 된다 하더라도 直隸派(직예파)의 大總統(대총통)이 되고 말 것을 觀破(관파)한 까닭이다. 卽(즉) 다시 말하면 奉直戰爭(봉직전쟁) 後(후)로 怨恨(원한)을 抱懷(포회)하고 虎視眈眈(호시탐탐) 하는 張作霖氏(장작림씨)는 自己(자기) 自體(자체)의 實力(실력)을 一方(일방)으로 充實(충실)하는 同時(동시)에 段祺瑞(단기서) 孫文(손문) 등(등) 諸氏(제씨)와 聯結(연결)하는 것은 形勢(형세)가 자못 容易(용이)하지 아니함을 觀破(관파)한 까닭이다. 그리하여 天津系(천진계) 一部(일부)에서 그 實際運動(실제운동)에 努力(노력)을 하였지만은 效果(효과)가 업섯다 한다.

그러나 吳佩孚氏(오패부씨)는 이와 反對(반대)로 어대까지던지 그가 主張(주장)하는 武力統一(무력통일)의 見地(현지)에서 奉天派(봉천파)를 對(대)하여 온다. 中國(중국)의 統一(통일)은 絶對(절대)로 平和的(평화적)으로 아니 될 것이오, 오작 武力(무력)으로서 此(자)를 實行(실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空想(공상)이라 하는 吳氏(오씨)는 奉天(봉천)에 대한 態度(태도)도 亦然(역연) 그 態度(태도)이엿섯다. 奉天派(봉천파)에 對(대)하여는 어대까지던지 武力(무력)으로 對(대)할 뿐이오 自屈的(자굴적) 平和(평화)를 求(구)하려는 것은 조 꿈도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機會(기회)만 잇고 準備(준비)만 되면 自己

便(자기편)에서 스스로 나아가서라도 積極的(적극적)으로 東三省(동삼성)에서 張氏一派(장씨일파)의 勢力(세력)을 驅逐(구축)하려고 恒常(항상) 生覺(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曹錕氏(조곤씨)에게는 多少(다소) 諒解(양해)하는 意思(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直隸派(직예파)의 大勢力者(대세력자)인 吳佩孚氏(오패부씨)에게 絶對(절대) 不可(불가) 兩立(양립)할 敵愾心(적개심)을 가진 張氏(장씨)로는 서로 緩和(완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直隸派(직예파) 內部(내부)에 이와 가튼 黨中黨(당중당)이 있는 것과 가티 反直隸派中(반직예파중)의 所謂(소위) 三角同盟(삼각동맹)이라고 하는 張段孫(장단손) 三氏(3씨)의 關係(관계)도 그 維持性(유지성)이 얼마나 잇슬는지 이것은 모도다 未來事(미래사)이니 輕率(경솔)한 豫斷(예단)을 不許(불허)하거나와 如何間(어하간) 目下形勢(목하형세)로 보면 各各(각각) 一致(일치)한 態度(태도)로 直隸派(직예파)와 反直隸派(반직예파)가 分明(분명)히 分立(분립)해야 가지고 戰爭(전쟁)을 繼續(계속)하려는 터이니 將次(장차) 中國(중국)의 政界(정계)에는 重大(중대)한 變化(변화)가 오고야 말 것이다. 持久戰(지구전) 持久戰(지구전) 하지만은 兩派(양파)가 얼마나 持久戰(지구전)을 할 수 잇슬는지 或(혹)은 먼 저도 말한 바와 가티 意外(의외)에 不意(불의)의 變化(변화)가 突發(돌발)할는 지도 알 수 업스나 서로 存亡(존망)을 닦토는 大戰鬪(대전투)인 故(고)로 相當(상당)한 戰爭(전쟁)다운 戰爭(전쟁)으로 興敗(흥패)의 結果(결과)를 보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 一般(일반)으로 流行(유행)하는 관측인 듯하다.

萬一(만일) 今番(금번) 動亂(동란)이 그와 가티 相當(상당)한 勝敗(승패)를 내 고야 말 것이라는 豫想(예상)이 機分間(기분간)의 中(적중)한다 하면 매우 重大(중대)한 結果(결과)가 오리라고 안이할 수 업다.

中國(중국)의 自體(자체)에서 生(생)기는 變化(변화)로만 본다하더라도 一部(일부) 一部間(일부간)에 鬪爭(투쟁)을 하던 것과 그 성질이 判異(판이)하여 持久的(지구적) 戰(전)이 되고 그 範圍(범위)가 擴大(확대)한 그만큼 中國(중국)

의 軍閥(군벌)에는 相當(상당)한 變化(변화)가 잇을 것이다. 前番(전번) 歐洲大戰(구주대전)과 가티 歐洲(구주) 全幅(전폭)이 兩大勢力(양대세력)으로 分別(분별)되어서 니러난 그만큼 所謂(소위) 大強列國(대강열국)의 自體(자체)에 마든 損害(손해)가 多大(다대)하였고 그만큼 大變化(대변화)를 이르킨 것과 가티 今番(금번) 中國動亂(중국동란)도 이와 全然(전연)히 가튼 結果(결과)를 期待(기대)하기는 어려울는지 알 수 업스나 多少(다소) 共通(공통)된 結果(결과)가 오고야 말 것은 確實(확실)한 事實(사실)이다. 그럼으로 中國(중국) 國民(국민)의 犧牲(희생)도 莫大(막대)할 터이지만은 이로 因(인)하야 百弊至極(백폐지극)하던 軍閥(군벌)의 勢力(세력)이 이에 限(한)하야 一段落(일단락)을 告(고)하고 그 生氣(생기)를 挫折(좌절)하게 된다 하면 오히려 四萬萬(사만만) 民衆(민중)을 爲(위)하야는 禍(화)가 禍(화)에 그치지 아니하고 福(복)으로 變(변)한다고 아니할 수 업다.

그러나<sup>3</sup> 一方(일방)으로는 中國動亂(중국동란)이 그와 가티 持久戰(지구전)이 된다하면 列國(열국)이 如何(여하)한 態度(태도)를 取(취)하게 될가 하는 것이 最後(최후)로 看過(간과)하지 못하고<sup>4</sup> 重大(중대)한 問題(문제)이다. 元來(원래) 中國(중국)은 第二(제2) 蹙(축)칸이라고싸지 하리만큼 列國間(열국간)의 利害(이해)가 錯雜(착잡)한 곳이니 이것을 詳論(상론)하자면 實(실)로 限(한)이 업는 일이라 簡單(간단)하게 一言(일언)을 附加(부가)하고 말 수 밧게 업거니와 持久戰(지구전)으로 되면 列國(열국)은 두 가지 政策(정책) 中(중) 하나를 取(취)하지 아니할 수 업게 形便(형편)이 될 것이다 -

卽(즉) 列國(열국)이 共同協力(공동협력)하야 中國(중국)에 대한 干涉(간섭)을 하거나 中立(중립)이라고 看板(간판)을 걸고 各各(각각) 그 利害關係(이해관계)

3.“할러나로 표기되어 있어 ‘그러나’의 오기로 보고 ‘그러나’로 표기하였음.

4.“못그로 표기되어 있어 ‘못하고’의 오기로 보고 ‘못하고’로 표기하였음.

가 密接(밀접)한 便(편)을 暗助(암조)하여써 自國(자국)의 既得利權(기득이권)을 維持(유지)도 하며 또는 新利權(신이권)을 獲得(획득)도 하게 될 것이다. 勿論(물론) 右(우)에 擧(거)한 政策中(정책중) 其一(기일)만 取(취)하고 他(타)에는 全然(전연)히 不顧(부고)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或者(혹자)는 表面(표면)으로 標榜(표방)하기는 共同(공동)한 態度(태도)를 取(취)하면서 暗暗裏(암암리)에서 自國(자국)에게 有利(유리)한 術策(술책)을 取(취)하는 者(자)도 勿論(물론) 잊슬지니 大體(대체)로는 嚴正(엄정) 中立(중립)이라는 美名下(미명하)에서 陰謀(음모)를 하거나 公正(공정)한 干涉(간섭)이라는 意味(의미)에서 共同干涉(공동간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穩當(은당)할 줄로 믿는다.

지금(지금)까지 美國(미국)에서는 吳佩孚(오패부)를 援助(원조)한다는 것은 日本(일본)의 宣傳(선전)이오 美國政府(미국정부)는 決(결)코 그러한 일이 업시 全然(전연) 傍觀(방관)한다는 것을 말하였고 日本(일본)은 張作霖氏(장작림씨)가 宣戰布告(선전포고)를 發(발)하였으나 亦是(역시) 絶對(절대) 不干涉(불간섭)을 標榜(표방)한다. 英國(영국)에서는 多少(다소) 干涉(간섭)하자는 議論(의논)이 잇는 模樣(모양)이나 美國(미국)의 同意(동의)가 업시 單獨的(단독적) 行動(행동)을 取(취)하지 아니할 터이니 이것도 아주 傍觀(방관)이라고 볼 수 바게 업다. 그러나 右(우)에 말한 바와 가티 이 傍觀(방관)이라던지 不干涉(불간섭)이라는 것이 時間問題(시간문제)에 不過(불과)할 것이오 始終(시종)이 如一(여일)한 傍觀(방관)이나 不干涉(불간섭)으로 局(국)을 結(결)하도록 列國(열국)이 公正(공정)한 態度(태도)를 取(취)하리라고는 미들 수 업다고 볼 理由(이유)가 許多(허다)하다. 잘못하면 이것이 世界的(세계적)으로 展開(전개)될지도 알 수 업스나 아주 거기까지 推測(추측)을 하는 것은 獨逸(독일)의 賠償問題(배상문제)가 겨우 端緒(단서)를 보임에 不過(불과)한 今日(금일)의 歐洲(구주) 形便上(형편상)으로도 多少(다소) 速斷(속단)인 感(감)이 업지 아니하다. 그러나 米國(미국)의 利害問題(이해문제)와 日本(일본)의 利害問題(이해문제)가 넘



우나 融和(융화)되기에 어려운 點(점)에 있는 터이니 中國(중국) 方面(방면)에  
서 如何(어하)한 風雲(풍운)이 發生(발생)될는지 이것도 또한 速斷(속단)을 避  
(피)할 問題(문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交通系(교통계)의 首領(수령)이오 直隸派(직예파)의 色彩(색채)가 濃厚(농후)한  
顏惠慶氏(안혜경씨)가 戰時內閣(전시내각)을 組織(조직)하고 十五日(15일)에 親任  
式(친임식)이 잇섯다고 한다. 果然(과연) 北京(북경)의 戰時(전시) 財政(재정)을  
如何(어하)히 料理(요리)하며 如何(어하)한 態度(태도)로 現下(현하)의 時局(시국)  
에 處(처)할는지 이것도 또한 速斷(속단)키 어려운 일이니 다못 우리는  
今番(금번) 中國動亂(중국동란)이 東洋(동양)의 今後大勢(금후대세)에 重大(중대)한  
結果(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을 밋는 同時(동시)에 크게 注目(주목)할 價値  
(가치)가 잇는 줄을 밋는다.



---

2부

# 극동정국의 미래



# 彼此<sub>피차</sub>가 無用<sub>무용</sub>의 感情<sub>감정</sub>을 바라라

- 『신민』 제5호(1925.09.10) -

現代(현대)의 所爲(소위) 階級的(계급적) 觀念(관념)으로 보아서 農民(농민)과 白丁(백정)을 獨立(독립)한 階級(계급)으로 볼 수가 잇슬는지 적어도 나는 이 두 階級(계급)을 現代(현대)의 階級(계급) 觀念(관념)으로는 到底(도저히) 階級(계급)으로 볼 수는 업다. 더욱히 衡平運動(형평운동)과 農民運動(농민운동)이 性質上(성질상)으로 獨立(독립)할 可能性(가능성)이 업는 터인데 이것을 階級(계급)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曖昧(애매)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農民(농민)이 衡平社員(형평사원)의 利益(이익)을 侵害(침해)하는 階級的(계급적) 地位(지위)에 잇거나 惑(혹)은 衡平社(형평사)가 階級的(계급적)으로 農民(농민)의 利益(이익)을 榨取(착취)하는 點(점)이 잇다던지 하면 別問題(별문제)이지만은 今日(금일)의 形便(형편)에 잇서서는 全無(전무)할 터이오. 다 못 잇는 것은 在來(제래) 階級社會(계급사회)의 餘脈(여맥)이 全部(전부) 滅盡(멸진)되지 아니하고 無用(무용)한 것이 남아서 紛糾(분규)를 일으키는 데에 不過(불과)한 것이다. 적어도 利害關係(이해관계)가 背馳(배치)되는 立場(입장)에서 階級社會

群(계급사회군)을 作成(작성)하여 가지고 對立(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在來(제래)에 賤待(천대)를 하도록 制度(제도)를 마련하고 賤待(천대)를 無理(무리)하게 바다오던 社會的(사회적) 群團(군단)이 그러한 制度(제도)의 價値(가치)는 姑捨(고사)하고 그 罪惡(죄악)을 發見(발견)하고 世界的(세계적)으로 움직이는 思潮(사조)에 合同(합동)하여 蹶起(궤기)한 것인데 無智(무지)한 感情(감정)으로 在來(제래)의 習慣(습관)만 생각하고 此(차)에 反對(반대)하며 그에 反抗(반항)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便(편)으로 보든지 愚直(우직)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 成群(성군) 作黨(작당)하여 가지고 暴力(폭력)으로서 이러나는 人間(인간)의 解放運動(해방운동)을 迫害(박해)하려고 하는 것은 無知(무지)의 骨頂(골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니 그 罪(죄)가 農民(농민)에게만 있다고는 斷言(단언)하기가 어렵다. 事實(사실)은 確實(확실)히 알 수가 업스나 農民(농민)이 이와가치 多數(다수)가 暴行(폭행)을 敢爲(감위)하게 된 裏面(이면)에 衡平社員(형평사원)의 無理(무리)도 잇섯스리라고 觀測(관측)을 아니할 수 업다. 이러한 實例(실례)로 보아서 朝鮮(조선)에서는 解放運動者(해방운동자)가 注意(주의)할 點(점)이 만한 줄 맞는다. 勿論(물론) 反動運動(반동운동)이나 反動團體(반동단체)가 어느 나라에나 잇는 것이니 朝鮮(조선)에서만 업기를 바라기가 어렵고 쏘는 이러한 暴動(폭동)이 잇는 것도 勢(세)의 常情(상정)이라고 하면 그리도 말할 수 잇는 일이지만은 民族的(민족적) 見地(견지)로 보아서 이러한 形便(형편)에 잇서가지고 다른 나라와 同一(동일)한 規律(규율)로 論議(논의)하지 못할 줄 맞는다. 如何間(여하간) 今番(금번)에 이러난 農民(농민)과 衡平社(형평사) 間(간)의 衝突(충돌)로 말하면 階級的(계급적) 무슨 根底(근지)나 잇는 紛糾(분규)로는 볼 수 업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 無知(무지)의 所致(소치)로 在來(제래)의 因襲(인습)에 支配(지배)맞는 사람들이 一時(일시)의 群衆心(군중심)에 끌니여서 色(색)다른 行動(행동)으로 挑發(도발)된 感情(감정)의 行使(행사)라고 맞게 볼 수 업다. 그럼으

로 그 衝突(충돌)이 決(결)코 根底(근저)가 잇는 것도 아니오. 그 罪(죄)가 多部分(다부분)은 農民(농민)에게 잇다할지라도 全部(전부)라고는 할 수 업고 亦然(역연) 順調(순조)로 發展(발전)되지 못하는 社會的(사회적) 向上(향상)의 激浪(격랑)에 依(의)하야 突發(돌발)된 變態的(변태적) 現象(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업다.

이러한 事件(사건)에 對(대)하야는 좀더 學究的(학구적)으로 論評(논평)을 하는 것이 可(가)한 줄 밋는다. 그러함을 不拘(불구)하고 이러한 短促(단축)한 感想談(감상담)으로는 매우 어려운 點(점)이 만하다. 이러한 것으로는 誤解(오해)받기 쉬운 것이라는 말을 加(가)하야 둘 必要(필요)가 잇다.

- 東亞日報社(동아일보사) 崔元淳

# 中國<sub>중국</sub>의 關稅會議<sub>관세회의</sub>와 動亂<sub>동란</sub>

- 『개벽』(1925.11.01) -

今番(금번) 中國(중국)에서 니러난 動亂(동란)은 發端(발단)이 浙江省(절강성) 督辦(독판) 孫傳芳氏(손전방씨)가 江蘇省(강소성) 督辦(독판) 楊宇霆氏(양우정씨)에게 對(대)하여 中立地帶(중립지대)인 上海地方(상해지방)에 駐兵(주병)이 不法(불법)이라는 理由下(이유하)에 混成軍隊(혼성군대)를 지휘하여 松江(송강)을 占領(점령)함에 잇섰다. 表面(표면)의 口實(구실)은 如何間(여하간) 元來(원래) 奉天派(봉천파)가 강력으로써 東南地盤(동남지반)을 獲得(획득)하고 一步(일보)를 進(진)해야 南方(남방) 及(및) 長江(장강) 一帶(일대)에 勢力(세력)을 扶殖(부식)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世上(세상)이 周知(주지)하는 事實(사실)이어나와 張作霖氏(장작림씨)가 其智囊(기지낭)이라고 하는 楊宇霆氏(양우정씨)를 江蘇(강소)에 派遣(파견)하고 上海地方(상해지방)까지 名目(명목)을 附(부)하여 가면서 駐兵(주병)을 繼續(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如何(여하)히 그가 東南(동남) 及(및) 長江(장강)에 對(대)하여 野心(야심)이 잇는 것을 暗示(암시)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업다. 따라서 浙江省(절강성)에 對(대)하여 어느 劃策(획책)이 잇던가

를 알 수 있는 것이다. 奉天派(봉천파)가 이만큼 浙江省(절강성)을 重要視(중요시)하는 것과 가티 直隸派(직예파)도 亦然(역연) 그러하였나니 일찍히 直隸派(직예파)가 中部地方(중부지방)에 勢力(세력)을 가지고 있스면서도 浙江一省(절강일성)의 強硬(강경)한 反抗(반항)을 圖(도)하여 드디어 敗滅(패멸)함에서 지 이르렀나니 往時(왕시)의 直隸派(직예파)와 如(여)히 지금 中央政權(중앙정권)을 壟斷(농단)하여 中部地方(중부지방)에 勢力(세력)을 擴張(확장)하고 있는 奉天派(봉천파)에게 浙江(절강)은 실로 重大(중대)한 係爭物(계쟁물)이라고 하니 할 수가 없다. 況且(황차) 그 대면에는 馮玉祥(풍옥상)의 國民軍(국민군)이라고 하는 疑問(의문)이 敵(적)이 잇서서 虎視眈眈(호시탐탐)하여 間隙(간극)을 엿보고 잇슴에야 더 다시 말할 것이 잇스랴. 東南(동남)의 地盤(지반)을 確固(확고)히 하고 後顧(후고)의 憂慮(우려)를 업게 함에는 아모러케 하던지 浙江(절강)을 完全(완전)히 自己(자기)의 手中(수중)에 收(수)하지 아니 하면 아니된다고 밋는 것이 分明(분명)히 奉天派(봉천파)가 浙江(절강)을 重大視(중대시)하고 쫓는 모든 對應策(대응책)을 講究(강구)하는 所以(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一方(일방)이 그러하니만큼 浙江(절강)의 孫傳芳氏(손전방씨)로 말하면 恒常(항상) 北(북)에 對(대)한 準備(준비)를 不怠(불태)하여 오던 것이다. 그리하여 特(특)히 對江蘇(대강소) 境界要地(경계요지)의 防備(방비)를 嚴重(엄중)히 하는 同時(동시)에 또 한便(편)으로는 奉天軍(봉천군)을 牽制(견제)하기 爲(위)하여 멀리 國民軍系(국민군계)와 聯絡(연락)을 取(취)하며 東南(동남)과 長江一帶(장강일대)의 反奉天派(반봉천파) 軍人(군인)과 氣床(기상)을 통하며 吳佩孚(오패부)를 中心(중심)으로 한 舊直隸派(구직예파) 軍人(군인)들과 提携(제휴)해야 온 것이다.

그리하여 奉天派(봉천파)의 浙江(절강)의 南方(남방)에는 매우 緊張(긴장)한 對峙狀態(대치상태)를 지어오던 것인데 奉天派(봉천파)가 一步(일보)를 進(진)



하여 浙江(절강)을 進攻(진공)하지 못한 것으로 말하면 南方(남방)에 있는 奉天派(봉천파)의 軍力(군력)이 浙江(절강)을 攻取(공취)함에 足(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느 便(편)으로 보면 江蘇省(강소성)의 楊宇霆氏(양우정씨)는 奉天派(봉천파)와 軍事聯絡上(군사연락상) 孤立的(고립적) 地點(지점)에 있는 故(고)로 이 싸지 生覺(생각)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勿論(물론)이오 그러타고 하여서 張作霖(장작림)이 手兵(수병)을 南方(남방)에 輸送(수송)하겠느냐 하면 이것은 絶對(절대)로 不可能(불가능)한 便(편)에 있다. 即(즉) 奉天派(봉천파)에 對(대)하여 不平(불평)을 가지고 있는 土着軍(토착군)이 多大(다대)할 뿐 아니라 奉天軍(봉천군)이 昨年(작년)의 戰爭(전쟁) 後(후)로 비록 大大的(대대적) 膨脹(팽창)을 한 것은 事實(사실)이지만은 그 內部(내부)의 整理(정리)가 아즉 되지 못할 뿐 아니라 軍費軍糧(군비군량)의 補給(보급)이 甚(심)히 困難(곤란)할 터오. 萬一(만일) 無理(무리)하게 奉天派(봉천파)가 南方(남방)에서 이러한 軍事行動(군사행동)을 한다면 國民軍(국민군)의 反抗(반항)과 吳佩孚氏(오패부씨)의 再興運動(재흥운동)이 猛烈(맹렬)하여 가지고 結局(결국)은 奉天派(봉천파)에 決(결)코 有利(유리)하지 아니할 줄을 미치는 故(고)로 이러한 行動(행동)을 取(취)하는 것보다는 徐徐(서서)히 現狀(현상)을 維持(유지)하여야 가면서 自己(자기)의 地盤(지반)을 鞏固(공고)히 하고 浙江(절강)에 對(대)한 慾望(욕망)을 以後(이후) 適當(적당)한 機會(기회)까지 미루고 보자는 것이 그네들의 計策(계책)인 듯하다.

그리하여 爲先(위선) 關稅會議(관세회의)라고 하는 巨大(거대)한 人氣事業(인기사업)을 니르키여서 一方(일방)으로 國民(국민)의 歡心(환심)을 사며 一方(일방)으로는 中央政府(중앙정부)의 財源(재원)을 潤澤(윤택)케 하여 人望上(인망상)으로나 財政上(재정상)으로 中央政府(중앙정부) 卽(즉) 段執政(단집정)의 地位(지위)를 좀 安頓(안돈)케 하여 가지고 此(차)를 操縱(조종)하게 되면 其間(기간)에 紛爭(분쟁)을 이르지 아니하고 奉天派(봉천파)의 實力(실력)은 自然中

(자연중) 確乎(확호)하여지며 擴大(확대)될 것이라는 見解(견해)를 取(취)한 것이  
라고 아니 할 수 없다.

奉天派(봉천파)가 이와 가티 策動(책동)하고 있는 동안 吳佩孚氏(오패부씨)  
를 中心(중심)으로 한 長江一帶(장강일대)의 劃策(획책)도 相當(상당)히 起動(기  
동)해야 온 것이다. 長江(장강)의 八省(8성) 聯盟說(연맹설)이 잇섯고 다시 鷄  
公山會議(계공산회의)가 잇섯으며 또다시 吳佩孚氏(오패부씨) 再興運動說(재흥  
운동설)과 岳州會議說(악주회의설)이 傳來(전래)하였섯다. 그뿐 아니라 張作  
霖氏(장작림씨)가 段政府(단정부)를 壓迫(압박)해야 가지고 一念(일념) 勢力擴張  
(세력확장)에 突進(돌진)하던 結果(결과)는 自然中(자연중) 反奉天派(반봉천파)의 團  
結(단결)을 組成(조성)식힌 傾響(경향)이 잇는 것인데

더욱이 今(금) 二十六日(26일) 北京(북경)에서 開催(개최)된 特別關稅會議  
(특별관세회의)로 말하면 反奉天派(반봉천파)의 團結(단결)과 勃興(발흥)을 急成(급  
성)식힌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업나니 勿論(물론) 去番(거번) 奉直戰爭(봉직  
전쟁)으로 因(인)하여 直隸(직례)가 沒落(몰락)을 當(당)한 故(고)로 奉天派(봉천  
파)에 對(대)한 鬱憤(울분)을 풀기 위하여 어느 때던지 한번 蹶起(궤기)할 運  
命(운명)을 가진 것도 事實(사실)지만은 이와 가티 吳佩孚(오패부)를 中心(중  
심)으로 하여 將次(장차) 大動亂(대동난)이 演出(연출)되게 된 後面(후면)에 잇  
는 列國(열국)의 利害關係(이해관계)와 그네들이 操縱(조종)하는 黨派(당파)의  
實力問題(실력문제) 及(및) 策動(책동) 如何(여하)가 큰 原因(원인)이오 動力(동력)  
인 것도 公然(공연)한 秘密(비밀)이니 關稅會議(관세회의)를 目前(목전)에 控(공)  
하고 暗鬪(암투)를 激發(격발)하던 列國(열국)의 外交關係(외교관계)를 無視(무시)  
하고 갈 수가 업다. 더욱이 日本(일본)과 米國間(미국간)에 〇<sup>1</sup>되던 最近  
(최근)의 外交事實(외교사실)을 看過(간과)하여 버릴 수가 업다. 그럼으로 論

---

1\_관독불가하여 〇〇으로 표기하였다.

답(논지)을 이番(번)에 開催(개최)된 關稅會議(관세회의)를 中心(중심)으로 하고 日米間(일미간)에 來往(내왕)하던 外交關係(외교관계)에 暫間(잠간) 붓을 돌릴 必要(필요)가 있다.

歐洲戰爭(구주전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極東外交(극동외교)의 牛耳(우이)를 잡던 者(자)가 露國(노국)이 아니면 英國(영국)이었었다. 그러나 歐洲大戰(구주대전)이 나타나면서부터 그 戰爭(전쟁)이 솟치는 때싸지는 日本(일본)이 殆(대)히 獨占的(독점적) 地位(지위)에 잇섰다. 그리하여 極東外交(극동외교)는 日本(일본)이 獨步(독보)하는 舞臺(무대)의 觀(관)이 잇섰다. 오즉 이에 對抗(대항)할 수 잇는 者(자)는 米國(미국)이 잇슬 뿐이었섯스니 一千九百十五年(1915년) 有名(유명)한 二十一個條(21개조) 要求(요구)도 日本(일본)이 中國(중국)에 提出(제출)하였을 時(시)에 英國(영국)에서도 大異論(대이론)이 잇섯지만은 英國政府(영국정부)는 日本(일본)의 滿洲(만주) 及(급) 山東(산둥)의 要求(요구)에 關(관)하여 何等(하등)의 異議(이의)를 말하지 아니하였슬 뿐 아니라 日本(일본)이 中國(중국) 全土(전토)에 對(대)하여 特殊(특수)한 利害(이해)가 잇다는 것을 認定(인정)하고 日本(일본)과 協議(협의)하지 아니하고는 中國(중국)과 政治的(정치적) 性質(성질)을 가진 商議(상의)는 아니하겠다고 싸지 誓約(서약)하였다. 또한 米國(미국)도 山東(산둥) 及(급) 滿蒙(만몽)은 日本(일본)과 領土接續(영토접속)한 곳이니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는 異議(이의)를 말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섯나니 요컨대 歐洲大戰中(구주대전중)의 極東外交(극동외교)는 日本(일본)의 獨舞臺(독무대)이었었다. 英國(영국)은 日本(일본)의 援助(원조)을 求(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섯고 米國(미국)은 日本(일본)을 抑壓(억압)할 能力(능력)이 업서서 不得已(부득이) 日本(일본)의 希望(희망)대로 滿蒙(만몽)에 對(대)한 日本(일본)의 特殊的(특수적) 利益(이익)을 承認(승인)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戰爭中(전쟁중)에 露帝國(노제국)은 瓦解(와해)하고 獨逸(독일)은

聯合國(연합국)에게 海外(해외) 殖民地(식민지)와 가티 中國(중국)에 있던 勢力(세력)도 攻取(공취)를 當(당)하였스며 英佛(영불)은 戰爭(전쟁)에 沒頭(몰두)함으로 揚子江流域(양자강유역)이나 雲南(운남) 兩廣(양광) 等地(등지)의 特殊要求(특수요구)를 支持(지지)할 餘暇(여가)가 없었으므로 이 동안에 日本(일본)은 山東(산둥)에 新勢力(신세력)을 附(부)하고 滿蒙(만몽)에 舊勢力(구세력)을 確實(확실)케 하는 同時(동시)에 中國(중국) 全土(전토)에 對(대)하여 扶殖(부식)하게 되었다. 이와가티 日本(일본)이 中國(중국)에 對(대)한 獨占的(독점적) 地位(지위)를 獲得(획득)한 것은 그 原因(원인)이 大戰(대전)에 있던 것이니 戰爭(전쟁)이 終結(종결)됨을 따라 다시 競爭(경쟁)과 壓力(압력)이 到來(도래)할 것은 必然(필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戰爭(전쟁)이 끝나기 前(전)부터 漸次(점차) 中國(중국)에 對(대)한 日本(일본)의 勢力(세력)을 念慮(염려)하고 그것을 牽制(견제)하기 爲(위)하여 中國(중국)의 門戶開放(문호개방) 機會均等(기회균등)을 各國(각국)에서 부르지지게 되었다.

이 門戶開放(문호개방) 機會均等(기회균등)이라는 말은 歐米(구미) 列國中(열국중) 가장 먼저 中國(중국)의 土地(토지)를 侵略(침략)하고 勢力範圍(세력범위)를 設定(설정)한 英國(영국)의 主張(주장)이지만은 近來(근래)에 와서는 門戶開放(문호개방)과 機會均等(기회균등)의 把持主(파지주)가 米國(미국)인 觀(관)이 있다. 이것은 그 由來(유래)와 歷史(역사)가 적지 아니하지만은 요컨대 米國(미국)으로 말하면 自然的(자연적)으로 그 國力(국력)이 偉大(위대)한 것과 近來(근래)에 더욱 그 지위가 國際的(국제적)으로 出衆(출중)한 것과 또 하나는 中國(중국)의 鴉片戰爭(아편전쟁) 後(후) 列國(열국)의 勢力(세력)은 漸次(점차) 中國(중국)에 侵入(침입)하고 日清戰爭(일청전쟁) 後(후) 列國(열국)은 더욱 猛烈(맹렬)한 競爭(경쟁)으로 中國(중국)에서 利益(이익)을 獲得(획득)하며 勢力範圍(세력범위)를 設定(설정)하였섯으나 다못 米國(미국)은 內外(내외) 多事(다사)한 때가 되어서 極東方面(극동방면)에 注力(주력)할 餘裕(여유)가 없었다. 即(즉)

中國(중국)에서 列國(열국)이 利權(이권)과 利益(이익) 及(급) 勢力範圍(세력범위)의 競爭(경쟁)이 猛烈(맹렬)하던 時期(시기)는 마침 玖寫(구사)나 布哇(포와) 或(혹)은 比律賓(비율빈) 等(등)을 점령하던 때이엇는 故(고)로 中國(중국)에 對(대)하야는 何等(하등)의 地點(지점)을 領有(영유)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列國(열국)이 될만한 곳은 全部(전부) 그 勢力範圍(세력범위)를 各占(각점)하고 잇는 中國(중국)에서 米國(미국)이 主張(주장)할 것은 自然(자연) 各國(각국)의 特殊權利(특수권리)를 否認(부인)하는 門戶開放(문호개방) 機會均等(기회균등) 맞게 업게 된 것이다. 요컨대 米國(미국)이 領土的(영토적)으로 廣大(광대)한 本國(본국)을 가졌스니 더 慾心(욕심)을 부릴 必要(필요)가 업슬지 알 수 업스나 商工上(상공상)으로는 中國(중국)의 市場(시장)에 勢力(세력)이 必要(필요)한데 列國(열국)이 일즉부터 各據(각거)함으로 이러한 即(즉) 門戶開放(문호개방)이나 機會均等(기회균등)이라는 各國(각국)으로 利益圈內(이익권내)에 參加(참가)하자는 것에 不過(불과)한 것이다. 이 米國(미국)이 國際的(국제적)으로 地位(지위)가 向上(향상)할수록 이 主張(주장)이 有力(유력)하여지고 따라서 그 特殊的(특수적) 利害關係(이해관계) 卽(즉) 獨占的(독점적) 地位(지위)에 이른 日本(일본)과 利害衝突(이해충돌)의 가장 만할 것도 免(면)하지 못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업다. 그리하야 日本(일본)과는 特別(특별)한 外交史(외교사)를 가진 英國(영국)까지 戰爭(전쟁) 後(후)에 이르러서는 日本(일본)의 跋扈(발호)를 抑制(억제)하려고 米國(미국)에 左袒(좌단)하고 日本(일본)에 向(향)하여 勢力範圍(세력범위)의 撤廢(철폐)를 勸告(권고)하엿다. 그리하야 華府會議(화부회의)에서 이 米國(미국)의 傳統的(전통적) 外交(외교)가 具體的(구체적)으로 步(보)를 進(진)하게 되엇고 그 結果(결과)가 今番(금번)에 北京(북경)에 特別(특별) 關稅會議(관세회의)까지 開催(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關稅會議(관세회의)를 中心(중심)으로 하고 日米間(일미간)에 微妙(미묘)한 計策(계책)이 交換(교환)되어왔고 只今(지금)도 盛(성)히 相交(상교)되는 中(중)에 잇슬 뿐 아니라

이番(번) 動亂(동란)도 어느 便(편)으로 보면 그 兩國(양국)의 外交戰(외교전)에서 發生(발생)된 派生的(파생적) 支流(지류)로 보면 보이지 아니할 것도 아니니 족음 더 日米(일미)의 外交(외교)를 檢討(검토)해야 볼 必要(필요)가 있다. 余(여)가 이와 가티 中國問題(중국문제) 더욱 中國動亂(중국동란) 問題(문제)를 取扱(취급)하면 日米(일미)의 外交關係(외교관계)를 過多(과다)히 論入(논입)하는 理由(이유)로 말하면 現下(현하)의 中國軍閥(중국군벌)이 國內(국내)에서 勢力(세력)을 相爭(상쟁)하고 그로 因(인)하여 戰爭(전쟁)까지도 敢行(감행)할 것은 軍閥自體(군벌자체)의 利害關係(이해관계)도 적지 아니하지만은 이와 가티 範圍(범위)가 擴大(확대)하는 것은 列國(열국)의 利害(이해)가 不一(부일)하고 不一(부일)한 그만큼 動亂(동란)을 敢行(감행)하는 軍閥(군벌)의 背後(배후)에 各國(각국)의 魔手(마수)가 策動(책동)하는 故(고)로 中國(중국)의 動亂(동란)은 表面(표면)으로 보면 軍閥互相(군벌호상)의 鬭爭(투쟁)이지만은 裏面(이면)으로 보면 列國(열국)의 利害戰(이해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信念(신념)이 中心(중심)이 되어서 이 論文(논문)을 쓰게 되는 까닭이다.

이 關稅會議(관세회의)로 말하면 列國(열국)의 貿易上(무역상) 重大(중대)한 關係(관계)를 지을 뿐 아니라 日本(일본)에게는 中國(중국)에 대한 輸出(수출)이 全貿易額(전무역액)의 一割(1할) 九分(9분)弱(약) 輸入(수입)이 約(약) 一割強(1할강)(1913년도)라 英國(영국)의 同(동) 三分(3분) 四三(43)과 一分(1분) 三〇(30) 米國(미국)의 二分(2분) 六(6)과 四分(4분) 九五(95)에 比(비)하면 실로 重大(중대)하는 것보다도 日本產業(일본산업)의 盛衰(성쇠)를 決定(결정)하는 會議(회의)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만큼 列國(열국)의 注目(주목)을 끌 뿐 아니라 中國自體(중국자체)에서 最善(최선)의 努力(노력)을 다하여 國家(국가)로서의 資格(자격)을 回復(회복)하려고 段政府(단정부)는 必死(필사)의 힘을 다 쓰는 模樣(모양)이다. 特別(특별) 關稅會議(관세회의)의 招請(초청)에 關(관)하여 八月(8월) 十八日(18일) 附(부)로 中國政府(중국정부)의 通牒(통첩)과 그 前提(전제)로 不平

等條約(불평등조약) 修改(수개)에 關(관)한 六月(6월) 二十四日(24일) 附(부)의 照會(조회) 及(급) 其前(기전)에 故(고) 孫文氏(손문씨) 發表(발표)한 不平等條約(불평등조약) 廢棄宣言(폐기선언) 또는 帝國主義(제국주의) 反對(반대) 國權回復(국권회복)의 民衆運動(민중운동) 等(등) 모두 다 中國(중국) 國民(국민)과 政府(정부)의 熱望(열망)과 決心(결심)을 表示(표시)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업스니 去年(거년) 十一月(11월) 四日(4일) 故(고) 孫文氏(손문씨)가 天津(천진)에 오는 것을 機會(기회) 삼아 國民黨(국민당)의 援助(원조) 下(하)에 學生團(학생단)이 되어 가지고 不平等條約(불평등조약) 廢棄論(폐기론)이 高調(고조)되어 全國(전국)에 彌漫(미만)될 뿐 아니라 臨時執政府(임시집정부)에서도 正式(정식)으로 外交團(외교단)에게 提議(제의)할 形勢(형세)가 있는 것을 보고 北京(북경)에 있는 列國(열국) 代表者(대표자)들은 昨年(작년) 十二月(12월) 九日(9일) 附(부) (日(일), 英(영), 米(미), 佛(불), 伊(이), 蘭白(난백))과 同月(동월) 十八日(18일) 附(부) 蔽(폐)로 華府會議(화부회의) 關係(관계) 八個國(8개국) 駐中(주중) 公使名義(공사명의)로 臨時政府(임시정부)의 就任(취임)을 承認(승인)하는 조건으로 舊條約(구조약)을 遵守(준수)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即(즉) 「現(현) 臨時政府(임시정부)와 事實上(사실상) 關係(관계)를 設定(설정)한 것은 此(차) 臨時政府(임시정부)가 中國(중국)의 各地(각지) 各黨派(각당파)를 대표하는 正式政府(정식정부)의 樹立(수립)을 보기까지 共和國(공화국)의 政治執行(정치집행)의 任(임)에 當(당)할 目的(목적)으로써 國民(국민)의 同意下(동의하)에 組織(조직)된 것과 臨時政府(임시정부) 及(급) 今後(금후) 樹立(수립)될 如何(어하)한 正式政府(정식정부)라도 清朝(청조) 及(급) 共和國政府(공화국정부)가 締結(체결)한 모든 條約(조약), 協定(협정), 其他(기타) 約定(약정)과 此等(차등) 國際(국제) 約定(약정)의 結果(결과)로 外國人(외국인)이 中國(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權利(권리) 特權免除(특권면제) 等(등)을 尊重(존중)하고 此(차)를 充分(충분)히 履行(이행)하겠다는 諒解(양해)에 基礎(기초)된 것이라는 것을 宣言(선언)한다」고 하였다. 此(차)에 對

(대)하야 臨時政府(임시정부)는 昨年(작년) 十二月(12월) 二十三日(23일) 附(부)로 孫氏(손씨)의 意見(의견)을 參酌(참작)하야 가지고 同意(동의)한다는 答(답)을 發(발)하였다. 그러나 五月(5월) 三十日(30일) 上海事件(상해사건)이 잇슨 後(후)로 民論(민론)이 점차 對外(대외) 強硬(강경)을 부르지지게 되어 執政府(집정부)도 組織(조직) 初(초)에 잇서서는 八個團(8개단)의 後援(후원)이 必要(필요)하였지만은 只今(지금)은 그 時期(시기)도 지내가고 다르게 되었슴으로 6월에 不平等條約(불평등조약) 修改(수개)에 關(관)한 照會(조회)를 變(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不平等條約(불평등조약) 修改(수개) 提議(제의)가 잇슨後(후) 不過(불과) 一週日(1주일) 內外(내외)에 華府發(화부발) 電報(전보)는 米國政府(미국정부)에 中國(중국)의 治外法權(치외법권) 授發(수발)에 關(관)하야 審議(심의)할 目的(목적)으로 國際會議(국제회의)를 招集(초집)할 意嚮(의향)이 잇다는 消息(소식)을 傳(전)하였다. 그리하야 北京方面(북경방면)에서는 米國政府(미국정부)가 率先(솔선)하야 條約改修(조약개수) 提議(제의)를 承認(승인)할 目的(목적)으로 새로운 國際會議(국제회의)를 招集(초집)할 周旋(주선)을 하는 것처럼 傳達(전달)이 되었섯다.

이와 가티 米國(미국)이 中國問題(중국문제)에 關(관)하야 先着手(선착수)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方面(방면)으로 보아서 日本(일본)에게는 莫大(막대)한 損失(손실)이라고 안 할 수가 업다. 萬一(만일) 名義上(명의상)으로싸지 米國(미국)이 會議(회의)를 招集(초집)하는 主權者(주최자)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적어도 米國(미국)이 主人公(주인공)의 地主位(지주위)를 占領(점령)하는 會議(회의)가 되면 會議內容(회의내용)이 日本(일본)에게 不利(불리)하게 되기 쉬울 썬 아니라 中國(중국)에 對(대)한 人氣上(인기상) 損失(손실)도 不少(불소)하리라고 보르던 것이 當時(당시)의 日本(일본) 外務省(외무성)의 觀察(관찰)이였스니 이에 對(대)한 對應策(대응책)이 近來(근래) 日本(일본)의 外交史上(외교사상) 特書



(특서)한 成功(성공)의 記錄(기록)이라고 內外(내외)가 讚揚(찬양)하는 幣原外相(배원외상)의 訓電(훈전)이었다. 그 實效價值(실효가치)에 對(대)하야는 아즉 不明(불명)하나 機敏(기민)한 外交手段(외교수단)인 同時(동시)에 一時(일시)의 成功(성공)이라고 아니할 수 업는 事實(사실)이엇섰다.

即(즉) 七月(7월) 十日(10일) 芳澤(방택) 日本公使(일본공사)는 外相(외상)의 訓電(훈전)에 段執政(단집정)을 訪問(방문)하고 條約改正(조약개정)의 要求(요구)에 對(대)하야는 日本(일본)은 過去(과거)의 自國(자국) 處地(처지)에 빗초여서 特(특)히 中國(중국)에 同情(동정)한다. 그러나 中國內(중국내)의 排外運動(배외운동)이 아즉 鎮靜(진정)되지 아니한 이때에 此種(차종)의 要求(요구)로 固執(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不得策(부득책)이니 中國(중국)으로서는 爲先(위선) 現存(현존) 條約上(조약상) 義務(의무)를 遵守(준수)할 同時(동시)에 列國(열국)으로 하야곰 速(속)히 華府會議(화부회의) 決定(결정)을 實施(실시)하게 되는 空氣(공기)를 釀成(양성)하기에 全力(전력)을 쓰는 것이 가장 賢明(현명)한 方策(방책)이라고 하얏스니 이 忠告(충고)의 詳細(상세)한 것이 今月(금월) 二十六日(26일) 日置益(일치익) 日本全權(일본전권)이 關稅會議(관세회의)에서 特別(특별)히 陳述(진술)한 演說(연설)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야 芳澤公使(방택공사)들이 趣旨(취지)를 華府會議(화부회의) 關係國(관계국)의 公使間(공사간) 會議(회의)에서 發表(발표)하였다. 이것은 一方(일방)으로는 米國(미국)의 機先(기선)을 制(제)한 外交策(외교책)인 同時(동시)에 一方(일방)으로는 華府會議(화부회의)에서 決議(결의)한 範圍(범위)를 버서나는 會議(회의)에 對(대)하야는 日本(일본)은 反對(반대)한다는 뜻을 表明(표명)한 것이다. 이 日本(일본)의 術策(술책)은 中國(중국)을 위하야 새로운 國際會議(국제회의)를 計劃(계획)하던 米國(미국)에게 影響(영향)되어 米國(미국)에서도 그 計劃(계획)을 作破(좌파)한 形勢(형세)를 이루엇다. 그리하야 不平等條約(불평등조약) 條正(조정)에 關(관)하야 中國(중국)이 列國(열국)에게 要求(요구)하는 것을 制止(제지)식히는 同時(동시)

에 中國(중국)으로 하여곰 不得已(부득이) 華府會議(화부회의)의 決定(결정)에  
 依(의)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들었다. 卽(즉) 芳澤(방택) 日本公使(일본공사)가  
 段執政(단집정)에게 忠告(충고)한 意味(의미)를 公使間會議(공사간회의)에서 發  
 表(발표)하였다는 電報(전보)를 마든 華盛頓政府(화성돈정부)에서는 緊急密  
 議(긴급밀의)한 結果(결과) 「쿨라지」 大統領(대통령)은 七月(7월) 十四日(14일) 附  
 (부)로 左記(좌기) 意味(의미)를 發表(발표)하였다고 한다. 「卽(즉) 米國(미국)은  
 近間(근간) 中國問題(중국문제)에 關(관)하여 列國會議(열국회의)를 開催(개최)하  
 고 華盛頓條約(화성돈조약) 中(중)에 包含(포함)되는 諸問題(제문제)를 모도다  
 討議(토의)할 件(건)에 對(대)하여 考慮中(고려중)이다. 此(차) 問題(문제)에 關(관)  
 하여 米國(미국) 政務省(정부성)은 不遠(불원)한 將來(장래)에 北京(북경)에서 一  
 (일) 國際會議(국제회의)를 開催(개최)하려고 目下(목하) 華府條約調(화부조약조)  
 卽(즉) 各國政府(각국정부)와 協議中(협의중)이라」고 하였다. 그뿐아니라 七  
 月(7월) 十六日(16일) 英國外相(영국외상) 챔베덴氏(씨)는 倫頓(윤돈) 外務省(외무  
 성)에 日米佛(일미불) 三國(3국) 大使(대사)를 招請(초청)하고 對中問題(대중문제)  
 에 關(관)하여 熟議(숙의)한 結果(결과) 四大國(4대국)의 意見(의견)이 一致(일치)  
 하게 되었다. 이것이 華府會議(화부회의)의 決議(결의)를 範圍(범위)로 삼고  
 今番(금번) 關稅會議(관세회의)를 開催(개최)함에 日本(일본)이 成功(성공)하게 된  
 經過(경과)의 大綱(대강)이다. 그리하여 今月(금월) 十六日(16일)부터 開催(개최)  
 하는 關稅會議(관세회의)에서 特(특)히 日本(일본) 全權(전권) 日置益(일치익)氏(씨)  
 는 비록 抽象的(추상적)이지만은 日本(일본)의 態度(태도)에 關(관)하여 千斤  
 (천근)의 重量(중량)이 잇는 見解(견해)를 發表(발표)하였다. 그리하여 中國(중  
 국)이 要求(요구)하는 自主權(자주권)은 原則上(원칙상)으로 同情(동정)한다고  
 하였다. 今日(금일)(10월 31일)까지 北京消息(북경소식)은 分科會議(분과회의)가  
 成立(성립)된 後(후) 別(별)다른 消息(소식)이 업다. 그러나 米國(미국)의 態度  
 (태도)는 大體(대체) 보아서 배부른 흥정이니 萬一(만일) 米國(미국)의 本意(본

의에 相當(합당)하지 아니하면 關稅會議(관세회의)에 脫退(탈퇴)해야 가지고  
 獨立的(독립적)으로 中國(중국)과 條約(조약)을 締結(체결)하는 데까지 같든지  
 도 알 수 없다. 어느 便(편)으로 보면 무슨 術計(술계)를 부려서 關稅會  
 議(관세회의)를 決裂(결렬)시키고 이러한 單獨行動(단독행동)에 出(출)하는 것이  
 米國(미국)에게는 유리할는지 알 수 없다. 이만큼 日本(일본)과는 利害(이  
 해)가 相反(상반)될 處地(처지)에 있다. 그와 相對(상대)로 日本(일본)은 엇더하  
 나 하면 萬一(만일) 米國(미국)이 單獨行動(단독행동)을 하게 되어 列國(열국)의  
 所謂(소위) 協調(협조)가 破裂(파열)이 된다하면 米國(미국)과 同等(동등)의 內  
 容(내용)을 가지는 條約(조약)을 中國(중국)과 締結(체결)하면 모르거니와 그  
 렷치 못할 것도 明瞭(명료)하니 實(실)로 바들 不利(불리)가 莫大(막대)할 것  
 이다. 會議(회의)가 破裂(파열)되지 아니하는 限度(한도)에서 列國(열국)의 協  
 議(협의를)를 維持(유지)하여야 할 터인데 米國(미국)을 背後(배후)에 둔 吳佩孚  
 (오패부)가 이미 蹶起(궤기)하여 關稅(관세)에 反對(반대)를 表示(표시)하고 背後  
 (배후)에 日本(일본)을 둔 張作霖中(장작림중)게 宣傳布告(선전포고)를 하였스니  
 關稅會(관세회)의 以後(이후) 進行(진행) 如何(어하)에 따라서는 中國(중국)의 動  
 亂(동란)이 意外(의외)로 더 擴大(확대)되고 말는지도 알 수 없다. 馮玉祥氏  
 (풍옥상씨)가 關稅會議(관세회의)에 反對(반대)함을 不拘(불구)하고 時局收拾(시국  
 수습)을 標榜(표방)하는 中立(중립)의 態度(태도)를 取(취)하는 것도 關稅權(관세  
 권) 自主(자주)에 關(관)하여 切望(절망)하지 아니한 것을 意味(의미)함이다. 萬  
 一(만일) 絶對(절대)로 自主權(자주권) 問題(문제)가 解結(해결)되지 아니하면 비  
 록 吳佩孚氏(오패부씨)와 圓滿(원만)하지 못한 중에 있다 할지도 張作霖氏  
 (장작림씨)을 爲(위)하여 現狀(현상)에 滿足(만족)하지 못할지니 會議進行(회의진  
 행) 如何(어하)에 따라서는 最初(최초) 蜂起(봉기)된 反奉天軍(반봉천군)과 段政  
 府間(단정부간)의 어느 程度(정도)의 妥協(타협)이 成立(성립)되어 가지고 現時  
 局(현시국)을 一時(일시) 塗糊(도호)하여 갈른지도 알 수 없으나 또 東洋政

局(동양정국)에 大波紋(대파문)을 이르는 變動(변동)이 잇슬는지도 알 수 없다. 目下(목하)의 形勢(형세)로는 어느 사람이던지 豫斷(예단)하지 못할 바 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形便(형편)에 依(의)하여 戰爭(전쟁)에 關(관)한 것을 적게 쓴 것은 未安(미안)하외다.

# 乙丑年中<sub>을축년중</sub> 世界大勢<sub>세계대세</sub>

- 『동아일보』(1926.01.01-01.02) -

## 社會資本兩勢力(사회자본양세력)의 暗鬪(암투)

一九二五年(1925년)의 世界(세계) 政局(정국)을 通觀(통관)하고 그 局部局部(국부국부)에서 起伏(기복)하던 事實(사실)에 着眼(착안)하기 前(전)에 吾人(오인)은 먼저 史家(사가)의 眼光(안광)을 빌어서 一九二五年(1925년)의 歷史的(역사적) 地位(지위)가 屹(기)터하다는 것을 一言(일언)할 必要(필요)가 있다. 卽(즉) 悠久(유구)한 人類史記(인류사기)에 編入(편입)될 一九二五年(1925년) 史料(사료)의 特色(특색)이 무엇인가를 考慮(고려)한 後(후)에 그 特色(특색)을 把持(파지)해야 가지고 大勢(대세)의 動靜(동정)과 方向(방향)을 觀察(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短文(단문)을 草(초)하는 主旨(주지)가 되고저 함이다.

## 資本主義(자본주의) 國家(국가)의 安定期(안정기)

첫째로 一九二五年(1925년)은 資本主義(자본주의) 國際關係(국제관계)가 整頓期(정돈기)에 入(입)한 第一年(제1년)이다. 整頓期(정돈기)라고 하는 것은 歐

洲大戰(구주대전)의 以前(이전) 世界(세계)와 以後(이후) 世界(세계)를 區別(구별)하  
 고 하는 말이다. 적어도 歐洲大戰(구주대전)을 한 歷史的(역사적) 境界線(경  
 계선)으로 보고 一九二四年(1924년)까지는 資本國家間(자본국가간)의 紛爭(분  
 쟁)이 繼續(계속)하던바 一九二五年(1925년)에 入(입)하야 비로소 整頓(정돈)되  
 는 端緒(단서)가 確立(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적은 듯 하지만은  
 一九二五年(1925년)의 世界(세계) 大勢(대세)를 觀望(관망)하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獨特(독특)하고 現著(현저)하게 看取(간취)되든 特色(특색)이다.  
 一九二四年(1924년)은 奇異(기이)하게도 歐米諸國(구미제국)에 選舉戰(선거전)이  
 一齊(일제)히 實行(실행)된 年度(연도)이엇섯슴으로 그 選舉戰(선거전)이 殆(태)  
 히 同時(동시)에 各國(각국)에 잇섯스니만큼 그 結果(결과) 如何(여하)는 其(기)  
 時期(시기)의 世界(세계)를 貫流(관류)하는 政治的(정치적) 主潮(주조)가 무엇인  
 지를 發見(발견)하기에 가장 有力(유효력)한 材料(재료)는 그 判斷(판단)을 保證  
 (보증)하는 事實(사실)이엇섯다. 四月(4월)에는 伊太利(이태리)에 總選舉(총선거)  
 가 잇섯고 五月(5월)에는 獨逸(독일), 日本(일본), 佛蘭西(불란서) 等(등) 次例(차  
 례)로 四日(4일), 十日(10일), 十一日(11일)의 總選舉(총선거)가 잇섯슬 뿐 아니  
 라 十月(10월) 二十九日(29일)에는 英國(영국)의 總選舉(총선거)가 잇섯고 十一  
 月(11월) 四日(4일)에는 米國(미국) 大統領選舉(대통령선거)가 잇섯다. 그리하야  
 獨逸(독일)에서는 다시 十二月(12월) 七日(7일) 總選舉(총선거)가 또 잇섯다.  
 그 總選舉(총선거)의 結果(결과)에 나타난 世界相(세계상)은 大體(대체)로 보아  
 서 前半期(전반기)에 잇서서는 自由主義(자유주의)나 或(혹)은 急進主義(급진주  
 의)가 進展(진전)한 形勢(형세)에 잇섯스나 後半期(후반기)에 잇서서는 그와  
 反對(반대)로 保守主義的(보수주의적) 色彩(색채)가 濃厚(농후)하였섯다. 一年間  
 의(1년간)의 前後(전후) 兩期(양기)에 世界(세계) 諸強國(제강국)의 選舉結果(선거결  
 과)가 이러한 것은 다시 더 말할 것도 업시 列強(열강)의 人心(인심)이 疑  
 懼低徊(의구저회)하야 彷徨(방황)하는 것을 暗示(암시)하는 事實(사실)이다. 이

것은 事理上(사리상) 當然(당연)한 現像(현상)이니 大戰後(대전후) 『벨사이유』  
 平和條約(평화조약)은 成立(성립)되었지만은 賠償問題(배상문제)나 戰時(전시)  
 負債問題(부채문제) 또는 歐洲(구주) 復興問題(부흥문제) 이에 關聯(관련)되는  
 安全保障問題(안전보장문제) 등(등) 모도다 確實(확실)한 解決(해결)의 途(도)에  
 就(취)하지 못할 뿐아니라 어느 便(편)으로 보면 軍事占領(군사점령) 등(등)  
 으로 오히려 紛糾(분규)를 더한 것과 가치 보이는 事實(사실)도 업지 아니  
 하였스니 列國(열국)의 人心(인심)이 疑懼低徊(의구저회)할 것은 免(면)하지 못  
 할 일이다. 그리하여 오던 것이 一九二四年(1924년) 倫敦會議(윤돈회의)에  
 서 『포스』案(안) 採用(채용)이 決定(결정)되어 비로소 歐洲(구주)의 金融界(금융계)  
 에는 曙光(서광)이 빛초였었다. 그러나 歐洲(구주)에 더욱히 佛獨間(불독간)  
 에 往來(왕래)하는 報酬戰(보수전)의 疑雲(의운) 卽(즉) 佛國(불국)의 不安(불안)  
 과 對獨(대독) 強壓政策(강압정책)은 獨逸(독일) 國民(국민)에게 怨恨(원한)을 더  
 하였으며 國粹黨(국수당)을 擡頭(대두)케하여 反動的(반동적) 現像(현상)을 助  
 長(조장)할뿐인 故(고)로 이 『포스』案(안)의 實施(실시)라고 하는 것도 그 前  
 途(전도)에 對(대)하여 實(실)로 安心(안심)을 하지 못하던 것이다. 卽(즉) 大  
 戰(대전)이 終息(종식)된 지 이미 六年(6년)이지만은 歐洲(구주) 外交(외교)의  
 中軸(중축)이 되고 또는 世界(세계)의 和亂(화란)에 關係(관계)가 되는 獨佛間  
 (독불간)의 抗爭(항쟁)으로 말하면 비록 『알사스』 『로렌』 二州(2주)가 佛國(불  
 국)에 取得(취득)되었으나 大戰(대전)의 結果(결과)로 因(인)하여 惡感(악감)이  
 益益激成(익익격성)된 感(감)이 잇섰다. 一世紀(1세기) 間(간)에 係爭因(계쟁인)으  
 로 두고 犬猿(견원)의 關係(관계)를 繼續(계속)해야 오던 그 『알사스』 『로렌』  
 問題(문제)는 오즉 強壓(강압)으로 經緯(경위)를 지은 平和條約(평화조약) 締結  
 (체결)을 떠나서 兩國(양국)의 合意(합의)로 協調(협조)가 成立(성립)되었다는  
 『로카르노』條約(조약)이야말로 非單(비단)兩國(양국)의 平和(평화)뿐 아니라  
 歐洲(구주) 全體(전체)의 協調(협조)에 對(대)하여 偉大(위대)한 結着物(결착물)이

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勿論(물론) 今(금일)의 歐洲(구주)에는 아즉도 東部(동부) 國境方面(국경방면)의 危險(위험)한 問題(문제)가 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如何間(어하간) 『로카르노』條約(조약)이 成立(성립)된 것은 分明(분명)히 一劃(일획) 時代的(시대적) 收穫(수확)이라고 하여서 틀림이 없다. 이 『로카르노』條約(조약)이 成立(성립)된 效果(효과)로 먼 將來(장래)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쾰른』地方(지방)의 撤兵(철폐) 獨逸(독일)의 國際聯盟(국제연맹) 加入(가입) 따라서 軍縮問題(군축문제)에 波及(파급)하는 影響(영향)과 獨佛(독불), 英佛(영불), 英獨(영독)의 各(각) 關係(관계)의 變化(변화) 또는 歐洲(구주)의 戰禍(전화) 原因(원인)의 減少(감소) 乃至(내지) 消滅(소멸) 등(등) 聯想(연상)하면 實(실)로 『챔버렌』英(영) 外相(외상)이 이 保障諸條約(보장제조약)은 『歐洲歷史(구주역사)에 一新(일신) 紀元(기원)을 劃(획)하는 『벨사이유』條約(조약) 以上(이상)의 意義(의의)가 있다』고 聲明(성명)한 것도 그네들로는 無理(무리)하지 아니함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本年(본년) 二月(2월) 九日(9일) 獨逸(독일)에서 『라인랜드』의 保障(보장)에 闕(결)하여 佛國(불국) 政府(정부)에 보낸 覺書(각서)가 發端(발단)이 되어서 五月(5월) 十三日(13일) 佛國(불국) 政府(정부)의 對獨(대독) 回答(회답) 草案(초안)으로 英國(영국)과 意見(의견)을 交換(교환)한 後(후) 英國(영국) 外相(외상) 『챔버렌』氏(씨)와 佛國(불국) 當時(당시) 外相(외상) 『부리앙』氏(씨) 間(간)에 文書(문서) 性復(성복)이 잇섯고 六月(6월) 十六日(16일) 佛國(불국) 政府(정부)의 對獨(대독) 回答(회답)이 되어가지고 七月(7월) 二十日(20일) 그에 對(대)한 獨逸(독일)의 覆牒(복첩)과 八月(8월) 二十四日(24일) 佛國(불국)의 對獨(대독) 通牒(통첩)에 因(인)하여 비로소 獨逸(독일)과 가치 會議(회의)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十月(10월) 五日(5일) 瑞西(서서) 『로카르노』에서 開會(개회)하고 同月(동월) 十六日(16일)에 保障條約(보장제조약)의 假調印(가조인)을 맞쳤으며 十二月(12월) 一日(1일) 倫廓(윤곽)에서는 七個國(7개국) 代表(대표)가 正式(정식)으로 調印(조인)한 것이니 이 條約(조약)이 完成(완성)됨을 따



라 歐洲(구주) 諸國(제국)은 互相間(호상간)의 不利(불리)한 侵害(침해)를 廢(폐)하고 非生產的(비생산적) 政費(정비)를 節約(절약)하며 經濟的(경제적) 復興(부흥)에 全力(전력)을 注(주)하게 되었다. 『로카르노』 條約(조약)이 成立(성립)된 것은 直接(직접)으로 國際聯盟(국제연맹)의 地位(지위)를 向上(향상)시키었고 그 地盤(지반)을 鞏固(공고)케한 것이다. 獨逸(독일)을 中間(중간)에 두고 資本國家(자본국가)와 社會主義國家(사회주의국가) 間(간)에 一時(일시)는 激烈(격렬)한 競爭(경쟁)이 잇섯든 것도 事實(사실)이지만은 如何間(여하간) 今日(금일)에 와서는 獨逸(독일)은 分明(분명)하게 國際聯盟(국제연맹)에 加入(가입)하게 된 것은 歐洲(구주)에 잇서서 資本國家(자본국가)의 一大(일대) 成功(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가치 當分間(당분간)은 戰爭(전쟁)과 武備(무비)의 競爭(경쟁)을 避(피)하고 經濟的(경제적) 發展(발전)에 突進(돌진)할 수 있게 된 歐洲(구주) 列強(열강)은 國際聯盟(국제연맹)이라고 하는 強國(강국)의 專制機關(전제기관) 即(즉) 小弱民族(소약민족)이나 小弱國民(소약국민)을 壓迫(압박)하고 支配(지배)하기 爲(위)하여 共同(공동) 防備線(방비선)으로 된 機關(기관)을 通(통)하여 一方(일방)으로는 소비에트 社會主義(사회주의) 共和國(공화국) 聯邦(연방)에 對抗(대항)하며 他(타) 一方(일방)으로는 極東(극동)에 와서 大戰(대전)에서 마든 絶對(절대)한 經濟的(경제적) 創痕(창이)를 恢復(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明若觀火(명약관화)한 現象(현상)이다.

### 社會主義(사회주의) 國家(국가)와의 對峙(대치)

둘재로 이 資本國家(자본국가)의 聯盟(연맹) 陣容(진용)과 對立(대립)되는 『소비에트』 社會主義(사회주의) 共和國(공화국) 聯邦(연방)의 活動(활동)은 如何(여하)한가. 產業的(산업적) 現狀態(현상태)로 보아서는 가장 社會革命(사회혁명)의 可能性(가능성)을 만히 가진 歐洲列國(구주열국)의 政治的(정치적) 過程(과정)이 最近(최근)에 이르러서는 容易(용이)히 如意(여의) 進捗(진보)되지 아니할

썬 아니라 오히려 大戰後(대전후)의 紛亂(분란)이 整頓(정돈)되는 途(도)에 就(취)하는 感(감)이 있는 故(고)로 그네들은 戰策(전책)의 方針(방침)을 多少(다소) 變更(변경)한 듯하다. 即(즉) 歐洲(구주)에서는 消極的(소극적) 準備運動(준비운동)에 근치고 그 主力(주력)을 極東(극동)으로 옮기는 同時(동시)에 小弱(소약) 民族(민족)의 解放運動(해방운동)에 致重(치중)하게 되는 듯하다. 即(즉) 그와 가치 資本國家(자본국가)의 安定(안정)되는 反動時代(반동시대에) 當面(당면)하야 『볼셰비키』는 如何(어하)히 世界(세계) 各國(각국)의 共產黨(공산당)에게 號令(호령)을 하느냐 하는 것은 實(실)노 興味(흥미)있는 問題(문제)인데 現(현) 勞農露國(노농노국)의 政治的(정치적) 實力(실력)으로는 가장 有力(유력)한 第三(제3) 『인터내셔널』 幹事長(간사장) 『지노비에프』의 意見(의견)에 依(의)하면 今日(금일)의 理想(현상)은 日露戰爭(일로전쟁) 直後(직후)와 恰似(흡사)하다고 한다. 그리하야 그는 當時(당시) 露帝國(노제국)이 革命反亂(혁명반란)에 強壓策(강압책)을 取(취)함으로 反動的(반동적) 時代(시대)를 이루던 것과 같다고 본다. 또 그는 말하되 『우리 同志(동지)는 當時(당시)(一九〇七年頃(1907년경))에 있어서 『볼셰비키』가 主張(주장)하고 實行(실행)한 것과 가치 萬難(만란)과 戰鬪(전투)하면서 혹은 公然(공연)한 方法(방법)에 依(의)하야 或(혹)은 祕密結社(비밀결사)의 手段(수단)으로 다음에 오는 時代(시대)에 準備(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文明帝國(문명제국)의 資本主義(자본주의)는 安定(안정)할지라도 此(차)에 對(대)한 『소비에트』 聯邦(연방)의 地位(지위)도 安定(안정)되어 가는 中(중)이다. 東方(동방) 後進國(후진국) 間(간)에는 『소비에트』 聯邦(연방)에 友情(우정)을 가지는 同時(동시)에 資本的(자본적) 帝國主義(제국주의)에 對(대)하야 反撥運動(반발운동) 民族的(민족적) 革命運動(혁명운동)의 波濤(파도)를 激動(격동)하고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勞農露國(노농노국)에 있어서서는 革命(혁명) 當時(당시)부터 잇서오던 反革命(반혁명) 運動(운동)이 아즉도 굶치지 아니하여서 各處(각처)에서 잇다금 말성을 피운다. 即(즉)

一九二四年(1924년) 九月(9월) 二十二日(22일) 獨逸(독일)에 亡命中(망명중)이던 『키릴』公은 露國(노국) 國民(국민)에게 檄文(격문)을 發(발)하고 스스로 露國(노국)의 皇帝(황제)라고 宣言(선언)하며 一九二五年(1925년) 一月(1월)에는 『니콜라이윗치』 太公(태공) 等(등)이 『문헨』 方面(방면)에서 新白軍(신백군) 組織運動(조직운동)이 잇섯스나 그 計劃(계획)도 實現(실현)되지 못하였스며 五月頃(5월경)에는 白露地方(백로지방)에서 『보소스키』 將軍(장군)의 叛亂(반란)이 잇섯스나 赤軍(적군)에게 鎮壓(진압)되고 『데니킨』 將軍(장군)이 六月末(6월말) 巴里(파리)에 가서 反革命(반혁명) 團體(단체) 統一(통일)을 圖(도)하였스며 八月(8월)에는 世界(세계) 各地(각지)에 亡命(망명)한 二百萬(2백만)이라고 부르는 帝政主義者(제정주의자)들의 代表者(대표자)가 巴里(파리)에 모여서 『니콜라이윗치』 太公(태공)의 主宰下(주재하)에 白派(백파) 大會議(대회의)를 開催(개최)하며 白軍(백군) 參謀部刷新(참모부쇄신)을 計劃(계획)한다고 하였스나 이것도 소리 뿐이엇섯고 七月(7월) 中旬頃(중순경) 西伯利亞(서백리아) 沿線(연선) 여러 곳에서 白軍(백군)과 反革命(반혁명) 農民(농민)의 暴動(폭동)이 잇섯스나 結局(결국)은 赤軍(적군)에게 鎮定(진정)을 當(당)하고 마렸다. 如何間(여하간) 革命(혁명) 後(후) 八年(8년) 內外(내외)의 星霜中(성상중)에 反革命(반혁명) 運動(운동)이 每年(매년) 업지 아니하였지만은 其中(기중) 하나도 結果(결과)를 이룬 것은 업다. 그뿐이라. 一九二五年(1925년) 二月(2월)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것을 全然(전연)히 問題視(문제시)하지 아니하고 일즉 反革命(반혁명)에 加入(가입)하였던 者(자)와 쏘는 諸(제) 種族中(종족중) 反革命(반혁명) 運動(운동)에 參加(참가)하였던 者(자)에게 對(대)하여 一律的(일률적)으로 大赦(대사)를 行(행)하였섯스니 只今(지금)에 와서는 反革命的(반혁명적) 憂慮物(우려물)은 全滅(전멸)되엿다고 보는 것이 可(가)할 것이다. 그뿐아니라 共產黨(공산당) 內(내)의 意見(의견) 不合(불합)으로 『트로츠키』의 失脚(실각)도 第十四會(제14회) 共產黨大會(공산당대회) 開催(개최)를 機會(기회)로 一九二五年(1925년) 五月(5월)에 다시

莫斯科(막사과)에 歸還(귀환)하여 全露及(전로급) 聯邦(연방) 中央執行委員(중앙집행위원)에 被選(피선)되었다. 一九二五年(1925년) 四月(4월) 三日(3일)에는 前(전) 新經濟政策(신경제정책)에 一步(일보)를 進(진)한 新經濟政策(신경제정책)을 採用(채용)하기로 決定(결정)하고 公布(공포)하였으니 이것은 『트로츠키』一派(일파)의 勝利(승리)라고 볼 것이다. 그 要領(요령)을 指摘(지적)하면 (一(1)) 個人(개인) 資本(자본)의 工業(공업)으로 動力(동력)을 使用(사용)하는 者(자)는 勞動者(노동자) 百名(백명) 以下(이하), 動力(동력)을 使用(사용)치 아니하는 者(자)는 二百人(2백인) 以下(이하)를 使役(사역)하고 經營(경영)을 開始(개시)함에는 屆出(계출)에 근치고 特許(특허)를 不要(불요), (二(2)) 農耕用地(농경용지)의 貸與(대여)는 自力(자력)으로도 耕作(경작)할 수 있는 程度(정도)에 限(한)하던 制限(제한)을 廢(폐)하고 勞動者(노동자)를 使役(사역)하여 耕作(경작)함을 許(허)하며 農業資本家(농업자본가)를 搾取階級(착취계급)으로 보고 行政的(행정적)으로 壓迫(압박)하던 制度(제도)를 廢(폐)하고 自力(자력)으로 耕作(경작)할 수 있는 그 以上(이상) 土地(토지)를 貸與(대여)하며 使用(사용) 期限(기한)을 從來(종래)보다 延長(연장)하며 長久(장구)히 하는 同時(동시)에 伸縮(신축)을 自由(자유)로 할 일 (三(3)) 普通(보통) 商事的(상사적) 土地(토지) 貸借(대차)에 對(대)한 制限(제한)을 撤廢(철폐)할 일 (四(4)) 強制的(강제적) 八時間(8시간) 勞動制(제)(노동제)를 廢(폐)하고 賃銀勞動(임은노동)에 對(대)한 一般的(일반적) 商業(상업)의 原則(원칙) 通用範圍(통용범위)를 擴大(확대)할 일 (五(5)) 國營事業(국영사업) 中(중) 目下(목하) 經營中止(경영중지) 狀態(상태)에 있는 것과 또는 國家(국가)가 損失(손실)을 當(당)하고 있는 것을 前(전) 所有者(소유자) 或(혹)은 經營者(경영자)에게 貸與(대여)할 것 等(등)이다. 그리하여 經濟的(경제적) 活路(활로)를 더욱 圓滑(원활)케 하기에 努力(노력)하였다. 다시 對外(대외) 方面(방면)을 보면 歐洲(구주)에 있어서 비록 資本國家(자본국가)가 安定期(안정기)에는 入(입)하였고 反動(반동) 氣分(기분)이 濃厚(농후)하여 英國(영국)의 保守黨(보수당) 內閣(내각)이 英露

(영로) 通商(통상)을 破棄(파기)는 하였을지라도 勞農露國(노농노국)의 承認(승인)을 取消(취소)하지는 못하였고 그와 前後(전후)하여 『에스트니아』의 共產黨(공산당) 反亂(반란)과 『불가리아』 寺院爆破(사원폭파)와 『쌀칸』方面(방면)의 劃策(획책) 等(등)은 革命運動(혁명운동)의 脈絡(맥락)과 熱度(열도)를 暗示(암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뿐 아니라 獨逸(독일)에 있어서도 一九二三年頃(1923년경) 計劃(계획)이 成就(성취)도 못하였고 今番(금번)에 國際聯盟(국제연맹)에 加擔(가담)은 하였을지라도 絕望狀態(절망상태)에 잇지는 아니하다. 勞農露國(노농노국)에 對(대)하여 가장 猛烈(맹렬)하게 敵對(적대) 行動(행동)을 取(취)하는 것은 英國(영국)이오 그 中(중)에도 保守黨(보수당) 現(현) 內閣(내각)의 外相(외상) 『첼버렌』이야말로 版(판)에 박힌 第一(제1인)이지만은 그가 計劃(계획)하던 對露同盟(대노동맹)은 『쌀틱크』 諸邦(제방)에서 失敗(실패)하였다가 다시 今番(금번) 『로카르노』 條約(조약)에서 幾分(기분)을 成功(성공)하였을지라도 이에 對(대)하는 勞農露國(노농노국)은 오히려 此(차)를 樂觀(낙관)하는 便(편)에 잇는 듯 하다. 卽(즉) 그네들은 생각하기를 물론 『첼버렌』이 喝破(갈파)한 것과 가치 世界(세계)의 不安定(불안정)은 『소비엣트』 共和國(공화국) 聯邦(연방)에 基因(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列國(열국)의 共通(공통)한 觀察(관찰)이오 이와가치 列國(열국)이 露國(노국)에 對(대)하여 利害(이해)가 同一(동일)한 것도 事實(사실)이나 그러나 資本國家(자본국가)의 通有性(통유성)으로 各國(각국) 互相間(호상간)에 잇는 經濟的(경제적) 政治的(정치적)의 不一(불일)한 利害(이해) 及(및) 矛盾(모순)은 그 利害(이해) 共通(공통)보다도 尤大(우대)하고 深刻(심각)한 것이니 列國(열국)이 露國(노국)에 對(대)한 共通(공통)된 利害(이해)를 認識(인식)하는 同時(동시)에 他面(타면)에는 그 列國(열국) 間(간)의 暗鬪(암투)로 因(인)하여 露國(노국)을 自己(자기)의 便(편)으로 引入(인입)하려고 하는 傾向(경향)이 嚴然(엄연)히 잇는 것도 이룰 수가 업다고 한다. 그 例(예)로는 一九二五年(1925년) 一月(1월) 二十一日(21일) 附(부)로 北京(북경)

에서 調印(조인)되고 十二月(12월) 十四日(14일) 石油權利契約(석유권리계약) 사  
 지 正式(정식) 調印(조인)을 完了(완료)한 日露接近(일로접근)은 適切(적절)한 것일  
 뿐 아니라 歐洲(구주)에 있어서 英國(영국)이 獨逸(독일)에 同情(동정)을 하는  
 듯하면 佛國(불국)은 露國(노국)이나 日本(일본)에 秋波(추파)를 送(송)하고 英  
 佛(영불)이 獨逸(독일)에 對(대)하야 甚(심)한 듯 하면 獨逸(독일)은 露國(노국)에  
 握手(악수)를 求(구)하는 等(등)은 列國(열국)의 努力(노력) 均衡上(균형상) 避(피)  
 하지 못하는 現像(현상)인 사담이다. 그리하야 列國(열국)의 暗鬪(암투)와  
 競爭(경쟁) 角逐(각축)이 激甚(격심)하면 激甚(격심)할수록 露國(노국)의 國際的  
 (국제적) 地位(지위)는 確固(확고)하야지고 또한 그 作用(작용)은 더욱 強烈(강  
 령)하게 發揮(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露國(노국)은 資本家(자본가) 即(즉) 列  
 國(열국)이 強點(강점)은 모도다 가지고 있는 줄을 밋는 故(고)로 比較的(비  
 교적) 그 共同戰線(공동전선)에 對(대)하야는 冷視(냉시)하는 便(편)에 있는 것  
 이다. 그리하야 歐洲(구주)에 對(대)하야는 이와갓흔 信念(신념)을 가지는  
 同時(동시)에 多年(다년) 列強(열강)의 資本主義的(자본주의적) 帝國主義(제국주의)  
 에 壓迫(압박)을 受(수)하며 榨取(착취)를 當(당)하던 亞細亞(아세아) 方面(방면)  
 에 注力(주력)하게 되었다. 大戰(대전)의 產物(산물)인 民族思想(민족사상)은 이  
 미 亞細亞(아세아) 諸(제) 民族(민족)을 風隣(풍린)하는 故(고)로 露國(노국)이 弱  
 小民族(약소민족) 解放(해방)을 標榜(표방)하고 民族運動(민족운동)의 主唱者(주창  
 자)로 弱小民族(약소민족)의 벗이 되는 政策(정책)을 取(취)한 것은 實(실)로 歐  
 洲(구주)의 排露運動(배로운동)을 一方(일방) 牽制(견제)할뿐 아니라 露國(노국)  
 의 孤立(고립)을 打破(타파)하고 列國(열국)의 弱點(약점)과 急所(급소)를 突擊  
 (돌격)한 感(감)이 있는 것이다. 그 結果(결과)를 볼 수 있는 一九二五年(1925  
 년) 內(내)에 中國(중국)에서 活躍(활약)한 勞農露國(노농노국)의 策動(책동)이야  
 말노 問題(문제)거리라고 할 것이다.

## 極東中心(극동중심)의 兩勢力(양세력) 暗鬪(암투)(1)

前段(전단)에서는 나는 安定期(안정기)에 入(입)한 資本主義(자본주의) 列國(열국)이 極東(극동)에 몰려오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指摘(지적)하였다. 大戰中(대전중)에는 餘力(여력)이 업섯슴으로 日本(일본)의 獨舞臺(독무대)인 觀(관)이 잇섯스나 그러나 大戰(대전)이 甝을 마치자마자 英美(영미)는 中國(중국)에 對(대)하여 漸次(점차) 그 行動(행동)을 復活(부활)식하였다. 大戰(대전)의 結果(결과)로 南中國(남중국)에 잇서서 獨逸(독일)의 勢力(세력)은 一掃(일소)를 當(당)하였지만은 그와 反對(반대)로 英國(영국)의 勢力(세력)은 大增加(대증가)를 하였다. 外相(외상) 『첼버렌』은 露國(露國)에 대한 強硬論者(강경론자)일 쏜 안이라 日英同盟(일영동맹)의 主唱者(주창자)인 故(고) 『췌세프·첼버렌』의 歿息(망식)이오 그 政見(정견)에 合致論者(합치론자)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果然(과연) 美國(미국)의 感情(감정)과 英植民地(영식민지)의 意見(의견) 卽(즉) 加奈陀(가나타)나 濠洲(호주)의 意見(의견)에 反(반)하여 美國(미국)을 멀리하고 日英(일영)의 提携(제휴)를 固執(고집)할 수 잇슬는지는 매우 疑心(의심)스러운 일이엇섯다.

## 極東中心(극동중심)의 兩勢力(양세력) 暗鬪(암투)(2)

世上(세상)의 推測(추측)은 엇지되엇던지 그는 巧妙(교묘)하게 一九二五年(1925년) 中(중)에 잇서서 英美(영미)의 密接(밀접)한 資本的(자본적) 關係(관계)와 日影(일영)의 親近(친근)을 維持(유지)하여왔다. 一九二五年(1925년) 五月(5월) 三十日(30일) 上海(상해) 南京路(남경로) 事件(사건)이 突發(돌발)한 後(후) 全中國(전중국)은 白化(백화)하고 輿論(여론)은 一齊(일제)히 對外硬(대외경)을 絶叫(절규)하였섯다. 그때에 가장 強硬(강경)한 態度(태도)로 中國(중국)에 對(대)한 나라는 世人(세인)의 記憶(기억)에 새로운 바와 如(여)히 英國(영국)이엇섯다. 英國(영국)은 새로 增加(증가)되는 勢力(세력)에도 滿足(만족)하지 아니하나니

中國(중국)의 交通機關(교통기관)을 支配(지배)하여 中國(중국)의 富源(부원)을 開發(개발)하는 機會(기회)를 自己(자기) 手中(수중)에 確收(확수)하며 그 商品(상품)의 賣出(매출)을 安全(안전)히 하려고 努力(노력)하던 歷史(역사)는 實(실)로 長久(장구)하던 것이지만은 最近(최근)에 이르러서는 더욱 猛烈(맹렬)하던 것이다. 中國鐵道(중국철도) 及(및) 財政(재정)의 國際管理說(국제관리설)을 云謂(云謂)한 것은 米國(미국)보다도 英國(영국)이 먼저 한 것이니 中國(중국)에 侵入(침입)하는 帝國(제국)은 英國(영국)이 先鋒(선봉)이오 猛將(맹장)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對外活動(대외활동)을 本領(본령)으로 하는 保守黨(보수당) 現內閣(현내각)으로 『첼머던』이 外相(외상)이니 資本國家(자본국가)의 聯合商軍(연합상군)을 領率(영솔)하고 中國(중국)에서 一九二五年中(1925년중) 얼마나 步調(보조)를 一致(일치)히 하였으며 또는 그 所得(소득)이 었더하였던 것과 이에 對(대)하는 中國(중국) 四億萬(4억만) 民衆(민중)의 戰術(전술) 及(및) 覺悟(각오)의 如何(여하)는 實(실)로 以後(이후) 世界(세계)에 重大(중대)한 結果(결과)를 暗示(암시)하는 것이니 그만큼 世上(세상)의 注目(주목)을 要(요)하던 바이다.

一九二五年(1925년)은 資本國家(자본국가)의 安定期(안정기)의 第一年(제1년)으로만 世界史的(세계사적) 特色(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中國民衆(중국민중)의 自覺運動(자각운동) 또는 自主的(자주적) 運動(운동)의 勃發(발발)로도 그것이 世界大勢(세계대세)의 運向上(운향상) 影響(영향)이 重大(중대)한 그만큼 凡常(범상)히 看過(간과)하지 못한 特色(특색)이 있다. 只今(지금) (十二月(12월)二十四日(24일))은 殆(대)히 中止狀態(중지상태)에 있는 中國關稅(중국관세) 特別會議(특별회의)는 그 直接原因(직접원인)이 華府條約(화부조약) 批准(비준)에 있지 만은 卽(즉) 華府會議(화부회의)에서 調印(조인)된 中國(중국)에 關(관)한 九個國(9개국) 條約(조약)과 中國關稅(중국관세)에 關(관)한 條約(조약)을 佛國議會(불국의회)에서는 金法問題(금법문제)로 因(인)하여 本年(본년) 四月(4월)에야 可決(가결)하였으므로 八月(8월) 五日(5일)에 對中條約(대중조약) 調印(조인) 九個國(9



개국) 代表者(대표자)는 米國務省(미국무성)에 各(각) 自國政府(자국정부)의 批准書(비준서)를 寄託(기탁)하고 寄託調書(기탁조서)가 作成(작성)되어서 바로 소 九個國(9개국) 條約(조약)은 完全(완전)히 效果(효과)를 發生(발생)하고 그 結果(결과)로 中國政府(중국정부)는 八月(8월) 十八日(18일) 閣議(각의)에서 可決(가결)한 後 駐中(주중) 各(각) 公使(공사)를 通(통)하여 各國(각국) 政府(정부)에 『華府條約(화부조약)의 規定(규정)에 依(의)하여 十月(10월) 二十六日(26일) 北京(북경)에서 關稅特別會議(관세특별회의)를 開催(개최)하겠스니 列席(열석)하기를 바라고 同會議(동회의)를 機會(기회)하여 中國(중국)의 關稅(관세) 自主權(자주권) 恢復(회복)에 關(관)한 提案(제안)도 하겠다』고 通告(통고)하였었다. 이 列國會議(열국회의)가 開催(개최)되는 데에 關聯(관련)해야 우리는 中國(중국)의 四億萬(4억 만) 民衆(민중)의 意識狀態(의식상태)를 一瞥(일瞥)할 必要(필요)가 있다. 最初(최초)의 通牒(통첩)을 受(수)한 列國(열국)은 이와 가치 突飛(돌비)한 要求(요구)를 하는 것은 國際常規上(국제상규상) 實行不可能(실행불가능)이라고 하여서 一笑(일소)에 附(부)하려는 傾向(경향)이 잇었다. 그러나 五月(5월) 三十日(30일)에 이러한 上海事件(상해사건)은 畢竟(필경) 全中國(전중국)에 波動(파동)을 이 르키었스니 一個(일개) 『씨미야』 青年(청년)이 投(투)한 爆彈(폭탄)이 世界大戰(세계대전)을 일으키는 導火線(도화선)인 줄은 世上(세상)이 아지 못하던 바 와 如(여)히 이 上海事件(상해사건)이 全中國民(전중국민)의 骨髓(골수)에 맞치 었든 鬱憤(울분)을 爆發(폭발)시키여서 重大(중대)한 新局面(신국면)을 打開(타개)할 줄은 아모도 아지 못하였었다. 五月(5월) 三十日(30일) 事件(사건)이 이 러나기 前後(전후)의 中國民衆(중국민중)의 自立運動(자립운동)은 엇더 하였던 가. 列國(열국)이 그와 가치 一笑(일소)에 附(부)하려고 하던 中國政府(중국정 부)의 企圖(기도)에 對(대)하여 着實(착실)하게 研究(연구)하고 對手(대수)하지 아니할 수 업게 된 것은 分明(분명)히 列國(열국)이 當時(당시) 中國(중국) 民衆運動(민중운동)의 正體(정체)에 對(대)하여 多少(다소) 認識(인식)하는 바가 잇

첫든 싸닭이다. 卽(즉) 特別關稅會議(특별관세회의) 招集(초집)에 關(관)한 八月(8월) 十四日(14일) 附(부) 中國政府(중국정부)의 通牒(통첩)과 其(기) 前堤(전제)가 되는 六月(6월) 二十六日(26일) 附(부) 不平等條約(불평등조약) 修改(수개)에 關(관)한 照會(조회) 또는 그러한 政府(정부)의 行動(행동)을 誘致(유치)시킨 것은 一九二四年(1924년) 十一月(11월) 十三日(13일) 故(고) 孫文氏(손문세)는 中國(중국) 國氏黨(국씨당) 總理(총리)로 廣東(광둥)에서 北上(북상)하려고 하면서 發(발)한 不平等(불평등) 條約(조약) 廢棄(폐기) 宣言(선언)이 잇섯을 뿐 아니라 『카라한』 大使(대사)의 策動(책동)이 만하다고 하는 帝國主義(제국주의) 反對(반대)와 國權恢復(국권회복) 民衆運動(민중운동) 等(등)이 連續(연속)하야 蜂起(봉기)하던 것을 생각하면 五月(5월) 三十日(30일) 事件(사건)이 었더한 環境(환경)에 싸이여서 어느 程度(정도)의 點火的(점화적) 意味(의미)가 잇섯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야 靑島(청도) 天津(천진) 等地(등지)의 罷業(파업) 北京(북경)의 國民運動(국민운동) 廣東(광둥) 及(급) 香港(항항)의 罷業(파업)과 沙面射擊事件(사면사격사건) 等(등) 全國的(전국적)으로 起動(기동)된 『挑除帝國主義(도제제국주의)』 『打倒軍閥(타도군벌)』 『不平等條約撤廢(불평등조약철폐)』의 絶叫(절규)는 世界(세계) 耳目(이목)을 驚動(경동)시키였다. 在來(제래)에 中國(중국)이라하면 軍閥(군벌)의 私鬪(사투)와 國民(국민)의 政治的(정치적) 無關心(무관심) 無氣力(무기력)으로 標準(표준)을 삼고 強壓(강압)과 榨取(착취)로 일음 삼던 英國(영국)을 爲始(위시)하야 其他(기타) 列國(열국)은 다시 今日(금일)의 中國(중국)은 前日(전일)의 中國(중국)이 아닌 것을 發見(발견)하게 되였다. 그리하야 民衆運動(민중운동)을 背景(배경)으로 한 段政府(단정부)의 활력은 먼저 米國(미국)에서 始作(시작)하였다. 果然(과연) 關稅會議(관세회의)에서 列國(열국)의 步調(보조) 一致(일치) 與否(여부)는 이때부터 漸次(점차) 그 端緒(단서)가 보이게 되는 것이다. 中國(중국)의 不平等(불평등) 條約(조약) 提議(제의)가 잇슨 一週後(1주 후) 卽(즉) 七月(7월) 一日(1일) 華府(화부) 電報(전보)는 米國政府(미국정부)에서 治

外法權(치외법권) 撤廢(철폐) 問題(문제)를 目的(목적)하는 國際會議(국제회의) 招  
 集(초집)의 意向(의향)이 있다고 傳(부)하고 七月(7월) 二三日頃(23일경) 北京(북  
 경) 方面(방면)에서는 大規模(대규모)의 列國(열국) 會議說(회의설)이 傳播(전파)되  
 여 中國政府(중국정부)에서는 米國(미국)이 率先(솔선)하여 條約修改(조약수개)  
 提議(제의)를 承諾(승낙)하고 그 目的(목적)으로 新國際會議(신국제회의)를 周  
 旋(주선)하는 것처럼 맞게 되었었다. 이에 對(대)하여 가장 크게 놀란 國  
 家(국가)가 日本(일본)이니 萬一(만일) 中國(중국)에 잇서서 關稅率(관세율) 改正  
 (개정)이나 治外法權(치외법권) 撤廢(철폐)가 米國(미국)의 主掌(주장)에 實行(실행)  
 된다면 가장 만히 損失(손실)을 볼 國家(국가)가 日本(일본)인 사담이다.  
 그리하여 日本政府(일본정부)는 熟考(열고)한 結果(결과)가 有名(유명)한 七月(7  
 월) 十日(10일)의 芳澤公使(방택공사)에게 發(발)한 幣原外相(헤원외상)의 訓電(훈  
 전)이니 이것으로써 米國(미국)이 周施(주시)하던 列國會議(열국회의)라는 것  
 은 有耶無耶中(유야무야중)에 스러져 마리고 十月(10월) 二十六日(26일) 開幕  
 (개막)된 特別關稅會議(특별관세회의)에서는 日本(일본) 主役者(주역자)인 關(관)을  
 이루었스며 巧妙(교묘)하게 日本(일본)의 利益(이익)을 計圖(계도)하여오던 것  
 이다. 自主權(자주권)을 認定(인정)하기로 하고 日米(일미), 日英(일영) 間(간)의  
 暗鬪(암투)는 如何(어하)히 中國(중국)에서 列國(열국)의 利害(이해)가 合致(합치)  
 할 수 업는 것을 表示(표시)하였었다.

列國(열국)이 北京(북경)에 會合(회합)하여 各自(각자)의 今(금) 利益(이익) 按  
 配(안배)에 熱中(열중)하는 中(중)에 中國(중국) 國民(국민)이 向(향)할 進路(진로)  
 는 다른 方面(방면)에서 檢討(검토)되었었다. 浙江(질강)의 孫傳芳(손전방)이  
 十月(10월) 十三日(13일) 關稅會議(관세회의) 開催(개최) 反對(반대)를 宣言(선언)하  
 고 十四日(14일)에는 일즉 密約(밀약)을 通(통)하던 五省聯盟軍(5성연맹군)의 總  
 司令(총사령) 就任(취임)을 聲名(성명)하며 急遽(급거)히 基部下(기부하)를 江蘇(강  
 소)에 侵入(침입)시키여서 破竹(파죽)의 세로 前進(전진)하였었다. 孫氏(손씨)

의 擧兵(거병)과 同時(동시)에 岳州(악주)에 있던 吳佩孚(오패부)는 漢口(한구)에  
 出動(출동)하여 同地(동지)에 護法政府(호법정부)를 組織(조직)하고 十月(10월)  
 二十二日(22일)에는 北京(북경) 外交團(외교단)에 對(대)하여 關稅會議(관세회의)  
 開催(개최) 反對(반대)를 通告(통고)하며 同(동) 會議(회의) 中止(중지)를 要望(요망)  
 하였었다. 惑星(혹성) 馮玉祥(풍옥상)은 十月(10월) 二十七日(27일) 奉直(봉직) 戰  
 爭防止(전쟁방지)를 目的(목적)하는 通電(통전)을 全國(전국)에 發(발)하여 吳佩  
 孚(오패부)와 今後(금후) 天下獨占(천하독점)을 미리 防備(방비)하고 十日(11월)  
 一일(1일) 二日(2일)에 北海(북해) 靜心齋(정심재)의 奉(봉), 國會議(국회의)의 不始  
 末(불시말)과 奉天派(봉천파)의 挑戰的(도전적) 戰爭(전쟁) 準備(준비)로 因(인)하여  
 兩派(양파)는 決裂(결렬)하고 繼續(계속)하여 計策(계책)과 術數(술수)가 頻繁(빈  
 빈)하던바 奉天派(봉천파) 中(중)의 精銳(정예)하다던 郭松齡(곽송령)이 十日(11  
 월) 二十四日(24일) 張作霖(장작림)에게 對(대)하여 叛旗(반기)를 들고 逆襲(역습)  
 을 始作(시작)함으로 北中國(북중국)의 形勢(형세)는 急轉直下(급전직하)하여 決  
 河(결하)의 勢(세)로 激變(격변)되었다. 그리하여 郭松齡(곽송령)과 馮玉祥(풍  
 옥상) 間(간)에는 일찍부터 即(즉) 馮(풍)은 十一月(11월) 二十日(20일) 郭(곽)은  
 同月(동월) 二十三日(23일) 正式(정식)으로 密約(밀약)에 調印(조인)하고 第一(제1)  
 回軍資金(회군자금)으로 四十萬圓(40만원)을 馮(풍)이 郭(곽)에게 交付(교부)하였  
 다고 한다. 이와 가흔 中國(중국) 軍閥(군벌)의 鬭爭(투쟁)은 表面(표면)으로  
 보면 在來(제래)의 中國(중국) 軍閥(군벌)의 常事(상사)로도 보이지만은 今番  
 (금번)에 限(한)하여야는 全然(전연)히 그 種類(종류)와 性質(성질)이 다른 方路(방  
 로)를 발마은 것을 살필 수가 있나니 馮玉祥(풍옥상)의 背後(배후)에는 風  
 說(풍설) 그대로는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勞農露國(노농노국)의 隱密(은밀)한  
 後援(후원)이 있는 것과 國民黨(국민당)과의 握手(악수)가 있다는 것은 分明  
 (분명)하다. 그뿐 아니라 張(장)의 敗滅(패멸)이 大勢上(대세상) 確定(확정)되던  
 機會(기회)를 擇(택)하여야 即(즉) 十一月(11월) 二十七日(27일) 馮氏(풍씨)는 自派

(자파)의 有力者(유력자)를 招集(초집)하고 時局(시국) 收拾策(수습책)을 討議(토의)하였는데 基(기) 席上(석상)에서 發案(발안)된 意見(의견)이 三(3)이라고 한다.

一(1), 段執政(단집정) 推戴(추대), 內閣改造(내각개조), 關稅會議(관세회의) 繼續(계속)

二(2), 國民黨(국민당) 穩健分子(은건분자)가 主張(주장)한 政治的(정치적) 改新(개신)

三(3), 共產派(공산파)의 現(현) 政治組織(정치조직) 破壞(파괴)와 民國(민국) 大改造(대개조) 斷行(단행)

이엇었는데 結局(결국)은 第一案(제1안)을 採用(채용)하고 漸次(점차) 進行(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四日(4일)에 短波(단파)의 許世英(허세영)이 過渡期(과도기) 組閣(조각)을 承諾(승낙)하였다고 하고 其後(기후) 여러 가지 計劃(계획)이 交換(교환)되는 貌樣(모양)이나 아직 確定(확정)이 없다. 그러나 如何間(여하간) 不達間(부달간)에 馮玉祥(풍옥상)의 理想(이상)과 手腕(수완)으로 政治(정치)의 大改造(대개조)가 實現(실현)될 것은 大勢上(대세상) 免(면)하지 못할 運命(운명)에 있다. 그리하여 列國(열국)은 엇지할 줄을 아지 못하고 袖手傍觀(수수방관)하는 中(중)인데 日本(일본)은 十二月(12월) 十五日(15일)에 이르러서 滿洲(만주)에 出兵(출병)을 斷行(단행)하였다. 口實(구실)은 如何間(여하간) 張作霖(장작림) 沒落(몰락)을 그대로 觀望(관망)할 수 없는데에 잇을 것이다. 日本(일본)이 出兵(출병)한지 不過(불과) 十日(10일)에 奉天電(봉천전)은 絕望(절망)에 이르렀던 張君(장군)의 大勝(대승)과 郭君(곽군)의 無條件(무조건) 和議(화의) 提出說(제출설)이 있다.

眞相(진상) 與否(여부)는 未詳(미상)하나 이와 가치 大勢上(대세상) 郭君(곽군)의 勝算(승산)이 確然(확연)하던 것을 日本(일본)의 힘으로 挽回(반회)한다 하면 다시 무슨 運動(운동)이 中國(중국) 民衆(민중) 中(중)에서 이터날는지 그것까지에도 생각을 미리하여 두는 것도 日本(일본)을 爲(위)하여야 할 일

인 줄 맞는다. 그것은 그녀가 할 일이지니와 目前(목전)의 中國(중국)은 이미 左傾(좌경)한 中國(중국)이다. 그 適不適(적부적) 可不可(가불가)는 別問題(별문제)요 列國(열국)의 壓迫(압박)과 軍閥(군벌)의 私鬪(사투)에 憎惡心(증오심)이 絕頂(절정)에 이르렀든 中國民(중국민)은 이 機會(기회)에 그가 向(향)하여 進(진)하는 最終(최종)까지 가고 말 것은 分明(분명)하니 이에 이르게 한 理由(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스리라. 帝國主義(제국주의)의 政策(정책)의 時代的(시대적) 不洽(불합) 列國(열국)의 利害(이해)와 步調(보조)의 不一致(불일치) 勞農露國(노농노국)의 極東主力(극동주력) 등(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것은 大戰後(대전후)에 覺醒(각성)된 中國(중국) 四億萬(4억만) 民衆(민중)의 生活意識(생활의식)이다. 民族的(민족적) 平等(평등) 社會的(사회적) 公平(공평)이 思想(사상)의 偉大(위대)한 結實(결실)과 그 作用(작용)의 所使(소사)가 아니고 무엇이었느냐

日本(일본)은 英米(영미)의 壓力(압력)에 이기지 못하여 日露(일로)의 類(유)가 아니오. 性質(성질)이 判異(판이)한 兩者(양자)의 共同生活(공동생활)을 圖(도) 하지만은 如意(여의)하지 아니하는 것도 當然(당연)한 歸結(귀결)이다. 握手(악수)한 지 滿(만) 一年(1년)이 不過(불과)하여 여러 가지 風說(풍설)이 傳(전)한다. 이에 不安(불안)이 만만 日本(일본)은 中國(중국)에 絶對(절대)의 希望(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까지가 現(현) 日本(일본)의 支配階級(지배계급)과는 不可相容(불가상용)할 變化(변화)에 移轉(이전)하니 大陸政策(대륙정책)이 根本的(근본적)으로 問題(문제)되는 것도 無理(무리)가 아니다. 日本(일본) 內部(내부)에서 朝鮮(조선)에 對(대)한 政策(정책)의 物論(물론)이 다시 擡頭(대두)되는 ○○○○○○○○○○○○ 아니고는 ○○○○<sup>2</sup>

---

2\_“○○○”로 표시된 부분은 『동아일보』의 원문이 찢어져서 탈락된 부분으로 확인할 수 없다.

## 兩勢力(양세력) 暗鬪(암투)와 米國(미국) 地位(지위)

最終(최종)으로 나는 豫定(예정) 以上(이상) 기러지는 弊(폐)가 있스나 米國(미국)에 對(대)하여 一言(일언)을 아니 할 수 없다. 人口(인구)가 一億一千萬(1억1천만)이오 면적이 二百萬方呎(2백만방리) 어느 論者(논자)에 依(의)하면 四億萬(4억만) 人口(인구)는 充分(충분)히 包容(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 하여 米國(미국)이 가지고 있는 富力(부력)으로 말하면 全(전) 世界(세계)에 金貨(금화) 半額(반액)을 가졌고 世界(세계)의 自動車(자동차)의 八割(8할) 三分(3분), 電話(전화)가 六割(6할) 三(3), 鐵道(철도)가 十分(10분)의 四(4)를 所有(소유)한 富強國(부강국)이다. 그는 恒常(항상) 더욱 大戰(대전) 以後(이후)에는 白色人種(백색인종)의 頭目(두목)으로 自處(자처)해야 온다. 적어도 二十世紀(20세기)의 世界(세계)는 米國(미국)의 世界(세계)인 觀(관)이 있스리 만큼 資本國家(자본국가)로의 偉者(위자)오 强者(강자)다. 그가 否(부)라고 하는 以上(이상) 잘 되는 國際問題(국제문제)가 別(별)로 업고 그가 力圖(역도)하는 일노 列國(열국)이 隨從(수종)하지 아니하는 일이 적다. 이만큼 今日(금일)의 米國(미국)은 國際(국제) 政局上(정국상) 地位(지위)가 優秀(우수)한 것이다. 이러한 富強國(부강국)이 極東(극동)에서 白熱化(백열화)하는 資本國家(자본국가) 對(대) 社會主義(사회주의) 國戰(국전)에 如何(여하)한 態度(태도)로 臨(임)하였는지 決(결)코 輕視(경시)하지 못할 動作(동작)이다. 共和黨(공화당) 絶對多數(절대다수)로 一九二四年(1924년) 十一月(11월) 選舉(선거)에 大統領(대통령) 地位(지위)에 安着(안착)한 『쿨릿지』는 本年(본년) 三月(3월) 四日(4일)에 와서 前(전) 國務長官(국무장관) 『휴스』의 辭任(사임)을 맞고 最近(최근)까지 倫敦駐筭(윤둔주차) 米大使(미대사)로 있던 『케록크』를 後任(후임)으로 定(정)하였다 『휴스』가 辭任(사임)하게 된 有力(유력)한 理由(이유)는 氏(씨)의 對外(대외) 政見(정견)인 對(대) 露強硬策(로강정책)과 第二(제2) 軍縮會議(군축회의) 延期(연기) 등(등)에 關(관)하여 意見(의견)이 다른 上院議員(상원의원) 『보라』가 外交(외교) 委員長(위원장)이

되어 있는 데에 因(인)함이라고 한다. 今年(금년) 中(중)에 그 對外(대의) 問題(문제)가 具體的(구체적)으로 實現(실현)되지는 못하고 越年(월년)하게 되었으나 不遠間(불원간)에 米露(미로) 通商(통상)이 될 것은 疑心(의심)이 없다. 또 事實(사실)로 現著(현저)히 나타난 對(대) 極東政策(극동정책)으로는 一九二五年(1925년) 一月(1월)부터 九月(9월)까지 九個月間(9개월간)의 海軍(해군) 大演習(대연습)이 있었다. 이것은 英國(영국) 保守黨(보수당)의 新加坡(싱가포) 海軍(해군) 根據地案(근거지안) 即(즉) 總計(총계) 一千(1천) 百萬磅(백만방) 計劃(계획)보다도 日本(일본)에게 對(대)하야는 畿倍(기배)나 強烈(강렬)한 敵愾心(적개심)을 挑發(도발)한 事實(사실)이었다. 日本(일본)을 想定(상정) 敵(적)으로 하고 參加(참가) 艦數(함수)가 百七十隻(170척) 總(총) 噸數(톤수)가 約(약) 五十萬噸(50만톤) 行動(행동) 噸數(톤수)가 一萬(1만) 六千噸(6천리) 乃至(나지) 二萬(2만) 五六千噸(오륙천리)이었다. 그 演習(연습)을 맞치고는 大舉(대거)하야 濠州(호주)를 訪問(방문)하엿스니 米濠(호)의 提携協力(제휴협력)이라고 하야 日本(일본)이 大驚(대경)하던 것도 無理(무리)가 아니다. 그 다음 中國(중국)에 對(대)한 米國(미국)의 立場(입장)은 領土的(영토적) 野心(야심)은 업는 것이 分明(분명)한 同時(동시)에 資本的(자본적) 利得(이득)을 爲(위)하야 即(즉) 完全(완전)한 保障(보장) 下(하)에 投資(투자)를 하고 加工品(가공품)의 販路(판로)를 이에서 求(구)하러 하는 것은 事實(사실)이다. 그러함애 在來(제래)에 特權(특권)을 取得(취득)하지 못하엿던 關係上(관계상) 他(타) 強國(강국)이 現下(현하) 確持(확지)하고 있는 特權(특권)의 廢止(폐지)를 主張(주장)할 것은 當然(당연)한 바이니 이것이 門戶開放(문호개방)과 機會均等(기회균등)이라는 言語(언어)를 通(통)하야 發射(발사)되다. 그 方針(방침)에 가장 만히 衝突(충돌)되는 것이 日本(일본)이니 中國(중국)에서 日本(일본)의 特殊的(특수적) 地位(지위)를 抹消(말소)식히는 모든 運動(운동)에 米國(미국)이 同情(동정)을 表(표)하는 것은 이것이다. 最近(최근)에 와서는 隱然(은연)히 露國(노국)과 어느 程度(정도)의



一致(일치) 行動(행동)을 取(취)하여서라도 日本(일본)에 對(대)하려고 하는 氣色(기색)이 보인다. 이 原稿(원고)를 마침에 이르러서 米國(미국)은 國際聯盟(국제연맹)이 主權(주최)하는 軍縮會議(군축회의)에 參加(참가)하리라는 外電(외전)이 있다.

元來(원래) 軍縮(군축) 主張者(주장자) 『보라』가 外交(외교) 委員長(위원장)이 된 後(후)로 그 成立(성립)이 期待(기대)되던 바이지만은 『로카르노』條約(조약) 成立(성립) 後(후) 國際聯盟(국제연맹)에서 主權(주최)하려는 軍縮會議(군축회의)에는 露國(노국)이 參加(참가)하지 아니할지니 成功(성공)하지 못하리라고 보는 것이 米國側(미국측)의 意見(의견)이었으나 一方(일방) 陸軍(육군)과 海軍(해군)을 區別(구별)하면 米國(미국)의 在來(재래) 主張(주장)의 論理上(논리상) 參加(참가)하게 되라고 하던 것이다. 그런데 軍縮會議(군축회의) 成不成(성불성)에 至重(지중)한 關係(관계)를 가진 米國(미국)의 參加(참가) 問題(문제)가 成立(성립)되었다 하면 이 軍縮會議(군축회의)는 成功(성공)의 可能性(가능성)이 만 하다고 보는 것이 穩當(온당)할 것이다. (完(완))

(制限(제한)있는 地面(지면)인 故(고)로 大勢(대세)의 運向(운향)에 대한 輪廓(윤곽)도 分明(분명)히 되지 못한 것을 末安(미안)히 생각한다.)

# 橫說豎說 횡설수설

- 『동아일보』(1926.08.22) -

府內(부내) 鐘路署(종로서)에서는, 繼續的(계속적)으로 大檢擧(대검거)를, 行(행)하는 中(중)이라고



平穩(평온) 無事(무사)하다는, 總督政治(총독정치) 下(하)에서, 또 무슨 重大事件(중대사건)이 續出(속출)하였나



主義者(주의자)는 檢擧(검거), 言論機關(언론기관)은 停止(정지)가 아니면 禁止(금지), 集會(집회)와 團體(단체)는 威壓(위압), 그래도, 看板(간판)만은, 文化政治(문화정치)



奉天王(봉천왕) 張作霖(장작림)은, 南口(남구)의 占領(점령)으로, 因(인)하여, 赤賊(적적)을 殲滅(섬멸)하였다고, 豪語(호어)를 한다지

府內鍾路署에서는、繼續的으로、大檢學을、行하는中이라고  
平穩無事하다는、總督政治下에서、도무슨重大事件이續出하였나

主義者는檢學、言論機關는停止가아니면禁止、集會와團體는威壓、그래도、看板만은、文化政治

奉天王張作霖은、南口의占領으로、因하여赤賊을殲滅하였다고、豪語를한다지

馬賊出身으로선누구다려、赤賊이라하나

엇던친구의、總督政治에對한批評이야말로、칭말奇發하다

現下의總督政治는、朝鮮人을利케하고、益케하는人士는、迫害하고排斥하면되도、朝鮮人을害케하고、不利케하는놈들은、絶對的으로保護하는方針이라고

是故乎、曰、總督政治는惡黨保護政治라고

◇  
馬賊(마적) 出身(출신)으로선 누구다려, 赤賊(적적)이라하나

◇  
엇던 친구의, 總督(총독) 政治(정치)에 對(대)한 批評(비평)이야말로, 정말 奇發(기발)하다.

◇  
現下(현하)의 總督政治(총독정치)는, 朝鮮人(조선인)을 利(이)케 하고, 益(익)케 하는 人士(인사)는, 迫害(박해)하고 排斥(배척)하면서도, 朝鮮人(조선인)을 害(해)케하고, 不利(불리)케하는 놈들은, 絶對적으로 保護(보호)하는 方針(방침)이라고

◇  
是(시) 故(고)로, 曰(왈), 總督政治(총독정치)는 惡黨(악당) 保護(보호) 政治(정치)라고

# 情死<sub>(정사)</sub>란 一種<sub>(일종)</sub>의 自殺<sub>(자살)</sub>

- 『신민』 제17호(1926.09.01) -

나는 情死<sub>(정사)</sub>는 一種<sub>(일종)</sub>의 自殺<sub>(자살)</sub>로 봅니다. 그것은 自殺者<sub>(자살자)</sub>가 社會生活<sub>(사회생활)</sub>에 慘敗<sub>(참패)</sub>를 당하고 죽음의 길을 取<sub>(취)</sub>하드시 情死者<sub>(정사자)</sub>도 亦是<sub>(역시)</sub> 戀愛生活<sub>(연애생활)</sub>이나 社會生活<sub>(사회생활)</sub>에 慘敗<sub>(참패)</sub>를 당하고 無慘<sub>(무참)</sub>히도 죽음의 길을 取<sub>(취)</sub>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또 누구는 情死<sub>(정사)</sub>는 戀愛<sub>(연애)</sub>의 極致<sub>(극치)</sub>라구 합니다. 그러나 나는 情死<sub>(정사)</sub>는 戀愛<sub>(연애)</sub>의 極致<sub>(극치)</sub>라구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世上<sub>(세상)</sub>에는 죽지 안코도 오히려 두 戀人<sub>(연인)</sub>이 團欒<sub>(단란)</sub>하고 安逸<sub>(안일)</sub>하고 平和<sub>(평화)</sub>한 家庭<sub>(가정)</sub>을 이루고 잇는 前例<sub>(전례)</sub>가 적지 안으니사 - 그러면 戀愛<sub>(연애)</sub>의 極致<sub>(극치)</sub>는 情死<sub>(정사)</sub>가 안이라 平和<sub>(평화)</sub>하고 團欒<sub>(단란)</sub>한 家庭<sub>(가정)</sub>에 잇을 것입니다. 自殺者<sub>(자살자)</sub>가 社會生活<sub>(사회생활)</sub>에 慘敗<sub>(참패)</sub>를 당하고 自殺<sub>(자살)</sub>하드시 情死者<sub>(정사자)</sub>는 그들이 戀愛生活<sub>(연애생활)</sub>로 因<sub>(인)</sub>하야 社會<sub>(사회)</sub>에서 가진 迫害<sub>(박해)</sub>와 妨害<sub>(방해)</sub>를 맞다가 쫓겨내 戀<sub>(연)</sub>의 勝利<sub>(승리)</sub>를 못하고 情死<sub>(정사)</sub>를 하게 되는

것이니 情死者(정사자)는 社會(사회)의 慘敗者(참패자)인 同時(동시)에 또한 情死(정사)는 그들에게 迫害(박해)와 妨害(방해)를 주든 社會(사회)에 對(대)한 一 種(일종)의 無抵抗的(무저항적) 反抗(반항)일 것입니다.

또 情死(정사)는 社會(사회)에 慘敗(참패)를 당하고 情死(정사)를 하게 된 情死者(정사자) 自身(자신)에게 責任(책임)이 있을거이나 또 그들로 하여금 情死(정사)를 하지 않으면 안이되게 만든 社會(사회)에도 幾分間(기분간)의 責任(책임)은 있을 거입니다.

自殺者(자살자)가 自殺(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 좃치 못한 現象(현상)의 하나인 것 갓치 또 情死者(정사자)가 情死(정사)를 하게 되는 것은 決(결)코 조흔 것이라구는 할 수 업는 것이니 우리는 될 수 있난대로 그러한 惡例(악례)의 前轍(전철)을 밟지 안토록 하여야 할 거입니다.

# 年頭感<sup>연두감</sup>

- 『별건곤』 3호(1927.01.01) -

압흐로는 靑年運動(靑년운동)을 좀 더 의미잇시 니르켓스면 조흘가 합니다. 즉 현실을 떠나서 막연히 공상적으로 다라나지 말고 科學的(과학적) 基礎(기초)의 우에 立脚(입각)하여 가지고 나가도록 하엿스면 조흘가 하는 바입니다

- 東亞日報社 崔元淳

# 極東政局<sub>극동정국</sub>의 將來<sub>장래</sub>

- 『동아일보』(1927.01.01.-1927.01.12) (9회 연재) -

## 一(1)

歐洲大戰(구주대전)은 여러 곳에 ○○○○○○○○○○<sup>3</sup>果(과)를 齎來(재래) 하엿지만은 極東(극동)에 미친 影響(영향)처럼 現著(현저)한 바가 업다. 經濟上(경제상)으로 보아서 그러할 뿐 아니라 그 結果(결과) 政治上(정치상)으로 또한 將次(장차) 매질 歸結(귀결)이 그러하다. 國際聯盟(국제연맹) 經濟部(경제부) 專門家(전문가)의 調查(조사)에 依(의)하면 歐洲諸國(구주제국)의 國際貿易(국제무역) 總額(총액)은 戰前(전전)에 比(비)하며 實(실)로 一割(1할) 五分(5분)이 減少(감소)하엿슴에 不拘(불구)하고 北米合衆國(북미합중국) 亞細亞(아세아) 諸國(제국) 及(급) 濠洲諸國(호주제국)의 國際貿易(국제무역)은 三割(3할) 以上(이상)이 增加(증가)하엿는 바 極東諸國(극동제국)의 增加率(증가율)은 特(특)히 現著(현저)하다고 하니 이것으로 보아서도 極東(극동) 方面(방면)의 經濟事情(경제사

---

3\_○은 『동아일보』 원문이 탈락되어 확인이 불가함.

ings)을 一部分(일부분) 窺知(규지)할 수 있다. 이것은 西伯利亞(서백리아)와 中國(중국)을 包含(포함)한 極東(극동)인 故(고)로 어느 便(편)으로 보던지 當然(당연)한 바라고 할 것이다. 滿洲(만주)로만 볼지라도 日露戰爭(일로전쟁) 直後(직후)에는 開墾(개간)된 土地(토지)가 겨우 一百幾十萬町步(1백기십만정보)에 不過(불과)하던 것이 最近(최근)에 이르러서는 一千幾百萬町步(1천기백만정보)에 達(달)하였고 大豆(대두)도 十數年(십수년) 前(전)까지는 年額(연액) 六,七十萬噸(6,70만톤)에 不過(불과)하던 것이 一千九百二十四年(1924년)에 와서는 二百七十萬噸(270만톤) 以上(이상)에 達(달)하였으며 貿易(무역)도 只今(지금)부터는 二十年前(20년전) 씬으로 말하면 다못 五,六千萬兩(5,6천만냥)에 不過(불과)하던 것이 五億四千萬兩(5억4천만냥)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滿鐵(만철) 運輸收入(운수수입)도 十年(10년) 前(전)의 略(약) 三倍(3배)에 達(달)하였다 하니 요지음에 와서 눈에 피땀을 세워가지고 썰드는 鐵道(철도)가 만히 敷設(부설)된다고 하면 그 貯蓄(저축) 되었던 天然(천연)의 富力(부력)은 長足(장족)으로 開拓(개척)될 것이다. 滿洲(만주)가 이러하고 西伯利亞(서백리아)가 또한 그러하니 將次(장차) 公開(공개)될 極東(극동)의 物資(물자)는 實(실)로 推測(추측)하지 못할 程度(정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列國(열국)의 經營力(경영력)이 이에 向(향)하여 集中(집중)될 것도 當然(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잇서서 極東問題(극동문제)는 漸次(점차) 白熱化(백열화) 할 것이 必然(필연)한 運命(운명)이요, 그로 因(인)하여 旋回(선회)되는 國際的(국제적) 係爭(계쟁)도 前(전)에 比(비)하여 倍加(배가)될 素質(소질)을 가지고 있다. 況且(황차) 그러한 經濟的(경제적) 意味(의미)에 疊加(첩가)하여 社會主義(사회주의) 國家(국가)의 祖宗(조종)인 『쏘비엣트』 大露國(대노국)이 主力(주력)을 西方(서방)에서 東方(동방)으로 옮기고 大活動(대활동)을 開始(개시)함에 잇서서 었지 極東政局(극동정국)이 大戰(대전) 前(전)에 比(비)할 바이라. 元來(원래) 極東(극동)의 局面(국면)은 世界(세계)의 和亂(화란)에 重大(중대)한 關係(관계) 地位(지위)를 가



# 極東政局의 將來

崔元淳

三

滿蒙에 있어서 二十餘年을 두고 하려고 하던 것이니 中國側이其  
 다거온 日本의 地盤은 매우 넓나 後그대로 契約을 履行하지 아니할  
 운바가 만하다 東三省을 취고 안뿐 아니라 第一第二의 奉直戰爭  
 진張作霖이 사라 잇는 날까지 는 日 京奉線은 張作霖에게 大侮辱  
 本의 滿蒙에 가지고 잇는 勢力을 容을 當하고 잇는 것이니 即第一 奉直  
 易함은 직이지 아니 할 것이니 戰以來 山海關以東은 全然 獨立하  
 러나 張作霖의 地盤이 얼마나 維持야 張作霖의 個人經營이 되고 多  
 될는지? 郭松齡을 잡아 죽이고 다 數한 車輛과 機關은 殆히 奉天軍閥  
 시 張作霖이 北方軍閥의 總大將의 에게 占領을 當하였으나 잇지 하지  
 地位를 가지고 잇는 것은 다시 더 못하고 잇다 郭張戰時에는 前者  
 말할 것도 업시 日本의 勢力이 어 보다 도 더 兇한 打擊을 바닷다고  
 데까지 미치고 잇는 것을 證明하 한다 그리하여 直接損害가 約三  
 기에 充分하니 中國自體은 만만 千萬元이나 된다 하고 前者를 合하  
 니라 다 른 나라 即英國 支那라 면 五六千萬圓에 達하리 라 하니 英  
 의 心도 이 미 滿蒙方面에서 는 決國의 胸中이 얼마나 不平 하겠느냐  
 오 日本에 對敵할 바가 되지 못한 만은 하는 수가 업시 只 是 是 權利나  
 다 例를 들러 보면 英國이 光緒 主權도 다 拋棄하고 잇다고 한다 이  
 二十八年以來 二百數十萬磅의 是은 英國이 軍兵을 모라 시 張作霖  
 巨資를 더커서 京奉鐵道를 利用을 充수업는 事情도 잇지만은 日本

하야 가지고 어느 큰 利權을 獲得

이 背後에 잇는 것도 重大한 理由를 固執하고 中國人의 利益을 全然  
 라고 할 것이니 다 眼中에 두지 아니 함으로 中國人  
 은 이 것을 全部 敵對 視할 바가 오느

그러나 實際에 잇서 經濟的으  
 로 日本이 滿蒙에서 成功한 事業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것은 滿鐵의  
 四 即 滿鐵을 가 르켜서 中國人의 生  
 活에 影響을 끼치고 잇는 機關이라고 하야 蛇



張作霖氏

게 내세울 것이 업다 그럼으로 요즘 覬視하는 것은 그 形勢이 滿鐵에 만  
 에는 日本의 識者間에 이 것이 議論 不치는 것이 아니라 其他 모든 事  
 의 題目을 觸을 하는 것이다 그 原 業에서 벗켜서 日本의 滿蒙經  
 營이 어대 잇느냐 함에 만히 注目營이 進涉되지 아니 하는 理由가 이  
 에서 는 러인 데 大概는 滿蒙經營에 잇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에 日本이 오즉 日本 人 利益 本位 主義에 는 日本 人 識者 間에 滿蒙

지고 잇섯지만은 自今(지금) 以後(이후)는 더욱 加一層(가일층) 多端(다단) 複雜(복잡)할 것을 밋는다. 우리는 地理上(지리상)으로 直接(직접) 極東政局(극동정국)의 變遷(변천)에 利害關係(이해관계)가 잇는 터이니 中國(중국)의 天地(천지)가 前無(전무)한 大變動(대변동)을 이르키였고 그에 따라 極東政局(극동정국) 全體(전체)가 一大(일대) 轉換期(전환기)에 臨(임)하였스니 着實(착실)히 그 推勢(추세)를 考察(고찰)할 必要(필요)가 잇는 줄 밋는다.

## 二(2)

滿蒙(만몽)은 只今(지금) 그 主權(주권)이 中國(중국)에 잇슴으로 中國(중국)의 領土(영토)임에는 틀림이 업지만은 現在(현재) 그 實權(실권)은 日本(일본)과 露國(노국)에 잡히고 잇는 것이다. 大連(대련)을 中心(중심)으로 滿蒙(만몽)의 物資(물자)를 自己(자기) 手中(수중)에 利用(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日本(일본)의 政策(정책)인 同時(동시)에 『포스마스』條約(조약) 後(후) 長春(장춘)以南(이남)을 빼앗기운 露國(노국)은 다시 海參威港(해삼위항)을 極東政策(극동정책)의 策源地(책원지)로 삼는다. 一九二五年(1925년) 三月(3월) 十五日(15일)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第一回(제1회) 極東(극동) 『쑤비엣트』大會(대회) 席上(석상)에서 極東革命委員會議長(극동혁명위원회회장)이 한 말에만 依(의)할지라도 『海參威(해삼위)는 大連(대련)에 對抗(대항)할 것인바 大連(대련)과 經濟的(경제적) 爭鬪(쟁투)를 하는 것은 極東經濟(극동경제)에 關(관)하여 甚大(심대)한 影響(영향)이 있다』고 하여서 一般(일반)의 注意(주의)를 促(촉)한 것으로 볼지라도 能(능)히 推斷(추단)할 수 잇는 것이다.

露國(노국)으로 말하면 帝政時代(제정시대)에 잇서서 西便(서편)에서 海航(해항)에 出(출)할 곳을 엇지 못하고 極東(극동)에 向(향)하여 突進(돌진)하던 것은 著明(저명)한 사실이니 그 對極東(대극동) 政策(정책)은 舉皆(거개) 軍事的(군사적)이며 政治的(정치적)이엇기 때문에 其(기) 統治(통치) 五十年間(50

년간 政府(정부)가 缺損(결손) 填補(전보)로 十億留(10억류)를 支出(지출)하였다 하며 日露戰爭(일로전쟁)에 二十抑留(20억류)를 消費(소비)하였고 東清鐵道(동청철도)에 約(약) 五抑留(5억류)를 支出(지출)하였다 하니 現今(현금)에 남아있는 東中鐵道(동중철도)를 中心(중심)으로 極東(극동)에 잇서서 經濟的(경제적)으로 跋扈(박후)한 露國(노국)의 犧牲(희생)이야말로 實(실)로 巨大(거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一方(일방) 現今(현금) 日本(일본)은 其(기) 國家的(국가적) 運命(운명)을 左右(좌우)하는 것으로 보고 突進(돌진)하고 있는 것은 더 다시 말 것도 없다. 오늘날 日本(일본)이 밀고 가는 大陸政策(대륙정책)의 大體(대체)는 엇더한 것인가. 大隈內閣(대외내각) 時(시)에 二十一個條(21개조)로 中國(중국)을 壓迫(압박)하던 것은 이미 過去事(과거사)라고 할지니 政治的(정치적)으로나 軍事的(군사적)으로 中國(중국)의 領土(영토)를 覬覦(기원)할 생각은 발서 버린 듯하다. 버린다는 것보다도 그것으로는 日本(일본)의 利益(이익)을 維持(유지)하고 發展(발전)하기 어려운 時代(시대)가 到來(도래)한 것이다. 그리하여 日本(일본)의 大陸政策(대륙정책)은 最近(최근)에 와서 鐵道(철도)를 骨子(골자) 삼아 經濟的(경제적) 侵略策(침략책)으로 變形(변형)된 것은 누구나 看破(간파)할 수 있는 事實(사실)이다. 그러나 이 日本(일본)의 大陸政策(대륙정책)이 엇더한 運命(운명)을 가지고 있는지 考察(고찰)하여야 보자.

### 三(3)

滿蒙(만몽)에 잇서서 二十餘年(20여년)을 두고 닳겨온 日本(일본)의 地盤(지반)은 매우 놀라운 바가 만하다. 東三省(동삼성)을 쥐고 안진 張作霖(장작림)이 사라있는 날까지 日本(일본)이 滿蒙(만몽)에 가지고 있는 勢力(세력)을 容易(용이)히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張作霖(장작림)의 地盤(지반)이 얼마나 維持(유지)될는지? 郭松齡(곽송령)을 잡아 죽이고 다시 張作霖(장작림)이 北方軍閥(북방군벌)의 總大將(총대장)의 地位(지위)를 가지고 있

는 것은 다시 더 말할 것도 업시 日本(일본)의 勢力(세력)이 어디까지 밋치고 있는 것을 證明(증명)하기에 充分(충분)하니 中國(중국) 自體(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即(즉) 英國(영국)같은 나라의 힘도 이미 滿蒙(만몽) 方面(방면)에서는 決(결)코 日本(일본)에 對敵(대적)할 바가 되지 못한다. 例(예)를 드러보면 英國(영국)이 光緒(광서) 二十八年(28년) 以來(이래) 二百數十萬磅(2백수십만방)의 巨資(거자)를 던져서 京奉鐵道(경봉철도)를 利用(이용)해야 가지고 어느 큰 利權(이권)을 獲得(획득)하려고 하던 것인데 中國側(중국측)이 其後(기후) 그대로 契約(계약)을 履行(이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第一(제1) 第二(제2)의 奉直戰爭(봉직전쟁)으로 京奉線(경봉선)은 張作霖(장작림)에게 大侮辱(대모욕)을 當(당)하고 있는 것이다. 即(즉) 第一(제1) 奉直戰(봉직전) 以來(이래) 山海關(산해관) 以東(이동)은 全然(전연) 獨立(독립)해야 張作霖(장작림)의 個人(개인) 經營(경영)이 되고 多數(다수)한 車輛(차량)과 機關(기관)은 殆(태)히 奉天軍閥(봉천군벌)에게 占領(점령)을 當(당)하였으나 잊지하지 못하고 있다. 郭張戰時(곽장전시)에는 前者(전자)보다도 더욱 甚(심)한 打擊(타격)을 바닷다고 한다. 그리하여 直接(직접) 損害(손해)가 約(약) 三千萬元(3천만원)이나 된다 하고 前者(전자)를 合(합)하면 五六千萬圓(오육천만원)에 達(달)하리라 하니 英國(영국)의 胸中(흉중)이 얼마나 不平(불평)하겠느냐만은 하는 수가 업시 只今(지금)은 權利(권리)나 主張(주장)도 다 拋棄(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英國(영국)이 軍兵(군병)을 모라서 張作霖(장작림)을 칠 수 없는 事情(사정)도 있지만은 日本(일본)이 背後(배후)에 있는 것도 重大(중대)한 理由(이유)라고 할 것이다.

#### 四(4)

그러나 實際(실제)에 있어서 經濟的(경제적)으로 日本(일본)이 滿蒙(만몽)에서 成功(성공)한 事業(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것은 滿鐵(만철)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럼으로 요즘에는 日本(일본)의 識者間(식자간)에 이것  
이 議論(의논)의 題目(제목)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 原因(원인)이 어대 있느냐  
함에 만히 注目(주목)을 쓰는 터인데 大概(대개)는 滿蒙(만몽) 經營(경영)  
에 日本(일본)이 오즉 日本人(일본인) 利益(이익) 本位(본위)를 固執(고집)하고 中  
國人(중국인)의 利益(이익)을 全然(전연) 眼中(안중)에 두지 아니함으로 中國人  
(중국인)은 이것을 全部(전부) 敵對視(적대시) 함에서 오는 것이라는 論(논)이  
有力(유력)하게 되어 간다.

即(즉) 滿鐵(만철)을 가르쳐서 中國人(중국인)의 생피를 싸라먹는 機關(기  
관)이라고 하여 蛇蝎視(사갈시)하는 것은 그 影響(영향)이 滿鐵(만철)에만 국  
치는 것이 아니라 其他(기타) 모든 事業(사업)에까지 쫓겨서 日本(일본)의  
滿蒙(만몽) 經營(경영)이 進涉(진섭)되지 아니하는 理由(이유)가 이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요즘에는 日本人(일본인) 識者間(식자간)에 滿蒙(만  
몽) 特殊地域(특수지역) 開放論(개방론)이 擡頭(대두)되는 것이다. 이 事實(사실)  
을 다시 裏面(이면)에서 觀察(관찰)하면 軍事的(군사적)으로나 政治的(정치적)  
으로 殆(태)히 自己(자기)의 領土(영토)나 다름이 없스리만큼 그 勢力(세력)  
을 扶植(부식)한 日本(일본)도 滿蒙(만몽)의 中國人(중국인) 感情(감정)과 利害(이  
해)를 全然(전연) 無視(무시)하고는 絶對(절대)로 經營(경영)이 잘 되지 아니한  
다는 것이 表明(표명)된 事實(사실)이다. 日本(일본)의 處地(처지)가 近來(근래)  
이러한데 그 위에 中國(중국) 全體(전체)를 支配(지배)하려고 하는 政勢(정세)  
는 엇더한가. 日本(일본)의 極東(극동) 地位(지위)는 將次(장차) 이 以上(이상)으  
로 憂慮(우려)할 形勢(형세)가 날로 切迫(절박)하여 오는 것이다.

## 五(5)

勿論(물론) 그러하다 하여 日本(일본) 自身(자신)이 滿蒙(만몽) 經營(경영) 方  
針(방침)을 더디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朝鮮(조선)에 있어서 이번에 中央

(중앙) 政府(정부)의 內諾(내락)을 바닷다는 鐵道(철도) 計劃(계획)은 卽(즉) 十年間(10년간) 三億二千萬圓(3억2천만원)을 드려서 一千哩(1천리) 新設(신설) 大計劃(대계획)을 세운 것으로 말하면 그것이 朝鮮(조선)을 中心(중심) 삼는 計劃(계획)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滿蒙(만몽)에 置重(치중)하는 計劃(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卽(즉) 그네들이 말하는 바와 가치 咸鏡線(함경선), 鎭昌線(진창선)의 既定線(기정선)과 가치 滿浦線(만포선)을 先着(선착)으로 起工(기공)하여 露國(노국)의 東進策(동진책)에 對抗(대항)하며 國境(국경)에 出入口(출입구)를 만드려서 軍事的(군사적)으로 設計(설계)하는 同時(동시)에 老嶺山脈(노령산맥)以南(이남)의 北滿貨物(북만화물)을 朝鮮(조선)에 吸收(흡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地理的(지리적)으로 京城(경성)을 中心(중심)삼아 會寧(회령)까지 五百哩(5백리)오, 奉天(봉천)까지 五百哩(5백리)의 二等邊三角形(이등변삼각형)이 되고 다시 吉林(길림)을 頂點(정점)으로 한 吉會線(길회선)까지 三百哩(3백리)며 奉天(봉천)에서 吉林(길림)까지 三白喇(3백리)의 二等邊三角形(이등변삼각형)이 또 된다. 이러한 菱形(능형)의 奉天(봉천) 京城(경성), 會寧(회령) 京城(경성) 間(간)에 平元(평원) 鐵道(철도)가 있고 吉林(길림)에서 平元線(평원선)에 垂線(수선)으로 滿浦鎭線(만포진선)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其他(기타) 一部(일부)의 中國人(중국인) 經營線(경영선)을 合(합)하며 朝鮮(조선)과 滿洲(만주)의 環狀線(환상선)이 된다고 한다. 朝鮮(조선) 北方(북방)은 그러하고 滿蒙(만몽)에는 다시 各(각) 三千哩(3천리)의 鐵道(철도)를 敷設(부설)할 必要(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 工事費(공사비)로 各(각) 四億五天萬圓(4억 5천만원) 乃至(내지) 六億萬圓(6억만원)을 드려서 日本(일본)의 勢力(세력)을 完全(완전)히 七萬四千四百萬方里(7만4천4백만방리)가 되는 滿蒙(만몽) 土地(토지) 위에 곳곳 새우고져 하는 것이 日本(일본)의 欲望(욕망)이다. 計劃(계획)이 露國(노국)과 衝突(충돌)이 되며 競爭(경쟁)이 되어서 또다시 複雜(복잡)한 紛糾(분규)를 內容(내용)하고 있는 것이다.

## 六(6)

滿蒙(만몽)에 있어서 日本(일본)과 露國(노국)이 서로 紛爭(분쟁)을 이르고 있는 것은 鐵道敷設(철도부설)의 競爭(경쟁)이다. 이 鐵道敷設(철도부설)의 競爭(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 要點(요점)은 勿論(물론) 前段(전단)에서 말한 바와 가치 海參威(해삼위)와 大連(대련)의 經濟的(경제적) 鬭爭(투쟁)이지만은 이에 注意(주의)할 것은 그 鬭爭(투쟁)이 表面(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鐵道競爭(철도경쟁)보다도 그 裏面(이면)에 있는 勞農露國(노농노국)의 國策(국책)과 日本(일본)의 國策(국책) 即(즉) 社會主義(사회주의) 國家(국가)의 極東政策(극동정책)과 資本主義(자본주의) 國家(국가)의 極東政策(극동정책)이 서로 接觸(접촉)되어야 將次(장차) 이러날 危險(위험)한 發火(발화)다. 그러므로 『쏘비엣트』 極東政策(극동정책)의 正體(정체)가 어떠한 것인지 通察(통찰)할 必要(필요)가 있다.

露國(노국)이 革命(혁명)에 成功(성공)한 後(후) 對外(대외) 政策上(정책상) 主力(주력)을 드린 곳은 歐洲(구주)이엇었다. 그 理由(이유)는 『一國(일국)만 된 社會主義(사회주의)는 永屬(영속)할 수 없고 世界(세계)가 全部(전부) 赤化(적화)하는 時(시)에 비로소 그 成功(성공)이 保障(보장)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見地(견지)에서 歐洲(구주)에 向(향)하여 猛進(맹진)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農業國(농업국)인 露國(노국)은 國內(국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形便(형편)이 처음 뜻과 갖지 아니 한 바가 만하였을 뿐 아니라 世界革命(세계혁명)의 強襲(강습)도 失敗(실패)라고까지 할 수 업다 할지라도 적어도 西部(서부)에서 不得意(부득의) 한 것만은 事實(사실)이다. 더욱이 『레닌』의 死後(사후) 世界革命(세계혁명)에 關(관)하여 共產黨內(공산당내)에 疑惑(의혹)이 盛行(성행)되었스니 『레닌』主義(주의)의 目的(목적)이 世界革命(세계혁명)에 잇슴에는 틀림이 업다하여 그에 對(대)한 信念(신념)은 依然(의연)히 持續(지속)하는 터이엇지만은 다못 在來(재래)에 攻勢(공세)를 集中(집중)하여 오던 對(대) 歐洲革命(구주혁명)만은 多少(다소) 變更(변경)할 必要(필요)를 늦기게 되었다. 即(즉) 近來

(근래) 歐米(구미) 列強(열강)은 漸次(점차) 歐洲大戰(구주대전)에 바든 瘡痕(창이)를 나사가지고 所謂(소위) 『資本主義(자본주의) 安定狀態(안정상태)』가 成立(성립)되어서 西歐(서구)에 對(대)한 革命戰爭(혁명전쟁)의 『本攻擊(본공격) 正面(정면)』은 持久戰(지구전)으로 變更(변경)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스타린』一派(일파)의 主張(주장)은 이에 새로운 見地(견지)를 發見(발견)하였다. 그것은 東洋方面(동양방면)으로 間接(간접)이지만은 全力(전력)을 注(주)할 必要(필요)와 價値(가치)를 確信(확신)한 것이니 東洋方面(동양방면)에 있는 被壓迫(피압박) 民族(민족)의 自主權(자주권) 運動(운동)을 도움은 것은 卽(즉) 資本國家(자본국가)의 大宗(대중)인 英國(영국)이 日本(일본)에 對(대)한 攻擊(공격)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비에트』政府(정부)는 東洋(동양) 全局(전국)을 近東(근동)과 中東(중동) 及(급) 極東(극동)의 三正面(3정면)으로 區別(구별)하여 各各(각각) 赤化戰(적화전)을 開始(개시)한 結果(결과) 그 效果(효과)를 顯著(현저)하게 되었다.

## 七(7)

그리하여 一方(일방) 『아후카니스탄』을 거쳐서 印度(인도)에 侵入(침입)하고 西伯利亞(서백리아)를 거쳐서 蒙古(몽고)에 오고 그리하여 中國(중국) 本土(본토)에까지 一瀉千里의(일사천리적)으로 突進(돌진)하자는 것이다. 極東方面(극동방면)에 (勿論(물론) 近東(근동)도 그리하지만은) 오는 宣傳(선전)으로 말하면 直接(직접) 共產主義(공산주의) 그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民族的(민족적) 自主運動(자주운동)에 있는 것이다. 卽(즉) 主(주)로 被壓迫(피압박) 民族(민족)의 獨立運動(독립운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으로 嚴格(엄격)한 意味(의미)에서 보면 無產階級(무산계급)이 有產階級(유산계급)에 對(대)하는 階級鬭爭(계급투쟁)을 主張(주장)삼는다는 것보다도 弱小民族(약소민족)을 도와서 壓迫民族(압박민족)을 衝擊(충격)하는 데에 第一段(제1단)의 目的(목적)을 삼는 것이



다. 이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다른 나라의 資本主義(자본주의)를 對敵(대적)하는 것도 잊지만은 主(주)로는 資本主義(자본주의) 國家(국가)의 大宗(대종)인 英國(영국)을 正面(정면)의 敵(적)을 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露國(노국)의 宣傳(선전)은 恒常(항상) 民族解放運動(민족해방운동)에 置重(치중)하는 것이오 반다시 直接(직접) 共產主義(공산주의) 그것을 目的(목적)하는 것이 아닌 것은 中國(중국)의 最近(최근) 實例(실례)로 보아서 分明(분명)한 줄 맞는다. 그리하여 『소비엣』 當面(당면)의 敵(적)은 英國(영국)인 點(점)에 잇서서는 틀림없다. 露國(노국)이 中國(중국)에 盤石(반석)의 勢力(세력)을 確立(확립)하는 날에는 英國(영국)의 生命(생명)이라고 하는 印度(인도)가 威脅(위협)을 當(당)할 것도 必然(필연)한 일이니 英國(영국)이 最近(최근)에 와서 中國(중국) 南方政府(남방정부) 承認問題(승인문제)를 급작히 論議(논의)하는 것은 이것이 單純(단순)히 一年間(1년간)을 두고 苦痛(고통)을 밟던 罷業(파업) 事件(사건)에 끌리어서만 하는 일이 아니오 적어도 英國(영국)으로는 百年大計(백년대계)에서 冷靜(냉정)히 熟考(숙고)한 結果(결과)라고 할 것이다. 如何間(어하간) 英國(영국)의 中國(중국)에 對(대)한 政策(정책)은 後段(후단)에서 此(차)를 論(논)하려 하거니와 爲先(위선) 露國(노국)의 蒙古方面(몽고방면) 活動(활동)을 一瞥(일瞥)하야 日本(일본)의 滿蒙(만몽)에 對(대)한 活動(활동)과 對照(대조)하는 것도 매우 滋味(자미)있는 일이다.

## 八(8)

蒙古(몽고)는 面積(면적)이 百三十七萬方哩(137만방리) 人口(인구)가 二百萬(200만)이라는 바 此(차)를 內蒙古(내몽고) 外蒙古(외몽고)로 分(분)하야 外蒙古(외몽고)만 드러서 볼지라도 그 住民(주민)은 一方哩(1방리)에 大概(대개) 一人(1인)쯤 살리라고 한다. 그리하야 種別(종별)을 하야보면 蒙古人(몽고인)이 五十萬(50만) 中國人(중국인)이 二十萬(20만) 露國人(노국인)이 五千名(5천명) 可量

(가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地方(지방)은 中國(중국)과 露國(노국)의 中間(중간)에 介在(개재)한바 十七世紀半(17세기반)부터 中國人(중국인)이 佛敎國(불교국)인 點(점)으로 因(인)하여 中國(중국)에 屬(속)하게 되었으나 中國人(중국인)이 繼續(계속)하여 蒙古(몽고)에 移住(이주)하는 故(고)로 中國人(중국인)과 蒙古人(몽고인) 間(간)에는 衝突(충돌)이 적지 아니하였었다고 한다. 그럼으로 蒙古(몽고)의 貴族(귀족) 分子(분자)는 中國(중국)과 蒙古(몽고)의 關係(관계)를 清朝時代(청조시대)의 關係(관계)라 하여 이미 清朝(청조)가 廢址(폐지)된 以上(이상) 蒙古(몽고)는 中國(중국)에 隸屬(예속)할 理由(이유)가 없다고 하고 中國(중국)의 主權(주권)에서 分離(분리)하려고 하는 傾向(경향)이 있었다. 더욱이 世人(세인)의 記憶(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千九百十一年(1911년) 一月(1월)에 外蒙古(외몽고)가 中國(중국)에서 分立(분립)하는 宣言(선언)을 한 일이 있었다. 內蒙古(내몽고)는 中國人(중국인)도 만하고 地理上(지리상)으로도 中國(중국)에 갖차운 故(고)로 別(별)로 問題(문제)가 아니되지만은 地理上(지리상)으로는 露國(노국)에 갖차운 外蒙古(외몽고)는 이러한 일이 있은 것도 無理(무리)가 아니다. 其後(기후) 千九百七年(1907년) 露國(노국)에 革命(혁명)이 있은 後(후) 千九百十九年(1919년)에 蒙古自治(몽고자치)를 取消(취소)는 식이었지만은 中國(중국)의 內亂(내란)과 露國(노국)의 活動(활동)으로 또다시 外蒙古(외몽고) 分立(분립)의 形勢(형세)는 漸次(점차) 자라나는 中(중)에 잇서온 것이다.

露國(노국)이 帝政時代(제정시대)에는 千九百十二年(1912년) 十一月(11월) 露蒙條約(노몽조약) 千九百十三年(1913년) 十一月(11월) 露中條約(노중조약) 千九百十五年(1915년) 六月(6월) 中露條約(중노조약) 等(등)에 依(의)하여 『쏘비엣트』 露國(노국) 以前(이전)부터 相當(상당)히 蒙古(몽고)에 勢力(세력)을 심어온 것이 事實(사실)이다. 그리하여 其後(기후) 『쏘비엣트』政府(정부)는 露中(노중) 兩國(양국)이 다가치 蒙古(몽고)의 內政(내정)에 서로 干涉(간섭)하지 아니하기로 中國(중국)과 約束(약속)을 하였고 그뿐 아니라 蒙古(몽고)가 中國(중국)의

宗主權下(종주권하)에 自由(자유)로 商工業上(상공업상)의 國際條約(국제조약)을 締結(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千九百十九年(1919년) 蒙古(몽고) 自治(자치)의 取消(취소)로 因(인)하여 一段(일단) 廢棄(폐기)된 形式(형식)에 잇섰다. 其後(기후) 千九百二十一年(1921년) 十一月(11월) 莫斯科(막사과)에서 露蒙條約(노몽조약)을 매지 蒙古政府(몽고정부)가 蒙古(몽고) 嶺土(영토) 內(내)에 잇는 唯一(유일)한 政府(정부)인 것을 認定(인정)하고 서로 敵意(적의)가 잇는 團體(단체)의 組織(조직) 軍隊兵器(군대병기)의 運搬(운반)을 不許(불허)하기로 싸지 約束(약속)하였섯는데 다시 千九百二十四年(1924년) 五月(5월) 三十一日(31일) 露中條約(노중조약)으로 蒙古(몽고)에 對(대)하여 中國(중국)의 領土權(영토권)을 承認(승인)하면서도 右露中條約(우노중조약)은 廢棄(폐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實際(실제) 事情(사정)을 보면 千九百二十四年(1924년) 五月(오월) 活佛(활불)이 죽은 後(후) 그 後繼者(후계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露國(노국)과 連絡(연락)이 잇다는 蒙古(몽고) 青年國民黨(청년국민당)이 支配(지배)하는 中(중)에 잇다고 한다. 그리하여 外國人(외국인)이 蒙古(몽고)에 出入(출입)함에는 露國系(노국계)의 許可(허가)업시는 되지 못한다고 한다.

## 十(10)

이와 가치 蒙古(몽고) 方面(방면)에서 活動(활동)을 持續(지속)하는 『쏘비엣트』 政府(정부)가 아즉 國內(국내)에 잇서서 充分(충분)히 整頓(정돈)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只今(지금) 露國(노국)의 勢力(세력)으로는 直接(직접) 日本(일본)과 衝突(충돌)하기 어려운 바가 만함으로 敬遠(경원)하는 態度(태도)로 自重(자중)하는 形便(형편)에 잇지만은 그 代身(대신) 中國(중국) 本土(본토)에 잇서는 相當(상당)히 그 勢力(세력)을 擴張(확장)하고 잇는 것이다. 現下(현하) 事情(사정)을 그대로 본다하면 事實(사실) 有無(유무) 間(간)에 國民政府(국민정

부) 卽(즉) 南方政府(남방정부)가 勞農露國(노농노국)의 後援(후원)이 만하다는  
 것으로 看做(간주)하는 것이지만은 勞農露國(노농노국)의 말에 依(의)하면  
 絶對(절대)로 中國(중국) 南方政府(남방정부)에게 應援(응원)한 일이 업다고 한  
 다. 卽(즉) 『카라한』의 말에 依(의)할지라도 『高壓政策(고압정책) 示威運動(시  
 위운동) 及(및) 騷擾(소요)의 誘發(유발) 等(등)은 決(결)코 露國(노국)의 希望(희망)  
 하는 바가 아니다. 露國(노국)이 이러한 政策(정책)을 懷抱(회포)하고 있다  
 는 世說(세설)은 卽(즉) 露國(노국)을 敵視(적시)하는 諸國(제국)이 自己(자기)네  
 의 罪過(죄과)를 露國(노국)에게 轉嫁(전가)하려고 하는 狡策(교활책)에 不  
 過(불과)한 것이다. 露國政府(노국정부)는 上海(상해) 其他(기타) 學生運動(학생운  
 동)에도 何等(하등)의 關係(관계)가 업스니 다못 이러한 것을 그네들이 企  
 圖(기도)한 바에 不過(불과)하다. 中國(중국)에 對(대)한 露國(노국)의 態度(태도)  
 는 露國(노국) 內(내)에 잇서서 하는바 『쏘비엣』 制度精神(제도정신)에서  
 出發(출발)하고 잇는 것이다. 卽(즉) 露國革命(노국혁명)은 『쏘비엣』 聯盟(연  
 맹)을 形成(형성)하는 多數(다수) 國民(국민)을 橫暴(횡포)한 勸力(권력)에서 救出  
 (구출)하고 적어도 壓制(압제) 二字(두자)는 모도다 露國(노국) 外(외)에 驅逐(구  
 축)해야 바렸다. 이러한 意味(의미)를 國際的(국제적)으로 擴充(확충)해야 中  
 國(중국)과 平等條約(평등조약)을 締結(체결)함에 不過(불과)하다. 이것이 中國  
 (중국)에 잇서서 國權主義(국권주의)의 青年(청년)들을 刺戟(자극)한 原因(원인)  
 이던 것은 틈님이 업지만은 露國(노국)에 對(대)해야 學生(학생)들이 不  
 平等條約(불평등조약) 廢棄(폐기)를 要望(요망)한 것도 아니다. 實業家(실업가) 其  
 他(기타) 各(각) 階級(계급)의 人士(인사)들도 다가치 이러하야 그것을 主張(주  
 장)할 썬이다. 가장 保守主義的(보수주의적)인 段祺瑞政府(단기서정부)에 잇서  
 서도 그러하다.』 云云(운운)하야 中國(중국) 青年(청년)과 其他(기타) 모든 方  
 面(방면)의 人士(인사)들이 勞農露國(노농노국)의 政策(정책)에 贊成(찬성)하고 同  
 情(동정)하는 것은 事實(사실)일 썬 아니라 當然(당연)한 일이지만은 그것

은 露國(노국)이 勸(권)한 것도 아니오 中國(중국) 人士(인사)들이 請(청)하여 된 것도 아니다. 다못 露國(노국)이 自己(자기)네의 國家主義(국가주의) 政策上(정책상)으로 平等(평등)한 條約(조약)을 매것을 썬이라고 한다.

## 十一(11)

나는 반다시 『카라한』의 말을 그대로 맞자고는 아니한다. 그러나 적어도 今日(금일)의 中國革命(중국혁명)은 그 大部分(대부분)이 露國(노국)의 後援(후원)이나 宣傳(선전)으로 因(인)하여 今日(금일)의 大勢(대세)를 짓고 잇는 것이라고는 決(결)코 말할 수 업다. 적어도 南方(남방)에서 蔣介石(장개석)이 今日(금일)의 地位(지위)와 勝利(승리)를 어든 것은 中國(중국) 四億(4억) 民衆(민중)이 年來(연래)의 軍閥私鬪(군벌사투)에 이미 돌키였을 썬 아니라 그 軍閥(군벌)의 私鬪(사투)라고 하는 것도 裏面(이면)에 잇서서는 資本國家(자본국가) 列強(열강)의 帝國主義(제국주의)의 造作(조작)이오, 操縱(조종)하는 作亂(작란)인 줄을 잘 理解(이해)하게 되였슴으로 一部(일부)에 잇서서는 그 憎惡心(증오심)이 徹骨(철골)의 恨(한)을 짓고 잇던 것이다. 그와 가치 民衆(민중)의 反感(반감)을 挑發(도발)하는 것이 잇는 故(고)로 그의 反動(반동)으로 民衆(민중)에게서 엇더한 烽火(봉화)가 이러날 것도 避(피)치 못할 運命(운명)이엿섯지만은 그 運動(운동)을 今日(금일)과 가치 誘導(유도)식힌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업시 國民黨(국민당)의 힘이라고 할 것이오, 그 精神(정신) 卽(즉) 孫文氏(손문씨)의 三民主義(삼민주의)가 큰 功(공)을 짓는 데에 偉大(위대)한 功績(공적)을 시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시 살펴보면 南方(남방)의 國民政府(국민정부)가 江南(강남) 一帶(일대)를 거의 手中(수중)에 獲收(획수)하고 將次(장차) 四百餘州(4백여주)를 統一(통일)하게 된 데에는 露國(노국)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이룰 수 업는 것이다. 그 露國(노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露國(노국)이 直接(직접) 兵器(병기)를 주고 金錢(금전)을 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表面(표면)에 나타난 것으로만 보아서 第一(제1) 『쏘비엣트』 政府(정부)가 中國(중국)에서 在來(제래)에 가지고 있던 帝政露國(제정노국)의 利權(이권)의 拋棄(포기)와 不平等條約(불평등조약)의 廢止(폐지)를 斷行(단행)한 것은 不平等條約(불평등조약) 破棄(파기)로써 主張(주장)을 삼는 國民黨(국민당) 及(급) 一般(일반) 四億(4억) 民衆(민중)에게 好感(호감)을 사들인 뿐 아니라 間接(간접)으로 國民黨(국민당)의 威信(위신)을 天下(천하)에 도음는 作用(작용)은 分明(분명)히 잇섰다. 그 다음 第二(제2) 事實(사실)은 露國(노국)과 馮玉祥(풍옥상)의 接近(접근)이다. 오늘날 아즉까지 그 正體(정체)가 完全(완전)하게 다시 世上(세상)에 現露(현로)되지 못하고 잇스니 馮玉祥(풍옥상)의 實力(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疑問(의문)거리가 되어 잇지만은 如何(여하간) 馮玉祥(풍옥상)의 勢力(세력)도 輕侮(경모)하지 못할 바라는 點(점)에서는 누구나 異議(이의)가 업는 것이오, 이 馮玉祥(풍옥상)의 實力(실력) 維持(유지)와 勞農露國(노농노국)의 關係(관계)는 이미 世上(세상)에 드러난 公然(공연)한 祕密(비밀)이니 적어도 馮玉祥(풍옥상)이 復活(부활)한 것은 露國(노국)의 힘이라고 아니 할 수 업는 以上(이상) 馮玉祥(풍옥상)이 國民黨(국민당)과 南北(남북)이 呼應(호응)해야 北方軍閥(북방군벌)을 挾攻(협공)하게 되는 것도 當然(당연)한 일이오. 그로 因(인)해야 國民軍(국민군)의 勝利(승리)가 싸를 것도 必然的(필연적) 歸結(귀결)이니 이 두가지 事實(사실)만 할지라도 革命政府(혁명정부)의 勝利(승리)와 勞農露國(노농노국)의 提携(제휴)는 輕少(경소)하지 아니하다. 況且(황차) 勞農露國(노농노국)의 國策(국책)과 革命政府(혁명정부) 當面(당면)한 目的(목적)이 一致(일치)해야 그 互相間(호상간) 利害打算(이해타산)으로도 決(결)코 當分間(당분간)은 分離(분리)하지 못할 性質(성질)에 잇슴에야 더 다시 말할 것이 잇스라. 그럼으로 英國(영국)이나 日本(일본) 사람이 中國(중국)의 南方政府(남방정부)가 이와 가치 大勢力(대세력)을 잡게 되는 것은 全然(전연)히 露國(노국)의 煽動(선동)이오. 援助(원조)라고 云謂(운위)하는

것도 그대지 無理(무리)가 안인줄 맞는다.

## 十二(12)

中國(중국)의 政局(정국)이 이미 南方政府(남방정부)의 勝利(승리)에 기우러 지는 形勢(형세)를 보고 가장 크게 놀내는 나라가 英國(영국)이다. 異民族(이민족)을 虐待(학대)하고 搾取(착취)하기로 이미 技術(기술)이 熟達(숙달)한 것이 英國(영국)일 뿐 아니라 그 罪(죄)가 사라질 수 업는 것도 英國(영국)이다. 英國(영국)이 今日(금일) 中國(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利權(이권)으로 말하면 實(실)로 巨大(거대)한 것이니 第一(제일)로 稅關行政(세관행정)을 들 수 있다. 이것은 中國(중국)의 國家的(국가적) 財政(재정)을 左右(좌우)하는 것이라고 하야도 크게 틀림이 업다. 即(즉) 英國(영국)이 只今(지금)과 가치 稅關行政(세관행정)을 自己(자기) 手中(수중)에 녀코 있는 것은 中國(중국)의 國家財政(국가재정)을 支配(지배)하는 重大(중대)한 性質(성질)을 가진 것인데 그 우에 또 그에 屬(속)한 것이 있스니 鹽稅(염세)가 그것이다. 그것에만 쏘치치 아니하고 또 鐵道(철도)가 있다. 鐵道利權(철도이권)으로 말하면 英國(영국)이 列國(열국) 中(중) 第一位(제1위)를 占領(점령)하고 있나니 約(약) 四千哩(4천리)이라고 하는 바 그 中(중) 이미 既設(기설)된 것이 二千哩(2천리)에 達(달)한다. 出資總額(출자총액)이 未支拂(미지불)사지 合(합)하야 約(약) 五億圓(5억 원)에 達(달)하고 線路(선로)로 말하면 京奉(경봉), 滬寧(호녕), 湖廣(호광) 等(등) 重要(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英國(영국)은 中國(중국)이 內亂(내란)으로 因(인)하야 이 線路(선로)가 運轉(운전)을 中止(중지)하게 되는 것을 크게 憂慮(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鐵道(철도)의 國際(국제) 管理說(관리세)에는 英國(영국)이 熱烈(열렬)한 贊成者(찬성자)가 된다. 關稅會議(관세회의) 當時(당시)에도 鐵道(철도)에 對(대)한 投資(투자)를 確實(확실)히 하기 爲(위)하야 海關增收中(해관증수중) 一千萬元(1천만원) 乃至(내지) 二千三百萬元(2천

3백만원)을 建設費(건설비)로 支出(지출)하자는 案(안)을 提出(제출)하고 名目(명목)은 建設費(건설비)에 附(후) 實際(실제)에 依(의)서서는 建設費(건설비)로도 쓰지만은 一方(일방)에 依(의)서서는 投資(투자)된 英國(영국) 돈의 利子(이자)로도 回收(회수)하자는 것이 英國(영국)의 本意(본의)였다. 이만큼 英國(영국)은 鐵道(철도)가 中國(중국)에 回收(회수)되는 것을 甚(심)히 利害上(이해상) 關係(관계)가 있는 것인데 尤(특히) 正義(정의)나 人道(인도)라는 名目下(명목하)에 廉價(렴가)로 英國(영국)의 利權的(이권적) 鐵道(철도)를 中國(중국)에 팔(팔)게 되는 데야 尤(특히) 順順(순순)하게 應(응)할 理(이치)가 在(존)재(재)하리라. 그러므로 中國(중국) 四億人(4억인)이 主張(주장)하는 關稅(관세) 自主權(자주권) 一步(일보)를 進(진)하야 稅關行政(세관행정)의 回復(회복) 이것이 目的(목적)을 達(달)하면 다시 鐵道回收(철도회수)에 事(사)지 去(거)고 말(말) 것은 明瞭(명료)하게 見(보)이는 理路(이로)이니 劈頭(벽두)에 日本(일본)이 關稅權(관세권) 自主(자주)에 同義(동의)한 關稅會議(관세회의)를 不成立(불성립) 試(시)히려고 하던 것도 免(면)하지 못할 바이었었다.

### 十三(13)

그러므로 英國(영국)은 機會(기회)만 有(있)으면 長江(장강) 一帶(일대)에 依(의)서 近來(근래) 動搖(동요)되는 英國(영국)의 地盤(지반)을 確立(확립)하기에 焦慮(초려)하던 것이다. 더욱이 昨年(작년) 六月(6월) 二十三日(23일) 沙面(사면) 事件(사건) 以來(이래)로 續行(속행)된 排英(배영) 經濟絕交(경제절교)로 總罷工(총파공)이 起(일)어나서 香港(항항)에서 甚(심)히 英國(영국)의 打擊(타격)은 實(실)로 英國(영국)의 對中(대중) 發展上(발전상) 絶對(절대)한 威脅(위협)이 在(존)재(재)했다. 그 罷業(파업)이 그와 同(동)등 前無(전무)한 偉力(위력)을 發揮(발휘)한 것은 다시 말할 것도 亦(또) 廣東政府(광둥정부)가 存立(존립)한 所致(소치)이 在(존)재(재)했으니 英國(영국)의 見地(견지)에서는 百方(백방)으로 廣東政府(광둥정부)의 倒壞(도괴)에 注



力(주력)할 것도 當然(당연)한 일이었었다. 그리하여 去年(거년) 八月(8월) 二十九日(29일)에 突發(돌발)된 長江(장강) 上流(상류)의 萬縣事件(만현사건)은 크게 國際的(국제적) 問題(문제)로 發展(발전)식히여서 그것을 口實(구실)노하여 가지고 다시 長江(장강) 一帶(일대)에 있는 英國(영국)의 勢力(세력)을 磐石(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여 或者(혹자)는 『맛당히 實力(실력)으로써 中國(중국)의 迷夢(미몽)을 打破(타파)하라』고까지 主張(주장)되던 것이다. 英國(영국)의 國力(국력)이 또 不幸(불행)히 今日(금일)에 있어서 中國(중국)을 兵力(병력)으로써 壓倒(압도)할 수 있엇다면 上海事件(상해사건), 罷業(파업), 萬縣事件(만현사건) 等(등) 英國(영국)이 武力(무력)으로써 中國(중국)을 攻襲(공습)할 口實(구실)거리는 여러 번 있엇스니 이미 英國(영국) 軍隊(군대)는 宣戰布告(선전포고)를 하고 中國(중국) 南方(남방)에 와서 어느 한 便(편)을 占領(점령)하고 잇슬는 지도 알 수 업다. 그러나 多幸(다행)히 今日(금일)의 世界大勢(세계대세)는 또 英國(영국)의 國力(국력)은 中國(중국)을 그와 가치 蹂躪(유린)하지 못할 形便(형편)에 잇는 것이다. 그럼으로 英國(영국)은 一步(일보) 又(우) 一步(일보) 中國(중국)에 代(대)하여 讓步(양보)라할가 退步(퇴보)라할가 如何間(여하간) 失敗(실패)의 길을 밟고 잇는 것이다. 그리되는 것이 必然(필연)한 理致(이치)이지 안던지는 알 수 업스나 事實(사실)에 있어서서는 英國(영국)은 敗(패)하고 廣東政府(광둥정부)는 勝(승)하야 더욱 乘勝長驅(승승장구)하는 形勢(형세)를 짓고있다. 그리하여 頑強(완강)한 大帝國(대제국)인 英國(영국)도 할 수 업든 貌樣(모양)이다. 畢竟(필경)은 中國(중국)에 잇던 公使(공사)를 다시 選任(선임)하고 對中(대중) 政策(정책)을 根本的(근본적)으로 變更(변경)하는데 이르렀다.

#### 十四(14)

即(즉) 英本國(영본국)에 있어서 去年(거년) 十二月(12월)에 와서는 強硬論(강경론)이 어대로 드러가고 英(영) 外相(외상)이 廣東政府(광둥정부)와 談判(담

관하고저 한다는 外電(외전)이 잇섯슬뿐 아니라 英(영) 勞動黨(노동당)은 卽(즉시) 南方政府(남방정부)의 承認(승인)을 主張(주장)하고 其他(기타) 輿論(여론)도 一變(일변)한 感(감)을 주었다. 事實上(사실상) 이것은 廣東政府(광둥정부)에 對(대)하여 在來(재래)와 갓치 英國(영국)이 強硬論(강경론)으로만 간다하면 長江(장강) 以南(이남)에 잇서서 英國(영국)의 經濟(경제) 基礎(기초)가 根本的(근본적)으로 破滅(파멸)을 當(당)할 念慮(염려)가 잇는 것을 英國國民(영국민)이 峩다른 結果(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去年(거년) 十月(10월) 一日(1일)부터 廣東政府(광둥정부)가 聲明(성명)한 增稅(증세) 卽(즉) 普通(보통) 輸入貨物(수입화물)에 二分五厘(2분5리), 輸入奢侈品(수입사치품)에 五分(오분)의 消費稅(소비세) 또한 輸出品(수출품)에 二分五厘(2분5리)의 生產稅(생산세) 賦課(부과)에 對(대)하여 英國(영국)은 이것이 分明(분명)하게 廣東政府(광둥정부)의 條約(조약) 違反(위반)의 行動(행동)이오 그뿐 아니라 十月(10월) 十四日(14일) 北京(북경) 政府(정부)의 否認(부인)이 잇섯슴에 不拘(불구)하고 默認(묵인)을 하였다. 이것은 確實(확실)하게 斷言(단언)할 수는 업지만은 英國(영국)이 廣東政府(광둥정부)에 對(대)하여 排英(배영) 行動(행동)만 中止(중지)하면 그것도 關係(관계)치 아니하다는 約束(약속)에서 나온 것이 안인가 한다. 新進(신진) 氣銳(기에)한 『람프슨』은 赴任(부임) 途中(도중) 十二月(12월) 三日(3일) 上海(상해)에 到着(도착)하여야 在留(재유) 英商人(영상인)을 召集(소집)하고 意見(의견)을 들은 後(후) 北京(북경)에 가는 途中(도중) 먼저 漢口(한구)에 갓섰다. 九日(9일) 漢口(한구)에 간 後(후) 國民政府(국민정부) 外交部長(외교부장) 陳友仁(진우인)과 來往(내왕)하여야 會談(회담)한 바가 잇섯다 하는 바 『람프슨』은 非單(비단) 陳友仁(진우인)뿐 아니라 九江(구강)에서 蔣介石(장개석)과도 相談(상담)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用務(용무)로 말하면 英國(영국)이 中國(중국)에 對(대)하여 이미 어느 腹案(복안)을 세워가지고 南方政府(남방정부) 承認問題(승인문제)에 關(관)하여 意見(의견)을 交換(교환)한 것이라고 한다. 英國(영국)의 態度(태도)

를 보면 卽(즉) 十二月(12월) 十八日(18일) 北京(북경) 外交團(외교단) 會議(회의)에  
 서 提出(제출)한 英國(영국)의 新提案(신제안)으로 보아서도 그 內容(내용)이  
 重大(중대)한 것은 勿論(물론)이지만은 萬一(만일) 列國(열국)이 그에 贊同(찬동)  
 하지 아니하면 英國(영국) 單獨(단독)으로라도 斷行(단행)하려고 하는 氣色  
 (기색)이 보인다는 點(점)에서 確實(확실)히 英國(영국)의 對中(대중) 政策(정책)  
 이 一大(일대) 轉換(전환)됨을 發見(발견)할 수 있다. 이에서 가장 크게 놀  
 난 나라가 日本(일본)이니 關稅議會(관세의회) 劈頭(벽두)에 日本代表(일본대표)  
 의 演說(연설)을 듣고 英國代表(영국대표)의 胸中(흉중)에 上下(상하)되든 心臟  
 (심장)의 鼓動(고동)은 다시 이번에 日本(일본) 公使(공사)에게 服酬(복수)된 感  
 (감)을 늦기지 아니할 수가 없다.

## 十五(15)

英國(영국)이 었던한 理由(이유)로 이와 가치 急激(급격)히 中國(중국)에 對  
 (대)한 政策(정책)을 根本的(근본적)으로 變更(변경)하게 되었는가. 이로부터  
 나는 내가 이 駁論(논문)에서 변변치 못하나마 나의 管見(관견)을  
 發表(발표)할 本旨(본지)가 展開(전개)될 것이다. 나는 只今(지금)까지 過去(과  
 거)와 現狀(현상) 더욱히 過去(과거)에 對(대)하여 만히 論述(논술)하여 왔다.  
 그러나 이로부터서는 過去(과거)도 間或(간혹) 말할 터이지만은 主(주)로  
 現狀(현상)을 미러서 將來(장래)를 揣摩(체마)하여 보려고 한다. 이리하여  
 내가 이 論文(논문)에서 매질 結論(결론)과 事實(사실)이 符合(부합)할는지 또  
 는 그것치 아니하고 極東(극동)의 形勢(형세)가 全然(전연) 反對(반대)되는 歷  
 史(역사)를 낫타낼는지 그것은 斷言(단언)하지 못할 바이지만은 萬一(만일)  
 내가 只今(지금) 생각하는 것과 갖치 事實(사실)에 잇서서 그리된다하면  
 이것은 二十世紀(20세기) 歷史(역사)에 大書特筆(대서특필)될 重大(중대)한 事實  
 (사실)이다. 적어도 大戰(대전)의 產物(산물)로 露國革命(노국혁명)이 成功(성공)

된 事實(사실) 以上(이상)으로 重大(중대)하다고는 할 수 업슬지라도 그 다음으로 세일 수 잇는 重大(중대)한 事件(사건)으로 看做(간주)하고저 하는 것이다. 決(결)코 英國(영국)이 惶怯(황겁)하는 程度(정도)를 가지고 말할 것도 아니오. 日本(일본)이 恐懼(공구)하는 바로만 論義(논의)될 바도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바와 가치 中國(중국)에 社會主義(사회주의) 國家(국가)가 建設(건설)된다하면 이것은 實(실)노 全(전) 世界(세계)가 다시 새로운 歷史(역사)에 발을 드되지 아니 할 수 업는 重大(중대)한 歷史的(역사적) 劇(극)이 展開(전개)되는 것이다. 露國(노국)의 革命(혁명)으로 겨우 初步(초보)에 드러선 人類(인류)의 新歷史(신역사)는 中國(중국)이 赤化(적화)됨으로 因(인)하여 그 地盤(지반)을 더욱 鞏固(공고)케 하는 實演(실연) 順序(순서)에 드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惝(창)소리가 기러지니 그만두고 다시 本論(본론)으로 드러가서 생각하여 보자.

## 十六(16)

極東問題(극동문제)라고 하는 것도 새삼스러운 듯 하나 要(요)컨대 中國(중국) 問題(문제)이지 中國(중국)이 엇지 되느냐 하는 問題(문제)가 即(즉) 極東(극동)이 엇더케 되겠느냐 하는 問題(문제)를 解決(해결)식히는 것이다. 그런데 今日(금일)의 中國(중국)이 엇더한 길을 받고 잇느냐 하면 우리는 세가지로 區別(구별)하여 그 中(중)에서 엇더한 것이던지 하나로써 中國(중국)이 向(향)하고 가는 길을 判斷(판단)할 수 있다. 即(즉) 今日(금일)의 中國(중국)은 兩極端(양극단)의 正反對(정반대)되는 勢力(세력)이 鬪爭(투쟁)하는 中(중)에 잇스니 하나는 封建時代(봉건시대)의 軍閥(군벌)의 勢力(세력)이오 또 하나는 二十世紀(20세기)의 新興勢力(신흥세력)인 社會主義(사회주의) 勢力(세력)과의 鬪爭(투쟁)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勢力(세력)이 서로 싸호든 結果(결과)가 엇지 되겠느냐 하면 封建時代(봉건시대)의 軍閥(군벌)이 勝利(승리)를

어더서 다시 戰國時代(전국시대)의 中國(중국)으로 退步(퇴보)를 하거나 그러  
 치 아니하면 社會主義(사회주의) 勢力(세력)이 勝利(승리)를 어더가지고 『쏘비  
 엣트』 露國(노국)과 적어도 近似(근사)한 것이 되여서 國際聯盟(국제연맹)에  
 對立(대립)하는 『쏘비엣트』 聯邦國(연방국)과 同一(동일)한 戰線(전선)에 서게  
 될 것이오. 그러치 아니하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 되고 요즘에 日本人  
 (일본인) 間(간)에 만히 觀察(관찰)되는 所謂(소위) 近代國家(근대국가) 即(즉) 立憲  
 共和國(입헌공화국)으로 다른 列國(열국)과 갓흔 國家組織(국가조직)은을 具有  
 (구유)하게 되는 세 가지에 不過(불과)할 것이다. 그러면 第一(제일) 即(즉) 封  
 建時代(봉건시대)의 軍閥(군벌) 勢力(세력) 即(즉) 保守的(보수적) 軍閥派(군벌파)가  
 勝利(승리)를 占(점)할 만한 素質(소질)과 實力(실력)이 있느냐 하면 이것은  
 今日(금일)의 形勢(형세)로는 絕望的(절망적)이라고 斷言(단언)할 수 밧게 업다.  
 무슨 사담이야 하면 첫째 그 保守的(보수적) 勢力(세력)의 素質(소질)로 보아  
 서 現代(현대)에서는 活躍(활약)할 時代性(시대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在來  
 (재래)의 中國(중국) 軍閥(군벌)이라는 것은 大戰(대전) 前(전)까지는 어느 政綱  
 (정강)도 잇섯고 當時(당시)의 中國(중국)으로는 그 軍力(군력)을 助長(조장)할  
 必要(필요)도 어느 程度(정도)까지는 잇섯스니 國家的(국가적) 意義(의의)가  
 잇섯다. 勿論(물론) 私鬪(사투)가 만하였고 野心家(야심가)의 欲望(욕망)에 手  
 段物(수단물)이 되어잇던 것이 多大部分(다대부분)이지만은 그래도 그 中(중)  
 어느 部分(부분)은 政綱(정강)의 存在(존재)를 認定(인정)을 바들 바도 잇섯든  
 것은 事實(사실)이엿스니 全國(전국)의 統一(통일)이 必要(필요)하고 統一(통일)  
 에는 武力的(무력적) 統一(통일)이 아니면 아니 된다하야 最大(최대) 武力(무  
 력)이 中央(중앙) 政權(정권)을 잡고 그 武力(무력)으로 全國(전국)을 統一(통일)  
 하려고 하던 것이 只今(지금) 생각하면 잘못이지만은 그것을 眞情(진정)  
 으로 밧는 者(자)도 잇섯든 것은 否認(부인)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이  
 것은 이미 다 沒落(몰락)을 當(당)하였다. 段祺瑞(단기서), 吳佩孚(오패부), 孫

傳芳(손전방)사지도 運命(운명)이 멀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는 形便(형편)이니 더 다시 말하여 무엇하랴. 오즉 남아있는 것이 奉天王(봉천왕) 張作霖(장작림)이 사라있고 그가 奉天王(봉천왕)에서 一步(일보)를 進(진)해야 北方(북방) 軍閥(군벌)의 總大將格(총대장격)으로 北京(북경)에 入(입)하고 全部(전부)를 統割(통합)하는 形便(형편)에 있다.

## 十七(17)

그러나 張作霖(장작림)을 總領(총령)으로 하는 安國民(안국민)의 政見(정견)이 무엇인가. 破壞的(파괴적) 方面(방면)으로 보면 赤賊(적적)의 討滅(토벌)이라는 看板(간판)이 있을는지 알 수 업스나 在來(재래) 軍閥(군벌)에게 極度(극도)의 憎惡(증오)를 늦기는 一般(일반) 民衆(민중)에게 다시 向意(향의)를 바들만한 建設的(건설적) 무슨 政綱(정강)이 있는가 하면 업는 것이다. 國家(국가)가 財政(재정)이 困窮(곤궁)해야 官吏(관리)와 教師(교사)가 怠業(태업)을 하는 地境(지경)이니 그 對策(대책)이 如何(여하) 外國(외국)의 勢力(세력)이 自意(자의)로 侵入(침입)해야 領土(영토)와 主權(주권)을 紊亂(문란)케 하니 그것을 防止(방지)할 方策(방책)이 如何(여하) 업는 것이 事實(사실)이니 一般(일반) 民衆(민중)이 무엇을 信憑(신빙)하고 그네들로 하여곰 勝利(승리)를 가지게 도을 理致(이치)가 있는가. 況且(황차) 滿蒙(만몽)에서 日本(일본)의 走狗(주구) 노릇을 하는 者(자)로 맞게 보지 아니하는 張作霖(장작림)을 도아서 國家(국가) 統一(통일)을 할 수 있게 하리라고는 絕對(절대)로 맞을 수 업는 일이다. 그럼으로 적어도 目下(목하) 革命軍(혁명군)이 意外(의외)의 大速度(대속도)로 勝利(승리)를 거듭해야가는 裏面(이면)에는 一般(일반) 中國民(중국인) 四億(4억)이 이미 軍閥(군벌)의 동모가 아니오 南方(남방) 革命軍(혁명군)의 벗이라는 點(점)에 틀림이 업다. 하물며 움직일 수 업는 地盤(군벌)을 이미 닥근 以上(이상)에야 더 다시 말할 것이 잇스랴. 그럼으로 軍閥(군벌)의

沒落(몰락)은 이미 既定事實(기정사실)이오 오즉 終局(종국)이 時日(시일)에만 問題(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尙當(합당)할 것이다. 昨今(작금)에 오는 外電(외전)만 綜合(종합)할지라도 列國(열국)은 이미 이 大勢(대세)를 움직일 수 업는 事實(사실)도 觀察(관찰)하고 이리 되여가는 局面(국면)을 如何(여하)히 收拾(수습)하여야 自國(자국)이 在來(재래)에 가지고 있던 利權(이권)에 損害(손해)를 적게 보겠느냐함에 焦慮(초려) 汲汲(급급)하는 貌樣(모양)이니 가장 困難(곤란)한 나라가 日本(일본)이오 가장 김버할 나라가 勞農露國(노농노국)이지만은 누가 슬퍼하고 누가 김버하던지 間(간)에 中國(중국)의 政治的(정치적) 分流(분류)는 제가 가야될 目的地(목적지)에 向(향)하여 틀넘업시 急走(급주)하는 貌樣(모양)이다. 英國(영국)서 다시 『람프슨』이 나거나 日本(일본)서 條約局長(조약국장)이 南舟北馬(남주북마)에 피쌌을 썩거나 米國(미국)이 大驚(대경)하여 公使招還(공사초환)을 하거나 그러한 일에는 參見(참견)하려고도 아니하고 革命政府(혁명정부)는 戰爭(전쟁)을 繼續(계속)하여 關稅(관세)를 增收(증수)하고 새로운 正剛(정강)을 連發(연발)한다.

## 十八(18)

이러한 엄척난 일을 當(당)하는 日英米(일영미) 三國(삼국)은 그 對策(대책)에 눈코를 못 쓰는 模樣(모양)이다. 그네들 側(측)으로 보면 三國(삼국)이 協同(협동) 防禦線(방어선)을 베풀고 이 決河(결하)의 勢力(세력)을 幾分間(기분간) 阻止(조지)하여 多少(다소) 讓步(양보)를 하고 犧牲(희생)을 맞칠지라도 極左(극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심흔 생각이 泰山(태산) 갓갓지만은 三國(삼국)의 步調(보조) 一致(일치)는 이미 華府會議(화부회의) 時(시)부터 새긴 그릇이 되었다. 日英同盟(일영동맹)의 破棄(파기)는 日本(일본)과 英國(영국)이 急遽(급거)히 오늘날 이 形便(형편)이라고 하여서 恢復(회복)되지 못할 分離(분리)를 지었섯고 南方(남방)에 利害(이해)가 크고 그 走狗(주구)가 南方(남방)에

서 이미 失脚(실각)한 英國(영국)과 利害問題(이해문제)가 南方(남방)보다는 北  
 便(북편) 滿蒙(만몽)에 크고 그 走狗(주구)인 張作霖(장작림)이 아즉싸지는 生  
 脈(생맥)을 維持(유지)하고 있는 日本(일본)과는 利害問題(이해문제)가 具體的  
 (구체적)으로 드러가면 드러갈수록 間隔(간격)은 생길지언정 協同(협동)의  
 可望(가망)은 到着(도착)히 成立(성립)될 길이 적다. 이에 米國(미국)이야 더  
 다시 말할 것이 아니다. 米國(미국)은 在來(재래)에 그 立場(입장)이 었더 하  
 였느냐하면 年代(연대)가 가장 오랜 英國(영국)의 利權(이권) 即(즉) 海關(해  
 관), 鐵道(철도), 租界獨占(조계독점) 等(등) 利權(이권)에 對(대)하야 參加(참가)  
 하지 못한 關係上(관계상) 그것을 不滿(불만)하게 생각하고 恒常(항상) 門戶開  
 放(문호개방)과 機會均等(기회균등)을 鐵則(철칙)으로 세우고 싸와 오던 것이  
 다. 米國(미국)의 外交策(외교책)은 英國(영국)에만 對(대)하야 그러하였던 것  
 이 아니라 日本(일본)에 對(대)하야서도 英國(영국)에 나리지 아니할 熱度  
 (열도)와 壓力(압력)으로 滿蒙(만몽) 特殊地域(특수지역) 利權(이권) 等(등)에 逼迫  
 (압박)하야 온 것이다. 大戰(대전) 後(후) 歐洲(구주)가 經濟(경제)으로 衰退(쇠퇴)  
 하고 米國(미국)에 黃金(황금)이 激增(격증)됨을 따라 東洋方面(동양방면) 더욱  
 히 極東方面(극동방면)에 와서 이 政策(정책)을 一層(일층) 露骨的(노골적)으로  
 實行(실행)하는 것이다. 갖가운 例(예)를 들면 再昨年(제작년) 七月(7월) 前後  
 (전후)에 華府(화부), 倫頓(윤돈), 北京(북경) 等地(등지)에서 暗鬪(암투)되는 列國  
 (열국)의 外交戰(외교전)을 다시 聯想(연상)할 必要(필요)가 있다. 關稅會議(관세  
 회의) 前(전) 即(즉) 日本(일본)이 機敏(기민)한 外交策(외교책)으로 北京(북경)에다  
 가 關稅會議(관세회의)를 열게하고 米國(미국)이 中心(중심)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列國(열국) 會議(회의)를 열고져 하던 中國(중국)과 米國(미국)의 어느  
 計劃(계획)을 失敗(실패)시키고만 것으로 볼지라도 日本(일본)의 外交上(외교  
 상) 勝利(승리)임에는 틀림이 업지마는 그때의 米國(미국) 胸算(흉산)을 엿볼  
 수가 잇섯다. 그럼으로 今番(금번)에도 米國(미국)이 英日(영일)과 갖치 共



同行動(공동행동)을 取(취)하지 아니할 것은 能(능)히 續斷(속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肯定(긍정)되는 事實(사실)이라 하면 적어도 英米日(영미일) 三國(삼국)이 協同的(협동적)으로 一團(일단)이 되어서 이 中國(중국)의 現下(현하) 形勢(형세)를 阻止(조지)하게는 되지 못할 것도 肯定(긍정)될 일이라고 할 것이다.

## 十九(19)

그뿐 아니라 英(영), 米(미), 日(일) 三國(삼국)이 一致協動(일치협동)할지라도 中國(중국)의 現下(현하) 形勢(형세)를 얼마나 挽回(만회)하겠느냐 함에는 疑心(의심)이 적지 아니하다. 그 實例(실례)로는 勞農露國(노동노국)이 革命(혁명)에 成功(성공)한 후 列國(열국)에 對(대)하여 斷乎(단호)한 態度(태도)에 出(출)하였고 列國(열국)은 同盟(동맹)해야 此(차)에 對敵(대적)하였지만은 畢竟(필경)에 있어서서는 日本(일본)은 西伯利亞(서백리아) 出兵(출병)으로 七億圓(7억원)이라는 巨金(거금)의 損(손)만 보았을 뿐이요, 何等(하등)의 利益(이익)을 거두지 못하였스니 設或(설혹) 三國(삼국)이 協同(협동)할 수 있슬지라도 前(전)에 露國(노국)에 對(대)하다가 當(당)한 失敗(실패)에 鑑(감)하여 또다시 그러한 無謀(무모)한 짓은 아니 할 것이 分明(분명)하다. 그러하다 하면 列國(열국)은 엇더한 方策(방책)으로 中國(중국)에 臨(임)할 것인가. 아니다. 只今(지금) 엇더한 方策(방책)으로 對(대)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 論文(논문)에서 새로 指摘(지적)하여 煩論(번론)할 것도 업시 昨今(작금)에 傳達(전달)되는 外報(외보)가 이것을 說明(설명)하고 있는 줄 맞는다. 卽(즉) 日本(일본)은 張作霖(장작림)이 비록 北京(북경)에 드리갓섯슬지라도 張作霖(장작림)을 다시 奉天(봉천)에 도라오게 하여 東三省(동삼성)을 직히게 하고 表面(표면)으로는 張作霖(장작림)을 그대지 도읍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同時(동시)에 南方政府(남방정부)를 承認(승인)하고 그 交換條件(교환조건)으로 在來(재래)의 既得權(기

특권을 維持(유지)하려고 하는 模樣(모양)이다. 그리만 되면 日本(일본)으로  
 는 그 以上(이상) 조흔 일이 업슬 것이나 그러나 이것을 南方政府(남방정  
 부)가 드를 理(리)가 업스니 萬一(만일) 南方政府(남방정부)로서 그러한 條件  
 (조건)으로 日本(일본)과 妥協(타협)을 한다하면 그 主張(주장)을 스스로 굽  
 히는 것이 되고 말지니 이 革命(혁명) 遂行上(수행상) 重大(중대)한 時機(시기)  
 에 있어서 그러한 對外策(대외책)을 取(취)할 理致(이치)가 업다. 다시 말하  
 면 그 主議(주의) 主張(주장)의 大部分(대부분)을 變更(변경)하는 意味(의미)가  
 되고 말지니 應諾(응낙)을 아니하려니와 그러하다 하여 全然(전연)히 자  
 己(자기) 主張(주장)하는 그대로 固執(고집)하고 日本(일본)과 손을 아조 쓴는  
 것도 只今(지금) 形便(형편)으로는 不利(불리)한 바가 만한 사담에 多少(다소)  
 내의 憶測(억측)인지는 알수 업스나 여러 가지 웨널니를 붓쳐가지고 日  
 本(일본)을 아조 찌지도 아니하고 붓치지도 아니하는 方略(방략)을 써서  
 時日(시일)을 끌고 가는 듯 하다. 무슨 理由(이유)로 그러하느냐 하면 早  
 晚間(조만간) 全國(전국)을 統一(통일) 할 것은 分明(분명) 하지만은 日本(일본)  
 을 只今(지금) 아조 찌는 것은 間接(간접)에 있어서 張作霖(장작림)을 도와  
 주는 念慮(염려)가 만하고 아조 붓치는 것은 日本(일본)의 要求(요구)가 過  
 多(과다) 할 썬 아니라 英國(영국)과 쏘는 米國(미국)과 競爭(경쟁)을 붓칠 必  
 要(필요)도 있는 터이니 左右(좌우)을 確然(확연)히 하지 아니하고 끌고가  
 려는 듯이 보인다.

## 二〇(20)

그러나 英國(영국)으로는 日本(일본)과도 쏘한 處地(처지)가 다르다. 即  
 (즉) 日本(일본)은 利權(이권)의 主力(주력)이 滿蒙(만몽)에 있는 것은 事實(사실)  
 이지만은 本土(본토)에도 相當(상당)한 企業(기업)을 가지고 있는 터이니 北  
 方(북방)에만 局限(국한)하기도 어려울 썬 아니라 그 北方(북방)에 있는 利

權(이권)이라고 하는 것도 本土(본토)가 全部(전부) 革命政府(혁명정부)에 통일  
 이 되고 赤化(적화)를 한다하면 張作霖(장작림)사지도 露國便(노국편)에 기우  
 러질지도 이지 못하는 바가 있어서 매우 複雜(복잡)한 便(편)에 있지만  
 은 英國(영국)은 그와 달나서 南方(남방) 卽(즉) 長江(장강) 以南(이남)만 잘 撫  
 摩(무마)할 수가 있으면 그 以上(이상) 더 애를 쓸 必要(필요)가 업는 故(고)  
 로 南方(남방)에도 好意(호의)를 表(표)하고 北方(북방) 各地(각지)에 잇는 軍閥  
 (군벌)에게도 好感(호감)을 살 수 잇는 二分(2분) 五厘(5리) 及(급) 五分(5분)의  
 附加稅(부가세) 卽時(즉시) 實行案(실행안)을 提起(제기)한 것이다. 英國(영국)이  
 이와 가치 自利策(자리책)에 汲汲(급급)하는 一方(일방)에 日本(일본)은 그 以  
 上(이상)으로 南方政府(남방정부)에 接近(접근)을 表(표)하고 米國(미국)의 態度  
 (태도)는 前後(전후)에 米國(미국)의 國際地位(국제지위)가 重樞(중추)를 이르고  
 잇는니 만큼 世人(세인)의 注目(주목)을 끄는 터이나 그러나 아즉은 그  
 眞意(진의)를 寸度(촌탁)하기에 어렵다. 그러나 外電(외전)에 傳(전)하는 바와  
 가치 英國(영국)의 提案(제안)에 駐中(주중) 米國公使(미국공사)가 贊意(찬의)를  
 表(표)하였다는 것과 中國(중국)에 對(대)해야 온 米國(미국)의 利害的(이해적)  
 立張(입장) 及(급) 最近(최근) 外交策(외교책)을 通(통)해야 보면 英日(영일)과 協  
 同(협동)을 해야가지고 中國(중국) 內政(내정)에 干涉(간섭)을 아니할 것만은  
 明白(명백)하다. 그러하다 하면 英國(영국), 日本(일본), 米國(미국)의 目下(목하)  
 對中策(대중책)이 結局(결국) 各各(각각) 自國(자국)의 利害的(이해적) 立張(입장)에  
 서 南方(남방) 革命政府(혁명정부)와 어느 折衝(절충)은 잇슬지라도 戰端(전단)  
 을 이르키는 일은 업슬 것이 勿論(물론)이오 그 敵(적)인 卽(즉) 安國軍(안국  
 군) 張作霖(장작림)을 露骨的(노골적)으로 도와서 革命政府(혁명정부)에 對戰(대  
 전) 식히지도 아니할 것이다. 다못 中國(중국)의 內政(내정) 卽(즉) 中國民(중  
 국민)의 希望(희망)하고 實行(실행)하는 革命的(혁명적) 行動(행동)에 對(대)하여  
 具體的(구체적) 阻止策(조지책)은 取(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된다 하면

中國(중국)의 革命(혁명)을 南方政府(남방정부) 그 自體(자체)가 作定(작성)하고 가는대로 되고 말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타당)한 줄 맞는다. 그러하다 하면 前端(전단)에 말한 바와 가치 保守的(보수적) 軍閥勢力(군벌세력)이 擡頭(대두)될 餘地(여지)는 어느 便(편)으로 보던지 絕望的(절망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서 남은 것이 政府革命(혁명정부)가 統一(통일)을 한 後(후)에는 엇 더한 國家(국가) 形態(형태)를 取(취)하게 될 것인가. 近代國家(근대국가) 即(즉) 資本國家(자본국가)의 形態(형태)를 쓰게 될 것인가 社會主義(사회주의) 國家(국가)의 形態(형태)를 쓰게 될 것인가. 이에까지 와서는 以後(이후) 進展(진전)될 論旨(논지)가 大概(대개) 明瞭(명료)해야진 感(감)이 있스나 그러나 다시 좀 더 써보고저 한다.

## 二十一(21)

南方政府(남방정부)가 統一(통일)을 할지라도 決(결)코 社會主義國家(사회주의국가)로 서지 아니하리라고 觀察(관찰)하는 者(자)가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내가 보는 바에 依(의)하고 社會主義國家(사회주의국가) 組織(조직)이 今日(금일)의 中國(중국) 民度(민도)에 맞고 아니 맞는 것은 別問題(별문제)로 하고 害(해)로울는지 또는 利(이)로울는지 그 適不適(적부적) 또는 利害(이해) 如何(어하)는 別問題(별문제)로 하고 南方政府(남방정부)가 失敗(실패)를 한다면 모르되 自己(자기) 實力(실력)으로 統一(통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疑心(의심)할 餘地(여지)가 업는 줄 맞는다. 即(즉) 南方政府(남방정부)가 오늘날 이 와갓흔 勝利(승리)를 어든 것이 무엇이 힘이나 하면 그것은 南方政府(남방정부)에 金錢(금전)이 만히 잇던 것도 아니오 兵力(병력)이 優越(우월)하던 것도 아니다. 다못 그 主義(주의) 政綱(정강)이 民意(민의를) 어든 데에 不過(불과)하니 다시 말하면 孫文氏(손문씨)의 三民主義(삼민주의)라는 것이 四億(4억) 民衆(민중)에게 信望(신망)을 잇고 그 主義(주의)를 標榜(표방)하고 蹶起(걸)

기한 革命政府(혁명정부)의 政治(정치)와 軍事(군사)의 方策(방책)이 適宜(적의)한  
 所致(소치)에 不過(불과)한 것이다. 故(고) 孫文氏(손문씨)가 四十餘年間(40여년  
 간)을 두고 北伐(북벌)을 計劃(계획)한지 決(결)코 一二次(일이차)가 아니었지만  
 은 처음으로 이와 갖치 勝利(승리)를 占(점)하게 된 直接(직접) 原因(원인)은  
 將介石氏(장개석씨)가 露國(노국)에서 廣東(광둥)에 도라온 後(후) 學校(학교)를  
 設(설)하고 革命軍(혁명군)으로서 맞춤직한 鬪士(투사)를 만히 培養(배양)하여  
 그네들을 實地(실지) 戰線(전선)에 配置(배치)하고 革命精神(혁명정신)의 綱紀(강기)  
 (강기)를 세우며 그 規律(규율) 下(하)에 秩序整然(질서정연)한 政治的(정치적) 또  
 는 軍事的(군사적) 計劃(계획)을 實行(실행)하게 되었으므로 統一(통일) 事業(사  
 업)을 成就(성취)할 수 있게된 것이다. 當時(당시) 十餘萬(10여만)의 廣東(광둥)  
 軍隊(군대)가 잇섯지만은 그것은 亦然(역연) 다른 軍閥(군벌)의 部下(부하)에  
 잇는 軍隊(군대)와 素質上(소질상) 別(별) 差異(차이)가 업슴으로 孫文氏(손문씨)  
 는 恒常(항상) 『革命(혁명)을 大成(대성)함에는 主義(주의)를 爲(위)하여 奮鬪(분  
 투)하는 有力(유력)한 軍隊(군대)가 업서서는 아니된다. 主義(주의)를 爲(위)하  
 야 奮鬪(분투)하는 下級(하급) 幹部(간부)를 養成(양성)하지 아니하면 아니된  
 다』고 嘆息(탄식)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다가 露都(노도)에서 軍事教育(군사교육)  
 을 바든 將介石(장개석)이 廣東(광둥)에 도라온 後(후) 黃浦(황포)에 그  
 學校(학교)를 設立(설립)하였다고 한다. 그 學校(학교)에서 길너낸 學生(학생)  
 이 千九百二十四年(1924년) 第一期生(제1기생) 五百名(5백명)을 募集(모집)한 後  
 (후) 昨年(작년) 春期(춘기)까지의 三回(3회) 卒業生(졸업생)이 一萬人(1만인)에 達  
 (달)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昨年(작년) 三月(3월) 八日(8일)에 와서 다시 廣  
 東(광둥) 各地(각지)에 잇는 軍官學校(군관학교)를 併合(병합)하여 가지고 大規  
 模(대규모)의 教育(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그 學校教育(학교교육)은 軍事(군사)  
 와 政治(정치)로 二分(이분)하여 軍事教育(군사교육)에는 普通(보통) 士官學校  
 (사관학교)와 다를 것이 업지만은 政治教育(정치교육)에 잇서서는 革命黨(혁명

당의 錚錚(쟁쟁)한 人物(인물)들이 革命精神(혁명정신)을 鼓吹(고취)하기에 最善(최선)의 努力(노력)을 다한다고 한다. 그 學科(학과)로 말하면 中國政黨史(중국정당사), 帝國主義國家(국가)의 侵略史(침략사), 社會革命史(사회혁명사) 等(등)으로 系統(계통)이 있는 革命學(혁명학)의 教育(교육)을 준다고 한다. 이와 같은 教育(교육)을 바다 青年(청년)들이 實地(실지) 戰線(전선)에 나아가서 下級(하급) 幹部(간부)로 兵卒(병졸)을 指揮(지휘)하는 터이니 在來(제래)의 中國(중국) 軍隊(군대)와 比較(비교)하여야 目睹(목도)한 者(자)는 別天地(별천지)의 氣(기)를 가지고 놀나는 것도 當然(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 二十二(22)

革命軍(혁명군)을 形成(형성)하고 있는 人物(인물)의 素質(소질)이 그러할 뿐 아니라 南方政府(남방정부)가 尊奉(존봉)하고 依支(의지)해야 할 뿐 아니라 最大力(최대력)의 힘을 이루고 있는 主義(주의)라는 것이 果然(과연) 或者(혹)자가 말하는 바와 가치 그대지 共產主義(공산주의)와 距離(거리)가 遙遠(원)한 것인가. 이것을 이에서 論議(논의)하면 너머 기러질 뿐 아니라 本論(본론) 目的(목적)에도 그것케 緊要(긴요)한 바가 아니니 略(약)하거니와 如何間(여하간) 三民主義(삼민주의)가 아모리 적게 잡드라도 國家(국가) 社會主義(사회주의)임에는 틀림이 업고 國家(국가) 社會主義(사회주의)라고 하여도 그 政權(정권)을 在來(제래)의 軍閥(군벌)이나 資閥(자벌)에게 주지 아니하는 民衆(민중)의 土臺(토대)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社會主義(사회주의) 範圍(범위)에 너은 것도 決(결)코 過(과)히 틀닌 생각이 아닌 줄 맞는다. 南方政府(남방정부)의 主義(주의) 主張(주장)이 國家(국가) 社會主義(사회주의)에 잇고 그를 運用(운용)하는 重要(중요) 人物(인물)이 그러한 것으로 보아서 南方政府(남방정부) 自體(자체)는 社會主義(사회주의)임에 틀림이 업나니 더욱 히 그네들이 發表(발표)하고 그 實行(실행)하는 政策(정책)을 보면 內政(내정)

外政(외정)을 물론하고 南方政府(남방정부) 自體(자체)는 社會主義(사회주의)라고 하여야 尙當(합당)할 理由(이유)가 있다.

民國(민국) 十五年(15년) 第二次(제2차) 全國(전국) 代表大會(대표대회)에서 決定(결정)한 對內(대내) 政策(정책)이나 同年(동년) 五月(5월)에 蔣介石(장개석)이 第三次(제3차) 全國(전국) 工會聯合會(공회연합회)에서 한 말 卽(즉) 『農工兵(농공병)의 聯合(연합)은 革命黨(혁명당)의 標語(표어)다. 革命(혁명)을 위하여 武裝(무장)한 軍隊(군대)는 物論(물론) 必要(필요)하지만은 武裝(무장)하지 아니한 農工(농공)의 關係(관계)는 더욱 重大(중대)한 것이다. 吾人(오인)의 目的(목적)은 第一步(제1보)로 革命軍(혁명군)과 農工群衆(농공군중)을 聯合(연합)하고 第二步(제2보)로는 軍隊(군대)를 完全(완전)히 農工群衆(농공군중)의 軍隊(군대)로 하며 最後(최후)에는 軍隊(군대)를 眞正(진정)한 勞働軍(노동군)으로 하여가지고 帝國主義(제국주의)를 打破(타파)함에 있다』고 演說(연설)을 하였다고 한다. 나는 이 以上(이상) 南方政府(남방정부)가 社會主義(사회주의)라는 것을 說明(설명)하기 爲(위)하여 例證(예증)을 들 必要(필요)가 업스니 이 蔣介石(장개석) 말노도 充分(충분)히 南方政府(남방정부)를 社會主義(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事(사)이다.

이 政府(정부)가 統一(통일)한 後(후)에 自己(자기) 自身(자신)은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見地(견지)에 잇서슬지라도 或(혹)은 外界(외계)의 形便(형편)이 卽(즉) 列國(열국)의 妨害(방해)가 그리가지 못하게 할 念慮(염려)가 잇지 아니할가 하는 者(자)가 잇슬는지 알 수 업스나 이 外界(외계)의 壓力(압력) 卽(즉) 列國(열국)의 干涉(간섭)으로 因(인)하여 발바오던 길을 바리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할가 하는 念慮(염려)가 잇슬는지 모르나 나는 前段(전단)에서 列國(열국)이 干涉(간섭)하지 못할 理由(이유)를 여러 가지로 簡單(간단)하나마 指摘(지적)하였다. 萬一(만일) 日本(일본)이나 英國(영국)이 干涉(간섭)하여 無理(무리)하게 中國(중국) 南方政府(남방정부)가 가는 길을 妨害(방해)하면 그

때에는 必然(필연)코 露骨的(노골적)으로 勞農露國(노농노국)과 더욱 密接(밀접)히 提携(제휴)하게 될 것이다. 勞農露國(노농노국)이 單獨(단독)이였섯고 只今(지금)에 比(비)하여 混亂(혼란) 狀態(상태)에 잇던 時(시)에도 列國(열국)이 同盟(동맹)해야 干涉(간섭)한 結果(결과)는 失敗(실패)에 도라가고 마랏나니 況且(황차) 中國(중국) 四億(4억) 民衆(민중)의 人氣(인기)를 一身(일신)에 모히고 잇는 勞農露國(남방정부)와 勞農露國(노농노국)을 聯合(연합)식히면서 그에 干涉(간섭)을 하려고는 狂醉(광취)가 아닌 以上(이상) 아니할 줄 맞는다. 그럼으로 나는 이 멧가지 理由(이유)로만 보아서도 中國(중국)에 잇서 社會主義(사회주의)를 標榜(표방)하는 國家(국가) 統一(통일)의 大事業(대사업)이 不遠(불원)한 將來(장래)에 樹立(수립) 될 줄 맞는다.

### 二十三(23)

前般(전반)에서 나는 中國(중국) 事情(사정)이 不遠(불원)한 將來(장래)에 社會主義(사회주의)를 標榜(표방)하는 革命政府(혁명정부)의 손에 統一(통일)될 運命(운명)에 잇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그 時期(시기)에 이르러서는 豫測(예측)하기가 어렵다. 卽(즉) 北方(북방) 軍閥(군벌)이 堅固(건고)하지는 못할 지라도 如何間(여하간) 一團(일단)이 되어가지고 南北(남북)이 對峙(대치)하는 形勢(형세)에 잇스니 完全(완전)히 北方(북방)을 征伐(정벌)함에는 아즉도 여러 曲折(곡절)을 거쳐야 될 터이라 相當(상당)한 時間(시간)을 要(요)할 것은 物論(물론)이다.

그러나 그것도 軍閥(군벌) 內部(내부)에서 엇더한 內訌(내홍)이 생길는지 알 수 업스니 惑(혹)은 案外(안외)에 速(속)할지도 알 수 업는 것이다. 如何間(여하간) 中國(중국) 本土(본토)가 社會主義(사회주의)로 統一(통일)된다 하면 滿蒙(만몽)이라고 하는 것도 決(결)코 今日(금일)의 現狀(현상)을 그대로 維持(유지)하기 어려울 것은 免(면)하지 못할 일이다. 張作霖(장작림)의 部



下(부하)에서 郭松齡(곽송령)이가 난 것이니 第二(제2)의 郭松齡(곽송령)이가 아니 난다고 壯談(장담)하지 못할 것이오 第二(제2)의 郭松齡(곽송령)이가 아니 날지라도 張作霖(장작림)이 今日(금일)과 가치 日本(일본)에만 忠實(충실)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大戰(대전) 後(후) 旭日(옥일)의 勢(세)를 이르고 있던 日本(일본)의 極東(극동) 地位(지위)가 變更(변경)될 것도 推測(추측)할 수 있다. 日本(일본)의 勢力(세력)이 積極(적극)에서 消極(소극)으로 向(향)하면 日本(일본)의 大陸政策(대륙정책)도 그에 따라 變化(변화)되지 아니할 수 업는 것이다. 이와 가치 日本(일본)의 大陸政策(대륙정책)이 變化(변화)되지 아니할 수 업는 一方(일방)에는 勞農露國(노농노국)의 勢力(세력)이 伸長(신장)될 것도 또한 必然(필연)한 理路(이로)다.

萬一(만일) 日本(일본)이 張作霖(장작림)을 暗然(암연)히 도아서 南北(남북)을 그대로 對峙(대치)시킨다하면 一方(일방) 奉天票(봉천표) 暴落(폭락)으로만 損失(손실)을 當(당)할 뿐 아니라 南方政府(남방정부)는 英國(영국)을 抑壓(억압)한 後(후) 日本品(일본품)에 대하여 『썬이코트』를 勵行(여행)할지니 日本(일본)이 經營(경영)하는 紡績會社(방적회사)나 製絲事業(제사사업)에 同盟(동맹) 罷業(파업)이 繼續(계속)해야 이리날 것도 分明(분명)히 보이는 到來(도래)할 現象(현상)이다. 이리된다 하면 日本(일본)이 到底(도저)히 견대지 못할 形便(형편)에 이를지니 이에 第一次(제1차) 煩悶(번민)을 다시 當(당)할 것이다. 張作霖(장작림)이 沒落(몰락)하면 革命政府(혁명정부)가 主張(주장)하는 帝國主義(제국주의) 打破(타파)를 具體的(구체적)으로 實行(실행)하려고 할지니 旅順(여순)과 大連(대련)의 租借(조차)를 廢地(폐지)하려고 할 뿐 아니라 畢竟(필경)은 滿鐵(만철)까지도 問題(문제)거리가 될 것도 事實(사실)이다.

## 二十四(24)

그리하여 日本(일본)이 極東(극동)에 있어서 對外(대외) 對內(대내)를 勿論

(물론)하고 政策上(정책상) 根本(근본) 變動(변동)을 이르는 同時(동시)에 勞農露國(노농노국)은 언더할가. 勿論(물론) 一般(일반)이 말하는 바와 가치 露國(노국)의 敵(적)은 日本(일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英國(영국)인 것은 事實(사실)이다. 그럼으로 中國(중국)이 社會主義(사회주의) 國家(국가)를 建設(건설)하게 되면 中國(중국)을 걸쳐서 中東(중동)과 近東(근동) 方面(방면)의 英國(영국) 勢力(세력)에 猛烈(맹렬)히 拒爭(거쟁)을 이르킬 것이다. 더욱이 印度(인도)에 對(대)하여 그 主力(주력)을 注(주)할 것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뿐 아니라 露國(노국)이 滿蒙(만몽) 方面(방면)에 있어서 日本(일본)과 아모 波瀾(파란)이 업시 가리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나는 前般(전반)에서 滿蒙(만몽)에 있는 日露(일로)의 關係(관계)를 大綱(대강) 記述(기술)하였슴으로 이에 다시 反復(반복)하지 아니하거나 中國(중국) 革命政府(혁명정부)가 日英(일영)에 對抗(대항)하다가 日本(일본)을 次回(차회)로 미루고 英國(영국)을 唯一(유일)한 敵(적)으로 내세워나가는 것을 一部論者(일부론자)가 말하는 바와 가치 革命政府(혁명정부) 方策(방책)은 英國(영국)에 對(대)하여 싸호는 必要上(필요상) 中國(중국)은 露國(노국)을 利用(이용)하고 露國(노국)은 中國(중국)을 利用(이용)함에 不過(불과)할 뿐이오. 中國(중국) 自體(자체)가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으로 가려는 것은 아니라고는 볼 수 업다. 나의 意見(의견)에 依(의)하면 中國(중국)이 露國(노국)을 利用(이용)하고 露國(노국)이 中國(중국) 革命政府(혁명정부)를 利用(이용)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階段(계단)을 지나면 卽(즉) 英國(영국)을 어느 程度(정도)까지 措置(조치)를 한 後(후)에는 다시 그 方式(방식)으로 日本(일본)에 對(대)하여 中國(중국)은 露國(노국)을 利用(이용)하고 露國(노국)은 中國(중국)을 利用(이용)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업다. 이때가 다시 日本(일본)에게 오는 第二次(제2차)의 煩悶期(번민기)다. 그때는 오늘날 日本(일본)이 當(당)하는 煩悶(번민)보다도 좀 더 深刻(심각)하고 銳利(예리)한 苦痛(고통)을 줄 것이다. 아즉까지도 日本(일본)

의 支配階級(지배계급)은 中國(중국)의 形勢(형세)에 對(대)하여 그대지 크게 利害感(이해감)을 덜 늦기는 듯 하지만은 即(즉) 革命政府(혁명정부)가 英國(영국)을 唯一(유일)한 敵(적)으로 對(대)하고 가는 以上(이상) 南方政府(남방정부)나 承認(승인)하고 多少(다소)의 讓步(양보)만 하면 그네들과 友誼(우의)를 매저갈 수 있스니 最後(최후)에 正 張作霖(장작림)으로는 할 수 없게 되면 幾部分(기부분)의 犧牲(희생)만 覺悟(각오)하고 南方(남방)과 提携(제휴)하면 될 줄 노 아는 者(자)가 만흔 듯하나 그러나 日本(일본)의 難關(난관)은 目下(목하) 形便(형편)에 잇다고하는 것보다도 참된 難關(난관)이 第二次(제2차)로 오는 難關(난관) 即(즉) 南方政府(남방정부)가 英國(영국)을 어느 程度(정도)까지의 措置(조치)를 하고 이 英國(영국)을 措置(조치)하던 方式(방식)으로 中國(중국)과 露國(노국)이 日本(일본)에 抗爭(항쟁)하게 되는 그재인 줄 맞는다.

## 二十五(25)

그재가 언제나 올는지 알 수 업다는 것을 前段(전단)에서도 말하였지만은 알 수 업다 해야 十年(10년) 以上(이상) 가고 二十年(20년) 以上(이상) 가지는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나는 極東(극동) 形勢(형세)의 一變(일변)을 豫想(예상)할 수가 있다. 日本(일본)은 十年(10년)만에 戰爭(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보다 十年(10년)만에 一次式(1차식)은 하여야 된다는 사람까지 있다. 十年(10년)이라는 時日(시일)이 日本(일본)에 잇서서 戰爭(전쟁)을 이르키는 宿命的(숙명적) 數字(수자)인지는 알 수가 업스나 적어도 十年(10년)이 되면 日本(일본)의 國情(국정)이 그만큼 變(변)한다는 데에 잇서서는 틀넘이 업는 事實(사실)인 듯하다. 옛지 日本(일본)뿐이라. 어느 日本(일본) 官吏(관리)가 勞農露國(노농노국)을 視察(시찰)하고 도라가는 길에 勞農露國(노농노국)이 今後(금후) 十年(10년)만 지나면 偉大(위대)한 國力(국력)을 發暉(발휘)하리라는 意味(의미)를 말하였다고 한다. 나는 日本(일본)만 그러하고 露國(노

국)만 그러할 것이 아니라 中國(중국)에 있어서도 十年(10년)이라는 歲月(세월)이 統一(통일) 國家(국가)가 되어 가지고 더욱히 社會主義(사회주의) 勢力(세력)이 鞏固(공고)해야 가지고 今後(금후) 十年(10년)을 지나간다면 적어도 日本(일본)이나 勞農露國(노동노국)에 나리지 아니할 變化(변화)가 잇을 줄 믿는다. 그 中間(중간)에 介在(개재)한 朝鮮(조선)만이 엇지 變化(변화)업슬 理致(이치)가 잇는가. 政治的(정치적)으로나 經濟的(경제적)으로 右(우)에 列擧(열거)한 民族(민족)들에 比(비)해야 더욱 痛切(통절)하고 深刻(심각)한 試鍊(시련) 中(중)에 잇는 것이 朝鮮民族(조선민족)인 그만큼 그 民族(민족)들에 比(비)해야 朝鮮民族(조선민족)은 더욱 加速度(가속도)의 變化(변화)를 가질 것을 믿는다. 이에 對(대)해야 우리는 民族(민족)이 어느 覺醒下(각성하)에 조흔 變化(변화)를 結果(결과) 식힐는지 그와 反對(반대)로 混亂(혼란) 中(중)에서 無計劃(무계획) 無自覺(무자각)하게 趨勢(추세)에 隸屬(예속)해야 不幸(불행)한 結果(결과)를 그와 가치 크게 齎來(제래) 식힐는지 그는 아즉 未知數(미지수)에 屬(속)하지만은 如何間(여하간) 極東(극동) 政局(정국)에 새로운 場面(장면)이 열닐 것은 決(결)코 그대지 먼 將來(장래)의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끝)

# 總督<sub>총독</sub> 政治<sub>정치</sub>로도 하면 될 일

- 『신민』 제23호(1927.03.01) -

나의 率直<sub>(솔직)</sub>한 意見<sub>(의견)</sub>을 말하라면 總督府<sub>(총독부)</sub>가 할려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朝鮮總督府<sub>(조선총독부)</sub>의 每年<sub>(매년)</sub> 人件費<sub>(인건비)</sub>는 六千三百萬圓<sub>(6천3백만 원)</sub>으로 朝鮮人<sub>(조선인)</sub> 手中<sub>(수중)</sub>에 쥐여지는 것은 겨우 一千八百萬圓<sub>(1천8백만 원)</sub>이라 하니 나의 意見<sub>(의견)</sub>에 對<sub>(대)</sub>한 說明<sub>(설명)</sub>은 이것으로 足<sub>(족)</sub>할 것입니다. 朝鮮<sub>(조선)</sub>에 倅<sub>(서)</sub>에서 稅金<sub>(세금)</sub>을 倅<sub>(서)</sub>아서 朝鮮<sub>(조선)</sub>의 政治<sub>(정치)</sub>를 施<sub>(시)</sub>하는 總督府<sub>(총독부)</sub>의 方針<sub>(방침)</sub>이 如是<sub>(여시)</sub>하거든 倅<sub>(서)</sub>라서 朝鮮<sub>(조선)</sub> 안에 商工<sub>(상공)</sub> 其他<sub>(기타)</sub> 모든 事業<sub>(사업)</sub>이 그네들 손에 運行<sub>(운행)</sub>되는지라 그러한 處地<sub>(처지)</sub>에 잇는 朝鮮人<sub>(조선인)</sub> 知識階級<sub>(지식계급)</sub>의 就職難<sub>(취직난)</sub>은 當然<sub>(당연)</sub>한 것이 안이갯습닛가.

#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國家국가로 變변하겠다

- 『신민』 24(1927.04.01) -

世界(세계)가 注視(주시)하는 現下(현재)의 中國(중국) 問題(문제)를 輕輕(경경)히 論(논)하는 것은 極(극)히 迂闊(오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觀察(관찰)하는 바를 率直(솔직)히 말한다면 中國(중국)의 革命軍(혁명군)은 成功(성공)하는 同時(동시)에 社會主義的(사회주의적) 國家(국가)로 變(변)하리라고 봅니다. 或(혹)은 目下(목하) 革命運動(혁명운동)의 左右派(좌우파)의 紛糾(분규) 內訌(내홍)을 論(논)하여 中國(중국)의 革命運動(혁명운동)의 將來(장래)를 말할지도 모르나 나는 그러케 보지 않습니다. 左派(좌파)의 主張(주장)이나 右派(우파)의 主張(주장)이나 帝國主義(제국주의) 打破(타파)에는 一致(일치)해야 그 主義(주의) 主張(주장)에 잇서서는 五十步(50보) 百步(100보)에 差異上(차이상)을 發見(발견)할 수 업스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左右派(좌우파)의 內訌(내홍)이 그 革命的(혁명적) 根本(근본) 政策(정책)에 잇서서는 別(별)노 支障(지장)이 업스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內訌(내홍) 그 것이 全體(전체)를 根本的(근본적)으로 瓦解(와해)할 性質(성질)에 것이 아니라

고 본다는 말임이다. 따라서 兩派(양파)를 對峙(대치)시켜가지고 本問題(본문제)의 左右(좌우)를 論(논)하기 보다는 中國(중국)의 革命運動(혁명운동)(反帝國主義(반제국주의))이 如意(여의) 成功(성공)하겠느냐 안이냐 함에 歸結(귀결)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의 運動(운동)이 漸次(점차) 組織化(조직화)하고 大衆化(대중화)함으로써 보아 疑心(의심)할 餘地(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東光<sub>동광</sub>에 對<sub>대</sub>하여 諸名士<sub>제명사</sub>의 意見<sub>의견</sub>,  
東光<sub>동광</sub>의 1周年<sub>주년</sub>  
-民衆<sub>민중</sub>의 親友<sub>친우</sub>요 指導者<sub>지도자</sub>가 되시오-

-『동광』제13호(1927.05.01) -

東光<sub>(동광)</sub>의 사명을 말하기 전에 나는 東光<sub>(동광)</sub>의 運數<sub>(운수)</sub>에 대하여 먼저 敬意<sub>(경의)</sub>를 표합니다. 이와 같이 각박하고 험악한 곳에서 일 주년 간을 큰 변동 없이 지내온 것은 그 경영의 任<sub>(임)</sub>에 당하신 여러분의 노력과 手腕<sub>(수완)</sub>이 어떠하다는 것을 표명하는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인물을 맞이하여서 동방의 빛으로서의 위력을 잘 발휘한 것만 하여도 東光<sub>(동광)</sub>은 좋은 運數<sub>(운수)</sub>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괴롭은 곳에서 사납은 風雨<sub>(풍우)</sub>에 抗爭<sub>(항쟁)</sub>하여 가는 東光<sub>(동광)</sub>이 새롭은 봄을 맞아서 봄 동산의 東<sub>(동)</sub>편 빛으로 우리 創造力<sub>(창조력)</sub>의 發芽<sub>(발아)</sub>에 扶助<sub>(부조)</sub>하고 刺戟<sub>(자극)</sub>하는 힘이 더욱 크기를 빌고 바라나이다. 이때를 당하여 다시 一言<sub>(일언)</sub>을 더하고자 하는 것은 東光<sub>(동광)</sub>이 지키어오던 通俗的<sub>(통속적)</sub> 普及力<sub>(보급력)</sub>을 益益<sub>(익익)</sub> 堅固<sub>(건고)</sub>히 지키어서 더 많은 민중의 親友<sub>(친우)</sub>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나이다.



# 第一<sup>제일</sup> 미운 일 第一<sup>제일</sup> 보기 싫은 일 -廻避<sup>회피술</sup>述<sup>회피술</sup>에 能<sup>능</sup>한 人間<sup>인간</sup>들-

-『별건곤』 제9호, 개벽사(1927.10.01) -

率直<sup>(솔직)</sup>하게 말하면 거짓말로 남을 살살 씌어 먹으려는 者<sup>(자)</sup>도 可憎<sup>(가증)</sup>하고 었던 權力<sup>(권력)</sup>이나 金力<sup>(금력)</sup>의 뒤에 짝 부터서서 산양개 모양으로 헤를 흘근흘근 하는 놈도 可憎<sup>(가증)</sup>하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廻避<sup>(회피술)</sup>述<sup>(회피술)</sup>에 恰<sup>(정)</sup>愼<sup>(경)</sup>한 人間<sup>(인간)</sup>들이 第一<sup>(제일)</sup> 可憎<sup>(가증)</sup>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社會<sup>(사회)</sup>에서 所謂<sup>(소위)</sup> 무엇을 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하는 人間<sup>(인간)</sup>들이 그 언으 것이 廻避<sup>(회피)</sup>에는 能<sup>(능)</sup>하지 안습닛가. 뒤에 안저서는 썩들고 當面<sup>(당면)</sup>하야서는 廻避<sup>(회피)</sup>하고 입으로는 大河<sup>(대하)</sup>를 드리킬 듯하고 발로는 細川<sup>(세천)</sup> 하나를 못 건너뛰는 人間<sup>(인간)</sup>이 얼마나 만습닛가.

그리고 우리 社會<sup>(사회)</sup>에는 質的<sup>(질적)</sup>, 自力的<sup>(자력적)</sup>, 強骨的<sup>(강골적)</sup>, 鬪士的<sup>(투사적)</sup> 氣風<sup>(기풍)</sup>은 업고, 氣分的<sup>(기분적)</sup>, 依他的<sup>(의타적)</sup>, 屈從的<sup>(굴종적)</sup>으로 始終<sup>(시종)</sup>되고 마는 것이 거의 全部<sup>(전부)</sup>입니다. 可憎<sup>(가증)</sup>하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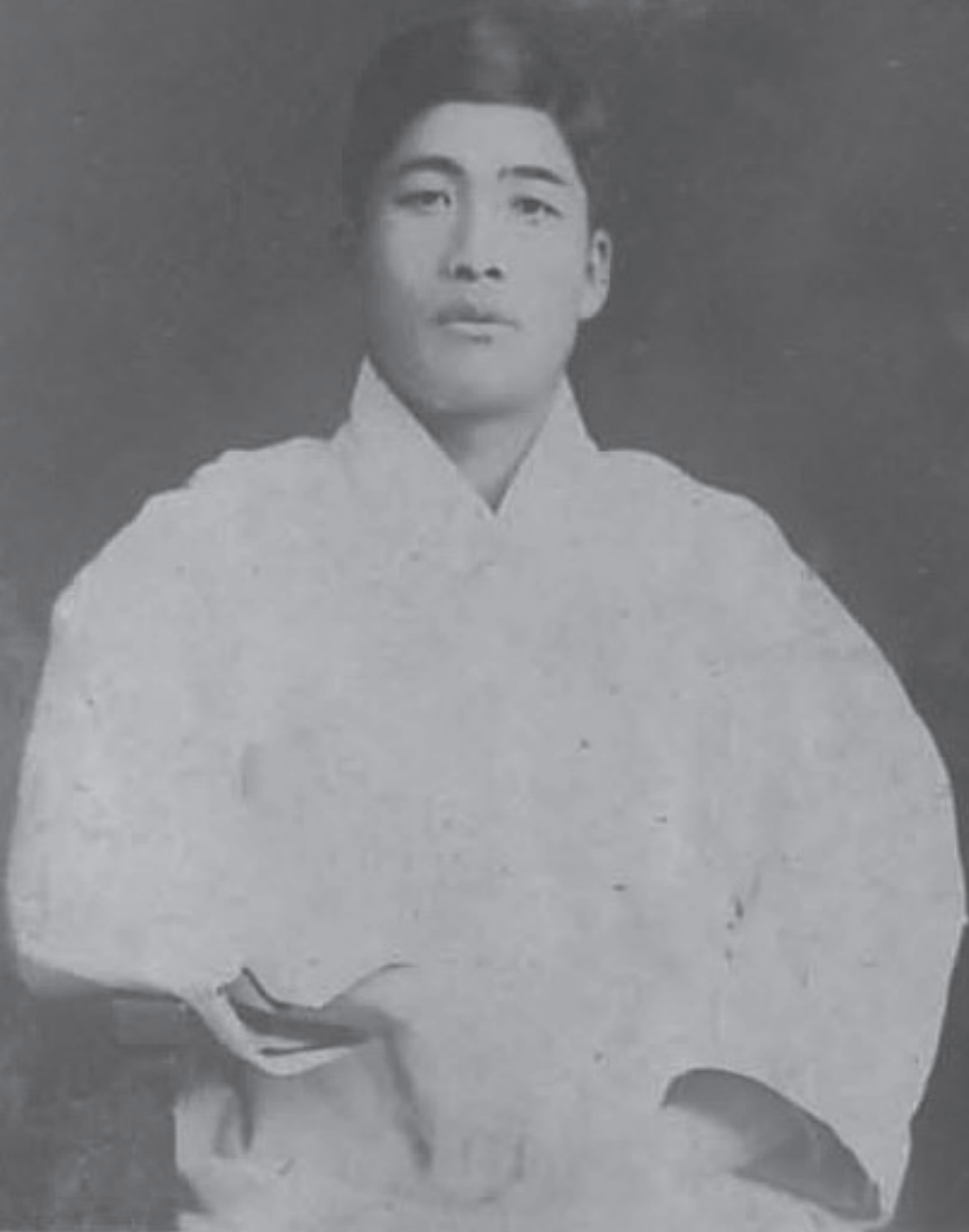
보다 痛嘆(통탄)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人間(인간)들은 正(정)말 相對者(상대자)와는 싸우지 못하고 싸울 意思(의사)도 못 내고 自己便(자기편)끼리 싸우려 드는 것이 가장 可憎(가증)합니다. 이 썩 말해둡니다.

---

3부

# 일본 정국의 추세



結婚<sup>결혼</sup> 前<sup>전</sup>에 注意<sup>주의</sup>할 일,  
戀愛讀本<sup>연애독본</sup>·結婚教科書<sup>결혼교과서</sup>

- 『별건곤』 제10호, 개벽사(1927.12.20) -

현대의 모든 社會制度(사회제도)가 새로 價值的(가치적) 批判(비판)을 맞아야 될 形便(형편)에 잇고 또한 하고 잇는 중이니 結婚制度(결혼제도)가 오늘날 問題(문제)되야 是非論評(시비논평)을 맞을 것은 當然(당연)한 일이다. 우리 社會(사회)의 在來(재래) 結婚(결혼)은 그 主要(주요)한 缺點(결점)이 結婚(결혼) 當事者(당사자)의 意思(의사)로 되지 못하고 그 父兄(부형)의 意思(의사)로 左右(좌우)되고 決定(결정)되는데 잇는 것이다. 현대와 가티 個人(개인)의 人格(인격)과 自由(자유)가 高調(고조)되는 때에 어찌 그러한 結婚制度(결혼제도)가 問題(문제)되지 아니할 수 잇스랴. 그럼으로 오늘날 青年男女(청년남녀)가 自由結婚(자유결혼)을 主張(주장)하는 것은 正當(정당)한 일이고 實行(실행)하여야 될 그네들의 現代人(현대인)으로서의 義務(의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自由結婚(자유결혼)의 是非(시비)에 대하여는 議論(의논)할 餘地(여지)가 업는 줄 안다. 그럼으로 내가 只今(지금) 結婚(결혼) 前(전) 注意(주의)할 일이라 하여 몇 가지 들고져 하는 것은 前提(전제)로 하고 하는 말

이다.

1. 戀愛(연애), 戀愛(연애)는 結婚(결혼)의 要素(요소)다. 戀愛(연애)가 結婚(결혼)의 全部(전부) 內容(내용)은 아니지마는 重要(중요)한 要素(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戀愛(연애)가 엮는 結婚(결혼)은 내의 意見(의견)으로 보면 尙當(합당)치 아니한 結婚(결혼)이다. 그러나 戀愛(연애)가 있다 해야 반드시 結婚(결혼)을 하여야 된다는 意見(의견)과는 달이다. 戀愛至上主義的(연애지상주의적) 見地(견지)로 보면 내의 意見(의견)은 不當(부당)한 意見(의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戀愛(연애)는 戀愛(연애)요 結婚(결혼)은 結婚(결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現制度(현재도)에 있어서 戀愛(연애)와 結婚(결혼)을 混沌(혼돈)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戀愛(연애)는 盲目(맹목)이다. 戀愛(연애)는 意志(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感情(감정)이 주가 되어서 意志(의지)를 滅殺(멸살)시키는 程度(정도)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完域(완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으로 『男女間(남녀간)에 戀愛(연애)가 完成(완성)되었을 때에는 결코 서로 結婚問題(결혼문제)를 내지 마라』는 말을 맞는다.

戀愛(연애)가 곱힐 때에는 서로 서로의 短處(단처)가 보이지 아니한다. 短處(단처)가 서로 完全(완전)히 보이는 때에는 戀愛(연애)가 곱힐 때가 아니다. 그럼으로 戀愛(연애)가 어느 程度(정도)까지 식어서 서로 서로의 短處(단처)가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때에 비로소 結婚問題(결혼문제)를 생각해볼 때라고 할 것이다. 男女(남녀)가 서로 충분히 理解(이해)할 수 있는 時期(시기)는 戀愛(연애)가 곱힐 그때가 아니라 어느 程度(정도)까지 식어서 이와 가티 短處(단처)가 如實(여실)히 보이는 그때인 것이다. 그럼으로 私有財産制度(사유재산제도)가 그대로 있고 家族制度(가족제도)가 그대로 있으며 一夫一妻主義(일부일처주의)가 繼續(계속)되는 오늘날에 있어서서는 結

婚(결혼)은 一平生(일평생) 夫婦生活(부부생활)을 繼續(계속)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 故(고)로 理性(이성)의 眼光(안광)을 서로 가리우는 戀愛時期(연애시기)에 結婚(결혼)할 바가 아니다. 一平生(일평생)을 繼續(계속)하여 同居同樂(동거동락)을 如一(여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感情(감정)이 주가 되는 戀愛(연애)가 그와 가티 長歲月(장세월)동안 一直線(일직선)으로 繼續(계속)하여서 可能(가능)할 바가 아니다. 戀愛(연애)는 이와 가티 一直線(일직선)으로 變化(변화)도 업고 波瀾(파란)도 업시 繼續(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 戀愛(연애)가 結婚(결혼)의 一部分(일부분) 要素(요소)는 되지마는 全部內容(전부내용)은 아니다. 結婚(결혼)은 戀愛(연애)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要素(요소)를 要求(요구)하는 것이니 그것은 즉

2. 性格(성격)이다. 性格(성격)은 普遍的(보편적) 見地(견지)에서보면 조흔 性格(성격)이 있고 조치 못한 性格(성격)이 있다. 그러나 個人(개인) 個人(개인)을 떼어놓고 보면 性格(성격)은 個性(개성)을 表示(표시)하는 것임으로 엇던 性格(성격)은 조코 엇던 性格(성격)은 조치 못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정한 標準(표준)을 두고 이러한 性格(성격)은 結婚(결혼)에 必要(필요)한 性格(성격)이라고 指摘(지적)할 수는 업다. 그러나 남에게는 실어하는 性格(성격)이지마는 自己(자기)에게는 意습(의합)한 性格(성격)이 있다. 柔順(유순)한 것을 조와한다든지 또는 活潑(활발)한 것을 조와한다든지 각각 自己(자기)의 맘에 따라서 조와하는 性格(성격)이 있다. 남은 조와하지 아니하는 性格(성격)이라도 自己(자기)는 조와하는 性格(성격)이 있고 남은 조와할지라도 自己(자기)는 실어하는 性格(성격)이 있다. 이러한 主觀的(주관적) 標準(표준)에 의하여 비록 그것이 純然(순연)한 利己的(이기적) 判斷(판단)일지라도 自己(자기)가 平素(평소)에 가지는 마음인 이상 그 標準(표준)에 의하여 配偶者(배우자)를 求(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短處(단처)가 如實(여실)히 보이는 그때에 그 性格(성격)이 과연 自己(자기)가 조와하

는 바인지 안인지를 區別(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家庭(가정)의 和樂(화락)을 오래그리가는 것은 戀愛(연애)의 有無(유무)가 아니고 性格(성격)의 合(합)과 不合(합불합)에 있는 것이다.

性格(성격)이 맞으면 잇는 戀愛(연애)는 더욱 助長(조장)되고 性格(성격)이 맞지 아니하면 잇는 戀愛(연애)가 더욱 速(속)히 식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식어지면 殆(태)히 回復(회복)되지 아니하지마는 性格(성격)이 서로 맞으면 잇는 戀愛(연애)가 식어도 다시 回復(회복)될 餘地(여지)가 있는 것이다. 性格(성격)이 맞지 아니하면 한번 戀愛(연애)가 식어지면 家庭(가정)에 殺風景(살풍경)이 끼치지 아니하지마는 性格(성격)이 서로 맞으면 이러한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 戀愛(연애)로 된 結婚家庭(결혼가정)에 만히 殺風景(살풍경)이 잇는 것은 戀愛(연애)에만 醉(취)해서 性格(성격)을 보지 아니하고 速成(속성)된 結婚(결혼)의 實例(실례)가 아닌가 疑心(의심)한다. 結婚(결혼)에는 戀愛(연애)보다도 性格(성격)을 主要視(주요시)하여야 된다고 나는 잇는다. 結婚(결혼)에는 이상에 밝힌바 戀愛(연애)와 性格(성격)만 가지고도 아니 되나니 또 한가지가 잇다.

3. 經濟力(경제력) 家庭(가정)은 消費經濟(소비경제)의 중심지다. 家庭(가정)을 가진 個人(개인)은 社會(사회)에 나가서 生産的(생산적) 行動(행동)을 하고 家庭(가정)에 들면 消費的(소비적) 行動(행동)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 우리 社會(사회)의 現實(현실)에 잇서서는 한 사람이 벌어서 2, 3人(인) 내지 10餘人(여인)을 扶養(부양)할 뿐만 아니라 最小限度(최소한도)로 自己妻子(자기처자)의 生活費(생활비)는 負擔(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圓滿(원만)한 家庭(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가티 살야고 하면 적어도 이 妻子(처자)를 扶養(부양)하는 成算(성산)이 잇서야 한다. 戀愛(연애)가 잇고 아무리 性格

(성격)이 尙當(합당)할지라도 이 生活費(생활비)의 成算(성산)이 서지 못할 것  
 가트면 그 家庭(가정)에는 悲風(비풍)과 慘雨(참우)가 나리고야 마는 것이  
 다. 그럼으로 結婚(결혼)을 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考慮(고려) 중에  
 서 이 經濟問題(경제문제)를 빼서는 안 된다. 적어도 家庭(가정)을 일우어  
 서 생활을 維持(유지)할만한 經濟力(경제력)은 잇서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상에서 말한바 戀愛(연애)와 性格(성격)과 經濟力(경제력) 세 가지 이외에도  
 結婚(결혼)을 위하야서는 또 생각하야야 될 問題(문제)가 업지 아니하다  
 고 밋는다. 趣味(취미)라던가 그 主張(주장)이라던가 하는 問題(문제) 등이  
 업지 아니하지마는 圓滿(원만)한 家庭(가정)이라고 하는 問題(문제)를 중심  
 삼아서 結婚前(결혼전) 青年男女(청년남녀)에게 注意(주의)를 喚起(환기)하는 터  
 인 故(고)로 여기에 目的(목적)이 잇는 故(고)로 가장 重要(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세 가지만 들어서 말한 것이다. 人生問題(인생문제)의 全體(전체)에서  
 보면 結婚(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극히 적은 바에 不過(불과)한 境遇(경우)  
 가 잇스니 이러한 사람의 見地(견지)에서보면 結婚問題(결혼문제) 중 내가  
 이상에서 말한바 세 가지가 다 가티 그대지 重要(중요)한 바가 아니될  
 수도 잇지마는 普通(보통)사람으로 보아서 이 現實(현실)에서 家庭(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하는 婚姻(혼인)에는 이것이 가장 重要(중요)한 點(점)이라  
 고 밋는다. (뫼)





# 日本<sup>일본</sup> 政局<sup>정국</sup>의 趨勢<sup>추세</sup> - 普選<sup>보선</sup> 後<sup>후</sup>의 展開<sup>전개</sup> 如何<sup>여하</sup>?

- 『동아일보』(1928.01.01-1928.01.09) -

## 一(1)

今日(금일)의 日本(일본) 政治(정치)를 말하자면 그 前身(전신)인 明治(명치)와 大正時代(대정시대)의 政治的(정치적) 過程(과정)부터 觀察(관찰)하지 아니할 수 업고 明治時代(명치시대)의 政治(정치)를 말하자면 德川幕府(덕천막부)의 倒壞(도괴)된 由來(유래)와 그 事實(사실)을 싸고 있던 世界的(세계적) 霧圍氣(분위기) 사이에 論及(논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럼으로 이와 가티 制限(제한)있는 紙面(지면)으로는 現下(현하) 日本(일본)의 政治的(정치적) 現像(현상)을 前後(전후) 脈絡(맥락)이 鮮明(선명)하게 表示(표시)하고 그로써 將來(장래)까지 推斷(추단)할 수 있는 材料(재료)를 論述(논술)하기에는 至極(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故(고)로 나는 大綱(대강)의 骨子(골자)를 들어서 總論的(총론적)으로 이 使命(사명)을 마치 보라고 한다. 그 骨子(골자)라고 하는 것은 德川幕府(덕천막부) 倒壞(도괴) 後(후)부터 日露戰爭(일로전쟁)까지 政治的(정치적) 事實(사실)을 들어서 日本(일본)이 歐米(구미)의 列強(열강)과 가

티 帝國主義(제국주의) 國家(국가)로 諸國(제국)의 同列(동렬)에 參與(참여)된 것을 말하고 다시 日露戰爭(일로전쟁) 後(후) 即(즉) 日本(일본)의 그 所謂(소위) 強國(강국)으로 世界(세계) 列強(열강)과 어깨를 견주게 되어 가지고 오다가 世界大戰(세계대전)을 堂(당)하야 前代(전대) 未曾有(미증유)의 飛躍(비약)을 試(시)하는 同時(동시)에 大戰(대전)이 終熄(종식)되고 世界(세계)가 劃時代的(획시대적)으로 變化(변화)를 일으키는데에 賡(갈)아서 普選(보선)을 作定(작성)하고 一方(일방) 英米(영미)로 더부러 三國(삼국)이 東洋(동양)에서 勢力的(세력적)으로 對立(대립)하는 脈絡(맥락)을 추려 가지고 그 日本(일본)의 內政(내정)과 이러한 國際關係(국제관계)와를 엮어서 現下(현하)의 日本(일본) 政治(정치)를 診斷(진단)하여 보라고 한다. 그리하야 診斷(진단)이 맞고 아니 맞는 것은 내의 智識(지식) 程度(정도) 以上(이상)의 範圍(범위)에 屬(속)하는 바이니 그것은 別問題(별문제)로 할지라도 如何間(어하간) 그와 가티 檢察(검찰)한 結果(결과)와 判斷(판단)을 土臺(토대)로 하야 가지고 以後(이후)의 趨勢(추세)를 엿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普選(보선)을 實施(실시)하게 된 日本(일본)의 政治的(정치적) 由來(유래)는 그 內政(내정)에 잇서 重視(중시)하야야 할 事件(사건)과 人物(인물)이 許多(허다)하지만은 그 國內的(국내적) 事實(사실)은 世界的(세계적) 歷史(역사) 事實(사실)에서 隔離(격리)하야 單獨(단독) 作爲(작위)된 것으로 보지 못할 바인 故(고)로 日本(일본) 國內(국내)에 일어난 事實(사실)을 主(주)로 세우고 日本(일본)의 政治的(정치적) 過程(과정)을 觀察(관찰)할 것은 勿論(물론)이지만은 그 日本(일본)의 內政(내정) 事實(사실)을 刺戟(날극)하고 쏘는 強制(강제)한 世界的(세계적) 事實(사실)도 對照(대조)하야 보려고 하는 立場(입장)을 取(취)한 데에 不過(불과)한 것이다.

## 二(2)

德川幕府(덕천막부)가 된지 二百餘年(2백여년)이니 이미 그 制度(제도) 自體(자체)로도 衰廢(쇠폐)할 싹이 자라나서 成熟(성숙)할 時期(시기)도 되었스려니와 이제에 이르러서 德川幕府(덕천막부)로 말하면 첫째에 財政(재정)이 極度(극도)로 困難(곤란)해야 그 自體(자체)가 維持(유지)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武士(무사)의 氣風(기풍)으로 말하면 幕府(막부) 初年(초년)과는 全然(전연)히 달라서 幕末(막말)에 이르러서는 懦弱(나약)하기 싹이 었었다. 이 外(외)에도 內政(내정)에 있어서 封建制度(봉건제도)가 崩壞(붕괴)될 要素(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었는데 이제에 外部(외부) 歐米(구미) 諸國(제국)은 日本(일본)을 訪問(방문)하고 一方(일방) 日本(일본)을 威脅(위협)한 것은 當時(당시)의 封建制度(봉건제도)를 破壞(파괴)시킨 重大(중대)한 原因(원인)이었었다. 一時(일시)에는 外國人(외국인)의 布教(포교)를 許諾(허락)하였섯지만은 그 布教者(포교자)들의 本國(본국)이 侵略的(침략적) 企圖(기도)를 가진 것을 아른 後(후)에는 邪宗門(사종문)의 根本的(근본적) 禁遏策(금알책)을 쓰는 同時(동시)에 또한 鎖國政策(쇄국정책)으로 急變(급변)하였섯스니 이것은 그네들이 國家(국가) 存亡(존망)에 關(관)한 重大事(중대사)로 認識(인식)한 사담이었었다.

그리하여 平和(평화)로운 時日(시일)을 보내다가 이와 가티 물려온 外來(외래)의 強壓(강압)에 이기지 못하고 幕府(막부)는 朝命(조명)을 犯(범)하면서 또는 勤王派志士(근왕파지사)들의 猛烈(맹렬)한 攻擊(공격)을 마드면서도 諸(제) 外國(외국)과 通商條約(통상조약)을 締結(체결)하였다.

이 事實(사실)은 일즉부터 잇던 日本(일본) 國民(국민)의 攘夷(양이)라는 拜外感情(배외감정)을 挑發(도발) 激成(격성)시키었었다. 그뿐 아니라 그때 마츨 西洋(서양) 諸國(제국)의 軍艦(군함)이 殺到(쇄도)하였슴으로 日本(일본) 國民(국민)에게는 一層(일층) 猛烈(맹렬)한 種族的(종족적) 敵對感情(적대감정)을 助長(조장)시키었다. 그리하여 이 敵對感情(적대감정)이 倒幕(도막)의 氣勢(기

세)와 合同(합동)된 것은 그 當時(당시)의 事勢(사세)로 보아서 當然(당연)한 바이라고 할 것이다. 일찍이 幕府(막부) 創設(창설) 時(시)에 怨恨(원한)이 있섯던 薩長二強(살장이강)이 이 時期(시기)를 타가지고 그가 中心(중심)이 되어서 南日本(남일본)의 諸雄藩(제웅번)을 일으키고 反抗(반항)한 것은 決(결)코 偶然(우연)이 아니엇던 것이다. 그리하여 結局(결국)은 政權(정권)에서 超越(초월)해야 잇던 皇室(황실)에 政事(정사)를 還奉(환봉)하고 國家(국가)의 危機(위기)를 免(면)하여야 된다는 理由(이유)로 復古(복고)를 力說(역설)하고 明治革命(명치혁명)을 現實(현실)한 것이다. 그와가티 한번 幕府(막부)를 倒壞(도괴)하고 政權(정권)을 掌握(장악)한 者(자)들은 薩長(살장) 土肥(토비)의 諸藩(제번)에서 나온 封建的(봉건적) 分子(분자)들이엇섯다. 이와 가티 뭍을 보고 二百餘年間(2백여년간) 德川幕府(덕천막부)의 祿(녹)으로 살던 義理(의리)를 잇지 못하는 者(자)나 쏘는 明治政府(명치정부)에 協同(협동)되지 아니하는 者(자)들은 不平(불평)을 품고 反抗運動(반항운동)을 일으키엇스니 그것이 一二次(1, 2차)가 아니엇섯다. 그러나 이미 大勢(대세)는 기우러진 것이다. 封建制度(봉건제도)의 幕府(막부)는 沒落(몰락)될 運命(운명)에 잇섯든 것이니 明治(명치) 十年(10년)에 所謂(소위) 西南戰爭(서남전쟁)이라는 것으로 因(인)하여 西鄉隆盛(서향용성)의 敗沒(배몰)로써 明治政府(명치정부)에 對(대)한 武力的(무력적) 反抗運動(반항운동)은 終幕(종막)을 지은 것이다. 이로부터서 武力(무력)으로는 아니 될 줄을 깨다른 不平分子(불평분자)들은 陰謀(음모)와 言論戰(언론전)으로 方面(방면)을 變(변)하게 되엇나니 이로부터가 그네들에게는 充分(충분)히 理解(이해)도 되지 못하였슴에도 不拘(불구)하고 一大(일대) 勢力(세력)으로 風靡(풍미)하던 自由民權論(자유민권론)의 盛行時代(성행시대)이 었다. 이와 가튼 經路(경로)에 잇서서 明治(명치) 初年(초년)의 混亂(혼란) 複雜(복잡)한 民心(민심)을 安定(안정)하기 위하여 五個條(5개조)의 誓文(서문)이 發表(발표)되고 明治(명치) 八年(8년)에는 元老院(원로원)에 對(대)하여 國憲(국

헌)을 制定(제정)하라는 詔勅(조칙)이 나렸었다. 그리하여 明治(명치) 十四年(14년)에는 國會開設(국회개설)에 關(관)한 勅諭(칙유) 二十二年(22년)에는 憲法(헌법) 發布(발포) 二十三年(23년)에는 國會開設(국회개설) 等(등) 一瀉千里的(일사천리적)으로 展開(전개)되었다.

### 三(3)

이와 가티 一瀉千里的(일사천리적)으로 發展(발전)한 政治的(정치적) 過程(과정)을 다시 살펴보면 實(실)로 紛糾(분규) 多端(다단)하야 亂麻(난마)의 狀態(상태)를 이루었었다. 明治革命(명치혁명)의 新政府(신정부)에 不平(불평)을 품고 武力(무력)으로 或(혹)은 暗殺(암살) 等(등) 直接行動(직접행동)으로 反抗(반항)하는 사람들을 畢竟(필경)은 完全(완전)히 征服(정복)한 維新黨(유신당)은 其後(기후) 敵(적)이 업서짐을 썰아 維新黨(유신당) 內部(내부)에서 勢力鬭爭(세력투쟁)으로 始作(시작)하였다. 維新黨(유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말한 바와 가티 薩長土肥(살장토비)의 四藩人(4번인)을 要素(요소)로하고 岩倉具視(암창구시)가 此(차)를 領率(영솔)하던 것을 말함이다. 薩派(살파)에는 西鄉隆盛(서향용성), 大久保利通(대구보리통), 長(장)에는 木戶孝允(목호효윤), 伊藤博文(이등박문), 井上馨(정상형), 土(토)에는 板垣退助(판원퇴조), 後藤象二郎(후등상이랑), 肥(비)에는 副島種臣(부도종신), 大隈重信(대외중신), 江藤新平(강등신평) 等(등)이 領首(영수)이엇었다. 그리하여 그네들은 開國(개국) 進取方針(진취방침)에 잇서서는 意見(의견)이 一致(일치)하였지마는 各其(각기) 思想(사상)이나 感情(감정) 또는 利害(이해)가 決(결)코 同一(동일)하지 아니하였스니 內部(내부)의 軋轢(알력)이 잇을 것은 避(피)하지 못할 바이엇었다. 하물며 新政府(신정부)의 權力(권력)은 比較的(비교적) 政治的(정치적) 才能(재능)이 나은 岩倉(암창), 木戶(목호), 大久保(대운보) 等(등) 二三人(이삼인)의 손에서 全部(전부) 獨裁(독재) 됨에야 잇지 一致(일치)한 步調(보조)가 維持(유지) 될 수 잇스라 그 結果(결과) 明治(명치)

六年(6년)에 그 所謂(소위) 征韓論(정한론)을 이르기어 가지고 西鄉副島(서향부도), 後藤(후등), 江藤(강등), 板垣(판원) 등(등)은 連袂辭職(연매사직)하고 岩倉(암창), 木戶(목호), 大久保(대구보) 등(등)과 反目(반목) 對立(대립)하게 되었다. 그 結果(결과)가 明治(명치) 十年(10년)의 西南戰(서남전)을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新政府(신정부)는 全國(전국)의 鎮臺兵(진대병)과 警察部隊(경찰부대)를 거히 全部(전부) 動員(동원)하여서 交戰(교전) 八個月(8개월)만에 僅僅(근근)히 平定(평정)한 것이다.

明治(명치) 七年(7년) 板垣(판원)은 鄉里(향리) 土佐(토좌)에서 立志社(입지사)를 設(설)하여 日夜(일야)로 自由民權設(자유민권설)을 傳播(전파)하고 其間(기간)에 木戶(목호)도 東京政府(동경정부)에서 나왔섯든 마 十年(10년) 戰役中(전역중)에 木戶(목호)는 病死(병사)하고 大久保(대구보)는 基(기) 翌年(익년)에 刺客(사객)의 손에 죽었섯다. 그리하여 政府(정부)는 柱梁(주량)을 失(실)한 觀(관)이 잇섯다. 이러한 때임으로 板垣(판원)은 一次(1차) 內閣(내각)에 參與(참여)하였섯으나 다시 나와서 自由民權論(자유민권론)으로 國民運動(국민운동)을 이르기기에 專力(전력)하였다. 이때에 잇서서 重大(중대)한 事件(사건)이 또 잇섯스니 明治(명치) 十四年(14년)의 政變(정변)이다. 即(즉) 大隈重臣(대외중신)은 明治(명치)十四年(14년) 北海道官(북해도관) 有物拂下事件(유물불하사건)에 對(대)하여 極力(극력) 此(차)를 排擊(배격)하고 內定(내정)되었던 認可(인가)의 命令(명령)을 取消(취소)케 하는 同時(동시)에 다시 一步(일보)를 進(진)하여 明治(명치) 十年(16년)에 議會(의회)를 召集(소집)하라는 提議(제의)를 하였슴으로 伊藤博文(이등박문)은 此(차)에 對(대)하여 極(극)히 激烈(격렬)한 反對(반대)를 하는 同時(동시)에 一方(일방)으로는 薩長(살장) 兩派(양파)가 同盟(동맹)하여 가지고 大隈(대외) 以下(이하) 그 同類(동류)로 불만한 人物(인물) 數十名(수십명)을 政府(정부)에서 放逐(방축)하였고 또 한便(편)으로 明治(명치) 天皇(천황)에게 願(원)하여 가지고 憲法制定(헌법제정) 事業(사업)은 博文(박문) 一人(1인)에

게 專任(전임)하기를 上奏(상주)하고 『二十三年(23년)을 期(기)하여 議員(의원)을 召(소)하고 國會(국회)를 開(개)한다』는 勅諭(칙유)가 發布(발포)되게 한 것이다.

#### 四(4)

이에 日本(일본) 憲法(헌법)은 伊藤博文(이등박문)의 識見(식견)에 依(의)하여 制定(제정)된 것이다. 即(즉) 民間(민간)에 잇서서는 當時(당시) 英國式(영국식) 憲法制定論(헌법제정론)과 佛國式(불국식) 憲法制定論(헌법제정론)이 提唱(제창)되었섯스나 그러나 伊藤(이등)은 모다 日本(일본)의 國情(국정)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뿐 아니라 民間(민간)에서 自由民權論(자유민권론)이 盛行(성행)하던 時期(시기)인 故(고)로 萬一(만일) 여러 사람과 相議(상의)하야 憲法(헌법)을 制定(제정)할 것 가트면 亦然(역연) 日本(일본) 國情(국정)에 符合(부합)한 것이 되기 어려우니 自己(자기) 單獨(단독)의 意見(의견)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決心(결심)을 한 것이다.

이것이 今日(금일)에 잇서서 보면 日本(일본)의 政治(정치)를 日本(일본)의 實情(실정)에 맞게 하야 쏘는 加速度(가속도)로 發達(발달)시킨 伊藤(이등)의 功勞(공로)도 잇지마는 또 한便(편)으로 보면 너머 專制的(전제적)인 獨逸式(독일식) 憲法(헌법)을 지었기 때문에 官僚式(관료식) 政治(정치)를 助長(조장)하고 參된 立憲政治(입헌정치)의 發達(발달)을 阻害(조해)한 바가 된 것이다. 明治(메이지) 十四年(14년)의 政變(정변)이라고 하는 것도 一方(일방)으로 보면 大隈(대외)의 英國式(영국식) 憲法制定(헌법제정)의 主張(주장)에 對(대)한 伊藤(이등)의 激烈(격렬)한 反對(반대)로 爆發(폭발)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야 末松謙澄(말송겸정)과 金子堅太郎(금자건태랑) 伊東己代治(이동기대치) 등(등)의 助手(조수)를 더불고 憲法制定(헌법제정)의 準備(준비)에 努力(노력)한 것이다. 絶對(절대) 秘密裡(비밀리)에서 엇더한 사람이 무를지라도 이것을



外間(외간)에 表示(표시)하지 아니하고 憲法制定(헌법제정)을 進行(진행)하였는故(고)로 攻擊(공격)이 매우 猛烈(맹렬)하였었다. 一方(일방)에는 民間(민간)의 自由民權主義(자유민권주의)에 基因(기인)한 英國(영국)이나 佛國(불국)의 憲法論(헌법론)에 對抗(대항)하는 同時(동시)에 他一方(타일방)으로 廟堂(묘당)에 잇서서 谷干城(곡간성)이나 鳥尾小彌太(조미소미태) 等(등)의 保守黨(보수당)의 一派(일파)와도 싸와가면서 專制主義(전제주의)를 基根(기근)삼은 憲法(헌법)을 만드러 간 것이다. 그리하여 完決(완결)된 憲法(헌법)을 가지고 歐米諸國(구미제국)의 學者(학자)에게 批判(비판)을 바드라고 日本(일본)을 썰나섰다고 한다. 米國(미국)이나 英國(영국)에서 普魯西(프로서)의 憲法(헌법)보다도 劣等(열등)한 舊式(구식)의 憲法(헌법)이라고 非難(비난)을 바덧섯지마는 獨逸(독일)에 가서는 非常(비상)한 稱贊(칭찬)을 바덧다고 한다. 即(즉) 獨逸(독일)이 普魯西(프로서)의 武力(무력)으로 無理(무리)히 帝國的(제국적) 統一(통일)을 한 것과 가티 日本(일본)이 또한 薩長(살장)의 勢力(세력)으로 無理(무리)히 國家(국가)를 統一(통일)한 것이니 人心(인심)이 自然中(자연중) 歸一(귀일)치 못할 것도 事實(사실)이다.

그러한 國情(국정)에 잇서서는 如何(여하)던지 專制主義的(전제주의적) 憲法(헌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伊藤(이등)은 大端(대단)히 滿足(만족)하게 생각하고 日本(일본)에 도라간 後(후) 獨逸(독일)의 學者(학자)를 招請(초청)하여 政府(정부)의 顧問(고문)을 삼고 또는 大學(대학)의 講師(강사)를 삼으며 또는 그 門下生(문하생)을 獨逸(독일)에 派遣(파견)하여 獨逸學(독일학)의 普及(보급)에 置重(치중)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가지고 獨逸式(독일식) 憲法(헌법)을 日本(일본)에 制定(제정)할 뿐 아니라 그 運用(운용)에 對(대)하여도 獨逸式(독일식)으로 하려고 努力(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日本(일본)은 日本(일본)이었고 英國(영국)도 아니고 米國(미국)도 아닌 것과 가티 獨逸(독일)도 아니었던 것이다. 伊藤(이등)과 가튼 政治的(정치적) 識見(식견)

이 當時(당시) 一世(일세)를 누리든 사람으로도 世界(세계) 列強中(열강중) 獨逸(독일)의 國情(국정)이 日本(일본)과 가장 近似(근사)하다는 判斷(판단)에 있어서 그 正確(정확)을 어딴스나 그것을 模倣(모방)한 制度(제도)가 日本(일본)에 와서 그대로 如意(여의)하게 實行(실행)되지 아니할 줄은 아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當時(당시)에 伊藤(이등)이 切切(절절)히 主張(주장)하던 內閣(내각)의 超然主義(초연주의)를 畢竟(필경)은 拋棄(포기)하고 正堂(정당)의 組織(조직)에 自己(자기) 自身(자신)이 出頭(출두)하게 된 것이다.

## 五(5)

이와 가티 內部(내부)에 있어서 端緒(단서)업는 紛糾(분규)와 激烈(격렬)한 派爭(파쟁)을 거듭하여 왔지만은 同時代(동시대)의 多數(다수) 朝鮮人物(조선인물)들과 가티 國家(국가) 興亡(흥망)은 眼中(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오즉 個人(개인)의 非是(비시)를 專察(전찰)하여 私利(사리)를 圖(도)하고 榮譽(영예)를 다프므로 일삼던 것과는 天壤(천양)의 別(별)이 있었다. 即(즉) 明治時代(명치시대)의 多數(다수) 日本(일본) 사람들의 黨爭(당쟁)은 적어도 그 旗幟(기치)와 主張(주장)이 世界(세계)의 大勢(대세)에 覺醒(각성)되어 國家(국가)의 興亡(흥망)을 憂慮(우려)하는 바가 만하여졌다. 치우치던 西洋(서양) 模倣(모방)이나 그에 反抗(반항)하던 保守者(보수자)의 行動(행동)이나 모도가 그 時代(시대)에 있어서 國家(국가)의 興亡(흥망)을 憂慮(우려)하는 바에 基因(기인)하여 그 國家(국가)의 基礎(기초)를 鞏固(공고)히 함에 있었다. 前者(전자)는 實力(실력)을 背景(배경)하는 外交(외교)로는 西洋諸國(서양제국)의 外交官(외교관)에게 相對(상대)가 되지 아니함을 보고 『井上外相(정상의상)은 歐化政策(구화정책)을 써서 爲先(위선) 日比谷(일비곡)에 鹿鳴館(녹명관)을 設(설)하고 內外(내외)의 紳士(신사)와 貴女(귀녀)가 모여서 管絃舞蹈(관현무도)의 興(흥)을 盡(진)하여 一代(일대)의 人心(인심)을 歌吹海裡(가취해리)에 投(투)하였고 또 社會改良(사회개

량)이라고 稱(칭)하여 宮中(궁중)으로부터 地方(지방)에 이르기까지 毘州武(구주식)의 生活(생활)을 輸入(수입)하여 洋裝(양장) 洋服(양복)을 流行(유행)시키고 洋學(양학)을 獎勵(장려)하였슴으로 歐化(구화)의 風朝(풍조)는 焰焰(염염)히 朝野(조야)에 汎濫(범람)하였다』고한다. 此(차)에 對(대)하여 反動(반동)하던 保守派(보수파)도 『對外(대외)의 強硬(강경)을 主張(주장)하고 歐化政略(구화정략)을 排斥(배척)하며 國粹(국수) 保存(보존)과 勤儉(근검) 尙武(상무)를 提唱(제창)하였다』 그러나 西洋(서양)의 模倣(모방)은 壓倒的(압도적) 勢力(세력)으로 增進(증진)하였스니 이것은 實用(실용)을 尊重(존중)하던 點(점)에 잇섯든 것이다. 이 思潮(사조)가 政治上(정치상)에 잇서서는 制度(제도)의 大大的(대대적) 改廢(개폐)로 出現(출현)하였든 것이다. 이와 가티 明治時代(메이지시대)의 政治(정치) 外交(외교)를 引導(인도)하던 基本的(기본적) 動機(동기)는 國家的(국가적) 基礎(기초)의 確立(확립)과 基(기) 實力(실력)의 充實(충실)에 잇섯나니 明治(메이지) 三年(3년) 山縣有朋(산현유봉)이 毘州(구주) 視察(시찰)에 돌아와서 明治(메이지) 天皇(천황)께 國民(국민) 皆兵主義(개병주의)가 必要(필요)함을 말하여야 一部(일부)의 猛烈(맹렬)한 反對(반대)가 잇섯슴에도 不拘(불구)하고 徵兵制(징병제)를 세운 것이나 또는 義務教育制(의무교육제)가 實施(실시)된 것이나 어느 것이 그러케 아니함이 업섯다. 그럼으로 專制政治(전제정치)로 내여밀던 伊藤(이등)의 心算(심산)에는 오죽이 國家的(국가적) 基礎(기초)를 確立(확립)한다는 데에 그 目標(목표)가 잇섯든 것을 알 수 잇는 것이다. 그럼으로 그에게 因緣(인연)하여 또한 必然的(필연적)으로 나오는 政策(정책)이 產業(산업)의 振興(진흥)이엇섯다. 여기서 日本(일본)의 第三階級(제3계급)은 政府(정부)의 保護(보호) 政策下(정책하)에 高速度(고속도)로 發展(발전)하게 되엇다. 더욱이 國會(국회)가 開設(개설)되고 政黨政治(정당정치)가 擡頭(대두)하게 됨을 따라 資本家(자본가)의 힘이 政界(정계)에 反作用(반작용)을 하게 되엇스니 國家(국가) 政策上(정책상)으로 保護政策(보호정책)을 쓰게 되어 잇고 다시 資本家(자본)

가)의 金力(금력)이 政黨(정당)을 通(통)하여 政界(정계)에 맞치게 되니 日本(일본)의 資本主義(자본주의)는 加速度(가속도)로 發達(발달)하지 아니할 수 업는 運命(운명)에 잇섯든 것이다.

## 六(6)

이와 가티 日本(일본)이 極東(극동)에 잇서서 最大(최대) 速力(속력)으로 勃興(발흥)하게 됨에는 또 한 가지 外界(외계)의 事實(사실)이 잇섯스니 歐米諸國(구미제국)에서는 強國(강국) 間(간)의 戰爭(전쟁)과 또는 植民地(식민지)의 取得(취득)으로 侵略力(침략력)이 極東(극동)에사지 미처올 餘力(여력)이 업섯슴도 日本(일본)에게 實(실)로 好運(호운)의 機會(기회)이엇섯다. 그리하여 日本(일본)이 國家的(국가적)으로 어느 程度(정도)까지 그 實力(실력)을 培養(배양)한 後(후)에는 外部(외부)에 對(대)한 發展(발전)을 始(시)하였스니 日淸戰爭(일淸전쟁)이 그것이엇섯고 朝鮮(조선)에 對(대)한 露骨的(노골적) 圖謀(도모)가 또 한 그것이엇섯다. 日淸戰爭(일淸전쟁)에 그 實力(실력)을 試驗(시험)한 日本(일본)은 다시 露國(노국)을 假想敵(가상적)으로 準備(준비) 汲汲(급급)하였섯다. 陸軍(육군)을 大擴充(대확충)하고 教育(교육)을 增進(증진)하며 商工業(상공업)을 獎勵(장려)하였섯다. 이때에 印度(인도)를 가지고 恆時(항시)로 露國(노국)의 南下(남하)를 두려워하던 英國(영국)은 日本(일본)과 握手(악수)하여 同盟(동맹)을 締結(체결)하였스니 이때부터가 비로소 強國(강국)으로 日本(일본)이 列國(열국) 間(간)에 參與(참여)한 것이다.

日淸戰爭(일淸전쟁)에 어든 바를 露(노), 佛(불), 獨(독) 三國(삼국)의 干涉(간섭)으로 因(인)하여 한 김흔 嘆息(탄식)을 참아가면서 겨우 三千萬兩(3천만 양)의 代價(대가)를 받고 그 忠告(충고)대로 遼東半島(요동반도)를 淸國(淸국)에 돌리어 보내지 아니할 수 업섯스니 日本(일본)의 恨(한)은 實(실)로 骨髓(골수)에 사뭇섯든 것이다. 더욱이 其後(기후) 三國(삼국) 干涉(간섭)으로 淸國

(청국)에 돌니여 보낸 遼東半島(요동반도)는 露國(노국)이 들어서서 經營(경영)하고 露國(노국)의 軍事的(군사적) 根據(근거)를 삼는 形跡(형적)이 現著(현저)할 아야 日本(일본)의 憤怒(분노)가 凡常(범상)할 수 잇스랴. 그럼으로 軍費(군비) 擴張(확장)에 對(대)하야 反對(반대)하는 것은 國賊(국적)이라는 思想(사상)까지 一般(일반) 日本人(일본인)에게 주엇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日本(일본) 明治時代(명치시대)의 特殊性(특수성)을 發見(발견)할 수 잇스니 國家(국가)가 外敵(외적)에 對(대)하야 緊張(긴장)할 時(시)에는 그와 가티 軍費(군비)가 財政上(재정상)으로 激增(격증)될 쏴 아니라 軍國主義(군국주의) 思想(사상)의 勃興(발흥)과 軍人(군인)의 活躍(활약)이 尤甚(우심)하다는 것이다. 日淸戰爭(일청전쟁)과 日露戰爭(일로전쟁)의 兩大戰爭(양대전쟁)의 勝利(승리)로 因(인)하야 世界的(세계적)으로 그 國際的(국제적) 地位(지위)를 確立(확립)한 日本(일본)은 다시 보면 軍閥(군벌)의 힘으로 日本(일본)이 비로소 危急(위급)한 難境(난경)에서 救濟(구제)된 觀(관)이 잇었다. 그럼으로 內政(내정)에 잇서서 軍閥(군벌)의 勢力(세력)이 絶對(절대)한 勢力(세력)을 가질 것도 勢(세)의 當然(당연)이라고 할 것이다. 여긔서 우리는 日本(일본)이 短時日(단시일) 內(내)에 世界(세계)의 類(유)가 업서 速成(속성)된 由來(유래)를 發見(발견)하고 軍閥(군벌)의 政治的(정치적) 地位(지위)와 勢力(세력)이 旺隆(왕륭)한 理由(이유)를 發見(발견)할 수 잇는 것이다. 日本(일본)의 軍閥(군벌)이 內部(내부)에서 政權(정권)을 左右(좌우)한 것은 一般(일반) 人民(인민)이 愚昧(우매)한 데 잇섯든 것이 아니라 即(즉) 文治派(문치파)가 勝利(승리)를 어들 能力(능력)이 업서서 그리된 것이 아니라 日本(일본)을 싸고 잇던 世界的(세계적) 空氣(공기)가 日本(일본)으로 하야 금 日淸(일청) 日露(일노)의 兩大戰爭(양대전쟁)을 맞보게 하고 그리되는 동안에 必然的(필연적)으로 軍閥(군벌)이 跋扈(발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形勢(형세)는 반드시 限度(한도)가 잇는 것이니 日本(일본)이 어느 程度(정도)까지 國家的(국가적) 基礎(기초)가 잡힌 後(후)에는 그동안 國

家(국가) 政策上(정책상) 必要(필요)에 依(의)하여 助長(조장)하여야온 產業(산업)의 發達(발달)이 資本主義(자본주의)의 早熟(조숙)을 招來(초래)하고 그 成熟(성숙)한 資本主義(자본주의)의 擡頭(대두)는 必然的(필연적)으로 內部(내부)에 잇서 資閥(자벌)이 議會政治(의회정치)를 通(통)하여 內政上(내정상) 優勢(우세)한 地位(지위)를 占(점)하고 外政(외정)에 잇서서는 그 優勢(우세)한 地位(지위) 權力(권력)을 利用(이용)하여 資閥(자벌) 自己(자기)네의 利益(이익)을 爲(위)하는 政治(정치)를 運行(운행)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明治維新(명치유신) 初(초)에 잇서서는 政權(정권)을 中心(중심)삼고 모혀 들어서 씨들던 目的(목적)은 國家的(국가적) 基礎確立(기초확립)이라는 데에 그 主潮(주조)가 잇섯지마는 日本(일본)의 國家(국가)가 外敵(외적)의 迫切(박절)한 脅威(협위)를 버서나고 國家的(국가적) 基礎(기초)가 確立(확립)된 後(후)에는 基(기) 內部(내부)에서 자라난 資閥(자벌)의 利害打算(이해타산)에서 우러나온 國家(국가) 政策(정책)이 內政(내정)에 잇서서나 外政(외정)에 잇서 恒常(항상) 優秀(우수)한 地位(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 七(7)

이와 가티 日本(일본)의 政治的(정치적) 過程(과정)을 말하여 바리기에는 그 實際(실제)가 좀 더 複雜(복잡)한 바를 늦기는 것이다. 即(즉) 資閥(자벌)이라고 하여도 그 中(중)에는 官僚(관료)도 있고 地主(지주)도 있고 또는 商工(상공) 階級(계급)도 잇는 것이다. 그리하여 英國(영국)과 가티 議會(의회)라는 것을 完全(완전)히 資本家(자본가)가 獨占(독점)하고 그 利益(이익)을 爲(위)하여 運用(운용)하는 程度(정도)에는 아즉 이르지 못한 理由(이유)를 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現下(현하) 日本(일본)의 政治的(정치적) 實際(실제)를 如實(어실)히 觀察(관찰)하자면 明治(명치) 初年(초년)에서부터 簡單(간단)하나마 以上(이상)에 말한 材料(재료)를 綜合(종합)하여 官僚政治(관료정치)의

前後(전후) 脈絡(맥락)을 추리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資閥(자벌)이 中心(중심)되어 運行(운행)되는 議會政治(의회정치)를 보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럼으로 아모리 資閥(자벌)의 利益(이익)이 中心(중심)되어서 議會政治(의회정치)가 運行(운행)된다 하야도 日本(일본)에 잇서서는 日本(일본)의 特殊事情(특수사정)인 官僚(관료)의 政治的(정치적) 權力(권력)이 아즉까지도 儼然(엄연)히 存在(존재)한 故(고)로 資閥(자벌)의 利害(이해)가 中心(중심)되어 잇슴에는 틀림이 업스나 그러나 그것이 完全(완전)히 獨占(독점)하는 程度(정도)에 잇서서는 英國(영국)과 가튼 程度(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 쏜 아니라 日本(일본)의 資閥(자벌)이 即(즉) 資本家的(자본가적) 勢力(세력)이 政界(정계)에 現著(현저)하게 擡頭(대두)한 것은 歐州大戰(구주대전)의 後(후)에 새로운 記錄(기록)을 表示(표시)하였나니 歐州大戰(구주대전)으로 因(인)하야 資本(자본) 階級(계급)이 未曾有(미증유)의 飛躍(비약)을 하게 되어 잇섯슴으로 그네의 政治的(정치적) 勢力(세력)은 急激(급격)히 增進(증진)된 것이다. 勿論(물론) 日露戰爭(일로전쟁) 後(후) 日本(일본)이 東洋(동양)의 強國(강국)으로 이미 世界(세계)에 그 基礎(기초)가 確立(확립)되는 時(시)부터서 日本(일본)의 貴族(귀족)은 資本家化(자본가화)하고 資本家(자본가)는 貴族化(귀족화)하는 그 間(간)의 融化作用(융화작용)이 움직이엇든 것도 事實(사실)이지만은 大戰(대전) 後(후)에 잇서서 이 現像(현상)이 더욱 現著(현저)하였고 露骨化(노골화)한 것이다. 이 資閥(자벌)의 政治的(정치적) 地位(지위)를 말하기 前(전)에 나는 그 對立(대립)되는 官僚(관료)에 對(대)하야 一言(일언)하지 아니할 수 업다. 憲法(헌법)이 發布(발포)되기 前(전)에 即(즉) 明治(명치) 十六年(16년) 八月(8월)에 伊藤博文(이등박문)이 洋行(양행)에서 돌아와 가지고 獨逸(독일)에 잇섯서의 『비스막』과 가티 되고저 하는 慾心(욕심)이 잇섯슴으로 一面(일면)으로는 藩閥(번벌)의 勢力(세력)을 빌어서 民間(민간)의 政論(정론)을 抑壓(억압)하는 同時(동시)에 一面(일면)에 잇서서는 오히려 藩閥(번벌)의 根據(근거)를 倒壞(도괴)하

는 方略(방략)을 세웠스니 그것이 官僚政治(관료정치)의 始作(시작)이라고 한다. 獨逸(독일)에서 『비스막』이 鞏固(공고)한 官僚政治(관료정치)로 그 功(공)이 赫赫(혁혁)한 것을 본 伊藤(이등)은 日本(일본)에다가 이것을 移植(이식)한 것이다. 그리하여 十七年(17년) 三月(3월)에 制度(제도) 取調國(취조국)을 宮內省中(궁내성중)에 置(치)하고 自己(자기)가 그 總裁(총재)로 宮內卿(궁내경)을 兼(겸)하며 華族局(화족국)의 職制(직제)를 擴張(확장)하여 華族(화족)에 關(관)한 一切(일절) 事務(사무)를 掌握(장악)하였다.

그런 後(후)에는 七月(7월) 七日(7일) 華族令(화족령)으로 公侯(공후) 伯子男(백자남)을 定(정)하고 舊來(구래)의 華族(화족)에게 各各(각각) 爵(작)을 授(수)하는 同時(동시)에 維新(유신)의 文武功臣(문무공신)에게도 華族(화족)이 되도록 爵(작)을 授(수)하여 新舊(신구) 華族(화족) 五百五人(505인)을 만들었다. 그런 後(후)에는 華族待遇法(화족대우법)을 改正(개정)하여 從來(종래)에 有名無實(유명무실)하던 華族(화족)의 權力(권력)과 榮譽(영예)을 復活(부활)하고 華族(화족)은 皇室(황실)의 藩屏(변방)이라는 福音(복음)을 垂示(수시)하였으므로 自然(자연)히 一般(일반) 華族(화족)은 다가티 皇室(황실)에 接近(접근)하게 되었스니 藩閥(변방)이 君側(군측)을 獨占(독점)하던 것을 破壞(파괴)하게 되었었다. 그 結果(결과)로 그 때에 授爵(수작)된 사람들은 한가지 階級(계급)을 가지게 되는 同時(동시)에 伊藤(이등)을 잊지 못하게 될 것도 當時(당시) 人情(인정)의 必然(필연)이라고 볼 수 있스니 伊藤(이등)의 人望(인망)은 實(실)로 宮廷(궁정)의 內外(내외)에 膾(내외)하여 그 權勢(권세)는 比(비)하기 어려웠었다고 한다. 이와 가티 宮廷(궁정)을 統一(통일)하여 自家(자기)의 地位(지위)를 鞏固(공고)한 後(후)에는 政府(정부)의 統一(통일)에 着手(착수)하였스니 十八年(18년) 十二月(12월)에 太政官諸職(태정관제직)을 廢(폐)하고 新內閣(신내각) 制度(제도)를 設(설)하며 總理大臣(총리대신)은 內閣(내각)이오 內閣(내각)은 即(즉) 總理大臣(총리대신)이라는 主義(주의)를 採用(채용)하는 同時(동시)에 第一項(제1항)에



伊藤(이등) 內閣(내각)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十二月(12월)에는 內閣(내각)에 法制局(법제국)을 置(치)하고 行政(행정) 法制(법제) 司法(사법)의 各部(각부)를 設(설)해야 諸般(제반)의 法律(법률) 命令(명령)을 起草(기초)시키었다. 이와 가티 伊藤(이등)은 憲法(헌법)을 發布(발포)하기 前(전)에 自己(자기)의 意見(의견)에 依(의)하여 法律(법률) 命令(명령)을 만히 發布(발포)하였스니 憲法(헌법)이 된 後(후)에는 아모리 하여도 自己(자기)의 意見(의견)대로 만든 아니 될 것을 豫測(예측)한 까닭이었었다.

이와 가티 하여서 官僚政治(관료정치)는 伊藤(이등)의 意見(의견)대로 그 뿌리를 긋게 세운 것이다.

## 八(팔)

그리하여 明治(명치) 初葉(초엽)부터 그 時代(시대)의 重要(중요) 人物(인물)을 추려서 한 團體意識(단체의식) 下(하)에 統屬(통속)시키었는 故(고)로 그 모도가 明治維新(명치유신)의 有功者(유공자)이니 만큼 政治(정치)가 그네들의 掌中(장중)에서 料理(요리)될 것도 避(피)치 못할 일이니 如干(여간)한 資本階級(자본계급)이 그 官僚(관료)의 陣營(진영)을 헤치고 政權(정권)을 奪取(탈취)하지 못할 것은 分明(분명)하게 推測(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況且(황차) 日露戰役(일로전역)에도 歐州大戰(구주대전)에 이르기까지 對外(대외) 發展上(발전상) 軍國主義的(군국주의적) 國家觀(국가관)이 日本(일본)의 支配階級(지배계급)의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스니 엇지 新興階級(신흥계급)의 勢力(세력)이 侵入(침입)해야 그 主力(주력)을 掌握(장악)할 餘地(여지)가 잇섯스랴. 그러므로 日本(일본)에 政黨(정당)이 생긴 以後(이후) 普選(보선)이 決定(결정)되고 無產政黨(무산정당)이 생기기 前(전)까지는 官僚閥族(관료벌족)이 關係(관계)치 아니한 政黨(정당)이 었었다.

政黨(정당)으로 問題(문제)될만한 者(자)이면 어느 것을 勿論(물론)하고 舉

皆(거개) 官僚(관료)나 閥族(벌족)과 關係(관계)가 直接(직접) 間接(간접)으로 적지 아니하게 가지고 온 것이다. 그리하여 政權(정권)의 移動(이동)도 多數黨(다수당)에게 必然的(필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元老(원로)의 方寸(방촌)에 依(의)하여 想象(상상) 不到處(부도처)에 흐니 떨어지는 奇現象(기현상)을 이루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든지 그대로 繼續(계속)될 運命(운명)을 가지지 못하였나니 모든 社會(사회)의 進化的(진화적) 法則(법칙)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가티 日本(일본)에서도 이미 자라나고 高速度(고속도)로 形成(조성)한 資本階級(자본계급)은 滿滿(만만)한 不平(불평)을 가지고 政界(정계)에 出戰(출전)한 것이다. 비록 政權(정권)은 元老(원로)나 貴族(귀족)들의 意思(의사)대로 移動(이동)할지라도 漸漸(점점) 자라나는 資本階級(자본계급)의 勢力(세력)은 그 形勢(형세)를 날로 滅殺(감살)하기 마지 아니하였었다. 먼저 指摘(지적)한 바와 가티 資閥(자벌)의 貴族化(귀족화)나 貴族(귀족)의 資閥化(자벌화)라는 平和(평화)스러운 局面(국면)의 自然(자연) 展開(전개)도 있었지만은 激成(격성)되는 資閥(자벌)의 勢力(세력)은 畢竟(필경) 그 所謂(소위) 英國式(영국식) 政黨政治(정당정치)에 立脚(입각)한 憲政(헌정)의 常道(상도)를 찾게되고 原敬內閣(원경내각)과 가튼 平民(평민) 首相(수상)의 政黨內閣(정당내각)을 보게 되고야 마랐다. 이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업시 資本階級(자본계급)의 勢力(세력)이 政治的(정치적) 分野(분야)에 一步(일보)를 前進(전진)해야 그 本來(본래) 性質(성질)을 發揮(발휘)하는 場面(장면)이었스니 有產階級(유산계급)의 代表(대표) 內閣(내각)이라 할 것이다.

## 九(9)

그럼으로 적어도 原敬內閣(원경내각) 以後(이후)부터서는 資閥(자벌)의 出進時代(출진시대)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업다. 自由主義(자유주의) 政黨政治(정당정치)로서의 意義(의의)를 매우 發揮(발휘)한 것이 原敬內閣(원경내각) 時代(시

대)이엇섯다. 그뿐 아니라 原敬內閣(원경내각) 時代(시대) 三四年(삼사년)에 日本(일본)의 社會運動(사회운동)도 急速(급속)한 發達(발달)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時代(시대) 進運(진운)이 그 重要(중요)한 原因(원인)인 것은 勿論(물론)이지만은 自由主義(자유주의) 色彩(색채)가 만흔 政策(정책)의 結果(결과)도 또 한 가지 原因(원인)이 되는 줄 맞는다. 如何間(어하간) 大體(대체)로 보아서 大戰(대전) 後(후)의 世界的(세계적) 大變革(대변혁)은 直接(직접) 또는 間接(간접)으로 日本(일본) 人心(인심)을 刺戟(자극)하고 引導(인도)한 바가 實(실)로 多大(대)대하였다. 明治(명치) 四十四年(44년)(第二十七(제27) 議會(의회)에 普選(보선) 法案(법안)이 처음으로 貴族院(귀족원)에 送付(송부)되었을 時(시)에 同院(동원)에서는 『이러한 法案(법안)은 元來(원래) 貴族院門(귀족원문)에 들어오기를 許諾(허락)하지 아니한다』 喝破(갈파)하고 否決(부결)하였던 普選案(보선안)이 第五十議會(제50의회)에서는 別(별)로히 問題(문제)다운 問題(문제)도 업시 그대로 通過(통과)된 것은 後段(후단)에 그 原因(원인)을 略設(약설)하려니와 世界(세계)의 大勢(대세)와 日本(일본)의 民衆(민중)이 그리 아니하고는 견대지 못하게 하는 力的壓力(역적압력)을 發揮(발휘)한 所致(소치)라고 할 것이다. 普選(보선)에 反對(반대)하던 政友會(정우회)의 分裂(분열) 等(등)은 普選(보선)을 招來(초래)한 歷史的(역사적) 過程(과정)에서 보면 그다지 重視(중시)될 原因(원인)이라고 할 것이 못 되는 줄 맞는다. 世界(세계) 列國(열국)이 大戰後(대전후) 政治(정치)나 社會(사회) 各(각) 方面(방면)에 大革新(대혁신)을 避(피)하지 못하는 時代(시대)의 進展(진전)과 日本(일본) 民衆(민중)의 覺醒(각성)된 要求(요구)에 끌려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가티 發展(발전)된 日本(일본)의 政治(정치) 過程(과정)을 살펴 온 동안에 直覺的(직각적)으로 늦기는 바가 잇스니 그것은 먼저도 말한 바와 가티 日本(일본)에서는 資本階級(자본계급)이 政治的(정치적)으로 獨占(독점)할 期間(기간)이 大端(대단)이 짜르다는 것이다. 勿論(물론) 普選(보선)이 實施(실시)된 後(후)에도 相實

(상실)한 時期(시기)를 두고 그 勢力(세력)을 維持(유지)할 것은 事實(사실)이겠지만은 그러타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比(비)하면 매우 그 期間(기간)이 尠(적)하다는 것을 計算(계산)할 수가 있다. 이 點(점)에서 以後(이후)의 日本(일본) 政治的(정치적) 過程(과정)을 推想(추상)하는 데에 有力(유력)한 材料(재료)를 發見(발견)할 수 있는 줄 믿는다. 이번 普選法(보선법)의 內容(내용)이 選舉權(선거권) 擴張(확장)에 잇는 것은 勿論(물론)이지만은 그 數字上(숫자상)으로 보아서 實(실)로 大變革(대변혁)이라고 할 것이다. 即(즉) 明治(명치) 二十二年(22년) 第一回(제1회) 總選舉(총선거) 時(시)에는 四十五萬三千幾百人(45만3천기백인)이었고 三十年後(30년후) 第十五回(제15회) 總選舉(총선거)에는 겨우 三百二十八萬八千餘人(328만8천여인)이라는 數(수)에 漸進(점진)하였던 것이 今番(금번)에는 三百萬(300만)에서 一千三百萬(1천3백만)이라는 數(수)에 達(달)하였을 뿐 아니라 納稅(납세) 制限(제한)을 撤廢(철폐)하였으므로 그것은 單純(단순)히 選舉權(선거권)의 擴張(확장)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選舉權(선거권)이라는 觀念(관념)을 根本的(근본적)으로 變化(변화)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다. 勿論(물론) 以後(이후)에는 또 一步(일보) 進(진)해야 婦人(부인)의 選舉權(선거권) 問題(문제)에까지 가고야 말것도 能(능)히 推測(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 十(10)

以上(이상)에 나는 日本(일본)의 全(전) 政治的(정치적) 過程(과정)에서 既成政黨(기성정당)이 자라나온 地質(지질)과 環境(환경)을 大綱(대강) 말하였고 普通(보통) 選舉制(선거제)의 特點(특점)을 指摘(지적)하였다. 이로부터서는 現存(현존) 既成政黨(기성정당)의 主見(주견)과 行動(행동)을 말하고 新興(신흥) 無產政黨(무산정당)의 未來(미래)에 사지도 論及(논급)하여야 될 터인 故(고)로 極(극)히 簡略(간략)히 쓰고저 한다.

大體(대체)로 보아서 現存(현존)한 既成政黨(기성정당)은 그 黨(당)에 屬(속)한 人物(인물)을 個別的(개별적)으로 보면 主義政見(주의정견)이 相當(상당)한 者(자)도 적지 아니하지만은 黨(당)으로 보면 全部(전부)가 이미 이 時代(시대)를 料理(요리)할 理想(이상)과 力量(역량)이 업다고 하여서 過言(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無產階級(무산계급)의 利害的(이해적) 立場(입장)에서 보면 더 다시 말할 거리가 아니 되는 것도 勿論(물론)이다. 以下(이하) 各(각) 政黨(정당)의 大要(대요)를 紀錄(기록)하여 보자.

◇ 立憲民政黨(입헌민정당)은 昭和(소화) 二年(2년) 六月(6월) 一日(1일) 結黨(결당)하였는데 이것은 若槻內閣(약규내각)의 總辭職(총사직)으로 因(인)하여 合同(합동)이 速成(속성)된 憲政會(헌정회)와 政友本黨(정우본당)의 合體(합체)이다. 憲政會(헌정회)는 大正(대정) 三年(3년) 四月(4월)에 山本內閣(산본내각)의 뒤를 이어 大隈內閣(대외내각)이 된 後(후) 立憲(입헌) 同志會(동지회)와 中正會派(중정회파) 及(급) 大隈伯(대외백) 後援會(후원회) 等(등) 三個(3개) 團體(단체)가 翌五年(익5년) 大隈(대외)가 辭職(사직)한 後(후) 지금까지 政府(정부) 與黨(여당)으로 잇섯다가 在野黨(재야당)이 됨으로 말하 結束(결속)할 必要(필요)가 있다고 하여서 同年(동년) 十月(10월)에 結黨(결당)된 것이다. 總裁(총재)로는 當時(당시) 大隈(대외)가 固辭(고사)함으로 前(전) 同志會(동지회) 總理(총리)이었던 加藤高明(가토고명)이 되었던 것이오 政友本黨(정우본당)은 原敬(원경)이 大正(대정) 十年(10년) 十一月(11월) 東京驛(동경역)에서 一青年(일청년)에게 刺殺(최살)된 後(후) 政友會(정우회) 內(내)에 內訌(내홍)이 續出(속출)하여 總裁(총재) 高橋是清(고교시청)은 畢竟(필경) 此(차)를 收拾(수습)하지 못하고 大正(대정) 十三年(13년) 一月(1월)에 床次(상차), 山本(산본), 中橋(중교), 元田(원전) 等(등) 宿老(숙노)가 相率(상률)하고 政友會(정우회)에서 分離(분리)하여 結黨(결당)한 것이다. 지금 民政黨(민정당)은 濱口雄幸(빈구웅행)을 總裁(총재)로 二百二十一名(221명)의 所

屬代議士(소속대의사)를 가지고 있스니 既成政黨(기성정당) 中(중)의 第一黨(제1당)이다.

同黨(동당)의 主義政策(주의정책)은 斷言(단언)하기 어려운 바가 있스니 普選案(보선안)을 政府案(정부안)으로 自己(자기)네가 提出(제출)하여 通過(통과)시킨 舊(구) 憲政會(헌정회)와 그 普選案(보선안)을 反對(반대)하든 舊(구) 政友本黨(정우본당)이 合體(합체)한 것이니 이것으로도 斷言(단언)하기 어려운 바를 볼 수 있다. 이로 밀우어서도 그 所謂(소위) 既成政黨(기성정당)이라는 것은 主義政見(주의정견)으로 合散(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政權(정권) 取得(취득)을 中心(중심) 삼아 利害關係(이해관계)와 情實關係(정실관계)로 만히 離合集散(이합집산)을 때엄시 한다는 實證(실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民政黨(민정당)의 傾向(경향)을 살피어보자면 從來(종래) 憲政系(헌정계)가 都會(도회)를 中心(중심)하고 工業資本(공업자본)을 基礎(기초)로 하는 中央集權的(중앙집권적) 思潮(사조)에 指導(지도)되는 便(편)이라고 하여서 크게 틀림이 없다고 한다. 또한 그는 金融資本(금융자본)도 背景(배경)으로 하며 農村地主(농촌지주)로서의 金融資本(금융자본)도 적지 아니하게 包含(포함)하고 있다. 政友本黨(정우본당)은 官僚(관료)를 만히 包攬(포용)하고 있스나 大體(대체)로 보아서 產業(산업) 資本系(자본계)라고 볼 수 있다 하니 이 두 가지가 民政黨(민정당)의 背景(배경)이라고 할 것이다.

◇ 立憲政友會(입헌정우회)는 明治(명치) 七年(7년) 一月(1월)에 當時(당시)의 自由民權論(자유민권론)의 主將(주장)이든 板垣退助(판원퇴조)와 後藤象二郎(후등상이랑) 等(등)에 依(의)하여 組織(조직)한 愛國公黨(애국공당)의 傳統(전통)을 바다운 것이니 當時(당시) 穩健(은건) 着實(착실)을 主張(주장)하든 改進黨系(개진당계)에 比(비)하면 多少(다소) 急進的(급진적) 傾向(경향)에 잇섯든 것이라고 할 것이다. 立憲政友會(입헌정우회)로 組織(조직)되기는 明治(명치) 三十三年(33년)

九月(9월)에 伊藤(이등)의 官僚的(관료적) 머릿속에서 不得已(부득이)하여 計劃(계획)된 政黨(정당)으로 變化(변화)된 것이다. 基後(기후) 同會(동회)는 伊藤(이등) 西園寺(서원사) 原高燾(원고교) 等(등)을 거쳐서 現(현) 總理(총리) 大臣(대신) 長洲派(장주파) 陸軍大將(육군대장) 田中義一(전중의일)을 總裁(총재)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即(즉) 大正(대정) 九年(9년) 五月(5월) 總選舉(총선거)에 二百八十一名(281명)의 議席(의석)을 어더가지고 衆議院(중의원)의 絶對多數(절대다수)로 原敬(원경)의 總理(총리) 下(하)에 政友會(정우회)의 黃金時代(황금시대)를 일으켰으나 一方(일방)으로 貴族院(귀족원)을 懷柔(회유)하고 一方(일방)으로 藩閥政治(번벌정치)를 廢(폐)하야써 政黨政治(정당정치)의 實(실)을 보였다고 할 것이다. 原敬(원경)이 죽은 後(후) 大正(대정) 十三年(13년)에 와서는 政友會(정우회)와 政友本黨(정우본당)으로 分裂(분열)되고 十四年(14년) 五月(5월)에는 犬養毅(견양익)가 革新俱樂部(혁신구락부)의 大部分(대부분)을 끌고 政友會(정우회)에 合同(합동)하야슴으로 現今(현금)(十二月(12월) 二十六日(26일))의 議席(의석) 黨員數(당원수)는 百八十九名(189명)이라고 한다. 同會(동회)의 主義政策(주의정책)은 大體(대체)에 잇서서 農業(농업) 資金(자금)을 基礎(기초)로 하는 地方分權的(지방분권적)이라고 할 것이오 其外(기외)에도 商業資本(상업자본)을 적지 아니 背景(배경)으로 가지고 잇다고 한다

◇ 新正俱樂部(신정구락부) 이것은 革新俱樂部(혁신구락부)와 中正俱樂部(중정구락부)의 一部分(일부분)이 議會(의회)에 잇서서 한 交涉團體(교섭단체)의 資格(자격)을 가진 것에 不過(불과)하니 그 數(수)가 겨우 二十五名(25명)이다. 革新俱樂部(혁신구락부)는 舊(구) 改進黨(개진당)의 直系(직계)인 立憲國民黨(입헌국민당)의 後身(후신)인데 大正(대정) 十一年(11년) 三月(3월)에 犬養毅(견양익)를 首領(수령)으로 하고 組織(조직)되었던바 大正(대정) 十四年(14년) 五月(5월)에 大部分(대부분)의 部下(부하)를 率(솔)하고 政友會(정우회)로 가버렸슴으

로 當時(당시) 非合同派(비합동파)이던 中正俱樂部(중정구락부)와 友黨關係(우당 관계)를 持續(지속)하면서 既成政黨(기성정당)의 急進派(급진파)로 自處(자처)하고 議會政策(의회정책)의 批判的(비관적) 立場(입장)을 직한다고 하나 그 背後(배후)에는 地主(지주)와 官僚(관료)가 만했다고 한다.

◇ 實業同志會(실업동지회) 이것은 商工階級(상공계급)의 鬪士(투사)라고 하는 武藤山治(무등산치)의 힘으로 大正(대정) 十二年(12년) 四月(4월)에 結黨(결당)된 것이다. 現在(현재) 黨員(당원) 議席(의석)이라는 것은 九(9)에 지나지 아니하지마는 議會(의회)에 들어가서 商工階級(상공계급)의 利益(이익) 擁護(옹호) 特(특)히 惡稅(악세)의 廢止(폐지)를 絶叫(절규)한다고 한다. 그 背景(배경)은 金融資本(금융자본)을 兼備(겸비)한 產業資本(산업자본)이라고 할 뿐이오 別(별)것이 없다.

## 十一(11)

이로부터는 日本(일본)의 政治的(정치적) 分野(분야)를 前後(전후)에 劃時代的(획시대적)으로 區別(구별)시키기로 無產政黨(무산정당)의 實現(실현)에는 論述(논술)을 展開(전개)하여야 되겠다. 無產政黨(무산정당)이 實現(실현)된 直接(직접) 原因(원인)은 普選(보선)의 成立(성립)에 잇고 普選(보선)이 成立(성립)된 近因(근인)은 日本(일본) 國內(국내)에 잇서서 清浦內閣(청포내각)에 對(대)한 所謂(소위) 護憲運動(호헌운동)의 勝利(승리)가 잇고 國外的(국외적)으로도 大正(대정) 十三年(13년) 初頭(초두)에 英國(영국)에서 勞動內閣(노동내각)이 成立(성립)되어 그것이 峻刺戟(자극)이 또 크다는 것을 指摘(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近因(근인)을 가지고 普選(보선)이 成立(성립)되는 同時(동시)에 無產政黨(무산정당)이 일어난 데에 對(대)하여야는 좀 더 日本(일본)의 事情(사정)을 들어서 說明(설명)할 必要(필요)가 잇스니 日本(일본)의 社會運



動(사회운동)이 매우 現實的(현실적) 傾向(경향)을 가지게 되어서 大正(대정) 十年頃(10년경)에 와서는 一部(일부) 人士(인사) 間(간)에 現實政策(현실정책)에 方向(방향)을 轉換(전환)하자는 理論(이론)이 提唱(제창)된 것부터 勞動農民黨(노동농민당)이 成立(성립)되던 때까지의 大略(대략)을 觀察(관찰)할 必要(필요)가 있는 줄 맞는다. 當時(당시) 即(즉) 大正(대정) 十一年(11년)에 提唱(제창)된 方向轉換論(방향전환론)의 特質(특질)을 그 代表者(대표자)인 山川均(산천균)의 說明(설명)에 依(의)하여 살펴해보자.

『當年(당년)의 方向轉換論(방향전환론)의 特質(특질)은 어디 있겠는가』 『當時(당시)의 方向轉換論(방향전환론)은 爲先(위선) 第一(제1)로 無產階級運動(무산계급운동)이 全線(전선)에 亘(긋)아야 大衆化(대중화)의 要求(요구)에 잇섰다. 即(즉) 日本(일본) 無產階級運動(무산계급운동)』을 『보다 큰 大衆的(대중적) 基礎(기초)우에 서게 하는 要求(요구)이얏섰다.

◇ 第二(제2)로는 經濟上(경제상) 鬭爭(투쟁)에서 政治鬭爭(정치투쟁)으로 戰線(전선)의 擴大(확대) 또는 運動(운동)의 展開(전개)이엇섰다. 이 두가지 要求(요구)를 包含(포함)한데에 當年(당년)의 方向轉換論(방향전환론)의 第一(제1) 特質(특질)이 잇섰다. 그리고 이 두가지 要求(요구) 中(중)에 第一(제1)의 要求(요구)가 恒常(항상) 前景(전경)을 占(점)하고 잇는 데에 第二(제2)의 特質(특질)이 잇섰다』 그는 다시 說明(설명)한다. (이 點(점)은 요즘 우리 社會(사회)의 論戰(논전)에도 어느 關聯(관련)이 잇는 故(고)로 더 引用(인용)한다.)

『大正(대정) 十一年(11년)에 方向轉換(방향전환)이 經濟鬭爭(경제투쟁)의 揚棄(양기)와 純粹單純(순수단순)한 全階級的(전계급적) 政治鬭爭(정치투쟁)의 意識(의식)을 戰取(전취)하는 運動(운동)이 아니엇던 것을 보고 그 『맑스』主義的(주의적) 性質(성질)을 疑心(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疑問(의문)은 어느 意味(의미)에서는 當然(당연)한 疑問(의문)이다. 即(즉) 時間(시간)을 超越(초월)한

生物(생물) 떨어져 또 無產階級運動(무산계급운동)을 그 發展過程(발전과정)에 서 把握(파악)하는 機能(기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無理(무리)가 아닌 疑問(의문)이다』

그러나 當年(당년)의 方向轉換(방향전환)의 主張者(주장자) 등(등)은 全然(전연)히 相異(상이)한 생각을 가졌었다. 그들은 方向轉換(방향전환)이 純粹單純(순수단순)한 『맑스』主義的(주의적) 政治意識(정치의식)을 戰取(전취)하기 爲(위)하는 運動(운동)이 아닌 데에 또는 그것이 單純(단순)한 經濟鬭爭(경제투쟁)에의 進出(진출) 展開(전개)도 아닌 데에 當年(당년)의 方向轉換(방향전환)의 特質(특질)과 基因(기인)되는 無產階級運動(무산계급운동)의 當年(당년)의 發展(발전) 階段(계단)의 特質(특질)과를 認識(인식)하얏던 것이다 大正(대정) 九年(9년) 十月(10월)에 이르러서 그때까지 各各(각각) 다른 發達(발달)을 하야온 (主)로 思想上(사상상) 宣傳運動(선전운동)이던)

◇ 社會主義者(사회주의자)의 運動(운동)과 組合運動(조합운동)과 이 두 가지 潮流(조류)가 비로소 接觸(접촉)하얏다. 그 結果(결과)로 勞働組合運動(노동조합운동) 사이에는 ○○○의 意識(의식)을 가진 要素(요소)가 成長(성장)하고 組合運動(조합운동)도 現著(현저)하게 左傾(좌경)하얏다. 그러나 이러한 要素(요소)가 다못 觀念的(관념적)으로 ○○化(화)하면 할수록 그 運動(운동)은 一般(일반) 勞働大衆(노동대중)의 氣分(기분)과 隔離(격리)되어서 그 影響(영향)의 範圍(범위)는 限定(한정)되지 아니할 수가 업섯다. 이것은 두 가지 事實(사실)을 意味(의미)하고 있다. 即(즉) 一方(일방)에서는 勞働階級(노동계급) 間(간)에 ○○○<sup>1</sup>意識(의식)을 가진 前衛的(전위적) 左翼要素(좌익요소) (共產主義者(공산주의자)나 또는 共產主義(공산주의)의 結合(결합)을 가르쳐서 하는

---

1\_○은 일제의 검열로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것이 아니라 無産階級運動中(무산계급운동중) 蕪然(막연)하고 蕪然(막연)한 分層(층)을 指稱(지칭)한 것이다.)가 생긴 것을 意味(의미)하고 그와 同時(동시)에 他一方(타일방)에서는 이 意識(의식)과 이러한 前衛的(전위적) 要素(요소)와는 아주 必然(필연)으로 幼稚(유치)한 것임을 意味(의미)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前衛的(전위적) 要素(요소)는 그 純化(순화)된 意識(의식)을 携(휴)하고 大衆(대중)의 中(중)에 가는 것이 必要(필요)하였다. 이것은 第一(제1)로는 少數(소수) 前衛分子(전위분자) 間(간)에 小規模(소규모)로 到達(도달)된 것은 勞働大衆(노동대중) 間(간)에 大規模(대규모)로 成就(성취)하고 그네들이 獲得(획득)한 것을 根底(근저)로 하여 가지고 日本(일본)의 無産階級運動(무산계급운동)을 보다 大衆的(대중적)인 基礎(기초) 위에 세우기 爲(위)하여 必要(필요)하였다.

第二(제2)로는 이러한 前衛的(전위적) 要素(요소)가 更(편)히 보다 더 높은 意識(의식)에 到達(도달)하고 前衛的(전위적) 要素(요소)로서의 成熟(성숙)을 遂(수)하기 爲(위)하여 必要(필요)하였다. 當年(당년)의 方向轉換論(방향전환론)은 勿論(물론) 第二(제2)의 點(점)을 看過(간과)하지 아니하였다. 그와 同時(동시)에 當年(당년)의 方向轉換論者(방향전환론자)는 이 第二(제2)의 作用(작용)은 第一(제1)의 過程(과정)을 通(통)하여야서만 戰取(전취)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故(고)로 그들은 이 두 가지의 必要(필요)를 指示(지시)하는 代身(대신)에 『이 두 가지의 必要(필요)에 通(통)하는 한 門戶(문호)를 指示(지시)한 것이다』고 하였다. 이와 가티 看取(간취)되는 日本(일본)의 現實(현실)은 다시 關東(관동)의 大震災(대진재)로 因(인)하여 關東地方(관동지방)의 資本家(자본가)가 大打擊(대타격)을 맞게 되고 基(기) 不景氣(불경기)의 侵淪(침윤)으로 因(인)하여 日本(일본) 全國的(전국적)으로 資本家(자본가)의 利潤(이윤)이 低下(저하)되었으므로 勞働組合(노동조합)이 經濟的(경제적) 方面(방면)에 있어서 展開(전개)

할 活動(활동)이 現著(현저)하게 阻止(조지)되었다. 그럼으로 活動力(활동력)은 政治行動(정치행동) 方面(방면)에 가장 強(강)하게 出現(출현)된 것이다. 이것이 우에서 말한 바와 合同(합동)해야 가지고 日本(일본)의 無產政黨(무산정당)의 產出(산출)이 促成(촉성)된 것이다.

### 無產政黨(무산정당)의 實現(실현)

大正(대정) 十四年(14년) 三月(3월) 廿九日(29일)에 兩院(양원)을 通過(통과)된 選舉人員(선거인원) 千三百萬(천3백만)을 相手(상수)로 하고 自己(자기)네의 抱負(포부)를 天下(천하)에 宣布(선포)하려고 續出(속출)하는 光景(광경)은 實(실)로 日本(일본) 國會開設(국회개설)에 狂奔(광분)하던 自由民權論(자유민권론)의 新政黨(신정당) 樹立(수립) 以上(이상)으로 活氣(활기)가 잇섰다. 그리하여 日本(일본) 農民組合(농민조합) 代表(대표) 杉山元治(삼산원치) 等(등)의 周旋(주선)으로 農民勞動黨(농민노동당)이 이섯스나 大正(대정) 十四年(14년) 十二月(12월) 四日(4일)에 政治(정치) 結社(결사)에 組合(조합)의 參加(참가)함을 不許(불허)한다는 理由下(이유하)에 結黨(결당) 後(후) 不過(불과) 三時間(3시간)에 政府(정부)의 禁止(금지)를 當(당)하였다. 그 後(후) 다시 十四年末(14년말)에 日本(일본) 農民組合(농민조합)과 官業(관업) 勞動總同盟(노동총동맹)이 共同(공동) 主催者(주최자)가 되어 가지고 所謂(소위) 左傾團體(좌경단체)를 排除(배제)한 第三次(제3차) 無產政黨(무산정당) 組織(조직)이 開始(개시)된 成果(성과)로 十五年(15년) 三月(3월)에 勞動農民黨(노동농민당)의 結黨(결당)이 된 것이다. 그러나 結黨(결당) 後(후) 얼마가 아니 되어서 前者(전자)에 排除(배제)한 所謂(소위) 左傾團體(좌경단체)를 參加(참가)시킬가 아니 시킬가 하는 紛爭(분쟁)이 일어나서 略(약) 半年(반년)을 두고 이 問題(문제)를 中心(중심)삼아 左右(좌우) 兩派(양파)가 抗爭(항쟁)을 繼續(계속) 하얏섰다. 그러다가 結局(결국) 十五年(15년) 十月(10월)에 이르러서는 勞動農民黨(노동농민당)은 그 結黨(결당)의 眼目(안목)인 全國的(전국적) 單一(단

일) 無產政黨(무산정당)이라는 標語(표어)를 썬트리고 分裂(분열)된 것이다. 勞動農民黨(노동농민당)의 分裂(분열) 以後(이후) 一派(일파)는 社會民衆黨(사회민중당)을 組織(조직)하고 一派(일파)는 日本勞農黨(일본노동당)을 組織(조직)하며 日本(일본) 農民組合(농민조합)의 一角(일각)에서 分離(분리)한 日本農民黨(일본농민당)을 合(합)하면 無產階級(무산계급)의 陣營(진영)은 四個(4개)의 政黨(정당)으로 對立(대립)된 것이다. 그 成立(성립) 時日(시일)과 綱領(강령) 及(및) 各其(각기) 背景(배경)은 左(좌)와 如(여)하다.

### ◇ 黨(당) 成立(성립) 時日(시일)

勞動農民黨(노동농민당) - 大正(대정) 十五年(15년) 三月(3월) 五日(5일)

日本農民黨(일본농민당) - 大正(대정) 十五年(15년) 十月(10월) 十七日(17일)

社會民衆黨(사회민중당) - 大正(대정) 十五年(15년) 十二月(12월) 五日(5일)

日本勞農黨(일본노동당) - 大正(대정) 十五年(15년) 十二月(12월) 九日(9일)

### ◇ 綱領(강령) ◇

一(1), 勞動農民黨(노동농민당)

一(1) 我等(아등)은 日本(일본)의 國情(국정)에 即(즉)하여 無產階級(무산계급)의 政治的(정치적) 經濟的(경제적) 社會的(사회적) 解放(해방)의 實現(실현)을 期(기)함

二(2) 我等(아등)은 合法的(합법적) 手段(수단)으로 不公正(불공정)한 土地(토지) 生産(생산) 分配(분배)에 關(관)한 制度(제도)의 改革(개혁)을 期(기)함

三(3) 我等(아등)은 特權階級(특권계급)의 利害(이해)만 代表(대표)하는 既成政黨(기성정당)을 打破(타파)하고 議會(의회)의 徹底的(철저적) 改造(개조)를 期(기)함

二(2), 日本農民黨(일본농민당)

我等(아등)은 人類(인류)의 平和(평화) 幸福(행복)을 目標(목표)로 하고 天地(천지)의 公道(공도)에 則(척)하여 大勢(대세)에 順應(순응)하고 合理的(합리적) 新社會(신사회)의 建設(건설)을 期(기)함으로써 次諸項(차제항)을 遂行(수행)함

一(1) 社會(사회)의 正義實現(정의실현)

我等(아등)은 特權階級(특권계급)에 의한 政治的(정치적) 支配(지배)를 排除(배제)하고 全勤勞階級(전근로계급) 共同(공동)의 理想(이상)인 社會的(사회적) 正義(정의)의 實現(실현)을 期(기)함

二(2) 日本(일본) 國本(국본) 振起(진기)

我等(아등)은 知識(지식)을 世界(세계)에 求(구)하고 純眞(순진)한 日本(일본) 國本(국본)을 振起(진기)하여 日本民族(일본민족)의 繁榮(번영)과 日本文化(일본문화)의 發達(발달)을 計(계)하여서 世界文化(세계문화)의 向上(향상)에 貢獻(공헌)하기를 期(기)함

三(3) 議會政治(의회정치)의 改革(개혁)

我等(아등)은 議會(의회) 政策(정책)에 即(즉)하여 一切(일절)의 不合理(불합리) 不自然(부자연)한 制度組織(제도조직) 及(급) 習慣(습관)을 排除(배제)하고 合理的(합리적) 新日本(신일본)의 建設(건설)을 期(기)함

四(4) 產業(산업) 國策(국책)의 確立(확립)

我等(아등)은 特異(특이)한 日本(일본) 國情(국정)의 現實(현실)에 立脚(입각)하여 產業(산업)의 振興(진흥) 分配(분배)의 公平(공평)을 計(계)하여서 國民(국민) 生活(생활)의 安定(안정)과 向上(향상)에 努力(노력)함

五(5) 農村(농촌)文化(문화)의 樹立(수립)

我等(아등)은 都會(도회) 中心(중심)의 不健全(불건강)한 文化(문화)를 否定(부정)하고 健實(건실)한 地方的(지방적) 新文化(신문화)의 完成(완성)을 期(기)함

三(3), 社會民衆黨(사회민중당)

- 一(1) 吾等(오등)은 勤勞階級(근로계급) 本位(본위)의 政治(정치) 經濟(경제) 制度(제도)를 建設(건설)하는 것이 健全(건전)한 國民生活(국민생활)을 樹立(수립)하는 所以(소이)로 確信(확신)하고 이 實現(실현)을 期(기)함
- 二(2) 吾等(오등)은 資本主義(자본주의) 生産(생산)과 分配方法(분배방법)은 健全(건전)한 國民生活(국민생활)을 沮害(저해)하는 바가 있다고 認識(인식)하고 法的手段(법적수단)에 依(의)하여 이 改革(개혁)을 期(기)함
- 三(3) 吾等(오등)은 特權階級(특권계급)을 代表(대표)하는 既成政黨(기성정당)과 社會進化(사회진화)의 過程(과정)을 無視(무시)하는 急進主義(급진주의)를 排(배)함

#### 四(4), 日本勞農黨(일본노동당)

- 一(1) 我等(아등)은 日本(일본)의 國情(국정)에 即(즉)하여 無產階級(무산계급)의 政治的(정치적), 經濟的(경제적), 社會的(사회적) 解放(해방)의 實現(실현)을 期(기)함
- 二(2) 我等(아등)은 合法的(합법적) 手段(수단)에 依(의)하여 不合理(불합리)한 土地(토지) 生産(생산) 分配(분배)에 關(관)한 制度(제도)의 改革(개혁)을 期(기)함
- 三(3) 我等(아등)은 無產階級(무산계급)의 利害(이해)를 代表(대표)하고 特權階級(특권계급)이 壟斷(농단)하는 議會(의회)의 徹底的(철저적) 改造(개조)를 期(기)함

### 無產政黨(무산정당)背景(배경)

- 一(1), 日本農民黨(일본농민당)의 支持團體(지지단체)와 人數(인수)  
全日本(전일본) 農民組合同盟(농민조합동맹) 九六, 五〇〇(96,500)

二(2), 社會民衆黨(사회민중당)의 支持團體(지지단체)와 人數(인수)

日本勞働總同盟(일본노동총동맹) 三〇,一七六(30,176)

官業勞働總同盟(관업노동총동맹) 一二,六一〇(12,610)

日本工人俱樂部(일본공인구락부) 四,〇〇〇(4,000)

日本海員組合(일본해원조합)(一部(일부) 五五,三〇〇(55,300)

日本海員協會(일본해원협회) (一部(일부) 九,〇〇〇(9,000)

日本農民組合總同盟(일본농민조합총동맹) 一〇,二〇〇(10,200)

海軍(해군) 聯盟(연맹) (友誼團體(우의단체) 四三, 四九二(43,492)

(支部(지부) 二一(21) - 三月(3월) 現在(현재)

三(3), 日本勞農黨(일본노동당)의 支持團體(지지단체)와 人數(인수)

日本勞農總聯合(일본노동총연합) 一〇,〇〇〇(10,000)

交通勞働組合(교통노동조합) 九,〇〇〇(9,000)

日本勞働總同盟(일본노동총동맹)(一部(일부)

(支部(지부) 二六(26) - 四月(4월) 現在(현재)

四(4), 勞働農民黨(노동농민당)의 支持團體(지지단체)와 人數(인수)

日本農民組合(일본농민조합) 四〇, 五六六(40,566)

日本勞働組合評議會(일본노동조합평의회) 二一, 五三七(21,537)

水平社勞農黨支持聯盟(수평사노동당지지연맹) ?

統一運動同盟(통일운동동맹) ?

鑛夫組合九州聯合會(광부조합9주연합회) 六,〇〇〇(6,000)

日本交通勞働總同盟(일본교통노동총동맹)(一部(일부) 一八,六四二

(18,642)

支部(지부) 一三一(131) - 四月(4월) 現在(현재)



## ◇ 結論(결론) ◇

### 十三(13)

日本(일본)은 以上(이상)에 말한 바와 가티 近代的(근대적) 資本(자본)이 中世的(중세기적) 官僚政治(관료정치)의 翼下(익하)에서 長成(장성한 것인 故(고)로 日本(일본)의 資本主義(자본주의)는 純粹(순수)한 自由貿易主義(자유무역주의) 時代(시대)를 當(당)해야 보지 못하였다. 日本(일본)의 資本主義(자본주의) 發達史(발달사)는 資本主義(자본주의)가 順調(순조)로 發達(발달)하게 되는 平和的(평화적) 自由貿易(자유무역) 時代(시대)가 別(별)로 업섯는 故(고)로 日本(일본)의 政治的(정치적) 發達(발달)이라고 하는 것도 極(극)히 變態的(변태적)이엇섰다. 官僚政治(관료정치)의 翼下(익하)에서 長成(장성한 第三(제3) 階級(계급)은 正確(정확)한 意味(의미)에서 보면 官僚政治(관료정치)와 正面(정면)으로 戰鬪(전투)하여서 政權(정권)을 確立(확립)한 것이 아니라 官僚政治(관료정치)와 抱擁(포옹)해야 가지고 官僚政治(관료정치)에 同化(동화)하면서 또는 官僚政治(관료정치)를 同化(동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가장 第三階級(제3계급)을 代表(대표)하였다는 原內閣(원내각)이 그와 가티 成功(성공)한 것은 亦然(역연) 그러한 것에 不過(불과)하였스니 다른 것은 더 다시 말할 것이 업다. 그러나 今(금일)에 잇서서는 第三階級(제3계급)의 政治的(정치적) 勢力(세력)이 不知(부지) 不識間(불식간)에 確立(확립)된 感(감)이 있다. 卽(즉) 昨今(작금) 形便(형편)을 보면 如何間(여하간) 日本(일본)의 政治的(정치적) 權力(권력)의 中心(중심)이 이미 官僚(관료)에서 第三階級(제3계급)에 移動(이동)되었다고 보아서 틀림이 업다. 그러나 이것도 第三階級(제3계급)은 官僚(관료)에게서 戰取(전취)한 것이 아니라 同化作用(동화작용)으로 떨어트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正當(정당)할 것이다. 大資本(대자본)과 財閥(재벌)과 地主(지주)를 代表(대표)한 政友會(정우회)가 第三階級黨(제3계급당)으로 成功(성공)한 것은 反動的(반동적) 資本帝國主義(자본제국주의)로 그 立場(입장)을 確固(확고)히 함에 잇섯다고 할 것

이다. 民政黨(민정당)도 特別(특별)히 다른 階級(계급)을 代表(대표)한 것이 아니다. 政友會(정우회)에 對(대)하여 對抗(대항)하는 必要(필요)로 漸次(점차) 그 主張(주장)이 政友會(정우회)가 地主黨(지주당)인 色彩(색채)가 濃厚(농후)함에 對(대)하여 얼마만큼 都會(도회) 商工階級(상공계급)을 代表(대표)하는 傾向(경향)이 있스나 그러나 判然(판연)하게 政友會(정우회)는 大資本(대자본)이나 大地主(대지주)를 代表(대표)하고 民政黨(민정당)은 小商工(소상공) 階級(계급)을 代表(대표)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要(요)컨대 五十步(50보) 百步(100보)로 大同小異(대동소이)할 뿐이다.

日本(일본)의 第三階級(제3계급)은 官僚(관료)와 同化(동화)함으로써 官僚(관료)를 同化(동화)한다. 貴族院(귀족원)의 正當化(정당화)하는 것도 第三階級(제3계급)의 政治的(정치적) 勢力(세력)이 官僚分子(관료분자)를 吸收(흡수)하고 同化(동화)함에 不過(불과)한 것이다. 그리하여 第三階級(제3계급) 政黨(정당)의 同化作用(동화작용)이 미치지 못하고 남아 있는 官僚分子(관료분자) 또는 第三階級(제3계급) 위 胃腸(위장)으로는 消化(소화)할 수 없는 것만이 漸次(점차) 數(수)로는 줄어가면서도 남아있게 될 뿐이다. 그리하여 亡(망)해야가는 官僚的(관료적) 不同化物(부동화물) 不消化物(불소화물)이 어느 方途(방도)에 있어서서는 一般(일반)을 지나서 中產(중산) 以下(이하) 層(층)의 階級(계급)과 結連(결연)하여야서 그 勢力(세력)을 伸長(신장)하려고 하는 者(자)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既成政黨(기성정당)이라는 것은 三百萬(3백만) 內外(내외)의 有權者(유권자)를 支配(지배)하면 能(능)하였던 것이니 三百萬(3백만) 內外(내외)라고 하는 것도 十萬(10만) 內外(내외)의 國會議員(국회의원)及(급)이나 縣會議員(현회의원)及(급)의 所謂(소위) 地方有志(지방유지)로 하여금 操縱(조종)시키어 온 것이다. 그럼으로 十萬(10만) 內外(내외)가 地方有志(지방유지)만 잘 잡으면 그만이었었다. 政黨(정당)의 地盤(지반)이라고 하는 것도 亦然(역연)이러한 데에서 생긴 것이다. 그럼으로 既成政黨(기성정당)의 勢力(세력) 分

布(분포)는 地方的(지방적)으로 固定(고정)되는 傾向(경향)이 잇섯스니 다시 말하면 在來(제래)의 既成政黨(기성정당)이라는 것은 大略(대략) 同一(동일)한 階級(계급)으로 成立(성립)된 것이라고 하여서 크게 틀림이 업다. 그러나 今後(금후)에 잇서서는 卽(즉) 普選(보선)이 實施(실시)된 後(후)에 잇서서는 地方的(지방적)으로 分布(분포)되어 잇던 政黨(정당)의 地盤(지반)이 階級的(계급적)으로 變遷(변천)하게 될 것은 必然(필연)한 일이니 既成政黨(기성정당)에 一大(일대) 變動(변동)이 그 地盤(지반)에서부터 일어날 것도 分明(분명)한 일이오. 이로 因(인)하여 日本(일본)의 既成政黨(기성정당)은 一時(일시) 紛亂時代(분란시대)를 演出(연출)할 것도 能(능)히 推測(추측)할 수 잇는 일이다. 不遠(불원)한 將來(장래)에 各各(각각) 猛烈(맹렬)한 分解作用(분해작용)을 일으키는 同時(동시)에 一方(일방) 새로운 結合作用(결합작용)도 實行(실행)될 것이다.

#### 十四(14)

그런데 問題(문제)는 일로부터 日本(일본)의 無產政黨(무산정당)이 어느 程度(정도)까지 이 既成政黨(기성정당)과 鬪爭(투쟁)할 力量(역량)을 가졌느냐 하는 點(점)에서 日本(일본) 將來(장래)에 到來(도래)할 政治的(정치적) 變化(변화)를 豫想(예상)시킬 것이다. 다시 無產政黨(무산정당)의 現實(현실)을 보면 나의 觀察(관찰)로는 不遠(불원)한 將來(장래)에 日本(일본)이 政治(정치)를 急激(급격)히 變化(변화)시킬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卽(즉) 日本(일본)의 無產政黨(무산정당)이 가지고 잇는 그 力量(역량)의 構成要素(구성요소)로 보아서 그 대지 急速(급속)한 變革(변혁)을 齎來(제래)할 만한 材料(재료)를 具備(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맞게 보이지 아니한다. 勿論(물론) 그 急速(급속)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程度(정도) 問題(문제)이니 英國(영국)에서 勞働黨(노동당)이 政權(정권)을 잡기까지에는 廿三個(23개) 星霜(성상)을 要(요)하였스니 日本(일본)에서도 그러한 長歲月(장세월)을 要(요)하리라고 하는 것은 決(결)코 아니

다. 過去(과거) 三十年間(30년간)의 世界(세계)와 以後(이후)에 推進(추진)되는 世界(세계)는 어느 意味(의미)로 보면 全然(전연) 다른 旣(전) 世界(세계)라고 볼 수도 있스리만큼 다를 터이니 過去(과거)의 推進力(추진력)으로 밀우어서 더욱이 早成(조성)하는 日本(일본)의 國情(국정)을 英國(영국)의 그것에 比(비)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昨今(작금) 或者(혹자)가 말하는 바와 가티 日本(일본)의 政治(정치)가 旣(전) 將來(장래)에 急激(급격)한 變化(변화)가 오리라고는 믿지 아니한다. 내가 이와 가티 推測(추측)하는 材料(재료)로는 英(영), 獨(독), 佛(불)에 比(비)하여 日本(일본)의 無產政黨(무산정당)의 土臺(토대)가 어느 程度(정도)에 있는가를 생각함에 있다. 即(즉) 이 四個國(4개국)의 勞働組合員數(노동조합원수)와 勞働黨(노동당) 及(및) 社會黨(사회당) 또는 共產黨(공산당)의 數字(숫자)를 比較(비교)하여보자. 英國(영국)은 人口(인구)가 四〇,五六〇,五八八(40,560,588)인데 組合員(조합원) 總數(총수)가 一,〇四四,〇六八(1,044,068)이니 組合員(조합원)의 全人口(전인구)에 對(대)한 百分比(백분비)를 보면 十六(16)이오 獨逸(독일)은 人口(인구) 五九,八五二六八二(59,852,682)인데 組合員(조합원) 總數(총수)가 六九〇〇,〇〇〇(6,900,000)이니 그 百分比(백분비)가 적어도 十一.五(11.5)가 되고

佛國(불국)은 人口(인구) 三九,二〇九,七六六(39,209,766)인데 組合員(조합원) 總數(총수)가 一,〇六八,〇四六(1,068,046)이라하니 그 百分比(백분비)가 二.七(2.7)이다. 그런데 日本(일본)은 엇더한가

日本(일본)은 人口(인구) 五七,六五五,〇〇〇(57,655,000)인데 組合員(조합원)이 二三〇,〇〇〇(230,000)이니 그 百分比(백분비)가 〇.四(0.4)에 不過(불과)한 것이다.

以上(이상) 四個國(4개국)의 下院(하원)에 있는 無產政黨(무산정당)의 代議士(대의사) 數(수)를 좀 比較(비교)하여 보자. 英國(영국)은 下院議員(하원의원) 總數(총수)가 六一五(615)인데 勞働黨(노동당) 及(및) 社會黨(사회당) 議員數(의원수)

가 一五二(152)요 그 百分比(백분비)가 二四.六(24.6)이며 共產黨員(공산당원)이 一人(일인)이다. 獨逸(독일)은 下院議席(하원의석) 總數(총수)가 四九三(493)인데 勞働黨(노동당) 及(급) 社會黨(사회당) 議員數(의원수)가 一三一(131)이니 그 百分比(백분비)가 二六.六(26.6)이며 共產黨員(공산당원)이 四十五人(45인)이다.

佛國(불국)은 下院議席(하원의석) 總數(총수)가 六〇〇(600)인데 勞働黨(노동당) 及(급) 社會黨(사회당) 議員數(의원수가) 一〇五(105)이니 그 百分比(백분비)가 一七.四(17.4)요 共產黨員(공산당원)이 二十七人(27인)이다. 그런데 日本(일본)은 엇더한가. 總選舉(총선거)에 無產政黨(무산정당) 四派(4파)가 總合(총합)해야 即(즉) 左右翼(좌우익)을 合(합)해야 三十名(30명)이 選舉(선거)되면 成功(성공)이라고 한다. 그 四個國(4개국)을 比較(비교)하여서 꼭 그 比例(비례)대로 答(답)이 난다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 於間(어간)에 엇더한 漠然(막연)하나마 暗示(암시)를 提供(제공)하는 줄 맞는다. 그럼으로 나는 다른데에 比(비)하여 速成(속성)될 것은 맞지마는 그러하다 하여 그것이 淸分 時間(시간) 內(내)에 잇지는 아니하리라고 맞는다. 制限(제한)의 紙面(지면)이 넘우 超過(초과)되었는 故(고)로 이 粗雜(조잡)한 議論(의론)으로써 淸을 짓고자 한다. (完)

全朝鮮<sub>전조선</sub> 主要都市<sub>주요도시</sub> 十六處<sub>16처</sub>  
人士<sub>인사</sub>의 地方問題關<sub>지방문제관</sub>

- 『동아일보』(1930.04.04) -

住民<sub>(주민)</sub> 全體<sub>(전체)</sub> 問題<sub>(문제)</sub>

第一問<sub>(제1문)</sub> 貴<sub>(귀)</sub> 地方<sub>(지방)</sub> 住民<sub>(주민)</sub> 全體<sub>(전체)</sub>의 當面<sub>(당면)</sub>한 問題<sub>(문제)</sub>는 무엇입니까

일반의 당면문제를 떠나서 조선의 산업이라고 하면 그중 중요한 농업입니다. 농업이라고 하면 소작제도를 런상하지 안할 수 없습니다. 소작제도의 개선과 조선인 중등교육의 근본적 개혁입니다. 금년 광주 공립보통학교에서는 금년도 이십오명의 졸업생을 내었는데 처음 입학은 백여 명에 달하여 중도에 팔십명이 학교 규측 쏘는 법률상 범죄로 희생되었습니다. 이네들의 전도는 어찌될 것인가 이 실로 광주의 당면문제입니다.

發展相<sub>(발전상)</sub> 必要事<sub>(필요사)</sub>

第二問<sub>(제2문)</sub> 귀 지방 발전상에 잇서야할 事業<sub>(사업)</sub>은 무엇입니까

금후 광주는 교통상 중요지점이 될 터이니 방직공장의 설치요 또한 초등교육 기관의 확충은 물론 사회사업에 착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이 비록 셋이나 있다고 하여도 모다 설비가 부족하며 여자야학을 좀 더 낮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발전에 특별할 것은 농촌 계발입니다. 현재 야소교측에서 착수하였으나 좀 더 대규모적으로 활동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리 자금유통 기관이 있어서 할 것이 중요사입니다.

# 太平洋會議<sup>태평양회의</sup>는 어떻게 利用<sup>이용</sup>할까 在滿同胞<sup>재만동포</sup>는 어떻게 해야 살까

- 『동광』 제16호(1931.10.04) -

## 一. 列國<sup>(열국)</sup> 情勢<sup>(정세)</sup>의 理解<sup>(이해)</sup>

언제든지 허락하는 限<sup>(한)</sup>에서 우리 現下<sup>(현하)</sup> 사실을 여실히 제국인 사에게 이해시키는 동시에 열국의 정세를 이해하기 위하여 어학에 능하고 식견있는 인사가 많이 그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可<sup>(가)</sup>할 줄 믿소. 더욱 금번 회의에는 독립민족의 정치경제의 의제가 순서에 들어있으니 다수 인사의 출석을 切望<sup>(절망)</sup>.

## 二. 統一的<sup>(통일적)</sup> 組織<sup>(조직)</sup>과 入籍<sup>(입적)</sup>

1. 우리가 먼저 그곳에서 통일적 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통제하에 훈련을 다끝 일.

2. 中國<sup>(중국)</sup>에 入籍<sup>(입적)</sup>할 일.(日本<sup>(일본)</sup> 國籍<sup>(국적)</sup>을 떠날 수 있게 법률이 되고)

3. 경제적 생활토대를 쌓을 일.(시간을 장구하게 잡고)

-光州 崔元淳-



窮民救濟 궁민구제 對策 대책 紙上 지상 座談會 좌담회

- 『동아일보』(1932.07.03) -

농촌이 살 수 없다는 문제는 이제는 극도에 달하여 급히 구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노파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지마는 조선과 가티 심하게 농촌이 죽을 지경에 빠진 곳도 세계에 엽습니다. 『농촌을 구하면 조선은 잇고 농촌을 못 구하면 조선은 엽다』하는 것은 농민이 전 인구의 십분지 팔이라는 조선에서는 조금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를 당하여 본사에서서는 전조선 각 지방 중요한 인사를 총출동하여 농촌구제 대책을 들어 만천하 독자와 경세가와 아 폐 내어노기로 하엿습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의견들이 농촌문제 해결에 반듯이 큰 광명을 던질 것을 믿습니다.

이 대책을 발표하는 시기를 타서 본사는 본사의 물음에 대담하여 주신 여러 인사에게 기피 감사하는 뜻을 표합니다.(기자)

조선의 궁민은 일본의 궁민과도 그 실제에 잇서서는 정도가 판이

합니다. 동일한 국민이라고는 하지마는 그 생활의 내용과 그 사회적 환경이 다른고로 조선의 국민은 더욱히 시급 구제를 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임하여 조선을 다사리는 당국자에게 웬만한 성의가 있다 하면 다대한 생명이 구제될 것입니다. 이하 몇 가지만 실시한다면 위선 목전의 구제는 될 터이니 五(5)년이상 十(10)년 이내의 한도로 응급책을 실시한 후 다시 그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一(일), 소작인 전부에 대하여 법령으로 五(5)년 내지 十(10)년(적당한 년한을 작정하여)간 전부세금을 면제할 사

(단 소작점 자작농에 대하여는 그 자작토지에 한하여 지세만 부담케 할 사)

二(이), 그 세금 면제 년한 중에 소작인과 소작 겸 소작농에 한하여 구채 지불정지를 시행할 사

三(삼), 각 도시 부근에 교통 이 외의 식산적 토목공사를 일으킬 사 (五(5)년 내지 十(10)년 간의 계속사업으로 하고 현재 도로에 신규로 금전을 드리는 것은 조선의 현실로는 량비에 갓가우니 될 수 있는 대로 그 이외의 식산방면을 택할 것, 동시에 청부업자의 중간 리득을 피할 것)

四(사), 이상 一(1)과 三(3)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은 (1)조선총독부로부터 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전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인건비와 사무비에 한하여 二(2)할 내지 三(3)할을 축소할 사 (2)일본인 관리 전부에 대하여 그 가봉을 전폐할 사

五(오), 四(4)의 재정상 적자(赤字)와 二(2)의 실시로 인하여 생한 금융기관의 활동상 지장에 대하여는 일본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농촌구제의 재원 염출책(財源(재원) 捻出策(염출책))에 준하여 이를 적당하게 처리

조달할 사

우에 맺 가지는 성심과 용력을 내면 그러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종래의 조선 당국자로는 어려운 일인줄 맞습니다.

조선이 위기에 잇는 것을 간파할 안명이 잇슬 것 가트면 진력하여 그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光州(광주) 崔元淳(최원순)

# 信賴<sub>신뢰</sub>하는 先輩<sub>선배</sub>께 尊敬<sub>존경</sub>과 企待<sub>기대</sub>

- 『조선일보』(1933.04.27) -

現代(현대)에 잇서 歷史(역사)와 文化(문화)를 가진 民族(민족)으로는 民衆本位(민중본위)의 政治(정치)를 가지지 아니한 民族(민족)이 업다. 그 어느 民族(민족)이나 民衆(민중)을 爲(위)하는 政治(정치)를 가지고 잇는 것이다. 民衆(민중)을 爲(위)하는 정치(정치)는 輿論(여론)의 政治(정치)가 多少(다소) 變態(변태)의(변태적)으로 形式(형식)에 잇서서 專制的(전제적)인 바가 잇지만 內容(내용)에 잇서는 民衆(민중)을 爲(위)하는 政治(정치)인 故(고)로 輿論政治(여론정치)의 本質(본질)에 違反(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러함으로 民衆(민중)의 生活的(생활적) 欲求(욕구)와 意識的(의식적) 遂行(수행)이 政治(정치)에 表現(표현)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民心(민심)이 그를 依賴(의뢰)하고 그를 支持(지지)함으로 政權(정권)으로서 確立(확립)하며 政治(정치)로서 權威(권위)가 잇다. 그러나 朝鮮(조선)은 歷史(역사)가 잇고 文化(문화)가 잇는 民族(민족)이지마는 現世界(현재세계)의 政治的(정치적) 現實(현실)에서 特殊部落(특수부락)을 形成(형성)하고 잇다. 朝鮮(조선)의 政治(정치)에는 朝鮮人(조선인)의 政談(정담)이 禁止(금지)

되어 있스니 輿論(여론)의 政治(정치)는 꿈에도 말할가 두려워하는 生活(생활)이다. 이러한 朝鮮(조선)에서 朝鮮人(조선인)의 소리를 바다내는 民間新聞(민간신문)이 三個(3개)에 不過(불과)하니 卽(즉) 朝鮮(조선), 中央(중앙), 東亞(동아)가 아니냐. 實(실)로 悲壯(비장)한 武勇(무용)이요 崇嚴(숭엄)한 態度(태도)다. 이 중에서도 가장 多端復雜(다단복잡)한 過去(과거)를 가진 것이 朝鮮日報(조선일보)인데 今般(금반)에 全部(전부) 過去(과거)를 清算(청산)하고 新陳容(신진용)을 整齊(정제)해야 우리가 信賴(신뢰)하는 先輩諸賢(선배제현)이 出馬(출마)해야 指導(지도)하게 되었스니 이 續刊(속간)은 特(특)히 尊敬(존경)과 企待(기대)를 붓친다.

警句<sub>경구</sub>

어머니

- 『신가정』 1권 5호(1933.05) -

어머니가 자녀를 간섭할 때에는 먼저 자기의 마음과 태도를 바르게 가진 후에 실생할 것이다. 상과 벌을 줄 때에는 더욱 엄격한 自信(자신)을 가지고 실행하라.

그 결과는 「어린이는 가정의 거울」이 된다.

# 古樂<sub>고악</sub>의 普遍<sub>보편</sub>을 願<sub>원</sub>한다

- 『신가정』 제2권 12호(1934.12) -

조선 고악을 우리 가정에 드려오는 가부에 대하여 먼저 어찌하여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 사람에게도 음악이 그 당연한 생활상 반수로 있을 것이오, 있으면 그 자체의 전통과 역사에서 일어난 조선악이 우리 가정에서도 향락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조선의 고유 음악은 거이 독립적으로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우리의 국가 생활이 너무나 불합리하였던 결과 즉 치자 계급의 생활과 피치자 계급의 생활이 너무나 충절이 심하여 그 거리가 너무나 원격하였으므로 조선에서 발달한 음악이지마는 그것을 가지고 향락하는 치자 계급에만 있었고 피치자 계급에는 보급되지 못하였던 까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관건으로는 여하하였던 지금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음악을 드려온다 하면 우리의 역사와 전통과 그 생활에서 울어 나오고 발달하여온 우리의 고악을 가져오는 것이 어느 방면으로 보든지

서양악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나은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음악을 가져올 터이면 우리의 고악을 가져오라고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음악은 개성의 발로 그 개인의 선택에 맡길 것이오 조선악 외국악의 구별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할는지 모르나 새로 배우는 사람은 조선악이고 서양악이고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오 그와 같이 아주 개성에 있어서 특별한 편외의 장기로서 양악의 어느 것을 가져야 하겠다는 사람에게 조선악을 가지는 것보다는 서양악 가지는 것을 좋을 터이나 그러나 보통으로 지금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음악을 드려오라고 하면 조선 고악을 권하고 독특한 사람은 그 자유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 가할 것이다.

우리 가정에 고악을 가져옴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사계 인물들이 우리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새로 여러 가지를 마취야 될 것이니 이것은 개선문제인 고로 이 가부의 의론에는 필요가 없다.



---

부록



## 최원순 작품 연보

제 목	발표잡지	발 표 일	기타
生存의 意義와 要求에 對하야	『현대』 2호	1920.3.2	
改造의 根據	『현대』 5호	1920.5.10	
向上的 意慾과 生活의 變遷	『현대』 8호	1920.10.30	
兩性的 地位와 貞操의 道德的 價値	『여자계』 제6호	1921.1.11	
天賦人權論	『학지광』 제21호	1921.1.21	
人格本位의 生活	『학지광』 제21호	1921.1.21	
人生의 意義에 對한 考察	『학생계』 제13호	1922.5.1	
李春園에게 問하노라	『동아일보』	1922.6.3-6.4	
今番 中國動亂에 對하야	『개벽』 제52호	1924.10.1	
衡平社員對農民問題 - 彼此가 無用의 感情	『신민』 제5호	1925.9.10	
中國의 關稅會議와 動亂	『개벽』	1925.11.1	
乙丑年中 世界大勢	『동아일보』	1926.1.1-1.2	
橫說豎說	『동아일보』	1926.8.22.	
情死問題批評 - 情死란 一種의 自殺	『신민』 제17호	1926.9.1	
年頭感	『별건곤』 3호	1927.1.1	
極東政局의 將來	『동아일보』	1927.1.1-1.12	
卒業生就職問題 - 總督政治로도 하면 될 일	『신민』 제23호	1927.3.1	
中國은 共產化할  것이냐? - 社會主義的 國家로	『신민』 제24호	1927.4.1	
東光에  대하여 - 民衆의 親友요 指導者가 되시오	『동광』 제13호	1927.5.1	
第一 미운 일 第一 보기 싫은 일 - 迴避述에 能한 人間들	『별건곤』 제9호	1927.10.1	
戀愛讀本·結婚教科書 - 結婚 前에 注意할 일	『별건곤』 제10호	1927.12.20	
日本 政局의 趨勢	『동아일보』	1928.1.1-1.9	

全朝鮮 主要都市 十六處 人士의 地方問題關	『동아일보』	1930.4.4	
太平洋會議는 어떠케 利用할까 在滿同胞는 어떠케 해야 살까	『동광』 제16호	1931.10.4	
궁민구제대책 지상좌담회	『동아일보』	1932.7.3.	
신뢰(信賴)하는 선배(先輩)께 존경(尊敬)과 기대(企待)	『조선일보』	1933.4.27	
警句(경구)-어머니	『신가정』 제1권5호	1933.5	
朝鮮家庭과 朝鮮古樂 - 古樂의 普遍을 願한다	『신가정』 제2권 12호	1934.12	

## 최원순 연보

- 1896년 12월 17일

광주광역시 수기옥정 299번지에서 최의준(崔宜俊)과 박보성(朴寶城)의 3남으로 태어남.

- 1911년 4월

광주공립보통학교(현 서석초등학교) 2학년으로 입학.

- 1913년 3월

광주공립보통학교(현 서석초등학교) 4회 졸업.

- 1915년

서울 경성고등보통학교 입학하여 재학(중퇴/퇴학).

• 1918년 4월

일본 동경 와세다대학교 정경과 입학.

• 1918년 12월 17일

정광호와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하던 중 하숙집을 방문한 김현준, 김안식에게 세계정세의 변화는 독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의기투합하여 거사하기로 함. 김현준, 김안식은 국내로 잠입하여 자금 모집하기로 결의하고, 정광호와 함께 국내 밀파 비용을 부담한 후 일본의 유학생을 규합하기로 결정함.

• 1918년 12월 18일

김현준, 김안식은 비밀리에 귀국길에 오름. 최원순은 정광호는 유학생 학우회 회장 백관수를 찾아가 뜻을 전함.

• 1918년 12월 29일

동경 메이지회관에서 유학생 학우회 송년회를 개최함.

• 1918년 12월 30일

백관수, 최원순, 최팔용, 윤창석이 주선한 동서연합옹변대회가 조선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림. 최원순은 미국에서 교포들이 30만 원 거액의 독립자금 모집 소식을 알리고 유학생들의 자세와 나아갈 길을 역설하였음. 최팔용이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운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킬 것 제안, 대책위원을 선출함.

최팔용, 백관수, 윤창석, 김도연, 서춘, 최근우, 이종근, 김철수, 이광수, 송계백의 이름으로 '조선청년독립단' 대표로 서명. 최원순은 조

선기독교청년회 사무국장으로 막전막후 책임자로 ‘조선청년독립단’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1919년 1월

상해에 있던 이광수가 일본에서 「선언서」 초안을 작성, 백관수 등 ‘조선청년독립단’이 3차에 걸쳐 수정함.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 유학생 현덕신이 김마리아를 통해서 독립자금 40원을 전달함.

• 1919년 2월

최원순과 장영규 등이 와세다대학교에서 비밀리에 「독립선언서」 1만장을 등사함.

• 1919년 2월 7일

백관수 하숙방에 ‘조선청년독립단’ 대표들이 모여 목숨을 걸고 거사에 임하기로 결연한 다짐을 함.

•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30명의 일경이 배치된 가운데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 600여 명의 유학생이 집결. 최팔용이 긴급동의를 얻어 ‘조선청년독립단’ 발족을 선언하고 백관수는 「선언서」를 낭독하고 김도연이 「결의문」을 발표하자 책상과 의자가 날아다니는 격투가 벌어졌음. ‘조선청년독립단’ 9명 등을 비롯하여 여자 유학생 황신덕, 현덕신 등 유학생 40여 명과 함께 체포됨. 최원순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당함.

• 1920년 3월 1일

3·1만세운동 1주년 기념식을 위해 이현경, 황신덕 등과 철야로 태극기를 만들어 동경의 히비야공원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 검속되어 경시청의 유치장에 수감되었음.

• 1920년 3월 20일

조선기독교청년회 회원으로 입회함.

잡지 『현대』에 「생존의 의의와 요구에 대하여」 발표함.

• 1920년 5월 10일

잡지 『현대』에 「개조의 근거」 발표함.

• 1920년 7월 10일

제1회 유학생 학우회 주최, 『동아일보』 후원, 하기 순회강연대회 강연단으로 김도연, 김종필, 윤창석, 김준연, 고지영, 이종근, 박승철, 변희용, 김연수, 박석유, 박종근, 서춘, 김송은, 임세의, 신동기, 한재겸, 이동제와 함께 부산, 김해, 마산, 진주, 대구, 경주, 공주, 청주, 예산, 경성, 개성, 사리원, 안악, 재령, 해주, 황주, 평양, 선천, 의주, 춘천, 원산, 함흥, 강경, 전주, 군산, 광주, 나주, 목포에서 강연할 예정으로 일본에서 출발해 부산 도착, 부산에서 「문화발전과 언론자유」를 강연함.

• 1920년 7월 11일

제1회 유학생 학우회 순회강연단으로 울산에서 「개조시대와 청년의 사명」으로 강연함.

• 1920년 7년 12일

제1회 유학생 학우회 순회강연단으로 경주에서 「문화상으로 견한 청년의 사회적 지위」를 강연함.

• 1920년 7월 14일

제1회 유학생 학우회 순회강연단으로 대구의 대구좌에서 강연함.

• 1920년 7월 15일

제1회 유학생 학우회 순회강연단으로 공주 금강좌에서 「시대와 도덕」을 강연함.

• 1920년 10월 30일

잡지 『현대』에 「향상의 의욕과 생활의 변천」을 발표함.

• 1920년 11월 30일

백관수, 서춘, 오현옥, 고영환과 함께 조선기독교청년회 사천부(司薦部) 임원으로 선임됨.

• 1921년 1월 11일

잡지 『여자계』에 「양성의 지위와 정조의 도덕적 가치」를 발표함.

• 1921년 1월 21일

잡지 『학지광』 편집인.

잡지 『학지광』에 「천부인권론」과 「인격본위의 생활」을 발표함.



• 1921년 7월 16일

제2회 유학생 학우회 순회강연단으로 경운동 천도교당에서 「책임관  
념의 도덕적 지위」를 강연함.

• 1921년 7월 19일

제2회 유학생 학우회 순회강연단으로 황산 야소교회 부속 만동학  
교 여자부에서 「개성의 발휘와 현대의 문화」를 강연함.

• 1921년 7월 20일

제2회 유학생 학우회 순회강연단으로 강경, 이리좌에서 「무의식적  
생활에서 유의식적 생활에」를 강연함.

• 1921년 8월 8일

제2회 유학생 학우회 순회강연단으로 전북 정읍에서 강연함.

• 1921년 8월 9일

제2회 유학생 학우회 순회강연단으로 광주 송정리역에 도착하자 광  
주경찰서의 출두명령을 받아 경찰서에 출두. 경찰서장의 엄중한 주  
의를 받은 후에 광주학부협회, 광주야소교회, 노동공제회 광주지  
회, 『동아일보』 광주지국의 후원으로 양림동 오원기념각에서 「비평  
적 판단과 인생의 진화」를 강연함.

• 1921년 8월 16일

제2회 유학생 학우회 순회강연단으로 광주 숭일학교 특설강연장에  
서 「생활의 개조와 현대인의 각오」를 강연함.

• 1921년 9월 3일

광주여자야학부 개교 1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함.

• 1922년 5월 1일

잡지 『학생계』에 「인생의 의의에 대한 고찰」을 발표함.

• 1922년 6월 3일 ~1922년 6월 4일

『동아일보』에 「이춘원에게 문하노라 - 민족개조론을 읽고」 2회에 걸쳐 연재함.

• 1922년 7월 6일~ 1922년 7월 26일

동경유학생학우회 순회강연대 3차 순회 연사로 김와복, 이창근, 최윤식, 한위건과 함께 호남지방인 목포, 나주, 광주, 정읍, 이리, 전주, 강경, 조치원, 공주, 청주를 거쳐 경원선 지역인 경성, 철원, 원산, 영흥, 홍원, 단천, 성진에서 7월 6일부터 26일까지 순회강연을 함.

• 1922년 7월 18일

재동경 고학생 갈담회 주최 순회강연단원으로 광주좌에서 ‘고학생의 참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강연함.

• 1922년 7월 22일

광주 흥학관에서 광주청년회 지육부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현대사상과 민족성」을 강연함.

• 1922년 7월 31일

제주 청년수양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현대청년의 문화적 사명」을 강연함.

• 1922년 8월 22일

광주읍 북문회 유지가 경영하던 '서북여자아학강습소' 학예회에서 축사를 함.

• 1922년 9월 5일

서울 종로청년회관에서 열린 인권옹호 대연설회에서 전남 고흥군에서 종교행사를 위해 모인 300명에게 경관이 총을 쏘 5대 독자인 박병채가 사망한 총살사건에 대하여 “국민이나 인민의 생활을 아무쪼록 아름답게 인도해야 가자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이외다. 일로 미루어 정치라는 것도 국가를 위하여 조직된 이상에는 역시 인민생활의 안녕 질서를 보호하여야 할 터인데 이번 고흥사건으로 보면 이상에 말씀한 정치의 근본 목적인 인민생활의 안녕을 파괴하였습니다. 인생의 생명이 자연의 변천으로 즉 자기의 운명에 사망하여도 사람마다 비참함을 금치 못하는 터인데 하물며 운명이 아닌 사람을 횡포로써 참살한 것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연설함.

• 1922년 9월 7일

서울 종로청년회관에서 황해도 수해구제회 연설회에서 민족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선 민중도 민족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할 터인데 참혹한 수해를 당한 동포에 대하여 다소를 불구

하고 정성을 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연설을 함.

• 1922년 11월 31일

동경 유학생 학우회 주최 응변회에서 「평시의 복전시의 화」를 응변함.

• 1923년 2월

와세다대학교 정경과 졸업하고 귀국하여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함.

• 1923년

민립대학기성회 창립회원으로 활동하였음.

• 1923년 3월 29일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홍성고보 문제로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민중대연설회를 개최하고 황석우, 최순탁, 김병로, 김찬과 연사로 참여한 가운데 「충남도 당국자의 행위는 무엇이냐」로 청중들이 흥분하도록 열띤 강연을 함.

• 1923년 4월 2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당에서 열린 동양 시국 대강연회에서 「현하의 일본」을 강연함.

• 1923년 4월 5일

청년연합회 제4회 총회에서 정노식, 조종구, 김철수, 최순탁, 남충희 장연식, 이명섭, 고원섭, 김탁, 김대욱, 이시완, 박건판, 정순중, 이춘재, 장명현, 박용하, 강기덕, 김형관, 신태약과 함께 집행위원으로 선

임됨.

• 1923년 5월 1일

서울 수송동 각황사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어린이날과 민족해방」을 강연함.

• 1923년 5월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 승진.

• 1923년 6월 1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중앙예배당에서 김창준 목사의 주례로 동대문 부인병원 의사 현덕신과 결혼함.

• 1923년 7월 10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회당에서 열린 ‘하와이 사정 강연회’에서 개회사를 함.

• 1923년 9월 10일

동경 대지진으로 참화에 고통 받는 동포를 돕기 위한 ‘동경지방 이재조선인 구제회’ 발기인으로 조선동포를 구제에 나섬.

• 1923년 10월 18일

조선청년회 연합회 제4회 집행위원회에서 교무부원으로 선임됨.

• 1923년 12월 9일

전남 영광청년회관에서 열린 영광군민대회에 『동아일보』 전남특파원 겸 광주지국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소감을 발표함.

• 1923년 12월 21일

광주 흥학관에서 광주 광산회를 조직한 후 창립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됨. (회장 최상현, 부회장 조명석, 최원택, 총무 최달석, 박계일, 조신석, 최홍중, 의사장 김태식, 최연석, 정용기, 장경두, 정사홍, 강태규, 최원순, 최상현, 최재익, 최기섭, 김현위, 회계 최석원, 백남도, 최준기, 최창남, 교육부장 최교일, 서무부장 정해업, 사교부장 최종섭, 산업부장 정덕범, 경리부장 지응현)

• 1924년 3월 2일

광주 흥학관에서 전남청년연합회 창립총회 임시의장으로, 사회자로 규칙과 사업을 의결함.

• 1924년 7월 10일

인천 제물포청년회가 주최한 교육 대강연회에서 「우리의 현상과 교육문제」를 강연함.

• 1924년 8월 17일

신문잡지에 종사하는 조선인 기자단인 ‘무명회(無名會)’를 부활키로 한 후 ‘언론권위의 신장과 회원의 환난상구’를 목적으로 김기전, 이석, 이종린, 신철, 박동완, 이재갑과 위원으로 선임됨.

• 1924년 9월 2일

휘문고보 맹휴사건으로 600여 명의 학생이 제명된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철수와 교섭위원으로 선정되어 종로경찰서장을 만나는 등 교섭에 나섬.

• 1924년 9월 4일

조선기근대책 강구회 발기인으로 참여함.

• 1924년 9월 16일

서울 종로 청년회관에서 열린 ‘산아제한 문제’ 토론회에 부(否)편으로 참여함.

• 1924년 9월 20일

서울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기근대책 연설회를 함.

• 1924년 9월 27일

무명회와 총무 간부인 강인택, 윤병덕, 서정희, 김약수, 송봉우, 이은식과 함께 재해로 인한 농촌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조선기근구제회’를 설립함. 조선기근대책 강구회 창립총회에서 집행위원 25인으로 선임됨.

• 1924년 9월 28일

조선기근대책 강구회 집행위원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었음. (집행위원장 이승훈, 서무부 강인택, 윤덕병, 서정희, 경리부 이상재, 구자옥, 김윤수, 김병로, 백관수, 박창한, 임세희, 이종린, 조사부 김종

범, 김약수, 김찬, 고태호, 선전부 송봉우, 장지필, 최원순, 이영, 이인, 신일용, 김철수, 강상희, 이재갑)

• 1924년 10월 1일

잡지 『개벽』에 「금번 중국동란에 대하여」를 발표함.

• 1924년 10월 2일

조선기근대책 강구회 선전부의 책임자로 선정됨.

• 1924년 10월 24일

전조선 현상 학생옹변대회 사회를 봄.

• 1924년 11월 1일

서울 철공조합 주최로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열린 노동문제 대강연회에서 「초기운동과 인격」을 강연함.

• 1925년 2월

전조선기자대회 개최를 제의함.

• 1925년 2월 5일

신문강연회에서 「신문의 사회적 의의」를 강연함.

• 1925년 2월 20일

아들 최상옥(相玉) 태어남.



- 1925년 2월 20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기념회관에서 물산장려 기념 강연을 함.
- 1925년 3월 11일  
경북 김천 독자 위안회에서 「신문과 사회생활」을 강연함.
- 1925년 3월 20일  
서울 경운동 천도기념회관에서 열린 전조선 여자 웅변대회 사회를 봄.
- 1925년 4월 15일-1925년 4월 17일  
최원순이 발의한 전조선기자대회가 천도교회관에서 2박 3일 동안 열림.
- 1925년 4월 16일  
전조선 기자대회에서 강연함.
- 1925년 8월 25일  
전북 이리에서 열린 신문강연회에서 「신문으로 본 세상과 교육운동」을 강연함.
- 1925년 9월 10일  
잡지 『신민』에 「형평사원 대 농민문제 - 피차가 무용의 감정」을 발표함.

• 1925년 9월 15일

조선 사정의 현상을 학술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한 '조선사정연구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함. (홍성하, 백관수, 박찬희, 백남운, 이순택, 김송은, 안재홍, 김준연, 박승철, 김기전, 국기열, 백남훈, 선우전, 한위건, 이재형, 유억겸, 홍명희, 김계학, 조정환, 최두선, 이춘선, 이귀중)

• 1925년 9월 26일

인군 기자 간담회에서 축사를 함.

중리에배당에서 열린 독자위안 강연회에서 「신문의 사회적 의의」를 강연함.

• 1925년 10월 13일

조선물산장려회 이사회에서 선전부이사로 선임됨.

• 1925년 11월 1일

잡지 『개벽』에 「중국의 관세회의와 동란」을 발표함.

• 1925년 11월 2일

서울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열린 세계정세 강연회에서 「중국동란과 열국의 이해」를 강연함.

• 1925년 11월 22일

동아일보사 주최 웅변대회 사회를 봄.

- 1925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동경유학생 축구대회 사회를 봄.
- 1925년 11월 28일  
‘태평양문제연구회’를 조직하고 위원으로 선임됨. (위원장 윤치호,  
위원: 안재홍, 신흥우, 이건용, 조병옥, 유억겸)
- 1925년 11월 28일  
탁우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함.
- 1926년 1월 1일~1926년 1월 2일  
『동아일보』 신춘논문 「을축 1년간의 세계대세」를 발표함.
- 1926년 1월 4일  
서강의법학교 대강당에서 「생활의 도리와 단결」을 강연함.
- 1926년 1월 24일  
『동아일보』 대구지국 주최 조선사정 강연회에서 「변천하는 세상에  
직면하여야」를 강연함.
- 1926년 1월 27일  
서울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학생문제 대강연회에서 「학생에  
대하여」를 강연함.

• 1926년 2월 23일

서울 종로 중앙청년회관에서 '자유결혼문제'를 강연함.

• 1926년 3월 3일

서울에서 민립대학기성운동의 대표로 이종린, 박승철, 구자옥, 한기악, 안재홍 등과 함께 민립대학축성운동을 전개하기로 함.

• 1926년 5월 6일

일본인 국수회가 창덕궁에 난입하여 궁가의 존엄을 무시하고 불경한 행동을 자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군대와 경찰에 책임을 묻기로 결의하고 김병로, 김명진, 이종하, 박찬희, 김준연, 김달진, 김정진, 김동환과 실행위원으로 선임됨.

• 1926년 6월 17일

『동아일보』가 영상으로 담은 순종황제 승하 장례행렬 실행을 공개하는 개회사를 함.

• 1926년 6월 25일

의학박사 스코필드의 환영회에서 환영사를 함.

• 1926년 7월 10일

조선농민사 이성환과 문사 조보희의 결혼식 피로연 축사를 함.

• 1926년 8월 16일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남녀 정사 비판 강연회에서

「정사에 대하여」를 강연함.

• 1926년 8월 22일

『동아일보』에 「횡설수설」을 발표, 총독정치를 비판하였다고 재판을 거쳐 투옥됨.

• 1926년 9월 1일

잡지 『신민』에 「정사문제 비평 - 정사란 일종의 자살」을 발표함.

• 1926년 11월 8일

3월에 48개국 농민조합이 참가한 노서아 국제농민조합으로부터 「조선농민에게 전하는 글월」을 『동아일보』에 게재한 책임자로, 『동아일보』 1926년 8월 22일자 「횡설수설」 필화사건으로, 보안법 위반으로 각각 4개월, 총 8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아 송진우와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입감됨.

• 1926년 11월 10일

동아일보사 편집국장 대리에 취임.

• 1926년 11월 26일

일본 동경 기독교 청년회관 건축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임됨.

• 1927년 1월 1일

잡지 『별건곤』에 「연두감」을 발표함.

• 1927년 1월 1일-1927년 1월 12일

『동아일보』에 「극동정국의 장래」를 연재함.

• 1927년 1월 20일

조선 민족의 정치적 의식이 발달하였고 민족적 중심 단결을 요구하는 순 민족주의를 표방한 신간회 발기인 28인으로 참여함. (김동명, 김준연, 김택, 권동진, 정재룡, 이갑성, 이석훈, 정태형, 이승복, 이정, 문일평, 박동완, 백관수, 신석우, 신채호, 안재홍, 장지연, 조만식, 최선익, 최원순, 박래홍, 하재엽, 한기악, 한용운, 한위건, 홍명희, 홍성의)

• 1927년 2월 7일

『동아일보』 1926년 8월 22일자 「황실수설」 필화사건으로 4개월, 「조선농민에게 전하는 글월」을 『동아일보』에 게재한 책임자로 보안법 위반 편집 겸 발행인 책임자로 4개월, 즉 8개월 형을 선고받고 송진우와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 사면 출옥함.

• 1927년 2월 10일

평양 광성고등보통학교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전평양 남녀 중등학교 졸업생 송별 강연회’에서 송별 강연을 함.

• 1927년 2월 15일

신간회 창립총회에 참석함.

• 1927년 2월 17일

서울 명월관에서 열린 전조선 운수업자대회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예를 보아 조선 문화의 3분의 1인만큼 큰 책임을 가졌고, 또 조선 산업계 경제문제도 그 동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무겁고 큰 직접·간접의 책임자인 운수업자들은 이런 위기에 먼저 약자로서의 유일한 무기는 단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강연을 함.

• 1927년 2월 21일

서울 중앙회관에서 열린 경제 대강연회에서 「우리의 경제생활」을 강연함.

• 1927년 3월 1일

잡지 『신민』에 「졸업생 취직문제 - 총독정치로도 하면 될 일」을 발표함.

• 1927년 3월 20일

서강청년회 혁신 1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교양과 환경」을 강연함.

• 1927년 3월 18일

조선불교소년회에서 주최하고 각황사에서 열린 '석가세존 열반 기념 강연회'에서 「속인이 본 종교관」을 강연함.

• 1927년 4월 1일

잡지 『신민』에 「중국은 공산화할 것이냐? - 사회주의적 국가로 변하겠다」를 발표함.

• 1927년 4월 30일

동아일보사 신축 낙성기념식 개최 선언을 함.

• 1927년 5월 1일

잡지 『동광』에 「동광에 대하여 - 민중의 친우요 지도자가 되시오」를 발표함.

• 1927년 5월 3일

『동아일보』 사옥 신축 낙성식을 기념하는 독자 위안잔치에서 공개 연예대회에서 사회를 봄.

• 1927년 5월 6일

평북 영변에서 열린 관서기자대회 특별 대강연회에서 「신문기자 자격에 대하여」를 강연함.

• 1927년 5월 14일

보성전문학교 학예부 주최 제2회 '전조선 중등학생 현상 응변대회' 심사를 함.

• 1927년 7월 11일

서울 종로청년회관, 고려공업회 강연회에서 환영사를 함.

• 1927년 9월 24일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노농합창 무도회' 개최사를 함.



- 1927년 10월 1일  
잡지 『별건곤』에 「제일 미운 일, 제일 보기 싫은 일 - 회피술에 능한 인간들」을 발표함.
- 1927년 11월 10일  
서강소년회가 주최한 제2회 연강소년현상 웅변대회 심사를 함.
- 1927년 11월 11일  
서울 돈암동 명월관에서 '세계대전 휴전조약 날인'한 1917년 11월 10일을 기념하는 '교육주간'을 발기하고 홍효민, 이성환, 인동철, 김진국, 이종린, 유진태, 안재홍, 민태원과 발기인으로 참여, '문맹타파와 조선본위 교육'을 위하여 민태원, 안재홍, 백관수와 함께 의안작성위원으로 선정됨.
- 1927년 11월 26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기념관에서 열린 조선학생회 학생웅변대회 심사위원으로 평가를 하였음.
- 1927년 12월 10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기념관에서 신간회 경성지회 정기대회에서 대표회원으로 선임됨.
- 1927년 12월 10일  
제만동포옹호동맹 창립회원으로 참여함.

• 1927년 12월 20일

잡지 『별건곤』에 「연애독본·결혼교과서 - 결혼 전에 주의할 일」을 발표함.

• 1928년 1월 1일-1928년 1월 9일

『동아일보』에 「일본 정국의 추세」를 연재함.

• 1928년 2월 19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기념관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포스피실’씨를 맞이하는 기념식 개최사를 함.

• 1928년 3월 14일

서울 명월관에서 ‘안재학, 박석윤’ 환영회 환영사를 함.

• 1928년 5월 7일

신병으로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리 사직하고 밤 10시 2분 기차로 귀향길에 오름. 이후 석아정을 짓고 요양에 들어감.

• 1928년 6월 2일

사립 광주보통학교 학생 동맹휴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유지회를 창립, 학교 유지에 대한 구체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김형옥, 조만선, 최선진, 최종섭, 최홍중, 최장진, 최춘열, 최석휴 등과 함께 위원으로 선임됨.

- 1928년 6월 16일  
사립 광주보통학교 유지회 창립에 참여함.
- 1929년 3월 10일  
광주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선임됨. (최준기, 지창선, 최한영, 김홍선, 최남립, 최춘열).
- 1929년 3월 10일  
광주소비조합 발기인총회에서 간부로 선임됨. (최한영, 김홍선, 지창선, 최준기, 조창준, 최남립, 최춘열)
- 1929년 7월 14일  
광주 광하자동차부 개업 10주년 기념 남조선축구대회 개최식 사회를 봄.
-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신간회 임원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한 학생들 구제활동을 함.
- 1930년 2월 24일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49명의 학생을 변호하고 있는 조선 법조계를 대표하는 김병로, 허헌 등 변호사들의 후의에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재광 사회운동자들의 발의로 유지 및 학부형 100여 명이 신광원에서 위로회를 마련 설병호의 예사, 김병로의 답사, 최원순이 소감연설을 함.

• 1930년 4월 4일

『동아일보』에 「전조선 주요 도시 16처 인사의 지방문제관」에 대한 의견 발표함.

• 1931년 10월 4일

잡지 『동광』에 「태평양회의는 어떻게 이용할까 재만동포는 어떻게 해야 살까」를 발표함.

• 1932년 6월 10일

광주 사립 이일학교 교장 서서평의 선교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함.

• 1932년 7월 3일

『동아일보』의 국민구제대책 지상좌담회에 참여함.

• 1932년 8월 13일

황금동 최영욱의 병원인 서석의원에서 ‘국민구제연구회’ 설립총회를 열고 광주읍에서 천정 일대의 빈터에다 오막살이집을 짓고 살던 200여 호를 강제로 헐어 버려서 올 데 갈 데가 없어진 국민 800여 명이 도로에서 취식을 하는 것을 보고 광주의 유지들 30여 명이 ‘광주읍 가옥 철거구’의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것인가 방법 찾기에 나섬. (집행위원 최홍중, 서무부 오지창, 최영균, 김창호, 교섭부 유인상, 최영욱, 김재천, 최원순, 김용환)

• 1932년 8월 18일

국민구제연구회 실행위원으로 광주읍 당국과 국민구제연구회 교섭

에 나섬.

• 1932년 9월 8일

전라남도지사실에서 우원총독을 면회, 궁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약속을 받아냄.

• 1933년 3월 12일

광주읍의 인구가 3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을 대표할 만한 기관이 없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였던 광주 유지들 35명이 본정 3정목(총장로)의 중앙의원에 모여서 '계유구락부'를 창립. 김응모, 최영식, 김홍열, 최영균, 김용환과 6명이 간사로 선임되었음.

• 1933년 4월 27일

『조선일보』에 「신뢰하는 선배께 존경과 기대」를 발표함.

• 1933년 5월 1일

잡지 『신가정』에 「경구 -어머니」를 발표함.

• 1933년 7월 7일

광주 정구구락부를 창립하고 부장으로 선임됨. (간사 임영순, 최상길, 이병재, 고문 김신석, 최경식, 고재섭)

• 1933년 7월 14일

광주 무등산 증심사 부근에서 발견된 불상을 최원순이 보관하고 있

다는 기사가 『동아일보』 「고도사적참사기」에 언급되어 있음.

• 1934년 2월 6일

서울 보성전문학교 사옥신축운동 집행위원으로 참여함.

• 1934년 4월 3일

서울에서 재단법인 여자의학전문학교 창립 발기준비회를 조직, 전형위원 및 준비위원으로 선임됨. (전형위원: 김탁원, 이인, 박인덕, 최원순, 이관구, 준비위원: 이종린, 여운형, 박인덕, 최원순, 이인, 조동식, 황애시덕, 김상덕 외 41인, 상무위원: 이관구, 신일용, 여균, 김찬성, 김탁원)

• 1934년 7월 5일

과학지식보급회를 조직함.

• 1934년 7월 7일

광주 사립 이일학교장 서서평 선교사 사망, 추도사를 함.

• 1934년 10월 20일

광주 계유구락부 대강연회에서 「경제와 일상생활」을 강연함.

• 1934년 12월 1일

잡지 『신가정』에 「조선 가정과 조선 고약- 고약의 보편을 원한다」를 발표함.

• 1935년 3월 1일

광주기독교청년회가 무산 아동을 교양키 위한 ‘노동야학’을 담당하기로 함. (농업실습학교장 어비슨 씨의 부인, 양태승, 유상원)

• 1935년 3월 12일

계유구락부 제2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감사로 선임됨. (양태승, 최영욱, 송화식, 구형서, 최환균).

• 1935년 5월 1일

『조선일보』 광주지국 주최 제13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함.

• 1936년 7월 6일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70번지 자택에서 별세. 향년 40세.

• 2020년 3월 1일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하는 건국포장을 받음.

## 해설

# 石啞(석아) 최원순의 삶과 역사적 의미

## 1. 2·8독립선언을 시작하다

석초(石蕉), 석아(石啞), 최원순(崔元淳)은 1896년 12월 17일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수기옥정 299번지에서 최의준(崔宜俊)과 박보성(朴寶城)의 3남으로 태어났다.<sup>1</sup> 그는 『학어집』 등 한학을 수학하다가 1910년 광주공립보통학교(현 서석초등학교)에 2학년으로 입학하여 1913년 광주공립보통학교를 4회로 졸업하였다.<sup>2</sup> 그리고 서울로 유학을 떠나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다녔으며, 2년간 교사로 재직<sup>3</sup>하다가 식민지 조선의 해방을 위한 신학문에 큰 뜻을 품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일본에서 식민지 조선의 유학생들은 자치단체를 조직하여 친목을 다지는 한편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독립사상을 고취했다. 조선유학생학우회, 조선기독교청년회, 조선학회, 조선여자친목회 등의 단체가 있었으나 조선 유학생들의 중심 조직은 조선유학생학우회였다. 1912년 10월 조직된 조선유학생학우회는 유학생 전원이 가입했던 조직으로 문화, 예술, 정치, 학문과 사상, 국내외 정세,

---

1\_이 사실은 「제적등본」에 따른다.

2\_이 사실은 「학적부」와 「졸업증명서」에 따른다.

3\_『동아일보』, 1936.7.7.



학우들의 소식을 공유하는 기관지 『학지광』을 창간하고 발행하였다. 조선유학생학우회는 유학생들의 중심에서 웅변, 토론, 강연, 졸업생 축하회, 신입생 환영회 등으로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였다.

일제강점기의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1919년의 ‘2·8독립선언’은 조선유학생학우회가 구심점이 되어 움직인 독립운동이었다. 당시 조선유학생학우회는 백관수가 이끌고 있었다. 백관수는 「2·8독립운동약사」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글은 ‘2·8독립선언’의 전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여기에 최원순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였는바, ‘2·8독립선언’에서 최원순의 활약이 어떠했는지 잘 드러나 있다.

1918년 12월 15일을 당하였다. 이날에도 우리에게 중대한 소식이 동경 조일신문지에 기재되었다. 그것은 미국 모항에 교거하는 한인들이 독립운동자금으로 삼천만 원 거액을 모금하였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유학생계는 더욱 긴장되었다. 그러나 독립을 목표로 한 비밀조직체가 없는 우리는 아직도 몽롱한 심정으로 타오르는 가슴만 우울하였을 뿐이다. 이때 신전구 일우에 기숙하던 최원순 정광호 양군에게 내방한 김안식 김현준 양군이 있어서 시국문제를 중심으로 담화가 시작되었다. 정·최 양군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때에 민족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미주에서 파견되는 우리 대표의 제소는 일즉이 왜적의 통치를 받아보지 못한 불평파 해외 망명객들의 잠꼬대로만 세계가 알 것이오 국내의 이천만 오족은 왜적의 선전하 열복되어 아무 불평도 없이 왜국민 노릇을 충실히 한다고 세계에 선전할 모략은 성공하고 말 것이다. 이 모략 선전을 분쇄치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노예적 생활을 면치 못하고 망국노의 대우를 받고 말 것이다. 차제 우리는 거족적 일대 투쟁이 있어야 된다. 이 거

족적 운동의 전구 선봉으로는 우리 유학생들이 자임하여야 된다”고 역설한 결과 의견일치를 보아 두 김군은 자원하여 자금운동을 하기로 단연 학업을 중지하고 즉 일로 귀국하였다.

(중략)

선언서에 서명한 11인은 일일로에 기청회관에서 공선된 9인과 송계백 이광수(신병이 있으므로 사전에 상해로 도망케하고 최근우는 독자 도망하였다) 양인을 추가하였던 것이다. 이에 만전의 준비가 완료되자 2월 8일 학우회총회를 이용하여 선언서를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서명한 대표자를 폭경내란죄 등 명목으로 엄벌형에 처할 것을 각각 오했다. 사후는 최원순군이 담당(최군이 서명하지 안한 이유로)하기로 하고 정광호군은 사전 1월 말 본국으로 선언서를 00-0 경성을 중심으로 국내 학생운동을 일으키되 2월 8일에 동경과 같이 선언서를 발표하게 지도하라는 책을 맡기었다. 그리하여 운동은 최후단계로 들어가 약속된 2월 8일만 기대하게 되었다.<sup>4</sup>

위의 글은 최원순의 활동과 역할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놓았다. 그에 따라서 최원순이 ‘2·8독립선언’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최원순은 친구인 정광호와 함께 ‘2·8독립선언’에 불씨를 놓았다. 제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개최한 파리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정광호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의논, 하숙방을 찾아온 영암 출신의 김현준, 강진 출신의 김안식과 비밀결사하기로 의기투합했다. 특히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이때에 민족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미주에서 파견되는 우리 대표의 제소는 일즉이 왜적의 통치를 받

---

4\_백관수, 「2·8독립운동약사(상)」, 『동아일보』, 1958.2.9.

아 보지 못한 불평과 해외 망명객들의 잠꼬대로만 세계가 알 것'이고 우리 조선인이 '왜적의 시전하 열복되어 아무 불평도 없이 왜국민 노릇을 충실히 한다고 세계에 선전한 모략'을 분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적 생활을 면치 못하고 망국노'가 될 것이니 '거족적 일대 투쟁'의 선봉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최원순과 정광호였다. 이것이 '2·8독립선언'의 시발점이었다. 만약 최원순과 정광호가 없었다면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조선 독립에 대한 열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조선의 독립 선언을 위해서는 동경에 유학 중인 조선의 유학생을 규합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영문학을 전공하던 윤창석이 미국 교포들이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독립자금을 모금했다는 영자신문의 보도를 조선유학생학우회 간부들과 공유하면서 '2·8독립선언' 준비는 이미 1918년 12월 15일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이것을 유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백관수, 최원순, 최광용, 윤창석은 1918년 12월 30일,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동서연합옹변대회'를 주동하였다. '원래 각종 회합에 별로 잘 모여지지 않던 현상이 일변하여 당년 말 명치회관에서 거행된 망년회에는 초만원의 성황'을 이뤘고, 최원순은 그 자리에서 미국 교포들이 3천만 원이라는 독립자금을 모금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선의 유학생들이 움직여야 하는 당위를 옹변함으로써 조선 유학생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동서연합옹변대회'가 끝나고 비밀리에 '조선청년독립단'이 결성되었다.

공개적으로 선출된 위원들에게는 왜경이 미행케되어 아무행동도 못하게 되었으나 사임한 백관수 등 제씨를 중심으로 한 공작은 착착 진행되어 조선청년독립단은 비밀리에 조직되었고 선언서도 기초가

완료되었고 본국에 파유되었던 송계백군도 배부에 상처를 받도록 활자봉이를 짚어지고 선배 정노식씨로부터 받은 운동자금도 무사히 도래하였다. 그러나 인쇄기와 시일관계로 활자인쇄는 중지키로 하여 조도전 원병위 삼립일우에 준비하였던 비밀장소에서는 최원순 정광호 양군의 지휘하에 광주유학생 10여명이 주야겸행으로 일주일간 선언서 기타서류를 담사여 각각 만 부 이상은 준비되어 비밀장소에 장치되었다.<sup>5</sup>

위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동서연합옹변대회’를 가장한 그 자리는 최팔용, 백관수, 윤창석, 김도연, 서춘, 최근우, 이종근, 김철수, 이광수, 송계백이 ‘조선청년독립단’ 대표자로 서명하는 자리였다. 소수의 동지들이 임무를 나눠 소리없이 비밀리에 움직여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한 것이다.

최원순에게는 조직을 규합하는 등 막전막후에서 암약하는 임무가 주어짐으로써 ‘조선청년독립단’ 대표에서는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2·8독립선언’에서 최원순의 역사적인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그에 따라 최원순이 주축이 되어 「선언서」는 ‘조도전 원병위 삼립일우에 준비하였던 비밀장소’에서 1만장이 등사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유학생계 일반은 막연한 중에서도 나날이 흥분<sup>6</sup>으로 다짐에 다짐을 해 나가고 있었다.

유난히 많은 눈이 내리던 날,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동경 조선거독교청년회관에서 600여 명의 유학생이 모였다. 일본 경찰 30명도 임석했다. 독립선언으로 격화된 유학생들은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고,

---

5\_백관수, 「2·8독립운동약사(상)」, 『동아일보』, 1958.2.9.

6\_백관수, 「2·8독립운동약사(상)」, 『동아일보』, 1958.2.9.

그것을 제지하는 일본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면서 책상과 걸상이 날아다녔다. 부상자도 속출하였다.

일본 경시청은 ‘조선청년독립단’과 유학생 40여 명을 체포, 연행, 구금하였다. 막전막후를 책임졌던 최원순도 검속되어 고초를 겪었다. 또한 ‘2·8독립선언’의 준비 자금을 댔던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생 헌덕 신도 검속되었다.<sup>7</sup> ‘2·8독립선언’의 시작에서부터 막전막후를 책임지고 암약했던 최원순은 그때부터 일본 경시청의 감시대상자가 되었다.

최원순은 이후 동경유학생학우회 총무로, 동경유학생학우회 강연단으로 1920년부터 1922년까지 3년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하였다. ‘2·8독립선언’의 주역으로 일제에 맞섰던 것처럼 조선의 민중에게 조선 독립을 역설하는 대중연설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간 것이다. 그의 첫 강연은 1920년 7월 10일 부산 초량좌에서 시작되었다. 주제는 「문화발전과 언론자유」였다. 그리고 7월 11일은 울산에서 「개조시대와 청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7월 12일은 경주에서 「인류해방의 근본문제」로, 14일에는 대구좌에서, 15일에는 공주에서 「시대와 도덕」을 주제로 강연하였다.<sup>8</sup> 도로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1920년, 조선 독립의 열망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던 조선 유학생들이 전국을 돌며 일제가 강점한 조선의 산하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놓은 것이다.

최원순은 1921년에도 동경유학생학우회 제2회 전국순회강연단으로 귀국하여 강행군을 펼쳤다. 그는 “시대를 따라 도덕의 변천이 있

---

7\_『2·8독립선언』과 관련한 최원순의 역할과 활동은 「조선청년독립단약사」(경향신문, 1947.2.6)과 백관수의 「조선청년독립단 28선언약사」(『동아일보』, 1958.2.8)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경시청의 기록을 참조하여 실증한 것이다. (박선홍의 『광주1백년』에 있는 최원순의 활동에 관한 내용도 이 두 편의 글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8\_『동아일보』, 1920.7.6.

음을 말하여 도덕의 근본의 뜻을 밝히고 새 시대의 새 도덕은 오직 자유와 평등에 근거를 두었는데, 평등은 사람마다 자유만 얻게 되면 자연히 평등이 될 터이니 현대 도덕의 근본은 오직 자유에 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제 몸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으니, 만일 제 몸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가 있어서도 도리어 남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 여러분이 자유를 얻고자 하면 먼저 남의 자유를 옹호하는, 곧 책임 관념이 있어야<sup>9</sup>한다고 역설, 일제를 향한 날선 비판을 계속하였다. 그의 용변이 “칼날을 들고 청중의 심장을 찌르는 듯하고 밥살과 혀에서는 불비가 쏟아지는 듯”하여 감화를 받아 ‘급히 쏟아지는 소낙비 같은 박수’를 보내는 청중의 호응에 놀란 ‘5, 6인의 형사와 서슬이 푸르게 경계하든 경관은 입을 모으는 듯하더니 종로서 통도(樞渡) 정부는 돌연히 변사에게 중지 명령을 내리자, 최원순의 연설에 흥분한 ‘청중은 한참 동안 박수를 끊이지 아니하여 장래에는 살기가 참만<sup>10</sup>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강연은 강제로 해산당했다. 독립에 대한 확신으로 개인의 삶을 버리고 선택한 그의 강연과 연설은 7월 19일 강경 아소교부속 만동학교 여자부에서 「개성의 발휘와 현대의 문화」<sup>11</sup>로, 7월 20일에는 전라북도 이리좌에서 「무의식적 생활에서 유의식적 생활로」로, 8월 9일에는 광주 오웬기념각에서 「비평적 판단과 인생의 진화」<sup>12</sup>로, 「생활의 개조와 현대인의 각오」라는 주제로 이어졌다.<sup>13</sup> 조선

---

9\_『동아일보』, 1921.7.18.

10\_『동아일보』, 1921.7.18.

11\_『동아일보』, 1921.7.18.

12\_『동아일보』, 1921.8.9.

13\_『동아일보』, 1921.8.21.

이 처한 민족적 현실을 자각하고 끝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의 연설은 민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1922년에도 동경유학생학우회의 강연단으로 1922년 7월 6일부터 26일까지 김와복, 이창근, 최윤식, 한위건과 함께 목포, 나주, 광주, 정읍, 이리, 전주, 강경, 조치원, 공주, 청주, 경성, 철원, 원산, 영흥, 홍원, 단천, 성진을 순회하며 전국을 누비는 강행군으로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고 나아갈 길을 밝히기에 분주하였다. 그 와중에도 광주청년회에서 「현대사상과 민족성」<sup>14</sup>이라는 주제로, 광주여자야학 1주년 기념식이 열린 흥학관 특설식장에서 축사<sup>15</sup>를 통해서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최원순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여름방학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것은 또 다른 ‘2·8독립선언’이었다. 그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1923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하였다. 『동아일보』에 근무하면서도 그는 대중연설과 강연은 멈추지 않았다. 또한 ‘조선옹변연구회’를 조직하여 후배들을 지도했다.

일련의 활동과 더불어 민족운동 노선을 확고히 하고 ‘비타협적 민족협동전선’을 형성한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홍명희·안재홍·신석우 등이 천도교의 권동진·박래홍, 기독교의 박동완, 불교의 한용운, 유교의 최익한, 신채호와 의기투합하여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과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이 하나가 되어 “모든 우경적 사상을 배척하고 민족주의 중 좌익전선을 형성하려는 것”<sup>16</sup>이 목표였던 신간회는 “조선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

---

14\_『동아일보』, 1921.7.28.

15\_『동아일보』, 1921.8.28.

16\_『동아일보』, 1927.1.20.

하며, 민족적 단결을 확고히 하며, 기회주의를 일절 부인한다.”<sup>17</sup>는 강령을 채택한 창립대회에서 최원순은 백관수 등과 함께 간사를 맡아 신간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으로 신간회 경성지회의 대표자 후보, 간사 후보로<sup>18</sup> 맹렬히 활동하였다.

그는 일본에서부터 요시찰 대상자로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sup>19</sup> 조선의 독립을 위해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사례 중에 잡지 『신민』에서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관한 설문 조사’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총독부의 매년 인건비는 육천삼백만원으로 조선인 수중에 쥐여지는 것은 겨우 일천팔백만원이라 하니 나의 의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조선에 싸에서 세금을 밧아서 조선의 政治를 시하는 총독부의 방침이 여시하거든 따라서 조선 안에 상공 기타 모든 사업이 그네들 손에 운행되는 지라 그러한 처지에 있는 조선인 지식계급의 취업난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슴닛가<sup>20</sup>

일제의 조선총독부를 겨냥한 것인데 ‘인건비는 육천삼백만 원으로 조선인 수중에 쥐여지는 것은 겨우 일천팔백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조선인 지식계급의 취업난은 당연한 것’이며, ‘조선 땅에서 세금 밧아서 조선의 政治를 시하는 총독부의 방침’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7\_『동아일보』, 1927.1.20.

18\_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26.

19\_경성지방법원 판결문, 1926.

20\_최원순, 「졸업생 취직문제-총독정치로도 하면 될 일」, 『신민』 23, 1927.3.



역사는 개인의 삶을 관통하며 개인의 삶은 역사를 관통한다. 역사 안에서 개인은 혼자일 수 없고, 개인의 삶 또한 역사를 피할 수는 없다. 특히 강제로 점령당한 식민지라는 특수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조선의 독립을 포기하지 않고 ‘민족’에 온몸을 맡기며 항일투쟁을 전개한 지식인과는 반대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민족’을 동원한 지식인이 공존했다. 그는 ‘2·8독립선언’에서부터 3년에 걸친 학우회 전국순회강연, 그리고 신간회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에 대항한 보기 드문 지성인이었다.

## 2. 춘원 이광수와 겨루다

한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갈래의 삶을 선택했던 지식인들의 행적은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전후해서 선명하고도 극명하게 갈린다. 민족주의자를 자칭하였던 지식인 중에서도 ‘민족’을 기표로 내세워 젊은 청년과 지식인들의 지도자였던 최남선과 이광수는 식민지라는 특수성을 누린 인물들이다. 그들은 2인 문단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 속에서 젊은 학생과 지식인들의 기대를 받고 있었다. 특히 민족 지식인의 상징이었던 이광수가 1922년 5월, 『개벽』에 발표한 「민족개조론」<sup>21</sup>은 그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젊은 학생과 지식인들에게는 배신이었다. 당시의 ‘개조론’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지식인들의 반전운동은 정치체제에 대한 사상운동 성격을 띠고 있었다. 때문에 ‘개조론’은 새로운 것도 없는 것이었지만,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을 통해서 ‘조선’

---

21\_이광수, 「民族改造論」, 『개벽』 제23호, 1922.5, 18~48쪽.

과 ‘민족’을 동원하여 ‘민족성’의 개조를 주장하였다. 젊은 학생과 지식인 신상오, 신일용과 김제관은 잡지 『신생활』에, 최원순은 『동아일보』에 도전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으나 당시 이광수와 함께 활동한 작가와 지식인들이 비판한 글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이광수라는 이름의 지위에 당대 작가와 지식인들의 묵인하거나 동조하여 「민족개조론」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이광수가 이른바 ‘친일’로 변절하게 된 근거를 「민족개조론」에서 찾아왔을 뿐, 젊은 학생과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sup>22</sup>

최원순은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5가지로 압축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주장한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춘원에게 묻하노라」<sup>23</sup>를 발표했다. 와세다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인 그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비판한 핵심은 「민족개조론」의 문제점과 한계였다.

이광수와 최원순은 와세다대학 선후배이며, 이광수는 1919년 2월 8일에 있었던 독립선언의 「선언서」의 초안을 썼고, 최원순은 「선언서」를 비밀리에 등사한 것에서 인연이 있었다.<sup>2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22\_김현주, 「논쟁의 정치와 「민족개조론」의 글쓰기」, 『역사와현실』 57, 2005; 안지영, 「근면한 ‘민족’의 탄생-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16; 김형국, 「1920년대 초 민족개조론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19집, 2001; 김택호, 「개화기의 국가주의와 1920년대 민족개조론의 관계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003.

23\_최원순, 「李春園(이춘원)에게 묻(문)하노라」, 『동아일보』, 1922.6.3.~ 6.4 (이하 인용문의 출처는 여기에 따른다.)

24\_이광수의 부인 허영숙과 최원순의 부인 현덕신도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 선후배로, 최원순과 이광수는 사적인 인연과 공적인 인연이 얽혀 있다. 유학을 마친 최원순은 1923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하였고 이광수와 함께 근무하였다. 이광수가 편집국장 자리에서 물러나자 최원순이 편집국장 대리로 그 자리를 이었다. 최원순은 폐결핵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고향인 광주로 귀향하여 요양하다가 1936년 요절하였다.

족개조론」을 비판하였으니 장차 정론직필의 언론인을 예비하였다.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은 올곧은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는 1920년 와세다대학 재학생 최원순은 잡지 『현대』 등에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이광수보다 앞서서 이미 「개조의 근거」<sup>25</sup>를 통해 ‘개조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대사회를 “불공평”한 사회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병이 만만 현대의 조직과 제도로는 일사회의 건전한 진취와 향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일사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우는 각 민족도 호상적 협조에 인하여 전 인류의 진정한 행복을 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대세계는 개조되어야”하고 “진실한 생존은 적극적인 진취와 향상에 잇기 때문에 “더욱히 강대하고 심절한 개조의 필요”<sup>26</sup>가 있다고 주장했다.<sup>27</sup> 최원순이 발표한 「개조의 근거」는 일제의 검열에 걸려 글 전체를 다시 수정하였음에도 ‘조직과 제도’에서 개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어떤 제제도 받지 않았고 ‘민족성’을 개조의 대상으로 삼아 일제의 검열을 통과하였다. 이 지점에서 개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최원순의 「이춘원에게 문하노라」를 논하기 전에 「민족개조론」의 체계와 내용을 정리하고, 「민족개조론」을 쓴 의도와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민족개조론」의 구성과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25\_ 최원순, 「改造의 根據」, 『현대』 5호,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1920.5.10.

26\_ 최원순, 「改造의 根據」, 『현대』 5호,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1920.5.10.

27\_ “독자제군이여 이 논문은 당국의 주위에 인하여 다시 개조를 하였는디 개조라도 잘 되지 못한 개조임으로 처음에 마암 먹었던 본지가 어대로 가고 히미하여진듯 하오. 매우 불만족하고 자미가 적지만은 하는 수가 업소!”(최원순, 「改造의 根據」, 『현대』 5호,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1920.5.10.)

##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구성과 내용

구성 체계	내용의 제목
	변언
상	민족개조의 의의
	역사상으로 본 민족개조운동
	갑신 이래의 조선의 개조운동
중	민족개조는 도덕적일 것
	민족성 개조는 가능한가
	민족성의 개조는 얼마나한 시간을 요할가
하	개조의 내용
	개조의 방법
결론	결론

위 표에서 정리한 것을 보면 이광수는 「변언」을 통해 「민족개조론」을 쓰는 이유와 목적을 제시한 다음 '상, 중, 하, 결론'의 체계를 구성하여 '민족 개조란 무엇인가', '민족 개조의 역사적 전개 과정', '민족성 개조의 내용', '민족성 개조를 위한 소요 시간', '민족을 개조할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변언」은 「민족개조론」을 쓴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인용하여 본다.

나는 만흔 希望과 슬는 精誠으로, 이 글을 朝鮮民族의 將來가 어찌할가, 어찌하면 이 民族을 現在의 衰頹에서 건져 幸福과 繁榮의 將來에 引導할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兄弟와 姉妹에게 들입니다.

이 글의 內容인 民族改造의 思想과 計劃은 在外同胞 中에서 發生한 것으로서 내 것과 一致하여 마침내 내 一生의 目的을 이루게 된 것이외다.

나는 朝鮮內에서 이 思想을 처음 傳하게 된 것을 無上한 榮光으로 알며, 이 貴한 思想을 先覺한 偉大한 頭腦와 共鳴한 여러 先輩 同志에게 이 機會에 또 한번 尊敬과 感謝를 들입니다. 願컨대 이 思想이 사랑하는 青年 兄弟姊妹의 純潔한 가슴 속에 깊히 뿌리를 박아 꽃이 피고 열매가 매쳐지이다  
辛酉 十一月 十一日 太平洋會議가 열리는 날에 李春園

이광수, 「弁言」<sup>28</sup>

이광수는 1920년대 조선을 대표하는 지식인의 상징이었던 만큼 식민지 조선에서 그의 글은 젊은 학생과 지식인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 영향력 잘 알고 있었던 이광수는 「변언」을 통해서 ‘어찌하면 이 민족을 현대의 쇠퇴에서 건져 행복과 번영의 장래에 인도할가’를 고민한 결과 민족을 쇠퇴에서 건져 올려 행복과 번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결론이 ‘민족 개조’임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조선 내에서 이 사상을 처음 전’하는 지식이니만큼 ‘사랑하는 청년 형제자매의 순결한 가슴 속에 깊히 뿌리를 박아 꽃이 피고 열매가 매쳐지기를 바랐다. 그 이유로 꼽은 것이 ‘이미 가진 민족의 목적과 계획과 성질이 민족적 생존 번영에 적합치 아니’하기 때문이고 특히 ‘민족개조의 사상과 계획’을 전하는 것에 ‘일생의 목적’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 개조의 당위성보다는 이광수 자신의 목적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영향력을 보여 주고자 한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광수가 「변언」을 통해 설정해 놓은 ‘청년 형제자매의 순결한 가슴 속에 깊히 뿌리를 박아 꽃이 피고 열매가 매쳐지기를 바

28\_이광수, 「民族改造論」, 『개벽』 제23호, 1922.5·18쪽.(이하 인용문은 여기에 따른다.)

랐던 것과는 반대로 1919년의 '2.8독립선언'과 '3·1만세운동'으로 민족 의식이 고양되어 있던 젊은 학생과 청년 지식인들은 거세게 분노하고 나섰다. '당시 신문잡지의 총공격'과 '사회인사로부터 만흔 비난'이 이어졌으며, '장사 여섯 사람'이 한 밤에 '분김에 달려'간 뒤 '개벽사'의 '사무실을 들부시고' '최린씨 집에 달려가서 천도교종학원교수로 웨 그 납분 이광수를 쓰느냐'<sup>29</sup>고 항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 학생과 지식인들은 감정적인 분노를 누르고 이성적인 대응을 하려고 애썼다. 가장 먼저 신상우가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독하고 그 일단을 논함」<sup>30</sup>으로 비판에 나섰다. 그리고 최원순이 「이춘원에게 문하노라」<sup>31</sup>를, 신일용이 「춘원의 민족개조론을 평함」<sup>32</sup>을, 김제관이 「사회문제와 중심사상」<sup>33</sup>을 통해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비판하였다. 『신생활』은 색채를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잡지였고 한정된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서 여론을 수렴하고 발산하는데 언론과 비교해서 더디었던 반면에 언론은 여론의 수렴과 발산이 빨랐다. 그런 점에서 최원순의 글 「이춘원에게 문하노라」는 대중들에게 빨리 확산되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최원순이 비판한 문제를 살피기 전에 『동아일보』 기자의 글을 통해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와 비판의 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광수가 동원한 민족과 야만적인 민족성에 대한 대

29\_이광수, 「最近 十年間 筆禍, 舌禍史 - 「民族改造論」과 「經綸」, 『삼천리』 제14호(제3권4호), 1931.4.1.

30\_신상우, 「春園의 民族改造論을 讀하고 그 一端을 論함」, 『신생활』 제6호, 1922.6, 73~77쪽.

31\_최원순, 「李春園에게 問하노라」, 『동아일보』, 1922.6.3~6.4.

32\_신일용, 「春園의 民族改造論을 平함」, 『신생활』 제7호, 1922.7, 2~18면.

33\_김제관, 「社會問題와 中心思想」, 『신생활』 제7호, 1922.7, 38~49면.

중들의 분노와 행태를 『동아일보』 기자의 글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글은 東京留學生 崔元淳氏의 寄稿인데 元來 朝鮮民族을 如何히 하여야 그 生活의 充實과 그 文化의 享上을 期할가 하는 것은 單히 一二人의 問題가 아니며 所謂 知識階級 또는 有志者의 問題가 아니라 적어도 眞實노 朝鮮사람의 前途를 생각하고 그 生活改善에 對하여 그 前途開拓에 對하여 利害의 關係가 切實한 者는 누구든지 다 반드시 解決하여야 할 問題며 覺悟하여야할 것이다. 이럼으로 우리는 春園의 民族改造論을 매우 興味있게 읽는 同時에 그 論旨와 그 提唱하는 改造方法에 對하여는 各方面으로 批判이잇고 討論이잇기를바라노라

이와갓흔 見地에서 우리는 이제 이글을 紹介하는 同時에 어디까지든지 그 論文自體에 대한 批判만 紹介하고 그 他에 조금이라도 人身攻擊의 嫌이잇는 것은 紹介하기 躊躇하얏스니 元來 討論과 批判은 그 性質上 批判의 對象되는 그 自體에 對하여 行할것이요 決코 그 裡面 惑은 그 背後의 人格에 對하여 行할것이 아닌 까닭이라. 그럼으로 이때에 우리가 이글을 本紙上에 紹介하는 同時에 一般社會에 希望하는 것은 理論에 對한 批判은 理論으로써 하며 學說에 對한 討論은 學說으로써 하되 決코 感情論으로써 하거나 或은 暴力으로써 또는 輿論을 憑藉하여 個人의게 社會的壓迫을 加치 아니하는 그것이니 萬一如此할 것 갓흐면 自由의 研究는 가히 期할 수 업스며 따라 言論의 眞正한 自由와 따라 眞正한 理性化한 輿論은 可히 望하지 못할 것이라 이 朝鮮의 將來를 위하여 歎息할바 이 안인가 朝鮮의 將來前途가 困難하면 困難할사록 그 解決方法에 對하여 各方面으로 研究하여야 하며 討論하여야 하며 觀察하고 批判하여야 할 것이라 이 問題에 對하여서도 우리는 各種意味의 ‘自由’의 徹底를 바

「민족개조론」이 발표되자 대중들이 분노하였다. 대중들이 분노한 것은 「민족개조론」 자체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광수에 대한 인식 공격이었다는 것인데, ‘논문자체에 대한 비판만 소개하고 그 타에 조금이라도 인신공격의 혐이 있는 것은 소개하기 주저’한 것은 냉정한 이성보다는 감정을 앞세웠기 때문이었다.<sup>35</sup> 그래서 기자는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이론으로’ 하고 ‘학설에 대한 토론은 학설로’ 하고, ‘감정론으로써 하거나 혹은 폭력으로써’ 또는 ‘여론을 방자하여 개인의게 사회적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조선의 장래전도가 곤난하면’ 그 ‘해결방법’에 대해서 ‘각방면으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관찰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최원순의 「이춘원에게 문하노라」는 ‘이론에 대한 비판’이며, ‘학설에 대한 토

---

34\_기자, 「李春園(이춘원)에게 問(문)하노라, 『동아일보』, 1922.6.3.

35\_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이광수가 적은 글에서도 확인된다. “「民族改造論」에 대하여는 當時 新聞雜誌의 總攻擊를 받았슴은 勿論 社會人士로부터 만흔 非難을 입었었다. 이에 대하여 지금도 記憶에 남는 일은 하로 밤은 子正 한시나 되는 深夜에 그때 내 집이든 西大門町 一丁目집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이가 있다. 下人도 엽섯슴으로 내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니 壯士 여섯 사람이 우루루 몰려 서 있다. 「李光洙가 있느냐?」 「네 - 내가 李光洙요」 「아니 이집 主人 李光洙말이나」 「글세 내가 이집 主人 李光洙요」 하고 나는 그 여섯 사람을 내 방안에 引導하였다. 必然 그분들은 말에만 끈치안코 旣일을 생각하고 憤김에 달려왔든 모양이나 門간에 내가 直接 나가서 서로 正面하게 되었슴에 多少 「氣」를 꺾기었슴인가. 처음부터 손을 부치지안코 그제는 自己들끼리 強硬派와 軟派의 둘로 갈너져 나를 한참 꾸짖고 辱하고는 冷水를 떠오라 하여 먹고는 그러고는 가버리었다. 하마하드면 이 深夜에 무슨 變이 이러났슬가 그 뒤에 드르니 그 길로 그분들은 天道敎안 開關社에 이르러 同社의 事務室을 들부시고 그러고는 또 崔麟씨 집에 달려가서 「天道敎宗學院敎授로 웨 그 남분 李光洙를 쓰느냐」고 危害를 加하고 도라왔더라한다. 崔麟씨 집에 갔든 것이 새벽 네시 엇다하니 第一着으로 그날밤 내 집에 왔섯든 모양이다.”(이광수, 「最近 十年間 筆禍, 舌禍史 - 「民族改造論」과 「經綸」, 『삼천리』 제 14호(제3권4호), 1931.4.1)



론'이기 때문에 연재한다는 것이다.

최원순도 대중들의 분노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나는 점을 그대로 바리는 것은 생명을 이 고귀한 사업이 기초에 한줌 흙으로 맞치시는 『선각자』에게 대하여 『쇠퇴 우 쇠퇴』하고 『열악 나타』자가 되어서 실경'이 되지 않도록 감정적인 태도가 아닌 '정중한 태도'<sup>36</sup>로 문제제기를 했다. 최원순이 '이론에 대한 비판'과 '학설에 대한 토론'으로 「민족개조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를 짚어서 비판하고 질문한 내용을 정리하면 5개항으로 집약된다.

구분	「민족개조론」 비판 내용
1	'劣惡'하다는 '朝鮮民族性'은 어떠한 것을 意味하는가?
2	民族性 改造主義의 倫理的 根據가 무엇인가?
3	한 民族性이 優善하다 '劣惡하다' 判斷하는 그 標準이 어대잇는가?
4	朝鮮人의 過去變遷을 '다 無知蒙昧한 野蠻人種이 自覺업시 推移하여야가는 變化와 갖은 變化외다' 하는 이유는 어대잇는가?
5	"民族改造는 道德的인 일 것"이라고하는 말은 무엇을 가라치는가?

최원순은 5개항 중에서 첫 번째로 “劣惡”하다는 ‘朝鮮民族性’은 무엇을 意味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물음은 이광수가 말한 ‘민족성’이라는 개념과 정의가 문제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朝鮮民族性이 '劣惡'함을 痛論하였다 果然 우리가 '살아날 唯一한 길'을 가르치는 '先覺者' 李春園의 民族性에 대한 見解는 正當한가?  
르,본 博士의 말에 依하면 民族性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條件을

36\_최원순, 「李春園에게 問하노라」, 『동아일보』, 1922.6.3.

약하다고 볼 수 있다

一, 다른 民族과 區別되는 特徵일 것

二, 遺傳的일 것

三, 그 民族의게 共通的일 것

과연 ‘先覺者’ 李春園이 指摘한 ‘虛僞, 非社會的利己心, 懶惰, 無信, 怯懦, 社會性的 缺乏’ 이것이 朝鮮人의 特徵이며 遺傳的이고 共通的으로잇는 性格(성격)일가?

최원순은 ‘조선 민족성’의 ‘열악’함을 논하려면 먼저 ‘민족성’이란 개념에 부합해야 한다. 이광수의 민족성은 귀스타브 르봉이 정립한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광수가 주장하고 있는 ‘열악한 조선 민족성’인 ‘허위, 비사회적 이기심, 나태, 무신, 겁나, 사회성의 결핍’은 조선의 민족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민족성’이라고 통론한 ‘열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이광수가 말하는 ‘조선 민족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특징’도 ‘유전적’이지도 ‘민족에게 공통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열악한 조선 민족성’은 조선의 민족성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른 민족 즉 한족이나 만족 몽고족이나 인도족 혹은 일본족과 구별되는 일견에 직시 분별할 수 있는 조선족의 독특한 유전적 성격’이며 이상적 타이프일가? 현대 과학적 지식과 현실적 사실을 능히 무시하고 그에서 초월한 ‘선각자’ 이춘원이 아니면 도저히 이춘원이 지시한 열악한 조선 민족성을 그대로 긍정하기가 어려운 ‘현대 과학적 지식과 현실적 사실을 능히 무시’<sup>37</sup>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

---

37\_최원순은 거기에 “그에서 超越한 ‘先覺者’ 李春園이 아니면 도저히 李春園이 指示한 劣惡한 朝鮮民族性을 그대로 肯定하기가 어렵지 아니할가 萬一그러하다고하면 先覺者

했다. 이는 귀스타프 르- 봉이 정리한 ‘민족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뜻을 파악하지 못한, 이광수의 지식은 허위라는 것을 밝혀서 정곡을 짚었다.

두 번째로 제기한 문제는 “민족의 개조는 도덕적 방면으로부터 들어가야만 할 것이라 — 특별히 조선 민족의 쇠퇴의 원인은 도덕적 원인 근본이니 이를 개조함에는 도덕적 개조, 정신적 개조가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라 함이외다. 이 점을 자각치 못하고 그네는 오즉 신지식의 주입만을 절규하엿습니다. (...) 조선 민족의 쇠퇴의 근본원인을 도덕적 부패에서 차츰 줄을 모르고 오즉 지식의 결핍만에서 차츰려 한 것은 큰 불충명, 불자각이외다.”<sup>38</sup>로 이광수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써 ‘민족성 개조주의의 윤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한 民族性이라고 하는 것은 民族的 個性이다 그럼으로 民族性의 改造는 그 個性의 改造라고 볼수 맞게업다 ‘道德’을 高唱하는 ‘先覺者’ 李春園이여! 個性을 尊重하자는 現代 世界的思潮를 無視하고 “道德的인 것”이라고 하면서 個性 개조를 ‘끝는 精誠으로’ 主張하는 理論的 根據와 倫理的 價値가 어대잇는가

최원순은 이광수가 ‘조선 민족의 쇠퇴의 원인’을 ‘도덕적인 부패’에서 찾으면서 ‘도덕적 개조, 정신적 개조’를 주장한 것은 ‘민족적 개성’을 무시한 것이며, ‘개성을 존중하자는 현대 세계적 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끝는 정성”으로 주장한 ‘조선 민족의 쇠퇴

---

李春園이여 남의 글이나 잘 理解하고 그 글의 뜻에서 超越하는 것이 엇더할가 하는 生角이난다.”고 덧붙였다.

38\_이광수, 「民族改造論」, 『개벽』 제23호, 1922.5.

의 근본원인'이라고 주장한 '도덕적 부패'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라고 논박했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조선 민족'을 무시하는 비윤리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조선의 역사적 조건을 두고 조선의 민족성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민족의 개조를 주장한 그 자체가 비도덕적임을 우회적으로 비판이기도 했다.

이광수가 주장한 「민족개조론」의 세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한 민족성이 우선하다 열악하다고 판단하는 표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려는 요구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民族性이 民族的 個性인 以上에는 그 個性의 『劣惡』이나 優善을 어느 民族의 『幸福과 繁榮』을 目標로 하고 하는 말인가? 적어도 個性에 對한 理解가 있는 사람이면 더욱 『先覺者』 李春園은 그 民族自身の 『繁榮』과 『幸福』을 爲하는 見地에서는 그 民族自身の 個性이 『劣惡』하다고 하는 矛盾은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한 個性이 劣惡하다고 하는 것은 劣惡한 實은 劣惡하다고하는것이지요

個人의게 있어서도 그러할 터인데 하물며 한 民族的 個性이 『劣惡』하다고 判斷을 나리는 것은 世界의 風土가 均一하지 아니고 生活條件이 均一하지 아니한 以上에는 그 자신의 『繁榮과 幸福』을 爲한다는 標準下에서는 아모리 生角하여도 『民族性을 改造』 하여야 『살아날 唯一한 길이』 있다고 하는 先覺者 李春園이 아니고는 알수가 없는 『眞理』다 『劣惡』한 (實은 劣惡하다고하는것이지만) 그 自身の '行福과 繁榮'을 爲하는 것보다도 어느 다른 民族의 『幸福과 繁榮』을 爲하는 目標下에서 劣惡하다는 判斷이 生길 수 맞게 업는 것이 아닐가

조선의 민족성을 개조하기 위해서 ‘어느 다른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는 표목 하에서 열악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세계의 풍토가 균일하지 아니고 생활조건이 동일하지’ 않은데도 ‘행복과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진리라고 강조한 ‘민족성 개조’가 결국 ‘선각자 이춘원’만 알 수 있는 주장일 뿐이며,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주장이 아니므로 ‘민족적 개성이 『열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즉 ‘개성’이 ‘열악’하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네 번째는 이광수가 “더욱이 재작년 삼월 일일 이래로 우리의 정신의 변화는 무섭게 급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금후에도 한량업시 계속될 것이외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변화외다. 또는 우연의 변화외다. 마치 자연계에서 끈힘업시 행하는 물리학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와 가티 자연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행하는 변화외다. 또는 무지몽매한 야만인종이 자각 업시 추이하야 가는 변화와 가튼 변화외다. 문명인의 최대한 특징은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계획된 진로를 밟아 노력하면서 시각마다 자기의 속도를 측량하는 데 있습니다.”<sup>39</sup>고 한 주장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다.

특히 ‘조선의 과거변천을 『다 무지몽매한 야만인종이 자각 업시 추이하야 가는 변화와 갓흔 변화외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따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9\_이광수, 「民族改造論」, 『개벽』 제23호, 1922.5.

『再昨年 三月』事實이 『우리의 精神의 變化는 무섭게 急激하게 되었슴』을 不拘하고 瞻大하고 明快한 歷史哲學者 李春園이 斷言하는 바와 갓치 이것은 『自然의 變化』며 『또는 偶然的 變化』인가 『物理學的 變化와 갓치 自然히』 『偶然히 行하는 變化』이어서 『無知蒙昧한 野蠻人種이 自覺업시 推移하여가는 變化』인가?

果然 『計劃과 努力』이 업는 일이엇슬가 그 事實에 對하야 『計劃』도 없고 『努力』도 업든 일이얏섯다고 明言하는 史家は 全世界를 통하야 『民族의 性格을 改造』하야야 『우리가 살아날 唯一한길』이 잇다고 하는 李春園 以外에는 다시 한사람도 업슬 것이다

이와 갓치 史的 眼光이 全世界에 『唯一』한 李春園의게 나는 다시 무려보고십다 『文明人의 最大한 特徵은』 『그 特色은 計劃과 努力에 잇다』고 하얏스니 『再昨年』 事實에서는 (所謂 李春園이 말하는 『無知蒙昧한 野蠻人種이 自覺업시 推移하여가는 變化』라고 한 이 事實에서) 發見하지 못하는 『自己의 目的을 意識的으로 確立하고 그 目的을 達하기 爲하야』 『計劃과 努力』이 나타난 文明人의 歷史的 事實을 가라쳐지이다!

엇더한 『計劃과 努力』이라야 『無知蒙昧한 野蠻人種이 自覺업시 推移하여간』다는 말을 免하고 『文明人』이라고 하는말을 드를수가 잇는가

여기서 특히 비판한 부분은 '3·1만세운동'이 '무지몽매한 야만인종이 자각업시 추이'했다는 주장과 1919년의 3·1만세운동을 '자연의 변화' '우연한 변화'라고 규정한 것이다.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2.8독립선언'에 이어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을 어떻게 자연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일 수 있는지, 주체적이고 거국적이었던 운동을 『자기의 목적을 의식적으로 확립하고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계획과 노력』이 나타

나는 문명인의 역사적 사실'을, 그리고 계획하고 노력하였던 과정을 부인하고 있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민중을 '야만'과 연결시켜 조선인을 미개한 야만인으로 본 것이 '3·1만세운동'의 주체였던 조선 민중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숨긴 '문명인' 이광수의 야만을 폭로한 것이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읽은 젊은 학생과 지식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비판한 부분이 바로 최원순이 비판하고 있는 조선인을 '무지몽매한 야만인종'으로 치부한 부분이었다. 최원순뿐만 아니라 김제관도 “조선민족의 위대한 희생적 정신과 확고한 의식적 노력을 무시하고 결국 자시 스스로 자기민족의 존엄을 모욕<sup>40</sup>했다고 비판했고, 신일용은 “야만인보다 못한 동물도 만드시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맞서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광수가 “조선 민족 쇠퇴의 근본적 원인이 도덕적인 것이 더욱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곧 허위, 비사회적 이기심, 나태, 무신, 겁나, 사회성의 결핍 - 이것이 조선 민족으로 하여금 금일의 쇠퇴에 빠지게 한 원인이 아닙니까. 영미족의 흥왕도 그 민족성의 원인이요, 오족의 쇠퇴도 그 민족성의 원인이니 민족의 성쇠흥망이 실로 그 민족성에 달린 것이외다. 그럼으로 일민족을 개조함에는 그 민족성의 근저인 도덕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sup>41</sup>라는 주장에 대해서 “『민족개조는 도덕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따진 것이다.

“더욱 根本的이라하여 根柢부터 改造를 하여야한다고 主張하는 『先

40\_김제관, 「社會問題와 中心思想」, 『신생활』 제7호, 1922.7.

41\_이광수, 「民族改造論」, 『개벽』 제23호, 1922.5.

覺者』李春園이여! 民族이 根柢인가? 道德이 根柢인가? 다시 말하면 民族에서 道德이 생긴 것인가? 道德에서 民族이 생긴 것인가? 『先覺者』李春園의 理論으로 보면 『根柢인 道德에서부터 始하여야한다』 하였스니 『根柢인 道德에서』 民族이 생긴 것인 줄 맞는 모양이다 그러나 아모리 事實에서 超越하는 『先覺者』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發生學的 理論으로 보아서 民族이 있어서 그 民族의게서 民族的 道德이 생긴 것이오 決코 어느 『先覺者』가 생각하는 그 道德이 있은 後에 그 道德에서 民族이 생긴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업는 줄 맞는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최원순은 이광수가 민족을 ‘근저에서부터 개조’할 것을 주장하고, 생물학적이고 유전학적이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개조가 아닌 ‘도덕적’일 것을 주장하였는가에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1919년 ‘3·1만세운동’ 이후 일제의 간섭과 통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일제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써 독립투쟁의 담론이 전개되던 때에 이광수가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민족성 개조는 그 자체로 의심스러운, 일제의 식민화 전략을 합리화시켜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최원순이 이렇게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비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광수가 「변언」에 “조선내에서 이 사상을 처음 전한다”고 사명감을 드러냈지만 이보다도 먼저 「개조의 근거」라는 글을 통해 ‘개조론’을 소개하였고 개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이광수가 언급한 귀스타프 르- 봉의 이론을 먼저 섭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을 토대로 개조의 대상을 ‘제도’에서 찾고 제도의 개조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를 갖고 있지 않았던 점을 쟁점으로 삼아 논리적인 근거를 요구한 것은 그가 쓴 「개



조의 근거」에서 알 수 있다.

不公平한 病이 만한 現代의 組織과 制度로는 一 社會의 健全한 進取와 向上은 不可能한 일이다. 그와 갓치 各 民族의게 잇는 現今의 關係로는 世界 人類는 眞正한 向上과 發展을 하지 못할 것이다. 一 社會의 眞正한 幸福을 爲하여 又는 各 民族도 互相의 協調에 因하여 全 人類의 眞正한 幸福을 期할 수 있다는 意味에서 現代世界는 改造 되어야 할 것이라 하노라.<sup>42</sup>

최원순은 ‘불공평한 병이 만한 현대의 조직과 제도’의 개조를 주장하고 있다. 이 ‘조직과 제도’의 개조는 일본의 총독정치를 거부하는 것, 즉 조선의 독립이다. 이광수가 “절대적으로 정치와 시사에 관계함이 없고 오직 개인의 수양과 문화사업에만 종사하므로 정부의 해산을 당할 염려가 업”는 “규칙의 엄수와 정치와 시사에 불간섭”할 것을 요구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래서 일제의 통치제도를 개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민족’을 개조의 대상으로 삼아 ‘규칙의 엄수’를 주장한 「민족개조론」을 단호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조선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일제의 총독정치인 ‘제도’를 개조의 대상으로 본 최원순은 “일년을 살다가 죽드래도 가치있는 유위한 생활을 하얏다하면 무의미하게 칠팔십이나 백여세를 사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사람다운 사람”<sup>43</sup>으로서 그렇게 끝까지 자존심과 품위를 유지하였다. 반면에 ‘민족’을 개조의 대상으로 본 이광수는 반민족행위로 일제에 부역하는 삶을 산 것으로 귀결

---

42\_최원순, 「改造의 根據」, 『현대』 5호,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1920.5.10.

43\_최원순, 「生存의 意義와 要求에 對하여」, 『현대』 2호,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1920.3.2.

되었다. 만약 이광수가 최원순의 공개 질의와 비판에 대한 답변이나 반론이 있었다면 그리고 『신생활』을 통해 비판하였던 젊은 청년과 지식인들의 비판에 대한 반론이 있었다면 조선의 민족문제에 대한 그리고 개조에 대한 건강한 담론이 생산되었을 것이나 이광수는 그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고 일제에 부역함으로써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편 「민족개조론」이 발표된 『개벽』에는 「편집실로부터」에 “우리는 다못 민족개조와라는 그것이 여하간 일차 토의할 거리가 됴과 가뜰므로 이를 일반민중의 비판의 조상에 공한 것 쏜 이른바 이에 대한 비판의 여하는 오즉 현명한 사회 여러분의 공안에 일임할 쏜이외다.”<sup>44</sup>로 입장 아닌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이다.

### 3. 참 언론의 기틀을 세우다

최원순은 동경에서 ‘2·8독립선언’ 이후 여러 지면에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명을 바든 이 존재 - 즉 천명을 바든 우리 몸은 그 천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역하며 천명을 달하기 위하여 활동할” 것이며, 그 “천명실현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사람은 다 평등이요 자유스러워야 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는데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였다. 글 「개조의 근거」는 일제의 검열에 걸려 통째로 수정하면서도 일제와 대결하였다. 그리고 『동아일보』에 「이춘원에 게 문하노라」를 통해 대중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냈던 그는 1923년 3

---

44 「편집실로부터」, 『개벽』 제24호, 1922.6.

월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하였다. 기자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선인 기자로 조직”하고 “문화 보급의 촉진, 언론 자유의 신장, 여론의 선도, 회원의 명예와 권리의 옹호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했던 ‘무명회’를 부활시킨 것이다. 1921년 11월 27일 결성되었다가 유명무실했던 ‘무명회’를 부활시키기로 하고, 1924년 8월 7일 임시총회에서 규정을 개정하고, 최원순을 비롯하여 이종린, 박동원, 이재갑, 신철 등을 간사로 선임했다.<sup>45</sup> 최원순을 비롯한 언론인 30명이 신문이나 잡지를 구별하지 않고 “민중의 정신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신문기자”만 입회시키기로 하고 “언론권위의 신장과 회원의 환산상구”<sup>46</sup>를 ‘무명회’의 목적으로 삼았다. ‘무명회’에서는 한재로 인해 기근이 심한 조선 민중에게 닥친 시련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한재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서울의 각 단체와 실업기관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면서 언론이 민중의 정신과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했다.<sup>47</sup> 그에 따라 ‘무명회’는 별도로 ‘조선기아대책구제강구회’를 발기하기로 하고 최원순을 비롯한 이종린, 정기용, 윤덕병, 김철수, 홍덕유, 강인택, 강상희, 김종범 등과 준비위원으로서 한재로 인한 민중들을 구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sup>48</sup> 전국적인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굶주리는 참상을 보도하기고, 전국적으로 조선기근대책강구회 회원을 모집해나갔다. 언론이 조선 민중의 현실과 사회적인 문제를 깊이 다루어 공론화하고 권력자와 대지주들이 “인류애와 민족성”

45\_『동아일보』, 1924.8.19.

46\_『조선일보』, 1924.8.19.

47\_『조선일보』, 1924.8.24.

48\_『조선일보』, 1924.9.4.

을 보여 주는 대열에 합류하도록 여론 형성을 주도했다.

무엇보다도 언론인 최원순이 1925년 ‘무명회’ 임시총회 자리에서 제안한 ‘전조선기자대회’ 대한민국 언론사에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가 전조선기자대회를 제안함으로써 전국의 신문잡지 기자가 한 자리에 모여 언론인으로 소속감과 사명감을 갖고 조선 민중들의 삶과 총독정치의 감시자로 건강한 언론인의 자긍심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전조선기자대회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다.<sup>49</sup> 그가 제안한 ‘전조선기자대회’는 1925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천도교 기념관에서 열렸다. “죽어가는 조선을 붓으로 그려보자! 거둬나는 조선을 붓으로 색칠하자!”는 구호 아래 첫날 참석한 기자만 455명이었고 밤늦게까지 이어진 기자대회에서 김기전, 김정신, 강호, 민태원 등과 함께 현직 기자를 대표하여 언론인으로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강연을 하였다. 다음날에도 “언론의 권위를 신장 발휘하고, 신문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현행 법칙의 근본적인 개신을 기하며, 언론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절 법규의 철폐를 기”하자는 「전조선기자대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sup>50</sup>

이 초유의 전조선기자대회는 상무위원인 신철(辛鐵)이 갑자기 구속당하는 등 일경의 감시에서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최원순이 최초로 제안한 전조선기자대회로 인하여 1925년은 일제 치하에서도 언론인들의 단체 활동이 절정을 이룬 해가 되었다. 이렇게 그는 언론인으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무명회’와 ‘철필구락부’가 주최한 신문강연회에서 ‘신문은 어떤 것이며, 신문은 엇더케되는 것인가’의 궁

---

49\_『조선일보』, 1925.3.15.

50\_『조선일보』, 1925.4.15.

금증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sup>51</sup> ‘조선사정연구회’와 1925년 11월 28일 ‘태평양상의 평화를 유지함에 다소간이라도 공헌’하기 위한 ‘태평양문제연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일제의 언론탄압에도 타협하지 않아서 몇 번에 걸쳐 고초를 겪었다. 그는 1926년 8월 22일 『동아일보』의 「횡설수설」에 이렇게 썼다.

府內(부내) 鐘路署(종로서)에서는 繼續的(계속적)으로 大檢舉(대검거)를 行(행)하는 中(중)이라고

◇

平穩(평온) 無事(무사)하다는 總督政治(총독정치) 下(하)에서 또 무슨 重大事件(중대사건)이 續出(속출)하였나

◇

主義者(주의자)는 檢舉(검거), 言論機關(언론기관)은 停止(정지)가 아니면 禁止(금지), 集會(집회)와 團體(단체)는 威壓(위압), 그래도, 看板(간판)만은, 文化政治(문화정치)

◇

奉天王(봉천왕) 張作霖(장작림)은, 南口(남구)의 占領(점령)으로, 因(인)하여, 赤賊(적적)을 殲滅(섬멸)하였다고, 豪語(호어)를 한다지

◇

馬賊(마적) 出身(출신)으로선 누구다려, 赤賊(적적)이라하나

◇

엇던 친구의, 總督(총독) 政治(정치)에 對(대)한 批評(비평)이야말로, 정말 奇發(기발)하다.

---

51 『조선일보』, 1925.2.3.

◇

現下(현하)의 總督政治(총독정치)는, 朝鮮人(조선인)을 利(이)케 하고, 益(익)케 하는 人士(인사)는, 迫害(박해)하고 排斥(배척)하면서도, 朝鮮人(조선인)을 害(해)케하고, 不利(불리)케하는 놈들은, 절대적으로 保護(보호)하는 方針(방침)이라고

◇

是(시) 故(고)로, 曰(왈), 總督政治(총독정치)는 惡黨(악당) 保護(보호) 政治(정치)라고<sup>52</sup>

최원순은 이들 기사로 인해 1926년 10월 4일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가 1926년 12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월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월을 받은 최원순은 1927년 2월 17일 “정치에 대하여 불온의 언론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다”는 데 있으며 원판결 거시(舉示)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소위(所爲)는 보안법 제7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런데 소화 2년 2월 7일 발포된 칙령 제11호 대사령 제1조에는 소화 원년 12월 25일 전, 다음에 기재하는 죄를 범한 자는 이를 사면한다는 주문에 의해 1926년 11월 8일 서대문형무소에 입감되었다가 1927년 2월 7일 오후 7시에 출옥하였다.<sup>53</sup> 그 뒤로도 그의 붓끝은 총독부를 겨냥하고 있었다. 참 언론인 최원순의 기개와 삶을 잘 보여준다.

솔직하게 말하면 거짓말로 남을 살살 찢어 먹으려는 자도 가증하고  
엇던 권력이나 금력의 뒤에 딱 부터서서 산양개 모양으로 혀를 흘근

---

52\_최원순, 「황실수설」, 『동아일보』, 1926.8.22.

53\_『동아일보』, 1927.2.8.

홀근 하는 놈도 가증하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회피술에 영리한 인간들이 제일 가증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소위 무엇을 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하는 인간들이 그 언의 것이 회피에는 능하지 안습닛가. 뒤에 안저서는 떠들고 당면하야서는 회피하고 입으로는 대하를 드리킬 듯하고 발로는 세천 하나를 못 건너뛰는 인간이 얼마나 만습닛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질적, 자력적, 강골적, 투사적 기풍은 업고, 기분적, 의타적, 굴종적으로 시종되고 마는 것이 거의 전부 임니다. 가증하다기 보다 통탄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들은 정말 상대방와는 싸우지 못하고 싸울 의사도 못내고 자기편끼리 싸우려 드는 것이 가장 가증합니다.<sup>54</sup>

그는 일제 식민치하에서 민족운동 진영의 한 가운데서 논리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일제에 협조하거나 부역하는 것에 분노하였다. 그만큼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특히 이름 있는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민낯, 뒤에서는 ‘대하’를 삼킬 언술로 큰소리치고, 앞에서는 ‘세천’도 건너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을 싫어했다. ‘세천’을 건너지도 못하면서 ‘대하’를 삼킬 언술로 천하제일의 일꾼이 되겠노라고 외쳤던 지식인들과 문학인, 언론인들의 변절과 훼손을 보고 비판한 것이다.

이런 언문일치의 삶을 살았던 그는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서는 세계정세를 분석하고 통찰한 비평을 발표해 나갔다. 「극동정국의 장래」, 「일본 정국의 추세」에는 국제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고, “중국의 혁명군의 혁명은 성공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적 국가로 변하리라”

---

54\_최원순, 「제일 실허하는 사람 -회피술에 능한 사람」, 『별건곤』

고 예측한 날카로운 정세 분석을 「중국은 공산화할 것이냐? - 사회주의적 국가로」를 통해 보여 줬다. 그는 국제정세와 동아시아 정세 파악에 능한 비평가이기도 했다.

#### 4. 광주에서 궁민 구제에 힘쓰다

일제의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질적, 자력적, 강골적, 투사적 기풍'을 유지하던 그는 일본에서부터 독립운동을 함께 한 동지이자 의사인 현덕신과 1923년 6월 16일 중앙교회 예배당에서 김창준 목사의 주례로 결혼했고 『동아일보』 편집국장 대리를 지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광주로 내려와 무등산 자락에 '석아정'을 짓고 요양하였다. 광주에 내려와서 요양하면서도 지역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전 조선의 사회적인 문제에서 한시도 멀리 있지 않았다. 그것의 대표적인 활동이 궁민 구제에 힘쓴 것이다.

광주에서 궁민구제연구회가 조직된 것은 1932년 8월 13일이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광주천 주변의 공유지에 살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작은 거처마저 살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였다. 광주 천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해와 침수로 목숨을 잃고 집을 잃은 사례가 빈번했다. 그때 광주 유지들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궁민구제연구회'를 조직했다.

광주읍에서 천정 일대의 빈터에다가 오막사리 집을 짓고 살아오던 궁민의 집 2백여호를 강제로 헐어버렸으므로 올데갈데 없는 궁민 8



백여명이 도로에 방황중이라는 함은 본지에 기보하였거니와 이 소식을 들은 광주시대의 각 방면의 유지 30여 명이 지난 13일 오후 9시부터 황금정 서석의원에서 회합하여 최홍종씨 사회를 개최하고 김재천씨로부터 사실 보고가 있을 수 그 대책 강구로 장시간 분분한 논의를 하였다. 광주읍가옥철거구 궁민구제연구회를 조직하기로 만장일치되어 즉석에서 좌기 부서 위원을 선정하고 동 11시 반에 산회하였다.

집행위원 최홍종

서무부 오현창, 최영균, 김창호

조사부 김응모, 김유성, 진재순, 고재섭, 정인세

교섭부 유인상, 최영욱, 김재천, 최원순, 김용환<sup>55</sup>

위 보도에 따르면 1932년 8월 13일 황금동 최영욱의 병원인 서석의원에서 궁민구제연구회 설립총회를 열고, 광주읍에서 천정 일대의 빈터에다 오막살이집을 짓고 살던 200여 호를 강제로 헐어 버려서 올 데 갈 데가 없어진 궁민 800여 명이 도로에서 취식하는 것을 보고 광주의 유지들 30여 명이 모여서 궁민들에 대한 구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집행위원에는 최홍종, 서무부는 오지창·최영균·김창호, 조사부는 김응모·김유성·진재순·고재섭·정인세, 교섭부는 유인상·최영욱·김재천·최원순·김용환이 맡았다. 빼앗긴 나라 조선, 일제가 점령한 서러움도 모자라 집까지 헐어 버려서 “약간은 어디로 떠나 버렸으나 그 대부분은 집이 뜯겨 버린 자리에다가 살림살이를 차려 놓고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비참한” 지경에 있었으나 “광주읍 당

---

55\_『동아일보』, 1932.8.16.

국에서는 하등의 구제책도 세우지 않고 떠나라고 독촉”만 할 뿐이었을 때, 총독정치에 맞서서 함께 살기를 도모한다는 소식을 들은 “궁민 100여 명이 회의장인 서석의원 문전에 쇄도하여 좋은 소식”<sup>56</sup>을 기대하며 모여들었다.

광주읍 천정 일대에 게딱지 같은 집을 짓고 살던 궁민들의 가옥을 광주읍에서는 강제로 철거하는 바람에 800여 명 주민이 도로에 방황하는 참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궁민구제연구회 교섭부 위원인 최원순은 최영욱, 김재천, 김용환과 함께 광주읍장과 부읍장을 직접 찾아가서 궁민들의 가옥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계속 “호남정, 누문정을 동하여 약 300호”를 헐어내야 하고, “전후 2천여 명의 궁민이 도륙에 방황하게 될 것”이니 “광주읍으로서도 중대한 문제”<sup>57</sup>라고만 할 뿐 구제 대책에는 미온적이었다. 그러자 최원순 등 궁민구제연구회는 집을 뜯겨 버린 궁민 200여 호와 앞으로 뜯기게 될 300호의 궁민들을 위해 교섭부 명의로 광주읍의원 14명 전부를 시내 중앙의원 3층으로 초대하였으나 출석자는 6명에 불과했지만, 최원순이 취지를 설명하고 장시간의 논의 끝에 읍의원 측에서 궁민 구제 문제를 강구하기로 했다.<sup>58</sup> 그러나 광주읍 당국에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sup>59</sup> 그래서 급기야 『동아일보』는 「사설」로<sup>60</sup> 다루었는데, 최원순이 쓴 글로 추정이 되는데 광주 유지들의 노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문제의 심각성을 사설로 다루어 총독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

---

56\_『동아일보』, 1932.9.10.

57\_『동아일보』, 1932.8.21.

58\_『동아일보』, 1932.8.27.

59\_『동아일보』, 1932.9.1.

60\_「다시 광주궁민문제에 대하여」, 『동아일보』, 1932.9.5.

다. 그러던 중에 동아일보사에서 정치부장으로 총독부를 출입기자로  
서 안면이 있던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이 광주에 온 것을 이용  
하여 최원순은 김재천 김용환과 함께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을  
만나서 “광주읍에서는 그 기채상화의 필요상 그 소유토지를 처분하  
려고 궁민 등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여 버렸으나 2천여 명의 인구가  
도로에 방황하고 있는 것은 인도상으로 광주시가 미관상으로 보아도  
도저히 방임할 수 없는 바이오니 임동에 있는 국유지 1만 평가량, 그  
들이 이주하기에 가장 적당한 후보지인 즉, 그것을 광주읍에 대부하  
야 궁민 등의 안주지대로 하여 달라”<sup>61</sup>고 요구하고 답변을 받았으나  
광주읍 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하지  
만 궁민구제연구회에는 기부가 이어졌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들  
이 마련되어 갔다.

뜯기게 될 2천여 명의 궁민들을 위하여 광주지방 유지들은 분기하여  
광주읍 가옥철거구 궁민구제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럼으로 전 광주의 조선인 시민은 신경을 날카로이 하여 이 구제연  
구회의 활동 여하를 주목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지난 7월 중에 천정  
일대에서 집을 뜯긴지 40여 일 동안에 그들은 노천생활을 계속한  
뿐이라 변변히 식료품을 먹지 못한 관계로 그 대부분이 부황증이나  
혹은 설사병에 걸려서 그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광주협동조합과 권계수 씨, 정운채 씨, 춘목암 네 곳에서는  
각각 만주조 한 가마니씩을 구제연구회에 보내서 궁민들에게 분배  
하여주라고 의뢰했다.

줍쌀 4가마니를 받은 구제연구회에서는 궁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

61 『동아일보』, 1932.9.10.

64호를 조사하여 가지고 10일에는 한 사람에게 한되씩 273명에게 분급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궁민구제연구회원인 서석의원장 최영옥 씨는 그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진찰한 후에 약까지 전부 무료로 주었다. 그리고 광주협동조합에서는 임동에다가 임시 수용소를 지어서 노천생활을 면하도록 해주었다.<sup>62</sup>

궁민구제연구회의 활동으로 이웃의 어려움에 십시일반하는 사람들이 늘어 갔다. 가난한 사람들의 위해 나누는 것이 일반화되어 갔다. 그리고 궁민구제연구회의 요구와 주장과 광주읍 당국이 주장하는 곳에는 이견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의 타협과 회의를 통해 의견의 차이가 좁혀져 갔다. 그 결과 궁민구제연구회에서 주장했던 임정(하천의 국유지)으로 궁민들을 이주시키게 합의하였고, 9월 10일 연구회에서는 48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그곳을 지평공사를 시작했다.<sup>63</sup> 궁민들은 임정(임동)에 건축하게 될 가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궁민들의 가옥을 대책 없이 강제로 철거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궁민구제연구회의 활동에 동의하였던 광주읍 당국은 최원순을 비롯한 궁민구제연구회 간부들과 수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은 파열되고 말았다. 그래서 궁민구제연구회의 위원 일동이 주머니를 털어서 30여 호 토막을 세워 준 것이다.<sup>64</sup> 오갈 데 없는 빈민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광주읍 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협상을 진행하였던 궁민구제연구회의 활동은 광주부가 광주천 주변의 금정(금동)과 양림정(양림동) 일대의 500여 가옥을 철거할 계획을 세우면서

---

62 『동아일보』, 1932.9.10.

63 『동아일보』, 1932.9.12.

64 『동아일보』, 1932.12.2.

이주비와 안주지를 설계하고 가옥을 철거하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절차를 밟게 만들었다.

최원순은 또 1933년 '계유구락부'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의 변혁과 빈민구제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가옥을 강제로 철거당한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것과는 또 다른 형태의 단체를 조직했다. 계유구락부는 1933년 3월 12일, 광주읍의 인구가 3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을 대표할 만한 기관이 없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유지들이 발의하여 꾸린 모임이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였던 광주 유지들 35명이 본정 3정목(충장포)의 중앙의원에 모여서 계유구락부를 김응모의 사회로 창립한 후 그 자리에서 최원순을 비롯하여 김응모, 최영식, 김흥열, 최영균, 김용환 6명을 간사로 선정했다.<sup>65</sup>

계유구락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특별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창립하고 2개월밖에 되지 않은 1933년 5월 13일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의 신문사 광주지국의 후원으로 춘계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제일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의 강연자는 이헌구, 김현준, 서춘으로 『동아일보』 정치부장 겸 편집국장 대리였던 최원순과 함께 일본 동경에서 1919년 2.8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동지들이다. 이헌구 「조선농촌에 미치는 세계공황의 영향」, 김현준 「사회생활과 경제적 기초」, 서춘 「교육보급에 대하여」를 강연하였다. 명사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여든 청중은 무려 700여 명이나 되었다.<sup>66</sup> 특별강연회가 대성황을 이루자 계유구락부에서는 가을에도 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역시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

---

65\_『동아일보』, 1933.3.16.

66\_『동아일보』, 1933.5.17.

3개 신문사 광주지국의 후원으로 1933년 11월 15일 광주 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추계 대강연회를 열었다. 춘계 특별강연회보다 훨씬 많은 무려 1천 명에 달하는 청중이 모였다. 그날 강연자는 몽양 여운형이었다. 여운형은 「생리학상으로 세계의 불건」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였고, 광주의 민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sup>67</sup>

강연회때마다 광주시민들이 모여들어 새로움에 대한 열망이 높아가자 계유구락부는 매주 2회씩 대강연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1934년에는 6월 4일 오후 9시부터 김용환의 사회로 중앙교회당에서 『동아일보』 광주지국의 후원으로 농촌문제 대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의 강연자는 송실전문대 이훈구였다. 이훈구는 「조선 농민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시간의 강연하였고 그날의 청중도 600여 명이나 되었다.<sup>68</sup> 가을에 연 강연회는 계유구락부위원들이 강연자로 나섰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광주지국의 후원으로 최홍중은 「종교와 일상생활」, 최원순은 「경제와 일상생활」, 김찬흠은 「전남금융계의 근황」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일상생활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특히 경제생활과 관련한 내용이었다.<sup>69</sup> 광주 유일의 조선인 민간단체였던 계유구락부는 지속적으로 강연회를 마련하여 광주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다. 1936년 7월 10일 『조선일보』 편집차장 함상훈을 초청하여 광주극장에서 「조선인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최원순은 국민구제연구회와 계유구락부의 구심점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기에 동분서주하였으며 지역민들의 계몽과 교양과 위해서 안주하지 않는 실천

---

67\_『동아일보』, 1933.11.22.

68\_『동아일보』, 1934.6.8.

69\_『동아일보』, 1934.10.20.

을 통해 삶의 모범을 보였다.

## 5.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다

최원순은 앓고 있던 병세가 깊어 가도 그는 쉽 없이 조선 사회와 광주 사회를 위하여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 년을 살다가 죽드래도 가치 있는 유위한 생활을 하얏다하면 무의미하게 칠팔십이나 백여세를 사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꼳꼳하게 광주의 큰 바위얼굴이 되어 갔다. 1936년 7월 6일 그의 불꽃 같은 40년은 끝내 끝이 나고 말았다.

석아(石嗶) 최원순(崔元淳)은 1919년 2·8독립선언의 막전막후에서 암약 하였고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등사한 장본인이며, 3년 동안 조선유학생학우회 순회강연단으로 조선의 산하를 누볐으며, 「이춘원에게 묻 하노라」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평생을 일제의 감시자 대상으로 신간회 창립회원이자 임원으로, 전조선기자대회 제안자로서 전조선기자대회를 이끌었다. 동아일보 기자로 조선총독부를 비판하여 치안유지법 위반, 신문지법 위반 등으로 옥고를 치렀으며,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병한 폐병으로 낙향하여 석아정을 짓고 요양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변혁과 궁민 구제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자 비평가로서 한국 독립운동을 비롯한 한국 언론사에 중심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 땅을 밝히고 있을 것이다.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5

**석아 최원순 전집**

인쇄\_2022년 9월 10일

발행\_2022년 9월 20일

엮은이\_이동순

발행인\_천득업

발행처\_(재)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전화\_062-603-9600 팩스\_062-941-6705

홈페이지\_<http://hiks.or.kr>

편집제작\_호름([www.heureum.com](http://www.heureum.com))

비매품

ISBN 979-11-90608-33-6 94910

ISBN 979-11-90608-28-2 (세트)